말레이시아
Malaysia

Global KOREA

투자실무가이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머 리 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비교적 경제발달 정도가 높고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고무,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동남아시아의 교차로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어 운송과 물류면에서 매력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2,500만명의 여객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만시설도 쿠알라룸푸르 인근의 클랑 항을 비롯하여 7개의 정부운영 항만이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항만과 교통시설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를 Hub로 활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이 계속 증가하여 1990년 이후 총 133개사의 해외 주요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말레이시아 투자진출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2천3백만불에서 2006년 5천9백만불, 2007년에는 1억2천만불로 매년 10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투자진출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한 전통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의 전기·전자 및 IT 산업, 석유화학산업, 동남아의 물류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물류산업 등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최근 유가의 급상승과 함께 말레이시아 내 원유생산 및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IT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교통시뮬레이션, 온라인 교육분야 등이 유망한데, 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인 MSC(Multimedia Super Corridor)를 중심으로 세제혜택과 외국인 고용, 해외송금의 자유 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발효중인 상품분야의 한-아세안 FTA와 추진중인 투자분야의 한-아세안 FTA도 우리기업들의 대말레이시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OTRA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 4월 1일 해외진출지원 전담기구인 'Global KOREA'를 신설하였으며, 5월에는 해외투자 관련 기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투자 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국내외 파이낸싱, 조세, 법률, 사업 발굴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민관합동해외진출지원단'을 KOTRA 본사에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발간하는 '말레이시아 투자실무 가이드'는 Global Korea 출범에 맞추어 시리즈물로 제작하고 있으며,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지 투자여건을 비롯하여, 투자유치제도, 현지법인 설립, 현지노무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말레이시아 진출을 시도하는 우리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료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쿠알라룸푸르 무역관과 본사 아대양주팀의 담당직원들, 그리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6월

Global KOREA 본부장

민 경 선

I.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동향

1. 외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동향 | 12
1.1 외국인투자 실현동향 | 12
1.2 외국인투자동향에 대한 평가 | 16
2.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동향 | 17
2.1 최근 교류동향 | 17
2.2 한국기업 진출분야 | 21
2.3 한국투자진출기업의 영업특징 및 패턴 | 24

II. 투자환경

1. 투자일반여건 | 28
1.1 일반환경 | 28
1.2 투자비용 | 30
1.3 사업환경 | 52
1.4 투자매력도 | 57
2. 입지여건 | 61
2.1 인프라 | 61
2.2 물류환경 | 63
2.3 수출입환경 | 68
2.4 특별경제지역 | 74
2.5 공단현황 | 78
3. 생활여건 | 96

III. 투자유치제도

1. 투자제도 | 106
1.1 투자제도동향(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침) | 106
1.2 신투자법(외국인투자보호) | 108
1.3 투자제한규정 | 111
2. 투자정책 | 124
2.1 주요정책 | 124
2.2 투자 인센티브 | 129

IV. 투자 절차

1. 사전준비 단계 | 204
1.1 사업타당성 조사 | 204
1.2 시장조사 및 말레이시아기업 신용조사 | 205
2. 설립절차 | 208
2.1 현지법인 설립 | 208
2.2 지점 개설 | 214
3. 인수합병 및 합작사업 | 215
4. 말레이시아 투자진출 관련기관 | 223
4.1 중앙정부 투자전담기관 | 223
4.2 투자관련 법무법인 및 컨설팅기관 | 226

V. 경영관리

1. 초기관리 | 234
1.1 직원 파견 | 234
1.2 금융, 전기, 통신, 용수 신청 | 241
2. 지적재산권 | 242
2.1 개요 | 242
2.2 특허 | 242
2.3 등록상표 | 243
2.4 산업디자인 | 244
2.5 저작권(Copyright) | 245
2.6 집적회로 설계 | 245
2.7 지리적 표시 | 246
3. 노무관리 | 247
3.1 고용 및 해고 | 247
3.2 말레이시아 고용법 | 249
3.3 고용계약 | 254
3.4 고용계약 해지 | 255
3.5 외국인 고용계약/외국인노동자 고용 | 256
3.6 노사분쟁 | 262
3.7 임금체계 | 264
3.8 사회보장 | 265
3.9 노동조합 & 노동관리 문제 | 266
4. 세무 | 268
4.1 본세 | 268
4.2 소득세 | 270
4.3 법인세 | 275

4.4 개인과세 | 278
4.5 소득세 원천징수 | 283

5. 통관 | 284

5.1 수입 | 284
5.2 보세창고 | 291
5.3 수출 | 291
5.4 기타 정보 | 292

6. 금융관리 | 293

6.1 말레이시아 금융체계 | 293
6.2 말레이시아 금융관리 | 294
6.3 법인금융 | 298
6.4 외환관리 | 302
6.5 투자금융 및 증권상장 | 307

7. 회계 | 310

7.1 개요 | 310
7.2 말레이시아 기업회계 | 315
7.3 세법에 기초한 금융정책 | 317

8. 마케팅관리 | 319

9. 사업분쟁 해결 및 중재 | 329

9.1 사업분쟁 해결 | 330
9.2 사례 연구 | 340

VI. 회사정리

1. 말레이시아 파산법 | 342

2. 회사의 제명 | 347

3. 회사의 청산 | 349
4. 지점의 폐쇄 | 350

VII. 우리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방안

1. 진출기업의 성공사례 | 352
1.1 삼성전자의 말련투자 성공요인은 철저한 현지화전략 | 352
1.2 차별화된 기술/품질로 지속 성장을 추구한 HENIKWON | 361
2. 투자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 371

VIII. 부 록

1. 서류양식 | 385
1.1 투자승인신청서 | 385
1.2 세금면제신청서 | 399
2. 투자절차 맵 | 411
3. 말레이시아 정부부처/유관기관 | 412
4. 임금체계 | 421
5. 말레이시아 개황 | 425
6. 권장활동 및 제품 목록 | 432

Ⅰ.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동향

Ⅰ.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동향

1. 외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동향

1.1 외국인투자 실현동향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로 인해 투자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07년 말레이시아의 총 투자규모는 180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2006년 대비 약 30.3% 증가한 수치이다. 2007년은 2006년 대비,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모두 확대되었으나, 특히 제조업분야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여 투자액이 2006년 202억 링깃(약 63억 달러)에서 334억 링깃(약 105억 달러)으로 65.2% 증가하면서 내국인투자액을 훨씬 앞섰다. 말레이시아의 FDI 유입은 2004년 131억 링깃(약 41억 달러), 2005년 179억 링깃(약 56억 달러)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FDI 증가는 주로 전기·전자산업에 있어서 고부가가치와 자본집약적 프로젝트의 투자 증가에 기인하였다. 전기·전자산업은 2007년 137억 링깃(약 43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2006년 승인된 이 분야 전체 투자액(86억 링깃)에서

59% 증가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수질개선과 태양전지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주요 FDI 유입분야로는 53억 링깃(약 16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 석유제품과 49억 링깃(약 15억 달러) 규모의 금속제품을 들 수 있다.

2007년 신규 프로젝트의 FDI 역시 2006년 92억 링깃(약 29억 달러)에서 173억 링깃(약 54억 달러)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전기전자산업과 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 석유제품 분야의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액투자도 사업의 확장 및 다양화를 꾀함으로써 2006년 11억 링깃에서 16.2억 링깃으로 47% 증가했다.

【 2007년 대말련 제조업분야 주요 투자국 】

(단위: 10억 링깃)

순위	국가	2006	2007
1	일본	4.4	6.5
2	독일	0.2	37
3	이란	–	3.1
4	미국	2.5	3.0
5	싱가포르	1.9	2.9
6	인도	8.3	2.9
10	한국	0.4	1.1
총계		20.2(U$ 63억)	33.4(U$ 104억)

자료원: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2007년 제조업부문 말레이시아 내외국인투자는 총 181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외국인투자가 내국인투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5년부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말레이시아 내외국인 투자동향: 제조업부문 】

(단위: US$ 백만)

	2007년	2006년	2005년
총 투자건수	949건	1,077건	1,027건
외국인투자액	10,098	5,730	4,731
내국인투자액	8,008	7,299	3,485
총 투자액	18,106	13,029	8,216

자료원: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제조업 승인 기준으로 국가별로는 일본이 60건에 19억 7천만 불로 1위를 차지하였고, 독일, 이란,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23건 3.38억 불로 10위를 차지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석유제품, 기초금속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투자유치동향: 제조업부문 】

(단위: US$ 백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투자유치액	4,138	3,477	4,731	5,730	10,098

자료원: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투자유치동향: 제조업부문 】

(단위: US$ 백만)

주요 투자국	2007년		2006년		2005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일본	60	1,971	81	1,250	84	971
독일	26	1,135	15	66	11	103
이란	3	927	–	–	–	–
미국	33	912	38	702	43	1,364
싱가포르	108	892	130	534	130	772
인도	8	883	6	2	8	148
중국	13	569	19	38	11	11
네덜란드	9	511	13	930	26	443

주요 투자국	2007년		2006년		2005년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호주	17	509	20	725	12	41
한국	23	338	18	124	24	178
Total	949	10,098	607	5,730	597	4,731

자료원: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말레이시아의 산업별 투자유치동향 】

(단위: US$ 백만)

주요 산업	2007년		2006년	
	외국인투자	전체 투자액 (국내투자 포함)	외국인투자	전체 투자액 (국내투자 포함)
전기전자	4,150	4,566	2,437	2,839
석유제품	1,612	4,179	171	3,240
기초 금속제품	1,508	3,678	648	772
종이/인쇄	548	876	26	195
화학/화학제품	471	1,148	859	2,590
섬유/섬유제품	393	423	43	233
기계장비	369	533	186	359
비금속제품	305	393	273	331
플라스틱제품	171	325	214	322
식품 가공	111	720	254	459
Total	10,098	18,106	5,730	13,029

자료원: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말레이시아의 대외국투자는 2007년에 279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라부안(국제역외금융센터,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도 라부안을 통한 대외투자가 가장 많고, 싱가포르, 네덜란드, 홍콩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말레이시아의 對외국투자 】

(단위: US$ 백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해외투자 (라부안 포함)	2,815	7,990	21,747	40,436	27,934
라부안 투자금액	247	5,613	16,524	34,425	15,070

자료원: 중앙은행
주) 말레이시아 외국투자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 내 역외금융센터인 라부안으로의 투자금액임
주) 라부안은 국제역외금융센터(IOFC:Int'l offshore financial centre)를 통한 투자를 의미

【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對외국 투자동향 】

(단위: US$ 백만)

국가	2007	2006	2005
싱가포르	3,818	1,310	1,007
네덜란드	1,440	425	110
홍콩	1,273	596	185
미국	606	341	203
인도네시아	504	285	956
대만	476	4	6
벨기에	361	373	505
중국	298	317	394
영국	260	317	394
한국	7.25	11.89	16.14
라부안*	15,070	34,425	16,524
Total	27,934	40,521	21,752

주) 라부안은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국제역외금융센터(IOFC)를 통한 투자를 의미
자료원: Cash BOP Reporting System, 중앙은행

1.2 외국인투자동향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지난 몇 년간 FDI 유치에 있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는 말레이시아정부의 친기업적 성향, 뛰어난 인프라, 정치적 안정, 수준 높은 교육 및 영어를 포함해 2개 국어 이상 사용 가능한 노동력에서 기인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태양전지 생산회사인 Q-Cell AG는 2009~2010년 사이에 10억 링깃(약 3억 달러)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여 아시아지역 이 회사 최초의 광발전제품 생산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2008년 2월에 밝혔다. Q-Cell의 투자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박막모듈(Thin-Film Module)제조업체인 First Solar사의 Kulim High-Tech Park 투자 프로젝트에 이어 말레이시아 광발전산업분야에서 둘째로 큰 투자이다. 이러한 공장의 설립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태양전지산업의 투자지역으로서 말레이시아의 가치가 입증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고부가가치, 고도기술 및 산업기반기술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말레이시아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기업들은 MIDA(http://www.mida.gov.my)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동향

2.1 최근 교류동향

가. 교류현황

말레이시아가 1957년 8월 3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1962년 5월 1일,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이 1964년 3월 31일 각각 개설되었다. 양국 간 관계의 급진전은 말레이시아정부가 Look East Policy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경제 및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1966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으며, 마하티르 전 총리 또한 4회에 걸쳐 방한, 양국 간 우호관계를 확고히 다진 바 있다. 2004년 8월 압둘라 바다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East Asia Summit회담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2년 12월 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1983년 9월 이중과세방지협정, 1988년 4월에는 상호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외교관계	1960. 2 외교관계 수립 1962. 5 주말련 우리 상주 대사관 개설 1964. 4 주한 말련대사관 개설
최근 정상간 교류	1998.11 APEC계기 김대중 대통령 방마 2003.12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창립총회 계기 마하티르 전 총리 방한 2004. 8 압둘라 총리 방한 2005.12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마
인적교류('07)	방마 한국인 137,313명, 방한 말련인 83,049명
말련의 한반도 정책 기조	대한반도정책의 기조는 명목상 남북 등거리 외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와의 실질적 협력/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혁 및 우리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

나. 교역동향

□ 개요

1988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투자가 본격화된 시점을 전후해,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교역규모는 매년 20% 이상 확대되어 왔으나, 1997년 하반기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수입억제정책으로 대말레이시아 수입 · 수출액이 감소되어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8년까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9년 이후 말레이시아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말레이시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수입수요 또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2006년 대비 9.1% 증가한 US$ 57.1억, 대말레이시아 수입은 16.6% 증가한 US$ 84.4억으로 총 US$ 27.4억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작년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말레이시아 천연가스와 원유의 수입 증가 및 가격 인상을 들 수 있다.

【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동향 】

(단위: US$ 백만,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	금액	4,480	4,608	5,227	5,704
	비중(%)	1.7	1.6	1.6	1.5
	증가율(%)	16.3	2.9	13.4.	9.1
수입	금액	5,679	6,012	7,242	8,442
	비중(%)	2.5	2.3	2.3	2.4
	증가율(%)	33.6	5.9	20.5	16.6
교역량	금액	10,159	10,620	12,469	14,146
	비중(%)	2.1	1.9	2.0	1.9
수지(US$)		-1,198	-1,404	-2,015	-2,738

주) 비중은 우리나라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KOTIS 무역통계

□ 교역품목

말레이시아의 경우 공업화 수준이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반면, 원유, 천연가스, 고무, 주석, 목재 등 세계적인 자원을 보유하여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에 있으며 양국간 교역확대의 여지는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 수출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기구부품(electro-mechanical components) 등으로 이들 7대 품목이 2007년 대말레이시아 전체 수출의 61. 5%를 차지했다.

주 수입품목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조립생산품인 반도체를 비롯한 천연가스, 원유, 컴퓨터, 석유제품, 목재류, LPG 등 원부자재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주요 품목별 수출입동향

2007년도 주요 수출품목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말레이시아 수출 1,2위 품목인 반도체(34%) 및 컴퓨터(13.9%)가 호조를 보이며 수출 증가를 견인한 가운데, 다른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49.7%), 자동차(-55.6%) 등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44.3%), 영상기기(155.6%)의 수출은 급증했다.

2007년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천연가스(17.9%), 원유(15.5%), 목재류(16.5%), LPG(22.6%) 등 자원부문의 수입이 2006년 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12.7%), 석유제품(81.9%), 유선통신기기(26.5%), 무선통신기기(32.2%) 등 기타 주요 품목의 수입 또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2006년 대비 수입이 16.6% 증가했다.

【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 】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06년		2007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5,227	13.4	5,704	9.1
1	831	반도체	1,184	30.8	1,587	34
2	813	컴퓨터	439	-24.9	500	13.9
3	613	철강판	289	4	323	11.9
4	812	무선통신기기	265	-1.4	313	18
5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68	163.9	286	-49.7
6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9	857.4	271	244.3
7	834	기구부품	181	20.5	229	26.7
8	741	자동차	440	-21.8	195	-55.6
9	214	합성수지	124	2.3	187	50.6
10	821	영상기기	52	44.6	134	155.6

자료원: KOTIS 무역통계(MTI 3단계 분류)

2.2 한국기업 진출분야

가.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투자현황

한국의 최근 5년간 대말레이시아 투자누계는 RM 22.5억을 기록하였는데 투자누계액의 50% 이상은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에 의한 것이다. 삼성계열사들은 대부분 세렘반에 위치한 삼성전자 복합단지에 투자하였다.

삼성코닝이 브라운관 TV용 유리 생산설비, 삼성SDI는 TV 브라운관 생산설비에, 삼성전자는 TV 생산설비에 투자했으며,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한다.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말레이시아를 전자레인지의 아시아지역 생산거점으로 지정하여 기존 전자레인지 생산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기로 하고 한국 내에 있던 전자레인지 생산설비 일체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였다.

아울러 삼성 3개 계열사의 협력업체는 총 40여개로 이들의 투자규모는 RM 4~7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삼성과 협력업체의 투자액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액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그룹계열사와 협력업체를 제외하고는 고려제강 등의 말레이시아투자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대 및 기아자동차 현지 조립공장은 현지 대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대나 기아로부터의 지분참여는 없다.

□ 1980~2005

1980-2005년간 對말레이시아투자(제조업 승인기준)는 총 395건, 약 US$ 25억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31%), 전기전자(28%), 금속가공(9.3%), 화학(8.2%) 순으로 나타났다. 對말레이시아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1988년부터로, 1980년부터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으나 1988년 이후의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99%에 해당하였다. 한편, 삼성전자가 US$ 15.2억을 투자하여 전체 대말레이시아투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 2006~2007

2006년에는 목재 및 화학분야, 2007년에는 전기·전자 및 화학분야에 대한 투자가 투자금액이 가장 많았다. 2007년도 對말레이시아투자(제조업)는 총 23개 프로젝트에 약 US$ 3.47억 불(RM 11.2억)을 기록, 2006년 대비 2.5배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US$ 2.5억), 화학제품(US$ 65백만), 포장인쇄(US$ 16백만), 기초금속(US$ 7.6백만) 분야에 주로 투자되었다.

삼성을 제외한 최대 투자 프로젝트는 2006년 초, 호남석유의 멜라민(Melamine)파우더(powder) 생산공장(말레이시아 국영가스공사인 페트로나스사와 합작) 프로젝트로 총 RM 9,100만(US$ 2,500만)이 투자되었다.

【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투자누계현황 】

(단위: US$천, 건)

업종	1980~2005		2006		2007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식품	7	8,200	2	1,101	2	905
주류	1	605	–	–	–	–
섬유	16	163,249	–	–	–	–
가죽	1	105	–	–	–	–
목재 및 가구	41	51,595	1	46,709	–	–
포장, 인쇄	14	55,511	–	–	2	16,233
화학/화학제품	22	33,207	2	60,891	1	60,595
석유	2	207,986	–	–	–	–
고무	29	36,836	–	–	–	–
플라스틱	28	25,609	–	–	2	1,414
비금속광물	28	808,790	1	590	–	–

업종	1980~2005		2006		2007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기초 금속	23	237,199	4	15,710	2	7,637
금속가공	29	118,629	4	2,869	1	1,337
기계제조	14	17,847	–	–	1	848
전기전자	89	706,148	3	7,252	10	256,731
운송장비	36	54,157	1	1,013	2	2,168
과학/계측기기	4	11,267	–	–	–	–
기타	11	7,338	–	–	–	–
총계	395	2,544,278	18	136,135	23	347,868

자료원: MIDA, 제조업 프로젝트 승인기준

나. 말레이시아의 對한국 투자현황

말레이시아의 역외금융지역인 라부안을 제외한 대한국 투자규모는 1991-2007년 누적금액 기준, 총 RM 325백만(US$ 98백만)을 기록하였다. 2007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해외투자는 총 US$ 279억이며, 이중 전체의 53.7%에 해당하는 US$ 150억이 라부안을 통해 투자되었다.(라부안을 통한 국가별 해외투자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對한국 연도별 투자현황 】

(단위: US$ 백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금액	2.63	16.14	11.89	7.25	85.52

자료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2.3 한국투자진출기업의 영업특징 및 패턴

【 한국의 주요 말레이시아투자기업 리스트 (13대 기업) 】

회사명	업종	투자년도	투자규모 (USD: 천불)	종업원 (한국 : 외국)
고려제강	철강제조업	1990	10,265	9 : 500 명
삼성전자	전자레인지	1991	50,000	4 : 520 명
삼성전자	TV	1991	50,000	7 : 1200 명
삼성코닝	브라운관용 유리제조	1992	400,000	13 : 850 명
삼성SDI	컬러브라운관 제조	1992	500,000	46 : 3700 명
영림전자공업	전자제품 제조업	1990	12,000	5 : 260 명
이랜택	전자통신 제조업	1990	6,280	8 : 382 명
자화전자	전자부품 제조업	1990	9,000	5 : 80 명
제일전자	전기전자 제조업	1990	8,000	6 : 84 명
남해화학	석유화학	2005	28,000	진행 중
헤닉권코퍼레이션	전기장비 제조업	1982	8,000	5 : 250 명
LG전자	무역업-전기, 전자	2005	5,000	7 : 180 명
Shin wha Intertek	제조업	1991	6,000	2 : 18 명

삼성전자 등 전기 · 전자 제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으며, 전자레인지, 브라운관 등 저가 가전제품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완성품 조립공장형태의 진출이 많았으나, 최근 인건비 상승 및 링깃화의 강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있다.

원유, 가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원부국인 말레이시아에 팜오일 바이오매스 공장, 자트로파 농장, 삼림벌목권 인수 등 원자재 관련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또한 제9차 말레이시아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건설 수요가 많아 건설업계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권의 진출에 장벽이 있지만, 이슬람의 자본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금융권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금융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대우증권이 CIMB은행과 업무제휴를 했으며, 우리투자증권이 최근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AMBANK와 제휴도 하였다.

부동산투자와 교민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음식점도 부쩍 늘어났고, 건설업 관련 진출도 눈에 띈다.

말레이시아국민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큰 무리는 없으며,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편의제공정책으로 기업활동에도 정부의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투자나 첨단기술보유업체는 국가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동남아 지역본부를 두는 다국적기업도 상당수 있다.

부미푸트라정책(말레이계 우대 정책)으로 사업활동에 있어 말레이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 정책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I. 투자환경

II. 투자환경

1. 투자일반여건

1.1 일반환경

말레이시아는 197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과 유사한 말레이시아 개발계획(2006~2010: 9차 개발계획 진행 중)을 수립하여 제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있다. 경제개발 초기 말레이시아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특히 전기, 전자산업)에 중점을 두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말레이시아투자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미국 반도체제조회사 Intel, 측정기기 전문기업 Agilent, 컴퓨터회사 Dell, 디스크드라이브 공급업체 Komag, 일본 전자기기회사 Sony, 우리나라의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포함한 총 300여 개의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199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 증가율은 매년 15%를 상회하였으며, IMF경제위기 직후에는 잠시 주춤하였으나, 2001년까지 매년 평균 외국인투자규모는 RM 250억(US$ 70억)을 기록했다. 그 후 말레이시아정부의 국내투자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세계적

인 투자유망지역으로 부상한 중국과 인도의 등장 등 투자환경의 변화로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유치는 급격히 감소하여 매년 RM 130억 정도를 기록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 세계적인 유가상승에 따른 말레이시아 유전탐사 및 석유화학산업 투자 증대와 대 중국진출 외국인투자가들의 일부 말레이시아 복귀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가 다시 급증하여 2005년도의 경우, 2004년 대비 무려 36.6% 증가한 총 RM 179억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고 또한 2006년에도 이러한 외국인투자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2005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RM 202억을 기록했다. 2007년도에는 RM 334.2억을 기록하여 2006년대비 65.4%나 증가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일차자원 수출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제반연관산업의 미발달로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 가공무역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지진출외국기업 및 현지기업이 대부분 완제품조립산업 위주의 제조활동을 하고 있어, 기계설비, 중간재 및 부품 등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

전체 인구의 약 24%인 화교로 지칭되는 중국계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남아 화교 네트워크는 물론 중국본토, 대만, 홍콩 등지의 화교경제권과도 연계되어 있어 말레이시아시장에서의 마케팅활동에 있어 화교와의 유대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추진으로 4천여 개의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전기전자 등 공산품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세계적 업체들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Fortune지 선정 500대기업 중 약 150개의 기업이 진출).

1인당 GDP가 싱가포르를 제외한 주변 동남아시아국가 대비 월등히 높아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급확대 및 소비패턴의 고급화가 나타나고 있다.

1.2 투자비용

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등록을 위한 주요 비용

	RM	US$
회사명 예약수수료	30	9.05
회사등록을 위한 비용은 명목자본금에 따라 다음과 같다.		
• RM100,000(US$28,213) 이하	1,000	302
• RM500,000(US$141,064) 초과 RM100만(US$282,127) 이하	5,000	1,509
• RM500만(US$141만) 초과 RM1,000만(US$282만) 이하	10,000	3,018
• RM5,000만(US$1,410만)초과 RM1억(US$2,821만) 이하	50,000	15,088
• RM1억(US$2,821만) 초과	70,000	21,123

비고: 전체 수수료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의 홈페이지 www.ssm.com.my를 참조하시오.
자료: 1965년 회사법(법령125호)과 부속법규

나. 회사설립대행서비스 권장수수료

	RM	US$
개인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Sdn. Bhd)의 설립	2,000	604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Bhd.)의 설립	3,500	1,056

월정수수료	전문서비스수수료		착수금	
	RM	US$	RM	US$
개인회사(Private Company)				
• 휴면(Dormant)	50	15	100	30
• 반휴면(Semi-active)	100	30	150	45
• 활동(Active)	150	45	300	91
주식회사(Public Company)				
• 비상장(Non-Listed)	200	60	750	226
• 상장(Listed)	300	91	2,000	604
컨설팅&자문수수료(하한액, 시간당)	300	91		

다. 최고급지역 사무실 임대료

건물소재지역	RM	US$
케다 주, 알로르 세타(Alor Setar, Kedah)	15.00 – 25.00	4.53 – 7.54
페낭 주, 죠지타운(Georgetown, Penang)	16.00 – 32.29	4.83 – 12.07
페락 주, 이포(Ipoh, Perak)	13.00 – 19.00	3.62 – 5.73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30.00 – 165.00	16.29 – 49.79
셀랑고르 주, 페탈링 자야(Petaling Jaya, Selangor)	26.00 – 52.00	11.47 – 14.48
네게리셈빌란 주, 세렘반(Seremban, Negeri Sembilan)	16.00 – 26.91	5.67 – 8.12
멜라카 주(Melaka)	10.00 – 25.00	3.32 – 7.54
조호르 주, 조호르바루(Johor Bahru, Johor)	15.00 – 27.00	5.19 – 9.08
파항 주, 쿠안탄(Kuantan, Pahang)	7.50 – 27.00	3.92 – 8.15
테렝가누 주, 쿠알라테렝가누(Kuala Terengganu, Terengganu)	21.30 – 24.50	6.43 – 7.39
켈란탄 주, 코타 바루(Kota Bharu, Kelantan)	9.50 – 35.50	2.87 – 10.71
사바 주, 코타 키나발루(Kota Kinabalu, Sabah)	15.00 – 27.00	4.53 – 8.15
사라왁 주, 쿠칭(Kuching, Sarawak)	18.00 – 30.00	5.43 – 9.05

▶위 요율은 평방미터당 월세기준의 개략적인 임대료(총액)로 관리비를 포함한 가격.
주: 1 평방미터 = 10.76 평방피트
자료: CH Williams, Talhar & Wong * Collier Jordan Lee & Jaafar

라. 공장부지 및 건물 비용

공장부지 비용*				공장건물분양비용**	
지역	매도가 (평방피트당)	연 임대료	연례 감정평가율 (지가의 %)	매도가(건평, 평방피트당)	월임대료 (평방피트당)
펄리스 (Perlis)	RM4.50 – 6.00 US$1.27 – 1.69	RM60/100m^2 US$16.93/100m^2	8	–	RM0.50 – 0.80 US$0.14 –0.22
케다 (Kedah)	RM4.70 – 15.00 US$1.33 – 4.23	RM531.26/ha. US$149.88/ha	8~10	RM65 – 239 US$18.33 – 67.43	RM0.50 – 0.70 US$0.14 – 0.20
페낭 (Penang)	RM12.20– 21.00 US$3.44 – 5.92	RM10,760 – 12,912/ha. US$3,036 – 3,643/ha.	10~11	RM153 – 155 US$43.17 – 43.73	RM0.80 – 1.40 US$0.21 – 0.39
페락 (Perak)	RM5.00 – 17.00 US$1.41 – 4.80	RM3,000/ha. US$846/ha.	10	RM97 –115 US$27.37 – 32.44	RM0.50 – 0.70 US$0.14 – 0.20
셀랑고르 (Selangor)	RM7.00 – 22.00 US$1.97 – 6.21	RM1,500 – 21,095/ha. US$423 – 5,951/ha.	8~13	RM110 – 400 US$31.03 – 112.85	RM1.10 – 2.00 US$0.31 – 0.56

공장부지 비용*				공장건물분양비용**	
지역	매도가 (평방피트당)	연 임대료	연례 감정평가율 (지가의 %)	매도가(건평, 평방피트당)	월임대료 (평방피트당)
네게리셈빌란 (Negeri Sembilan)	RM6.00 – 20.00 US$1.69 – 5.64	RM1,976.84– 7,700/ha. US$557.72 – 2,172.38/ha.	8 – 13	RM74 – 306 US$20.88 – 86.33	RM0.80 – 2.00 US$0.22– 0.56
멜라카 (Melaka)	RM7.50 – 18.00 US$2.16 – 5.08	RM60 – 200/100m^2 US$16.93 – 56.42/100m^2	10 – 13	RM100 – 180 US$28.21 – 50.78	RM1.50 – 4.00 US$0.42 – 1.13
조호르 (Johor)	RM8.00 – 22.00 US$2.26 – 6.21	경공업: RM1,600/ha. US$451.40/ha. 일반공업: RM2,100/ha. US$592.47/ha. 중공업: RM2,400/ha. US$677.11/ha.	0.28 – 1.0	RM102 – 190 US$28.78 – 53.60	RM0.70 – 1.20 US$0.20 – 0.34
파항 (Pahang)	RM3.00 – 10.00 US$0.85 – 2.82	2ha이하 – RM15/100m^2 US$4.23/100m^2 2ha초과 – RM10/100m^2 US$2.82/100m^2	7 – 9	RM94 – 127 US$26.52 – 35.83	RM0.40 – 0.60 US$0.11 – 0.17
테렝가누 (Terengganu)	RM0.18 – 5.60 US$0.05 – 1.58	RM8 – 20/100m^2 US$2.26– 5.64/100m^2	5 – 10	RM93 – 99 US$26.24 – 27.93	RM0.40 – 0.65 US$0.11 – 0.18
켈란탄 (Kelantan)	2ac.미만: RM5.50 US$1.55 2ac.초과: RM5.00 US$1.41	RM1,000/ha. US$282.13/ha.	5 – 12	–	RM0.35 – 0.45 US$0.10 – 0.13
사바 (Sabah)*** – KKIP – POIC	RM15.00 – 18.00 US$4.23 – 5.08 RM12.00 US$3.39	시장가격의 1% RM0.05/ft.^{2} US$0.01/ft.^{2}	9 – 15	RM145 US$40.91	RM0.70 – 1.00 US$0.13 – 0.21
사라왁 (Sarawak)	RM2.50 – 10.00 US$0.71 – 2.82	RM1,076/ha. US$303.57/ha.	12 – 19.25	RM92 – 94 US$25.96 – 26.52	RM0.70 – 0.80 US$0.20 – 0.23

▶공장신축시 평균건설비용(평방피트당)★★

철근콘크리트구조물	RM65 – 75 US$18.34 – 21.16
철근콘크리트구조물, 강철포탈프레임	RM70 – 80 US$19.75 – 22.57
청정실 설치 공장	RM120 – 130 US$33.86 – 36.68

마. 공과금

1) 전기요금

① 말레이시아 반도

말레이시아 반도의 전력발전과 공급은 주로 테나가 내셔널(Tenaga Nasional Berhad, TNB)이 담당하고 있다.

영업용전기요금 – 사무실, 점포, 호텔용	kWh당	
	sen	US cents
B요율(6.6kV미만의 저압전력) 단가	32.30	9.75
C1요율(6.6kV–66kV의 중압전력, 일반) 단가 최대수요전력 적용시 월정 kW당 단가:RM19.50(US$5.50)	23.40	7.06
C2요율(6.6kV–66kV의 중압전력, 최대부하/경부하 시간대 구분) 최대부하시간대(0800 – 2200) 경부하시간대(2200 – 0800)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적용 시 월정 kW당 단가: RM29.00(US$8.18)	 23.40 14.40	 7.06 4.35
산업용 전기요금 – 공장용	**kWh당**	
	sen	US cents
D요율(6.6kV미만의 저압전력) 단가	29.00	8.75
E1요율(6.6kV–66kV의 중압전력, 일반) 단가 최대수요전력 적용시 월정 kW당 단가: RM19.50(US$5.50)	22.20	6.70
E2요율(6.6kV–66kV의 중압전력, 최대부하시간대/경부하시간대구분) 최대부하시간대(0800 – 2200) 경부하시간대(2200 – 0800)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적용 시 월정 kW당 단가: RM24.40(US$6.88)	 23.40 14.40	 7.06 4.35
E3요율(132kV초과의 고압전력, 최대부하/경부하 시간대 구분) 최대부하시간대(0800 – 2200) 경부하시간대(2200 – 0800)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적용 시 월정 kW당 단가: RM23.40(US$6.60)	 22.20 13.30	 6.70 4.01

주: 전기요금이 총 사업비용의 5%를 초과하는 산업부문 고객은 산업용 정상전기요금보다 10 – 15% 낮은 특별산업용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료: 테나가 내셔널(Tenaga Nasional Berhad) – www.tnb.com.my

② 사바(Sabah)

사바 주와 국제역외금융센터인 라부안 연방지역의 전력발전과 공급은 사바 전력공사(Sabah Electricity Sdn. Bhd., SESB)가 담당한다.

영업용 전기요금 – 사무실, 점포, 음식점과 호텔용	kWh당	
	sen	US cents
CM1요율(영업용 1급)		
월 1000kWh까지	32	9.66
1,001kWh부터	27	8.15
최저요금(월): RM15(US$4.23)		
CM2요율(영업용 2급, 최대수요 500kW이상)		
단가	25	7.54
최대수요전력 적용시 월정 kW당 단가: RM15(US$4.23)		
최저요금(월): RM1,000(US$282)		
산업용 전기요금 – 공장용	**kWh당**	
	sen	US cents
ID1요율(산업용 1급)		
월 2,000kWh까지	32	9.66
2,001kWh부터	26	7.85
최저요금(월): RM15(US$4.23)		
ID2요율(영업용 2급, 최대수요 500kW이상)		
단가	20	6.04
최대수요전력 적용시 월정 kW당 단가: RM15(US$4.23)		
최저요금(월): RM1,000(US$282)		

주: 라부안 연방지역은 국제역외금융센터로서 특별요율을 적용받음.(자세한 사항은 사바 전력공사에 문의하시오.)
자료: 사바 전력공사(Sabah Electricity Sdn. Bhd., SESB) – www.sesb.com.my

③ 사라왁(Sarawak)

사라왁 주의 전력 발전과 공급은 사라왁 전력공급공사(Syarikat SESCO Berhad, SESCO)가 담당한다.

영업용 전기요금 – 사무실, 점포, 음식점과 호텔용	kWh당	
	sen	US cents
C1요율		
100kWh까지	40	12.07
100 – 5,000kWh	34	10.26
5,000kWh초과	30	9.05
최저요금(월): RM10(US$2.82)		
C2요율		
단가	25	7.54
최대수요전력 적용시 월정 kW당 단가: RM16(US$4.51)		
최저요금: kW당 RM16(US$4.51) × 과금적용 전력량		
C3요율		
최대부하시간대(0700 – 2400)	25	7.54
경부하시간대(0000 – 0700	14.40	4.35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적용 시 월정 kW당 단가 RM20(US$5.64)		
최저요금: kW당 RM20(US$5.64) × 과금적용 전력량		
산업용 전기요금 – 공장용	**kWh당**	
	sen	US cents
11 요율		
100kWh까지	40	12.07
100–3,000kWh	30	9.05
3,000kWh초과	27	8.15
최저요금(월): RM10(US$2.82)		
12 요율		
단가	22.20	6.70
최대수요전력 적용시 월정 kW당 단가: RM16(US$4.51)		
최저요금 kW당 RM16(US$4.51) × 과금적용전력량		
13요율(최대부하/경부하 시간대 구분)		
최대부하시간대(0700 – 2400)	23.40	7.06
경부하시간대(0000 – 0700)	14.40	4.35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적용 시 월정 kW당단가 RM20(US$5.64)		
최저요금 kW당 RM20(US$5.64) × 과금적용 전력량		

자료: 사라왁 전력공급공사(Sarawak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 SESCO) – www.sesco.com.my

2) 수도요금

말레이시아에서는 주정부가 수자원개발, 급수시설운영과 유지관리 등 상수도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주별 수도공급 주무기관은 공공사업국(Public Works Department), 수도공급국(Water Supply Department), 수도공급청(Water Supply Board) 및 수도공급회사(Water Supply Company)이다.

	㎥당			㎥당	
	RM	US$		RM	US$
조호르(Johor)			페락(Perak)		
산업/영업용			산업/영업용		
0 – 20 ㎥	2.22	0.67	0 – 10㎥	1.20	0.36
20㎥ 초과	2.96	0.89	10㎥ 초과	1.40	0.42
최저요금	18.48	5.58	최저요금	12.00	3.62
케다(Kedah)			펄리스(Perlis)		
산업/영업용			산업/영업용		
0 – 10,000㎥까지	1.20	0.36	무역용*	1.30	0.39
10,001 – 50,000㎥	1.40	0.42	최저요금	8.00	2.41
50,000㎥ 초과	1.80	0.54	일부 무역용**	1.10	0.33
최저요금	10.00	3.02	최저요금	5.00	1.51
켈란탄(Kelantan)			사바(Sabah)와 라부안(Labuan)		
산업/영업용	1.25	0.38	연방지역		
최저요금	12.50	3.77	영업용	0.90	0.27
			최저요금	4.00	1.21
멜라카(Melaka)			사라왁(Sarawak)		
산업/영업용	1.47	0.44	산업용		
최저요금	15.00	4.53	0 – 25㎥	0.95	0.29
			25㎥ 초과	1.20	0.36
네게리 셈빌란(Negeri Sembilan)			최저요금	22.00	6.64
산업/영업용			영업용		
0 – 35㎥	1.50	0.45	0 – 25㎥	0.88	0.27
35㎥ 초과	1.60	0.48	25㎥ 초과	0.96	0.29
최저요금	15.00	4.53	최저요금	20.00	6.04

	㎥당			㎥당	
	RM	US$		RM	US$
파항(Pahang)			셀랑고르(Selangor) /		
산업/영업용			쿠알라룸푸르 연방지역 및		
정부지정 산업지역 내 산업용			푸트라자야(Putrajaya)		
0 – 227㎥	0.92	0.28	산업/영업용		
227㎥ 초과	0.84	0.25	0 – 35㎥	2.07	0.62
최저요금	30.00	9.05	35㎥ 초과	2.28	0.69
			최저요금	36.00	10.86
무역용*	1.45	0.44	테렝가누(Terengganu)		
(지정 산업지역 외부)			산업용	1.15	0.35
최저요금	20.00	6.04	최저요금	50.00	15.09
일부 무역용**	0.99	0.30	영업용		
최저요금	10.00	3.02	70㎥ 미만	0.95	0.29
			70㎥ 초과	1.15	0.35
항구	1.45	0.44	최저요금	15.00	4.53
페낭(Penang)					
산업/영업용					
0 – 20㎥	0.52	0.16			
21 – 40㎥	0.70	0.21			
41 – 200㎥	0.90	0.27			
200㎥ 초과	1.00	0.30			
최저요금	10.00	3.02			

주:
* 대중음식점, 호텔 및 시장 등에 대한 수도 공급을 포함한다.
** 수도공급이 연결된 부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무역 또는 사업에 사용되나 소비되는 용수가 당해 부지에서 영위되는 무역 또는 사업의 용도가 아니라 단지 청결과 위생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자료: 에너지, 수도 & 통신부 수도공급국(Water Supply Department, Ministry of Energy, Water &Communications) – www.ktak.gov.my

3) 하수도요금

말레이시아의 하수처리 서비스는 1994년 민영화되었으며 재무부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인다 수도 컨소시엄회사(Indah Water Konsortium Sdn. Bhd.)가 조호르 바루, 켈란탄, 사바와 사라왁주를 제외한 86개 지방자치지역에서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용	월정요금	
	RM	US$
• 하수도가 연결된 수용가	8	2.41
• 개별정화조가 설치된 수용가	6	1.81
• 개별정화조가 설치되거나 하수도가 연결된 빌리지/주택단지내 수용가	3	0.91
• 개별정화조가 설치되거나 하수도가 연결된 서민주택 및 연간사용가치 RM600 (US$169.28) 미만인 주택 수용가	2	0.60
산업용	**1인당 월정요금**	
	RM	US$
• 하수도가 연결된 수용구내	2.5	0.75
• 개별정화조가 설치된 수용구내	2	0.60

□ 영업용

영업용 업소에 대한 월 하수처리 서비스료는 당해 업소의 연간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과 100 입방미터(㎥) 초과 사용분에 대한 초과 부과금을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연간사용가치		하수도 연결 수용업소 월정요금		개별정화조 설치 수용업소 월정요금	
RM	US$	RM	US$	RM	US$
2,000 미만	604 or less	8	2.41	7	2.11
2,001 – 5,000	604 – 1,509	14	4.22	8	2.41
5,001 – 10,000	1,509 – 3,018	20	6.04	14	4.22
10,001 – 20,000	3,018 – 6,035	26	7.85	19	5.73
20,001 – 30,000	6,035 – 9,053	29	8.75	21	6.34
30,001 – 40,000	9,053 – 12,070	32	9.66	23	6.94
40,001 – 50,000	12,070 – 15,088	35	10.56	25	7.54
50,001 – 60,000	15,088 – 18,105	38	11.47	27	8.15
60,001 – 70,000	18,105 – 21,123	41	12.37	29	8.75
70,001 – 80,000	21,123 – 24,140	44	13.28	31	9.35
80,001 – 90,000	24,140 – 27,158	47	14.18	33	9.96
90,001 – 100,000	27,158 – 30,175	50	15.09	35	10.56
100,001 – 200,000	30,175 – 60,350	180	54.32	120	36.21

부동산 연간사용가치		하수도 연결 수용업소 월정요금		개별정화조 설치 수용업소 월정요금	
RM	US$	RM	US$	RM	US$
200,001 – 400,000	60,350 – 120,700	495	149.37	330	99.58
400,001 – 600,000	120,700 – 181,050	522	157.51	348	105
600,001 – 800,000	181,050 – 241,400	1,980	597.47	1,320	398.31
800,001 – 1,000,000	241,400 – 301,750	2,160	651.78	1,440	434.52
1,000,001 – 3,000,000	301,750 – 905,250	4,320	1303.56	2,880	869.04
3,000,001 – 5,000,000	905,251 – 1,508,751	8,800	2,655.40	5,400	1,629.45
5,000,001 – 7,000,000	1,508,751 – 2,112,251	9,200	2,776.10	6,000	1,810.50
7,000,001 초과	More than 2,112,251	9,600	2,896.80	6,600	1,991.55

월 초과부과금	
수돗물 사용량	초과부과금
100㎥ 까지	무료
100㎥ 초과	㎥당 30 sen(9.05 US cents)
200㎥ 초과	㎥당 45 sen(13.58 US cents)

초과요금은 수도공사로부터 받은 전년도 수돗물소비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조정됨.
자료: 인다 수도 컨소시엄 회사(Indah Water Konsortium Sdn. Bhd.) – www.iwk.com.my

4) 지정폐기물

말레이시아 반도의 공장외부 지정폐기물처리업체는 쿠알리티알람社(Kualiti Alam Sdn. Bhd.)이며 이 회사의 폐기물관리센터는 네게리셈빌란의 부킷나나스(Bukit Nanas)에 소재하고 있다. 비지정 폐기물에 대한 수집과 처분비용은 지역과 계약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5) 가스 및 연료비용

	리터당	
	RM	US$
휘발유(무연)		
• 소매	1.92	0.58
• 대량구매고객★	1.71 – 1.76	0.52 – 0.53
디젤유		
• 소매	1.58	0.48
• 대량구매고객★	1.50 – 1.68	0.45 – 0.51
중질(medium) 연료유	1.03 – 1.13	0.31 – 0.34
	kg 당	
	RM	US$
LPG		
• 용기	1.40	0.42
• 대량구매고객★	2.08 – 2.28	0.63 – 0.69

6) 통신요금

□ 전화요금

1999년 1월 1일부터 '평등 접속제(Equal Access Regime)'가 시행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전화가입자들은 3개 국내외전화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전화부문에서는 현재 3개 이동전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요금 규제를 철폐하는 유·무선통신요금상한제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3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이 요금상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선전화 / 직접교환회선

○ 시내통화

기본 전화서비스에 가입하면 개별 직접교환회선과 다양한 색상의 전화기 중 가입

자가 선택한 색상의 전화기를 제공한다. 월 기본 전화임대료 외에 추가로 소액의 추가임대료를 내고 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가정용

가격 / 요금	RM	US$
초기 보증금	75	21.16
인지대(Stamp Fee)	10	2.82

□ 임대료

교환회선 용량	가정용(월)			
	말레이시아 반도		사바 / 사라왁	
	RM	US$	RM	US$
1000 회선 초과	25	7.05	25	7.05
501 – 1000 회선	13	3.67	13	3.67
500 회선 이하	13	3.67	13	3.67

② 법인 고객용

가격 / 요금	RM	US$
초기 보증금	200 – 500	56.43 – 141.06
인지대(Stamp Fee)	10	2.82

□ 임대료

교환회선 용량	업무용(월)			
	말레이시아 반도		사바 / 사라왁	
	RM	US$	RM	US$
1000 회선 초과	45	12.70	40	11.29
501 – 1000 회선	45	12.70	40	11.29
500 회선 이하	20	5.64	20	5.64

□ 초기비용

	RM	US$
설치료 (텔레콤 말레이시아에 지불하는 금액)	50	14.11
배선료★ (텔레콤 말레이시아가 지정한 배선공사업체에 지불하는 금액)		
기존배선	30	8.46
신규배선	50	14.11
★주: 최초 5m에 RM50(US$14.11), 추가 매 1m당 RM5(US$1.41)이 부과됨. 또한 이 요금은 옥외 선로 철거(external removal; ER)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재연결비 가입자 서비스가 일시 중지된 상태에서 다시 연결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	10	2.82

□ 통화료

시내통화료: 최초 2분간 기본통화료는 8 sen(2.26 US cents)이며 초과 1분당 4 sen(1.13 US cents)이 부과된다.

□ 장거리 통화

국제자동통화(International Direct Dial Services; IDD) 서비스로 교환원을 통하지 않고도 해외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외로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국제자동통화(IDD) 사용료는 전화요금 계산서에 항목별로 청구된다.

□ 국내지역통화

국내지역통화는 인접지역 통화요금 부과지역을 제외한 시외자동통화를 말한다.

【 유선전화에서 유선전화로 거는 전화요금 】

유선 간 거리 (km)	표준가 7.00 a.m. – 6.59 p.m.		할인가 7.00 p.m. – 6.59 a.m.		교환원 연결** (3분당 서비스 요금)	
	RM	US cents	RM	US cents	RM	US cents
A대역(50km까지)	0.10/50초	2.82/50초	0.10/60초★	2.82/60초	0.35	0.10
B대역(50km–150km)	0.10/20초	2.82/20초	0.10/40초	2.82/40초	0.90	0.25
C대역(150km 초과)	0.10/7초	2.82/7초	0.10/14초	2.82/14초	2.70	0.76

【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전화요금 】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 간 교환구간(MTX)	표준가 9.00 a.m. – 8.59 p.m.		할인가 9.00 p.m. – 8.59 a.m.		교환원 연결** (3분당 서비스 요금)	
	RM	US cents	RM	US cents	RM	US cents
L대역(MTX 이내)	0.10/20초	2.82/20초	0.10/30초	2.82/30초	2.10	0.59
M대역(MTX 인접지역)	0.10/8.6초	2.82/8.6초	0.10/15초	2.82/15초	2.10	0.59
N대역(MTX 비인접 지역)	0.10/8.6초	2.82/8.6초	0.10/15초	2.82/15초	2.10	0.59

주: 상기 전화요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환원을 통한 전화서비스의 경우 유효통화 한 건당 RM1.50(US$0.42)의 서비스요금이 부과됨. MTX란 이동전화교환구간(Mobile Telephone Exchange Area)을 말함.

【 유선전화에서 인접국가로 거는 전화요금 】

	기준가		교환원 연결★ (3분당 서비스 요금)	
	RM	US cents	RM	US cents
국경지역에서 싱가포르/브루나이	0.10/20초	2.82/20초	0.90	0.25

주: ★교환원을 통한 전화서비스의 경우 유효통화 한 건당 RM1.50(US$0.42)의 서비스요금이 부과된다.

	표준가 7.00 a.m. – 6.59 p.m.		할인가 7.00 p.m. – 6.59 a.m.		교환원 연결★ (3분당 서비스 요금)	
	RM	US cents	RM	US cents	RM	US$
말레이시아 반도 외 지역에서 싱가포르로#	0.10/3.1초	2.82/3.1초	0.10/5.8초	2.82/5.8초	6.00	1.69
사바/사라왁에서 싱가포르로	0.10/2.3초	2.82/2.3초	0.10/4.6초	2.82/4.6초	7.80	2.20
사바/사라왁 외 지역에서 브루나이로#	0.10/3.1초	2.82/3.1초	0.10/5.8초	2.82/5.8초	6.00	1.69

주: ★교환원을 통한 전화서비스 – 유효통화 한 건당 서비스 요금은 RM 1.50(US$0.42)이다. # 접경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 국제자동통화(International Direct Dial Services; IDD)

국가	국가번호	시차(시간)	분당 요금(기준가)	
			RM	US$
호주	61	0 에서 +2	0.90	0.25
중국	86	0	2.40	0.68
독일	49	-7	1.80	0.51
일본	81	+1	1.80	0.51
영국	44	-8	0.90	0.25
미국	1	-13에서 -16	0.90	0.25
한국	82	+1	2.40	0.68

국제자동통화(IDD)는 6초 단위로 과금된다. 통화시간단위당 과금요율은 통화착신 국가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 예를 들면, 호주로 10분 20초 동안 국제통화를 할 경우 요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총 통화시간 = 10분 20초

호주 전화요금 = 6초 단위 당 RM 0.09

총 통화시간(초) = (10분 × 60초) + 20초 = 620초

총 과금단위시간 수 = 620초/6초 = 104 과금단위시간

총 요금 = RM 0.09 × 104 = RM 9.36(US$2.64)

7) 인터넷 서비스 요금

말레이시아의 인가받은 주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ISPs)로는 TM Net Sdn. Bhd. (Telekom Malaysia Berhad), JARING(MIMOS Bhd.), DiGiNet(DiGi Telecommunications Sdn Bhd), TimeNet(TT dotcom Sdn Bhd) 및 Maxis Broadband Sdn. Bhd.가 있다. 155Mbps급(STM1), 34Mbps급(E3) 및 2Mbps급(E1)의 전국 백본망이 다수 구축되어 있다. TM Net은 JARING 및 2Mbps 용량 이상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들과 피어링 계약(peering arrangement; 트래픽 교환에 관한 합의)을 맺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양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는 TM Net(텔레콤 말레이시아가 전체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과 JARING(MIMOS가 전체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이다.

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ISP)		비고
	JARING	TM Net	
인터넷 서비스 • 다이얼업 (PSTN/ISDN)	V	V	• 가정 &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PSTN 요금 ISP – 분당 RM0.01(US$0.28) TELCO – 분당 RM0.015(US$0.42) • ISDN 요금 ISP – 분당 RM0.025(US$0.71) TELCO – 분당 RM0.04(US$1.13)
• 전용선 서비스	V	V	• 법인고객 &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제공 속도에 따라 과금 상세한 사항은 요청 시 제공될 수 있음.
광대역 서비스 (Broadband Services)	V	V	• TM Net – 유무선 제공(가정 & 법인) • JARING – 유선 제공(법인) 및 무선 제공(가정 &법인)
데이터 센터 서비스	V	V	
가상사설망(VPN)	V	V	• 기존의 인터넷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용망과 같은 보안기 제공하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는 TM Net과 JARING이 법인고객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요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요청 시 제공될 수 있음.
위성 서비스	V	–	• 유선 지상통신선로를 대체하며 C대역 중계기를 이용함. 위성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전역과 아시아 · 태평양지역 일부에서 이용할 수 있음. 위성의 중심국(satellite hub)은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하고 있음.
기타 서비스			• TM Net과 JARING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www.tm.net.my와 www.jaring.my에서 얻을 수 있음.

주: 다이얼업 단축번호 – 1515(TM Net); 1511(JARING) TELCO – Telecommunication Company

나. 디지털 전용선

착신국가 (말레이시아 발신)	64Kbps 회선 연간 사용료				2Mbps 회선 연간 사용료			
	1정상가격		2MSC가격		1정상가격		2MSC가격	
	RM	US$	RM	US$	RM	US$	RM	US$
호주	22,299.80	6,291	21,039.80	5,936	104,124.20	29,376	95,846.00	27,041
프랑스	24,265.40	6,846	22,803.80	6,436	164,692.40	46,464	150,366.20	42,422
독일	24,265.40	6,846	22,803.80	6,436	164,692.40	46,464	150,366.20	42,422
인도네시아	21,846.20	6,163	20,624.00	5,819	87,240.20	24,613	80,650.40	22,754
일본	22,413.20	6,323	21,128.00	5,961	105,333.80	29,718	96,942.20	27,350
한국	22,413.20	6,323	21,128.00	5,961	105,333.80	29,718	96,942.20	27,350
태국	21,846.20	6,163	20,624.00	5,819	87,240.20	24,613	80,650.40	22,754
영국	24,265.40	6,846	22,803.80	6,434	164,692.40	46,464	150,366.20	42,422
미국	22,652.60	6,391	21,354.80	6,025	113,297.00	31,964	104,099.00	29,369

주: 위의 가격은 1회 설치료 RM5,000(US$1,411)포함 Half Circuit 가격.

국내착신지역 (쿠알라룸푸르 발신)	64Kbps 회선 연간 사용료				2Mbps 회선 연간 사용료			
	1 정상가격		2 MSC가격		1 정상가격		2 MSC가격	
	RM	US$	RM	US$	RM	US$	RM	US$
Bkt 다만사라	10,800	3,047	9,120	2,573	54,300	15,320	43,890	12,383
세렘반	24,600	6,940	13,110	3,699	152,400	42,996	96,900	27,338
멜라카	27,624	7,793	15,265	4,307	176,970	49,928	118,446	33,417
이포	30,120	8,498	17,043	4,808	197,250	55,650	136,230	38,434
캉가르	41,064	11,585	24,841	7,008	286,170	80,736	214,206	60,433
알로르 스타	39,096	11,030	23,438	6,612	270,180	76,225	200,184	56,477
쿠안탄	31,080	8,769	17,727	5,001	205,050	57,850	143,070	40,364
쿠알라 테렝가누	35,640	10,055	20,976	5,918	242,100	68,303	175,560	49,530
페낭	35,880	10,123	21,147	5,966	244,050	68,853	177,270	50,013
조호르 바루	35,928	10,136	21,181	5,976	244,440	68,963	177,612	50,109
코타 바루	37,896	10,691	22,583	6,371	260,430	73,474	191,634	54,065
쿠칭	68,568	19,345	44,437	12,537	509,640	143,783	410,172	115,721
코타 키나발루	84,120	23,736	55,518	15,663	636,000	179,433	520,980	146,983

주: [1]은 고객들에 대한 정상가격
[2]는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 MSC) 소재 MSC 등록기업에 대한 특별한 가격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는 현재 법인고객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전용선 서비스는 임대회선, 무선, 광섬유, SDSL(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대칭형 디지털 가입자 회선)과 위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며 정상적인 서비스 속도는 64Kbps - 2Mbps이다.

다. 인터넷 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가입자는 유선, 이동통신 또는 PC를 통해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인터넷 전화서비스 제공업체는 TM Net Sdn. Bhd., JARING, Time dotcom과 NasionCom이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의 요율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전화(VoIP)	분당	
	RM	US$
국내통화 (요율은 착신지에 따라 다르다)	0.15 - 0.25	0.042 - 0.071
국제전화 (요율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0.15 - 7.00	0.042 - 1.97

라. 인터넷 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re; IDC)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서비스는 고객에게 코로케이션(co-location) 및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서버가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초고속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첨단 전산환경을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TM Net과 JARING이 여러 대도시에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55 Mbps급의 접속속도를 제공한다.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는 고객의 시스템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공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고객은

네트워크 관리 및 운용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용이하게 인터넷서비스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 TM Net과 JARING은 또한 운용대행 서비스, 백업 서비스, 부하조절(load balancing) 서비스, 보안관제 서비스 등 전문적인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광대역 서비스(Broadband Services)

TM Net과 JARING은 일반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유무선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TM Net과 JARING의 무선 광대역서비스는 현재 대도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 타지역에도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다.

바. 위성서비스

위성서비스는 IP 트래픽 전송에 사용된다. 위성서비스는 현재 법인고객에 한해 제공되고 있다. 위성서비스는 원격지역 또는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유선 지상서비스를 대체하여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이다. 위성서비스는 C대역 중계기를 이용하므로 기상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성의 중심지구국(earth satellite hub)은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세 가지 패키지가 이용가능하다.

내역	기본		표준		고급	
업링크(Kbps)	256		256		256	
다운링크(Kbps)	512		1,024		2,048	
월 사용료	RM	US$	RM	US$	RM	US$
	2,400	677	2,800	780	3,600	1,016

【1회 설치료】

현장 위치	서부 말레이시아						동부 말레이시아			
	클랑 벨리		클랑 벨리 외부		원격지역		도시지역		원격지역	
	RM	US$	RM	US$	RM	US$	RM	US$	RM	US$
표준 설치	3,500	987	4,000	1,129	4,250	1,199	5,000	1,411	6,000	1,693
표준 철거	3,500	987	4,000	1,129	4,250	1,199	5,000	1,411	6,000	1,693
재연결(A)	100	28.2	100	28.2	100	28.2	100	28.2	100	28.2
재연결(B)	1,750	494	2,000	564	2,125	600	2,500	705	3,000	846

주) • (A) – 방문 없이; (B) – 현장 방문 설치
• CIR – 최저보장속도(Committed Information Rate)
• 월 사용료는 최저보장속도(CIR)를 기준으로 부과됨. 최저보장속도(CIR)는 월 8kbps당 RM155(US$43.73)을 기준으로 하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성서비스는 말레이시아 전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부에 제공됨.

자료: 텔레콤 말레이시아(Telecom Malaysia) – www.telekom.com.my
TM Net – www.tm.net.my
JARING – www.jaring.my

사. 운송비

1) 컨테이너 육상운송 운임

□ 운송 기점: 클랑 항(북항)

지역	운송요율	도로통행료	유류할증료	총계	
	20피트& 40피트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6년 5월 1일부터	20피트 & 40피트	
	(RM)	(RM)	12.47%	(RM)	(US$)
클랑항 – Shah Alam	444.00	19.80	55.37	519.17	157
페탈링자야 – Sungai Way	504.00	23.20	62.85	590.05	178
셀랑고르 – Banting	564.00	0.00	70.33	634.33	191
페락 – Tanjung Malim	1,262.00	59.80	157.37	1,479.17	446
페낭 – Butterworth/Seberang Prai	2,402.00	194.80	299.53	2,896.33	874
케다 – Kulim	2,372.00	240	295.79	2,907.79	877
펄리스 – Kangar	2,906.00	240	362.38	3,508.38	1,059
네게리 셈빌란 – Nilai	968.00	56.40	120.71	1,145.11	346
멜라카 – Air Keroh 산업지대	1,468.00	103.40	183.06	1,754.46	529
켈란탄 – Kota Bharu	3,302.00	197.80	411.76	3,911.56	1,180
파항 – Kuantan	1,940.00	197.80	241.92	2,379.72	718
테렝가누 – Kerteh	2,318.00	197.80	289.05	2,804.85	846
조호르 – Pasir Gudang	2,348.00	211	292.80	2,851.80	861

자료: 말레이시아 컨테이너 육상운송업체협회(Container Hauliers Association of Malaysia)

2) 해상운임

제시된 요율은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THL/THD/DOC 및 EDI · 해운동맹의 발표에 따른 유가할증료, 통화할증료, 전쟁위험할증료, 성수기할증료 등의 할증료.

클랑 항 기점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US$	
호주 – 주요 항구	1,000	2,000
중국 – 상하이	100	200
유럽 – 주요 항구	1,200	2,400
인도 – 나바셰바	450	900
일본 – 주요 항구	400	800
한국 – 부산	400	800
서지중해 – 주요 항구	1,200	2,400
뉴질랜드	1,100	2,200
남아프리카	1,100	2,200
미국 서부해안 – 로스앤젤레스	1,725	2,300
미국 동부해안 – 뉴욕	2,625	3,500

자료: 말레이시아 국제해운공사(Malaysian International Shipping Corporation, MISC)
– www.misc.com.my
미국행 해상운임률은 Westports Malaysia Sdn. Bhd. 고시율에 따른 것임.
– www.westportsmalaysia.com

3) 특정 서비스 요율

말레이시아에는 서류와 소화물 특송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국내외 업체들이 다수 있다.

행선국	서류				소화물				중량제한(kg)
	기본 500 gm		추가 500 gm		기본 500 gm		추가 500 gm		
	RM	US$	RM	US$	RM	US$	RM	US$	
호주	60.00	18.11	15.00	4.53	75.00	22.63	14.00	4.22	20
독일	70.00	21.12	20.00	6.04	100.00	30.18	19.00	5.73	23
일본	47.00	14.18	12.00	3.62	64.00	19.31	15.00	4.53	30
영국	70.00	21.12	20.00	6.04	100.00	30.18	15.00	4.53	20
미국	65.00	19.61	20.00	6.04	100.00	30.18	20.00	6.04	무제한

자료: Pos Malaysia Berhad – www.pos.com.my

4) 항공화물 운임

□ 쿠알라룸푸르 기점

행선국		SCR* 품목번호	최저중량(kg)	kg당 운임요율		행선국		SCR* 품목번호	최저중량(kg)	kg당 운임요율	
				RM	US$					RM	US$
호주	퍼스		표준	10.46	3.16	미국	뉴욕	4314	표준	20.22	6.10
			45	7.85	2.37				45	15.61	4.71
			250	6.37	1.92				100	15.31	4.62
			500	5.89	1.78				200	14.06	4.24
	시드니		표준	13.27	4.00			4314	300	12.58	3.80
			45	9.95	3.00			4314	400	12.41	3.74
			250	7.22	2.18			4416	500	11.60	3.50
			50	6.86	2.07			4416	300	10.65	3.21
독일	퀼른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표준	21.90	6.61			4416	500	10.26	3.10
			45	16.43	4.96				1,000	9.81	2.97
			250	8.28	2.50				100	10.01	3.02
									500	9.58	2.90
									1,000	8.44	2.55
일본	오사카 도쿄		표준	12.85	3.88		서부 해안	4314	표준	18.95	5.72
			45	9.64	2.91				45	14.35	4.33
									100	14.06	4.24
									200	12.79	3.86
								4314	300	11.33	3.42
								4314	400	11.16	3.37
한국	서울		표준	14.41	4.35			4314	500	10.33	3.12
			45	10.81	3.26			4416	300	9.37	2.83
								4416	500	8.97	2.71
영국	런던		표준	23.87	7.20			4416	1,000	8.53	2.57
			45	17.88	5.40				100	8.84	2.67
			250	8.52	2.57				300	8.55	2.58
									1,000	6.98	2.11

*SCR = Specific Cargo Rates(특정화물운임요율)
품목번호 4314 – 전자 부품(컴퓨터, 보조기계 조립용)
품목번호 4416 – 차량용 라디오, 구술 녹음기, 보청기, 음반, 녹음테이프, 리코딩 와이어, 라디오, 텔레비전, 음성녹음장치, 전기기구, 조명기구, 에나멜선, 절연전선, 전화장치, 전신장치, 텔레타이프 장치, 전자관 및 반도체
자료: 말레이시아항공시스템 社, 요율산정부(Tariff Division, Malaysian Airlines System Bhd) – www.mas.com.my

1.3 사업환경

□ 말레이시아 사업환경, 조사대상 178개국 중 24위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사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2008년 말레이시아의 전체적인 사업환경은 세계 178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하여 2007년보다 3단계 하락하였다. 싱가포르(1위), 태국(15위)에는 뒤졌지만 다른 아세안국가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투자자가 쉽게 직면하는 10가지 규제지표에 대해 평가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로 순위를 매겼다. 말레이시아는 대출 및 투자자보호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허가처리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며 아직까지 관료주의의 폐단이 남아있음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사업에 영향을 주는 각종 인허가 및 규제 관련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세계은행 평가항목별 순위표 】

항 목	2008년 순위	2007년 순위	2007/2008변동	1위 국가
사업환경 총괄(Doing Business)	24	21	-3	
사업개시(Starting a Business)	74	74	0	호주
인허가취득(Dealing with Licenses)	105	102	-3	St.Vincent & Grenadines
근로자고용(Employing Workers)	43	43	0	미국
부동산취득(Registering Property)	67	65	-2	뉴질랜드
신용취득(Getting Credit)	3	3	0	영국
투자자보호(Protecting Investors)	4	4	0	뉴질랜드
세금납부(Paying Taxes)	56	55	-1	몰디브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21	18	-3	싱가포르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63	62	-1	홍콩
청산(Closing a Business)	54	53	-1	일본

자료원: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8

□ 부문별 내용

• 사업개시(Starting a Business)

말레이시아는 2008년 사업개시부문에서 74위를 기록하여 2007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업개시를 위한 절차 수는 말레이시아가 9개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평균의 8.7개, OECD국가 평균의 6.0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개시에 걸리는 시간은 2007년의 30일에서 24일로 줄어들었다.

항 목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Procedures(number)	9	8.7	6.0
Duration(days)	24	46.8	14.9
Cost(%GNI per capita)	18.1	34.7	5.1
Paid in Min. Capital(% of GNI per capita)	0.0	50.0	32.5

• 인허가 취득(Dealing with Licenses) - 창고업 기준

말레이시아는 2008년 인허가 취득분야에서 105위를 기록하여 2007년보다 3단계 하락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창고 설립 및 가동에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25가지이며, 기간은 285일로 조사되었다. 이는 OECD국가 대비 종류는 10여 가지가 더 많으며 기간은 100여일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Procedures(number)	25	19.4	14.0
Duration(days)	285	175.3	153.3
Cost(% income capita)	10.0	177.2	62.2

• 근로자고용(Employing Workers)

말레이시아는 2008년 근로자고용분야에서 43위를 기록하여 2007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근로자채용은 OECD국가에 비하여 용이한 반면, 해고는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어려움 지수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평균이 19.2, OECD국가들이 25.2인데 비하여 말레이시아는 0으로 매우 낮았다. 반면 해고 어려움 지수는 30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평균 19.2, OECD국가 27.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항 목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Difficulty of Hiring Index	0	19.2	25.2
Rigidity of Hours Index	0	20.8	39.2
Difficulty of Firing Index	30	19.2	27.9
Rigidity of Employment Index	10	19.7	30.8
Nonwage labor cost (% of salary)	15	9.4	20.7
Firing costs (weeks of wages)	75	37.8	25.7

• 부동산취득(Registering Property)

말레이시아는 2008년 부동산취득분야에 있어서 67위를 기록하여 2007년보다 2단계 하락하였다. 부동산취득에 필요한 절차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 OECD국가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기간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득에 수반되는 비용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과 OECD국가의 평균치보다 두 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

항 목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Procedures (number)	5	5.0	4.9
Duration (days)	144	98.7	28.0
Cost (% of property value)	2.4	4.9	4.6

• 신용취득(Getting Credit)

말레이시아는 2008년 신용취득분야에서 3위를 기록하여 2007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신용취득지수는 신용정보취득의 용이성에 대한 지수로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동아시아 주변의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항 목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Legal Rights Index	8	4.5	6.4
Credit Information Index	6	1.9	4.8
Public registry coverage (% adults)	44.5	5.5	8.6
Private bureau coverage (% adults)	not available	10.8	59.3

주) Legal Right Index는 0-10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정보취득을 위한 법률체계가 우수함을 의미
Credit Information Index는 0-6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정보 취득이 용이함을 의미

• 투자자보호(Protecting Investors)

말레이시아는 2008년 투자자보호부문에서 2년 연속 2위를 기록하였다. 회사경영진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항목으로, 말레이시아는 거래투명성, 경영진 의사결정 등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 부문에서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 OECD국가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 목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Disclosure Index	10	5.0	6.4
Director Liability Index	9	4.4	5.1
Shareholder Suits Index	7	6.3	6.5
Investor Protection Index	8.7	5.2	6.0

주) Index는 0-10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자에게 긍정적 의미

• 세금납부(Paying Taxes)

말레이시아는 2008년 세금납부부문에서 56위를 기록하여 2007년보다 한 단계 하락하였다. 세금납부 지수는 중간규모의 회사가 연간 납부하는 세금과 소요시간에 대한 것으로, 세율과 소요시간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 OECD국가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항 목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Payments (number)	35	27.4	15.1
Time (hours)	166	271.5	183.3
Profit tax (%)	19.1	18.2	20.0
Labor tax and contributions (%)	15.6	10.5	22.8
Other taxes (%)	1.4	9.8	3.4
Total tax rate (% profit)	36.0	38.5	46.2

•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말레이시아는 2008년 무역부문에서 21위를 기록하여 2007년보다 3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시 필요서류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나 수출 시 소요시간은 18일로 OECD 국가보다 두 배정도 더 높지만, 수출 시 드는 비용은 주변국보다 두 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

항 목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Documents for export (number)	7	6.9	4.5
Time for export (days)	18	24.5	9.8
Cost to export (US$ per container)	432	885.3	905.0
Documents for import (number)	7	7.5	5.0
Time for import (days)	14	25.8	10.4
Cost to import (US$ per container)	385	1,014.5	986.1

•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말레이시아는 2008년 계약이행부문에서 63위를 기록하여 2007년보다 한 단계 하락하였다. 계약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절차 및 시간에 대한 항목으로 말레이시아는 30건의 절차와 60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OECD국가보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Procedures (number)	30	37.3	31.3
Duration (days)	600	549.8	443.3
Cost (% of claim)	27.5	47.8	17.7

• 청산(Closing a Business)

말레이시아는 2008년 기업청산분야에서 54위를 차지, 2007년보다 한 단계 하락하였다. 기업정리에 필요한 시간은 2.3년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보다 적게 소요되나 OECD국가보다는 1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회사로부터의 자금회수정도는 1달러당 38.3센트로 OECD국가 평균 74센트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항 목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OECD
Time (years)	2.3	2.7	1.3
Cost (% of estate)	15	23.2	7.5
Recovery rate (cents on the dollar)	38.3	28.1	74.1

1.4 투자매력도

가. 정치동향

1) 2008년 3월 총선결과

□ 집권여당(BN)의 지지율 크게 하락

2008년 3월 8일 실시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BN (Barisan Nasional)이 예상을 훨씬 밑도는 좌석을 차지하며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였

다. 2004년 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N이 전체 219석 중 199석(91%)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222석 중 140석(63%)만을 차지하며 원내 3분의 2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좌파성향의 중국계 말레이시아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DAP(Democratic Action Party;민주행동당), PJP(People's Justice Party;인민정의당) 및 PAS(이슬람당) 등의 야당연합이 81석을 차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도 수도권인 Selangor를 비롯하여 Penang · Perak · Kedah 등 5개 주가 야당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 압둘라 바다위 수상 연임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으로 압둘라 바다위 수상의 사퇴여론이 있었으나, 일단 BN측은 현 수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사태를 수습코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에 압둘라 바다위 수상이 연임을 통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였다.

2) 경제여파

□ 대형 프로젝트에의 영향 우려

Selangor 주 지방정부가 야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감에 따라 Selangor-Pahang 간 수로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이 이번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에 Kumpulan Perangsang Selangor Berhad의 주가가 51% 떨어지는 등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기업의 주가가 크게 폭락하였다.

3) 전망

□ 여권의 국정안정노력

여권은 예산 및 재무정책의 편성을 위해 과반수의석 확보가 필요한 만큼 현재의

원내의석비율(63%)로도 거시정책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사태 진화 및 여론안정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탈출을 위해 현 수상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가 대변하듯 여권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분산됨에 따라 향후 민생 및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정책추진에 차질 예상

야권이 국회의 3분의 1을 넘어서며 영향력이 확대되고, 특히 주요 5개 주의 지방정부에서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됐던 경제정책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BN의 오랜 독주 속에 추진됐던 주정부 산하의 인프라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일부 재검토될 예정이어서 이에 참가하는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요망된다.

나. 경제동향

1) 거시경제지표

□ GDP

말레이시아는 2006년 실질 GDP 증가율 5.9%에 이어, 2007년에는 6.3%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0.5%) 및 광업(-0.4%)분야가 2006년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2007년에는 건설업(4.6%) 및 광업(3.2%)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업이 2006년대비 9.7% 증가하며 경제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제9차 말레이시아개발(2006-2010년) 및 2007년 예산안 하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본격 착수되어, 이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는 2008년에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역수지

말레이시아의 수출입은 2006년에 무역규모 RM 1조(약 2,800억불) 시대를 개막한 이래, 2007년에도 2006년 대비 각각 2.7%, 4.8% 증가한 RM 6,051억, RM 5,046억을 기록했다. 또한, 무역흑자 규모는 RM 1,005억으로 1997년 11월 이후, 2007년 12월까지 122개월 연속 흑자 행진 중이다. 작년의 수출 증가는 주로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부문에서의 선전과 원유, 팜 오일, 고무 등 재화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기존 미국, 유럽 및 일본에 의존하던 수출시장이 아시아, 중국, 남미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재정적자

아시아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자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한때 GDP의 5.8% 수준까지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제9차 국가개발계획(2006-2010)에 따라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 진행이 예상되나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의 재정수입 확대로 2008년 재정적자 폭은 2007년(3.2%)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 연도별 거시경제지표 】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p
인구(백만)	26.1	26.6	27.17
노동인구(백만)	11.3	11.5	11.8(p)
실업률(%)	3.5	3.3	3.3
실질 GDP(US$십억)	-	134	152
1인당명목소득(USD)	-	5,904	6,452(p)
경제성장률(%)	5.2	5.9	6.3
- 농수산업	2.5	5.2	2.2
- 광업	0.8	-0.4	3.2
- 제조업	5.1	7.1	3.1
- 건설업	-1.6	-0.5	4.6
- 서비스업	6.5	7.2	9.7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p
물가(%)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3.1	3.6	2.0(p)
– 생산자물가지수(2000=100)	7.3	6.7	6.7(p)
1일정책금리 (overnight policy rate)	3.00	3.50	3.50
환율(RM/US$)	3.78	3.53	3.31

자료원: 말련 재무부, 통계청, 중앙은행
주1) 환율은 연말환율
주2) p = 잠정치

2. 입지여건

2.1 인프라

가. 전력 공급

말레이시아 전역에 걸쳐 풍부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반도의 경우 전력은 테나가 내셔널(Tenaga Nasional Berhad, TNB)에 의해 공급되며, 말레이시아 동부의 사바 주는 사바 전력공사(Sabah Electricity Sdn. Bhd, SESB), 사라왁 주는 사라왁 전력공급공사(Sarawak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 SESCO)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송전전압은 500kV, 275kV와 132kV이며, 배전전압은 33kV, 22kV, 11kV, 그리고 415V 3상 또는 240V 1상이며, 시스템주파수는 50Hz 1%이다. 또한 테나가 내셔널(TNB)은 생산공정에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공급이 필요한 업체를 위

해 Total Energy Solution이란 이름 아래 전기와 증기, 냉수(chilled water)를 패키지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쿨림 하이테크파크(Kulim High Technology Park, KHTP)는 지역 최첨단의 환상체(ring formation)방식의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24시간 무정전 전력공급을 실현하고 있다. 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보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하이테크산업 육성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사업에 필수적인 엄격한 전력공급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나. 용수공급

2005년 초 말레이시아연방 헌법은 상수도공급 및 서비스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책임 하에 두기 위해 개정되었다. 현재 주들의 수도국 및/또는 상수도의 운영 및 공급을 담당하는 회사들을 감독하기 위한 국가 수도서비스위원회의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잘 정비된 수도서비스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소비자, 투자자 및 운영자의 편의를 위한 상수도산업의 효율성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증진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소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수처리된 수돗물을 24시간 공급받고 있다.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수도요금은 모두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다. 수도요금은 저렴하며 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 통신서비스

5개 유선통신망 사업자와 다른 통신망시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말레이시아의 유, 무선 및 위성통신기반시설은 음성, 영상, 데이터와 기타 첨단통신서비스를 망라하는 모든 국내외 통신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300만 명을 상회한다. 유선과 이동통신망 외에도 초소형위성통신장치(VSAT)와 위성을 이용한 육상

통신과 선박통신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6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s)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총 320만 명에 이른다. 주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로는 시장점유율 58%인 TM Net과 시장점유율 23%인 Jaring이 있다. 통신인프라시설 면에서는 음성 및 데이터의 대용량, 고속 전송을 위한 전송광섬유, SDH, ATM, ADSL 기타 광대역무선통신이 구축되어 있어 현대적인 완전디지털통신망을 통한 전범위의 음성, 데이터와 영상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40GB 이상의 인프라가 제공되며,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SC)에서는 최고 10GB 용량의 대역폭이 제공된다.

말레이시아는 FLAG, SE-MA-WE, APCN, China-US, Japanese-US, Measat과 Intelsat 등의 위성컨소시엄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대역폭수요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전지역에 ADSL, IP, VPN과 ATM과 같은 중급과 고급기술을 이용한 통신망도 광범하게 구축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시내, 시외, 국제전화와 전용회선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다이얼업(dial-up) 이용요금과 국제전화요금은 동남아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다.

2.2 물류환경

가. 항공화물 운송시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교차로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여 환적센터로서 특히 매력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항공화물 운송시설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5대 국제공항은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셀랑고르 주 세팡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은 현재 연간 2,500만 명의 여객처리능력과 65만 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은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연간 여객 6,000만 명과 화물 300만 톤, 그리고 그 후에는 연간 1억 명의 여객과 500만-600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해 25,000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두고 있다.

다른 국제공항으로는 말레이시아반도의 페낭 국제공항, 랑카위 국제공항과 조호르 국제공항, 사바 주의 코타 키나발루국제공항, 사라왁 주의 쿠칭 국제공항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적선인 말레이시아항공은 전체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MASkargo를 통해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ASkargo는 자유상업지역(FCZ) 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첨단화물센터(Advanced Cargo Centre, ACC)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민감하고 정교한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신공정 전자동화기술을 채용하여 실시간 화물데이터 추적과 통신망과의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다. 첨단화물센터(ACC)의 주요시설로는 동물호텔, 원스톱 부패성화물센터,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요 운송회사들을 위한 특급비즈니스센터(PBC)가 있다.

또한 MASkargo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공항 대 공항 트럭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낭, 암스테르담, 바젤,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광저우, 항저우, 홍콩, 말펜사, 멜버른, 상하이, 타이베이, 도쿄, 오사카와 시드니에 화물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MASkargo는 최근에는 세계 최초의 항만환적서비스지역 내 공항인 I-Port를 개항하였다. 이 서비스로 말레이시아 항구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을 통한 해공복합(sea and air) 수송방식의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항공은 6개 대륙, 100개 도시에 화물을 운송하며 세계 어느 곳에든 보다 신속하게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타 항공사들과 연계하고 있다. MASkargo의 항공화물 서비스 이외에도 Transmile Air가 국내에 9개 화물노선과 방갈로르, 마드

라스, 마닐라, 자카르타와 신첸에 5개의 정기 화물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MASkargo 홈페이지 www.maskargo.com을 참조.

나. 항만시설

교통부는 7대 연방항만을 관장하고 있다. 그중 6개 항만, 즉 클랑항, 페낭항, 파시르 구당의 조호르항, 탄중 펠레파스항, 쿠안탄항, 케마만항은 말레이시아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1개 항만, 즉 빈툴루항은 사라왁 주에 위치하고 있다. 빈툴루항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액화가스 전용항이다.

위의 모든 연방항만에는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물을 하역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정부의 항만정책은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급주도적 정책. 즉 항만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정체 발생 없이 선박이 대기하지 않고 입항 즉시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화물집중정책. 즉 클랑항을 전국 화물 물동량의 집중항이자 지역의 환적중심항으로 육성하여, 가능한 한 말레이시아 내 지선항만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항만들의 화물이 클랑항을 통해 혼적(consolidation)될 수 있도록 한다.
- 탄중 펠레카스항을 말레이시아 남부지역의 환적항으로 개발.

다. 화물운송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여러 회사가 컨테이너운송, 일반화물운송, 창고보관, 선박급유(bunkering), 배송 관련 서비스, 항만에서의 통관, 컨테이너 수리, 대여와 보수유지 등의 포괄적인 컨테이너화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말레이시

아 국내 지점과 사무소망을 통해 고객과 화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화물 운송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화물운송업체들은 전 세계에 걸쳐 해외 대리점 망을 갖추고 있다.

라. 컨테이너운송

말레이시아정부는 기업가 · 협력개발부(Ministry of Entrepreneur and Cooperative Development) 산하 상용차허가국(Commercial Vehicle Licensing Board, CVLB)을 통해 국내 내륙 컨테이너운송업체들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62개의 운송업체가 다양한 화물운송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물종류에 맞게 개조된 차량을 포함해 각종 트레일러와 원동기 등 다양한 차량군을 보유하고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일부는 운행 중인 차량과 교신이 가능한 현대적인 차량위치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많은 중소업체들이 일반 컨테이너화물을 국내 접근 가능한 장소 어디든 트럭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을 운행하는 폐색지선철도를 이용한 철도운송서비스(Block Rail Feeder Service)와 원격지 고객을 위한 정기화물선서비스를 통한 컨테이너수송도 가능하다. 이러한 복합운송체계(도로와 철도)를 통해 신속한 화물운송이 보장된다.

마. 화물운송대행(freight forwarding)

말레이시아 전역에 소재하는 수백 곳의 화물운송대행업체들이 전국에 걸친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화물도 여러 곳의 국제운송대행업체를 통해 발송할 수 있다. 또한 화물운송 대행업체들은 제조업체들에 대해 상품의 통관을 위해 세관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 면허 및 관세/세 면제의 신청수속에 대한 지원도 제공할 수 있다.

바. 고속도로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이 말레이시아의 도시 간 고속도로의 설계, 건설, 관리감독, 운영과 보수유지를 관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고속도로는 쾌적한 도로환경과 모든 주요도시와 개발유망지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산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민영화계획 추진과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난 수년간 많은 고속도로의 건설이 이루어졌다. 현재 남북고속도로와 페낭브리지와 쿠알라룸푸르-카락 고속도로는 국가 기간도로로서 말레이시아의 급속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 철도운송서비스

말레이시아반도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Keretapi Tanah Melayu Bhd.(KTM)은 정부가 전체지분을 소유하고 공사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이다. KTM은 말레이시아 최대의 수송기관으로서 곡물에서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KTM은 파당 베사(Padang Besar)의 북부터미널부터 남부의 조호르 주, 파시르 구당(Pasir Gudang)과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반도 전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북부는 페낭섬의 부두와 항만시설까지 북부선로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2.3 수출입환경

가. 수입관세

말레이시아의 수입관세는 통상적으로 종가세(ad valorem)이나 일정세율이 부과되는 품목도 다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광범위한 종류의 원료, 컴포넌트 및 기계류에 대해 수입관세가 철폐되었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0~5%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아세안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CEPT)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상품교역, 원산지규정 및 투자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일본-말레이시아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하에 일본과 양자간 FTA를 체결했고, ASEAN-한국 FTA와 ASEAN-중국 FTA하에 지역협정들을 체결하였다. FTA 당사국들 간의 수입관세는 이 협정들에 정한 특정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에 따른다.

나. 수입규제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상계 및 반덤핑에 관한 법('93년 7월 15일 발효)과 관련 규정(1994년 4월 28일 발효)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관련 최근 법규 변화는 없다. 반덤핑조사 및 판정은 통상산업부 산업국(Industry Division) 내의 Trade Practices Unit이 담당 하며, 최종판정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수출입의존형 경제구조상 정부의 수입규제는 심한 편이 아니며 반덤핑 조사 건수 는 매년 1건 정도에 불과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금지제도 및 수입허가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

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수원자재의 적절한 공급 물량 확보 및 자국내 유치/전략산업보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수입품목을 제한하고 있다.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를 위해 1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다.

- 모조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emblem), 또는 고안품(device)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잎,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나트륨 (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피라냐(Piranha fish)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와 흡사한 형태의 펜, 연필 등

□ 수입허가

아래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필요로 한다.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품목
-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품목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되는 품목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철강산업의 경우, 말련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MITI(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여 수입허가가 지연되기도 하고 수입불허결정이 날 때도 있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수입자동차에 대해 일정량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수입허가권이 존재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의 수입시 수량제한으로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양배추 및 커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 : NPRB)가 관여하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 대한 수입규제현황

품목	HS Code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Newsprint	4801.00	반덤핑	2003.01.16	예비: 2003.05.29 최종: 2003.09.26	관세율: 43.24%
Maleic Anhydride	2917.14	반덤핑	2004.06.10	예비: 2004.10.07 최종: 2005.02.04	관세율: 26.34%
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0	반덤핑	2005.01.27	예비: 2005.06.25 최종: 2005.10.23	관세율: 17.09%

□ 골심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

MPPMA(Malaysia Pulp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제소로 2006년 7월 27일 조사가 개시된 골심지(Corrugatong Medium Paper/HS Code 4805.11)에 대해 2006년 12월 24일 한국산을 포함,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이 있었으나 최종판정기한인 2007년 4월 24일까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취소됨

라. 2007년 수입규제전망

2006년 5.9% GDP 성장에 이어 2007년 3분기 6.3%을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견실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122개월 연속 무역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물가가 안정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나 저변연관산업의 미발달로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자재, 부품 등을 수입해야 한다. 중간재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무역제재가 미미한 편이며 우리나라와는 원유, LNG 등의 수출 및 전자부품, 철강 등의 수입으로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상마찰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말레이시아의 연간 반덤핑이나 보조금조사건수는 평균 1건 정도에 머물고 있다.

□ 수입규제예상품목

2007년 한국의 대말련 1-10월 수출액은 5,704백만 달러, 수입액은 8,442백만 달러로 2,738백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57.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32.7%) 등 일부 주력 수출 품목이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적회로 반도체,

모니터는 무관세 품목이며 철강은 50%의 고관세 보호 품목으로 덤핑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마. 자유지역

자유지역(Free Zones, FZs)은 1990년 자유지역법 제3(1)절의 조항에 의거해 재무부장관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자유지역은 주로 중계항을 통한 교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특히 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제조회사들을 위해 설치된다. 자유지역은 거래(소매거래는 제외), 소분(breaking bulk), 분류, 재포장, 재표시와 운송을 포함하는 상업활동을 위한 자유상업지역과 제조활동을 위한 자유산업지역으로 이루어진다. 자유지역 내 활동과 산업에는 최소한의 통관절차가 적용되며 1967년 관세법 제31절에 의한 수출입금지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s, PCA) 외의 지역으로 간주된다.

□ 자유산업지역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s, FIZs)은 최소한의 통관절차 외에도 수출지향 입주업체들에 대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료, 컴포넌트부품, 기계류와 장비의 면세수입 및 완제품 수출절차의 최소화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Pasir Gudang, Peringgit I, Peringgit II, Peringgit III, Tanjung Kling, Kinta, Telok Panglima Garang, Hulu Kelang, Sungai Way, Perai, Bayan Lepas, Batu Berendam, Jelapang II, Sama Jaya 및 Pulau Indah와 Tanjung Pelepas I, II, III의 18개 지역에 자유산업지역(FIZ)이 조성되어 있다.

□ 입주자격

자유산업지역(FIZ)의 입주대상업체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제품 또는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
- 원료/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 그러나 정부는 자유산업지역(FIZ) 입주업체에 대해 가능하면 말레이시아산 원료/부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바. 승인된 보세제조창고

자유산업지역(FIZ) 지정이 비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유산업지역(FIZ)과 같은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 회사는 승인된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 LMW)를 설치할 수 있다. 보세제조창고(LMW)에 제공되는 편의는 자유산업지역(FIZ)에서 조업하는 공장에 제공되는 것과 유사하다.

□ 자격요건

통상적인 보세제조창고(LMW) 설치 승인대상회사는 다음과 같다.

- 전체 제품 또는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
- 원료/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

□ 관세 납부

자유산업지역(FIZ)과 보세제조창고(LMW)로부터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s, PCA)이라 불리는 국내시장에서 판매가 허용된 상품(담배, 주류, 자동차는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 주관세지역(PCA)에서도 생산되는 소비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공통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에 상응하는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 주관세지역에서도 생산되나 국내부품 함유율이 51% 이상인 소비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5%의 종가세 또는 이에 해당하는 국내소비세율(국내소비세 대상품목인 경우) 중 더 높은 세율이 수입관세로 부과된다.
- 주관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비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3%의 종가세가 부과된다.
- 제조업부문에서 사용될 원료/부품, 기계류와 장비와 같은 중간재에 대해서는 주관세지역의 제조업체도 수입관세 전액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4 특별경제지역

가.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 MSC)는 아시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1996년에 처음 구상된 MSC는 약 1000개 멀티미디어와 전자통신상품, 솔루션, 서비스와 연구개발전문 다국적기업, 외국기업과 말레이시아 국내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ICT 중심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아시아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한 750 평방킬로미터 면적의 MSC는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활발한 기업활동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게 뒷받침하는 확고한 사이버법, 정책과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MSC 다음의 도약(Next Leap)계획에 의거해 MSC가 말레이시아 내 다른 주들로 확산되어 나감에 따라, MSC 지정지역들은 MSC지위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기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 및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멀티미디어개발공단(MDeC)은 말레이시아정부의 위임을 받아 MSC를 벤치마킹하고, 말레이시아 MSC사이버시티/사이버센터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자격기준과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신청을 처리한다.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MSC사이버시티/사이버센터로 알려진 MSC지정지역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자야
- 테크놀로지파크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
- UPM-MTDC
- 페낭 사이버시티-1
- 케다 주의 쿨림 하이테크파크
- KL 센트럴
- 멜라카 국제무역센터
- MSC사이버포트 조호르

향후 말레이시아 내 다른 지역들도 MSC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MSC 자격기준 및 성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비상태에 입각해서 MSC사이버시티 또는 MSC 사이버센터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MSC는 세계 전역의 혁신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경쟁우위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서 나온다.

- MSC투자자들을 위한 경쟁력 있는 투자패키지
- 맞춤형 인센티브와 자금융자
- 강력한 추진의지와 리더십
- 급속히 성장하는 아세안과 아태지역 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 교통혼잡과 오염이 없는 환경
- 매년 3만여 명의 ICT분야 졸업생과 학위취득자들이 배출되어 자격과 학력을 갖춘 인력이 풍부함
- 다언어적 능력과 다문화적 감각을 지닌 인재들
- 정치적 제도의 안정
- 높은 삶의 질

MSC회사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솔루션 외에도 MSC는 다음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스마트카드기술
- 스마트학교
- 원격의료
- 전자정부
- e-Business
- 기술기업인 정신(Technopreneurship)
- 창의적인 멀티미디어
- 공유서비스와 아웃소싱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SC)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MDeC @ Tel: 03 8315 3000 또는 MDeC의 홈페이지 www.mdec.com.my에 문의하거나, clic@mdec.com.my에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나. 라부안 역외금융서비스청(LOFSA)

라부안 역외금융서비스청(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OFSA)은 라부안을 국제 역외금융센터(IOFC)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선도하고 통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원스톱 규제기관이다.

라부안 역외금융 서비스청(LOFSA)은 역외금융서비스업 사업활동에 대한 정부 감독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운영효율을 개선하여 국제역외금융센터(IOFC)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라부안 역외금융 서비스청(LOFSA)은 핵심 사업 분야로서 이슬람금융을 개발하여 현재 라부안 국제 역외금융센터(IOFC)는 재래식 금융활동 및 이슬람 금융활동의 선두 역외센터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라부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과 등록은 라부안 역외금융 서비스청(LOFSA)에서 할 수 있다. 라부안 역외금융 서비스청(LOFSA)은 은행, 보험, 증권, 신탁과 펀드 관리업 등 라부안의 역외산업을 감독 관리한다.

라부안 국제금융거래소(Labuan International Financial Exchange, LFX)는 라부안에서 이용가능한 역외금융서비스를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역외금융환전소이다. 라부안 국제금융 거래소(LFX)는 신청서 제출, 승인, 상장, 금융거래 및 관련법률 문서처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라부안 역외금융서비스청(LOFSA)이 수행하는 역외업무활동은 금융거래활동과 비금융거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외금융거래활동은 은행, 보험, 펀드 관리, 중개, 기타 금융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말하며 역외비금융거래활동은 역외회사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권, 주식, 대출, 예금 및 부동산투자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라부안 국제 역외금융센터(IOFC)는 라부안의 역외업무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외화

를 기본통화로 하며 비거주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외환규제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2.5 공단현황

말레이시아에는 주 경제개발공단(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 SEDC), 지역진흥청(Regional Development Authorities, RDA), 항만당국과 시 정부 등의 정부기관에 의해 개발된 200여 곳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은 증가하는 산업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단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기관이 개발하는 공단 이외에도 특정 주의 경우에는 민간 개발업체들이 개발한 다수의 공단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 공단의 입주비용 및 임대조건은 위치에 따라 다르다.

말레이시아 전체 공단정보

(2007년 12월 31일 기준, MIDA 제공)

1. Johor 주 공단정보

가. Johor Corporation

연번	공단이름	위치 (Johor Bahru 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ft)	연간 *공단 건물세 (ha/RM)	연간 평가율 (부지가 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A 총매매 가능부지 (ha)	B 총매매 종료부지 (ha)	현재 잔여부지 (ha)	(B)/(A) 판매율					
JOHOR BAHRU 구역												
1.	PASIR GUDANG	36km	935.99	798.78	792.08	6.70	99.16	14.00	**	0.85%	30년 + 30년 60년	경공업
2.	PASIR GUDANG EXTENSION	36km	424.12	308.58	280.97	27.61	91.05	14.00 17.00 – 18.00	**	0.85%	30년 + 30년 60년	경공업
3.	PASIR GUDANG (ZONE 12B)	36km	58.80	37.26	– –	37.26	0.00	14.00 18.00 – 19.00	**	0.85%	30년 + 30년 60년	경공업
4.	PASIR GUDANG (ZONE 12C)	36km	104.21	72.99	–	72.99	0.00	14.00 18.00 – 19.00	**	0.85%	30년 + 30년 60년	경공업
5.	TEBRAU I	11km	90.24	73.09	73.09	–	100.00	최종가:18.00	**	0.28%	60년	경공업
6.	TEBRAU II	16km	89.03	61.26	61.26	–	100.00	최종가:22.00	**	0.28%	60년	경공업
7.	TEBRAU III	16km	47.46	5.87ⓐ	5.87ⓐ	–	100.00	최종가:18.50	**	0.28%	60년	경공업
8.	TEBRAU IV	16km	41.48	25.93	25.93	–	100.00	최종가:13.00	**	0.28%	60년	경공업
9.	SENAI I	30km	40.47	37.98	37.98	–	100.00	최종가: 4.00	**	0.55%	60년	경공업
10.	SENAI II	30km	70.17	54.70	54.70	–	100.00	최종가: 6.00	**	0.55%	60년	경공업
11.	SENAI III	30km	135.97	92.55	91.48	1.07ⓐ	98.84	최종가:12.00	**	0.55%	60년	경공업
12.	SENAI IV	32km	51.03	29.86	29.01	0.85	97.15	14.00 – 16.00 18.00 – 20.00	**	0.55%	30년 + 30년 60년	경공업
13.	JOHOR TECHNOLOGY PARK	21km	184.57	109.06ⓒ	69.66	39.40	63.87	16.00 – 17.00 20.00 – 22.00	**	0.55%	30년 + 30년 60년	하이테크/ 연구 개발
14	SEDENAK	50km	283.28	164.11	–	39.40	63.87	8.00–12.00	**	0.55%	60년	

연번	공단이름	위치 (Johor Bahru 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ft)	연간 *공단 건물세 (ha/RM)	연간 평가율 (부지가 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A 총매매 가능부지 (ha)	B 총매매 종료부지 (ha)	현재 잔여부지 (ha)	(B)/(A) 판매율					
15.	TANJUNG LANGSAT	48km	2,053.41	1,099.98	355.33	744.65	32.30	12.00 – 13.00	**	0.85%	30년 + 30년 60년	경공업
	TANJUNG LANGSAT PORT AREA	48km		358.62	115.30	243.32	32.15	30.00		0.85%		항만산업
PONTIAN 구역												
16	PONTIAN	55km	35.21	25.32	24.86	0.46@	98.18	최종가: 9.00	**	0.6%	60년	
KOTA TINGGI 구역												
17.	KOTA TINGGI	45km	13.00	9.69	9.69	–	100.00	최종가: 4.00	**	0.4%	60년	경공업
KLUANG 구역												
18.	KLUANG	118km	51.80	36.70	36.70	–	100.00	최종가: 6.00	**	0.33%	60년	경공업
19.	KLUANG II	118km	40.66	25.29	15.77	9.52	62.36	9.00 – 10.00	**	0.33%	60년	경공업
20.	MENGKIBOL	110km	72.36	52.89	51.84	1.05	98.01	9.00 – 10.00	**	0.33%	60년	경공업
21.	SIMPANG RENGGAM I	70km	42.06	32.59	29.33	3.26	90.00	9.00 – 10.00	**	0.6%	60년	경공업
22.	SIMPANG RENGGAM II	70km	48.71	29.80	2.26	27.54	7.58	9.00 – 10.00	**	0.6%	60년	경공업
BATU PAHAT 구역												
23.	PARIT RAJA	107km	38.00	30.31	30.31	–	100.00	최종가: 5.50	**	0.7%	60년	경공업
24.	SRI GADING I	117km	145.79	110.18	110.18	–	100.00	최종가: 7.00	**	0.7%	60년	경공업
25.	SRI GADING II (Phase I)	117km	55.25	41.94	41.94	–	100.00	최종가: 7.10	**	0.7%	60년	경공업
26.	TONGKANG PECAH	130km	15.17	13.27	13.27	–	100.00	최종가: 2.00	**	0.7%	60년	경공업
MUAR 구역												
27.	TANJUNG AGAS	179km	76.68	60.12	60.12	–	100.00	최종가:10.00	**	1.0%	60년	경공업
28.	PAGOH	200km	40.47	29.02	29.02	–	100.00	최종가: 4.50	**	0.6%	60년	경공업
29.	BUKIT PASIR	220km	46.13	37.81	37.81	–	100.00	최종가: 7.00	**	0.6%	60년	경공업

연번	공단이름	위치 (Johor Bahru 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ft)	연간 *공단 건물세 (ha/RM)	연간 평가율 (부지가 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A 총매매 가능부지 (ha)	B 총매매 종료부지 (ha)	현재 잔여부지 (ha)	(B)/(A) 판매율					
SEGAMAT 구역												
30.	SEGAMAT I	180km	39.46	36.59	36.33	0.26	99.29	9.00 - 10.00	**	1.0%	60년	경공업
31.	SEGAMATII (Phase I)	172km	87.11	51.59	17.16	34.43	33.26	9.00 - 10.00	**	1.0%	자유 보유	경공업
MERSING 구역												
32.	MERSING I	133km	16.60	11.99	11.25	0.74	93.83	8.00 - 9.00	**	1.0%	60년	경공업
33.	MERSING II	133km	15.00	10.03	6.50	3.53	64.81	8.00 - 9.00	**	1.0%	60년	경공업
	TOTAL		5,489.69	3,975.75	2,557.00	1,418.75	64.31		**			

주1) 건물세(Quit Rent) : 부지세와는 별개로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

	연간 1ha당	연간 0.50ha미만인 부지
경공업	1,600.00	1,200.00
medium	2,100.00	1,600.00
중공업	2,400.00	1,800.00

주2) 공단건물세(RM) 주3) ⓐ상업제외지역 ⓑ주유소 및 소방서 ⓒPhase Ⅰ&Ⅱ포함 ⓓ주유소

2. Kedah 주 공단정보

가. Kedah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1. Kuala Ketil Phase	Sg. Petani 까지 20km	68.31	43.91	40.86	3.05	39.00-40.00	531.26	10%	60년 / 추가선택39년	일반산업
2. Kuala Ketil Phase II	Sg. Petani 까지 20km	71.25	47.83	30.48	17.35	48.00-50.00	531.26	10%	60년 / 추가선택39년	일반산업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3. Bukit Kayu Hitam Phase 1B	Bkt. Kayu Hitam 까지 2km	71.43	53.59	45.97	7.62	51.00-54.00	531.26	10%	60년/ 추가선택39년	일반산업
4. Taman Halal Kedah (Sungai Petani)	Sg. Petani 까지 1km	14.17	-	-	계획단계					할랄 음식
5. Gurun Industrial Estate Phase II	Alor Star 까지 22km	76.92	-	-	계획단계					일반산업
TOTAL		302.08	145.33	117.31	28.02					
연락처	관리회사	Kedah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주 소	Tingkat 14, Wisma PKNK, Jalan Sultan Badlishah, Peti Surat 140, 05000 Alor Star Kedah Darul Aman								
	TEL/FAX	04 - 775 2455 / 04 - 731 2957								
	담당자명	Mr. Abdul Rahman Abdullah								

주) 하랄음식(Halal): 하랄은 아랍어로 '허용되는 것'의 의미로,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코란(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식품. 엄숙한 의식에 따라 닭, 소, 염소 등을 도살한 후, 주로 기름에 튀기거나 약한 숯불에 구운 음식. 돼지고기와 술은 대표적인 금기음식으로 하랄음식에서 제외.

나. Kulim Technology Park Corporation

공단이름	위치 (Kulim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ha)					
1. Kulim Hi-Tech Park Phase I	3.5 km	151.00	151.00	140.19	10.81	161.46-193.75	0.053	8%	60년 추가선택39년	하이테크
2. Kulim Hi-Tech Park Phase II	3.5 km	127.80	127.80	113.81	13.99	161.46-193.75	0.053	8%	60년 추가선택39년	하이테크
3. Kulim Hi-Tech Park Phase III	3.5 km	174.00	138.78	40.06	98.72	193.75	0.053	8%	60년 추가선택39년	하이테크/ 첨단기술
4. Kulim Hi-Tech ParkPhase IV	미결								60년 추가선택39년	하이테크/ 첨단기술
TOTAL		452.80	417.58	294.06	123.52					
연락처	관리회사	Kulim Technology Park Corporation Bhd.								
	주 소	Suite 3.01-3.02, Tingkat 3, KHTP Business Centre Peti Surat 60, 09000 Kulim Kedah Darul Aman								
	TEL/FAX	04 - 403 2420 / 04 - 403 1973								
	담당자명	YBhg. Dato¡¯ Ahmad Shukri Tajuddin								

다. Darulaman Realty SDN. BHD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ha)					
1. Kuala Ketil Phase3A	Sg. Petani 까지 20 km								60년 및 추가 39년	
a. Plot 1-7		15.03	15.03		15.03	53.82	0.20			
b. Plot 8-23		14.82	14.82		14.82	53.82	0.15			
2. Kuala Ketil Phase 3C	Kulim	92.14	92.14		92.14	53.82	0.52			중공업
3. Kuala Ketil Phase3D	Hi- Tech									경공업
a. Type I	Park	31.05	31.05		31.05	53.82	0.15			및
b. Type II	까지 35 km	95.77	95.77		95.77	53.82	0.25			중공업
TOTAL		248.81	148.81		248.81					
연락처	관리회사	Darulaman Realty Sdn. Bhd.								
	주 소	Lot 1, Bandar Darulaman, P.O. Box 12 , 06007 Jitra , Kedah Darul Aman								
	TEL/FAX	04 - 917 8080 / 04 - 917 3537								
	담당자명	Mr. Che Abdul Khalid Md. Din								

3. Kelantan 주 공단정보

가. Kelantan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 KSEDC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공단 건물세 (RM/1000 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 잔여부지 (ha)					
1. Pengkalan Chepa II	Kota Bharu 까지 10Km	267.84	220.90	220.90	3.26	75.32	1000.00	12%	66년	일반산업
2. Jeli	Jelitown 까지 5Km	29.38	29.38	29.38	0.00	40.00 - 45.00	1000.00	12%	66년	목재기반 산업
3. MIEL Lundang	KotaBharu 까지 4Km	7.20	7.20	7.20	0.00	-	-	12%	33년/ 추가선택 3년 포함	일반산업 경공업
4. Pengkalan Chepa I	Kota Bharu 까지 10Km	9.71	8.59	8.59	0.00	75.32	1000.00	12%	66년	경공업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공단 건물세 (RM/1000 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 잔여부지 (ha)					
5. Kemubu(Jeli District)	Dabong town 까지 10Km	63.90	28.30	28.30	0.00	-	1000.00	12%	66년	목재기반 산업
6. Gua Musang	Gua Musang Town까지 8km	107.16	107.16	107.16	0.00	-	1000.00	12%	66년	일반산업
7. Tanah Merah	Tanah Merah town까지 5km	73.07	73.07	73.07	0.00	45.00 - 50.00	1000.00	12%	66년	목재기반 산업
TOTAL		558.26	474.60	474.60	3.26					

연락처	
관리회사	Kelantan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KSEDC)
주 소	7th-11th. Floor, Bangunan PKINK, Jalan Tengku Maharani Puteri 15000 Kota Bharu, Kelantan Darul Naim
TEL/FAX	09-741 4141/741 4020(Dir)/ 09-741 4140
담당자명	Haji Baharuddin bin Harun, Manager, Industrial & S.M.I Promotion

나. Rantau Panjang Free Trade Zone/Free Industrial Zone-The Pasir Mas Municiple Council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 1000 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매매 종료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ha)					
Rantau Panjang	Kota Bharu 까지 39km	4.046	1.618	1.618	2.428	350	40	9%	99년	-
TOTAL		4.046	1.618	1.618	2.428	350	40	9%	99년	-

연락처	
관리회사	Ma jlis Daerah Pasir Mas
주 소	17000 Pasir Mas Kelantan
TEL/FAX	09-790 9250, 09-790 9770 / 09- 795 0166 (Rantau Panjang)
담당자명	Enick Ab. Rahman bin Abdullah Setiausaha

다. Kelantan 주의 승인받은 신규 공단 – Kelantan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PKINK)

연번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 sq.m)	연간공단 건물세 (RM/ 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1	Tapak Pembangunan Taman Industri Marin Tok Bali, Atas Lot PT 4555–PT 4580, Mukim Gong Kulim, Daerah Semerak, Jajahan Pasir Puterh, Kelantan.	Kota Bharu 까지 40km	–	12.4	12.4	12.4	–	–	–	66년	해양 관련업
2	Tapak Halal Park, Atas Lot PT 9791 (Government Land), Mukim Apam, Pasir Mas.	Kota Bharu 까지 45Km		20.2	20.2	20.2	–	–	–	–	허랄식품 관련업
TOTAL				32.6	32.6	32.6					
연락처		관리회사	Kelantan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KSEDC)								
		주 소	7th 11th. Floor, Bangunan PKINK, Jalan Tengku Maharani Puteri 15000 Kota Bharu, Kelantan Darul Naim								
		TEL/FAX	09–741 4141,741 4020(Dir) /09–741 4140								
		담당자명	Haji Baharuddin bin Harun(Manager, Industrial & S.M.I. Promotion)								

4. Melaka 주 공단정보

가. The Melaka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MSDC)

1) 할당된 부지

연번	공단이름	위치 (Melaka시 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면적 (ha)	현재잔여 부지(ha)					
1	Batu Berendam FTZ	5km	107.1	85.89	85.89	107.65	67	–	99년	전자산업
2	Merlimau I & II	22km	64.08	48.11	48.11	–	67 / 100 sq.m	–	99년	일반산업
3	Ayer Keroh I, II, III, IV & V	14km	153.49	129.22	129.22	–	–	–	99년	일반산업
4	Bukit Rambai	14km	208.43	143.35	143.35	–	–	–	99년	일반산업 및 목재기반 산업

연번	공단이름	위치 (Melaka시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부지 (ha)	총매매 가능면적 (ha)	현재잔여 부지(ha)					
5	Tg. Kling FTZ	13km	9.35	7.48	7.48	-	-	-	99년	제화 및 섬유산업
6	Tangga Batu	14km	85.32	52.28	52.28	-	-	-	99년	일반산업
7	Alor Gajah	23km	116.61	73.00	73.00	-	-	-	99년	일반산업

2) 잔여부지

연번	공단이름	위치 (Melaka시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현재잔여 부지(ha)					
1	Rembia	15km	175.01	1.61	173.40	80.00	0.60-2.04	13.2%	자유보유	일반산업
2	Merlimau	22km	130.48	128.99	1.49	65.00	0.60-2.04	13.2%	99년	일반산업
3	Masjid Tanah III	30km	129.55	99.52	30.03	75.00	0.60-2.04	13.2%	99년	일반산업
4	Serkam	17km	51.40	9.51	41.89	100.00	0.60-2.04	13.2%	99년	일반산업 및 허랄제품

5. Negeri Sembilan 주 공단정보

가. Prestajaya SDN.BHD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1. Galla Industry Park, Seremban	Seremban Town까지 4Km	250.00	96.00	64.00	32.00	161.46-215.28	0.55	12%	자유보유	경공업
TOTAL		250.00	96.00	64.00	32.00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 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연락처	관리회사	Prestajaya Sdn. Bhd.								
	주 소	437 Jalan Tun Dr. Ismail, 70200 Seremban, Negeri Sembilan								
	TEL/FAX	06-764 0017, 06-764 0018 / 06- 764 0026								
	담당자명	Mr. Paul Yap								
	Email	pjgroup@streamyx .com								

6. Pahang 주 공단정보

가. Pahang State Dvelopment Corporation

공단 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 /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1. Bentong	Bentong 까지 10km	105.22	76.62	74.58	2.04	91.49	100sq.m 또는 2ha당 RM15.00 100sq.m 또는 소유권당 최저세금 RM150.00 조건하에 RM10.00	7.50%	99년	일반산업
2. Bentong 2A	Bentong 까지 20km	32.38	29.21	-	29.21	91.49		7.50%	99년	중소산업
3. Bentong 2B	Bentong 까지 15km	40.69	40.69	4.67	36.02	91.49		7.50%	99년	중소산업
4. Gebeng Ⅱ	Kuantan 까지 31km	566.57	491.24	281.73	209.51	96.88		7.50%	99년	석유화학
5. Gebeng Ⅲ	Kuantan 까지 30km	1,558.23	1,558.23	205.98	1,352.25	96.88		7.50%	99년	석유화학
6. Kuala Lipis	KualaLipis 까지 30km	47.02	34.95	20.24	14.71	37.67		7.50%	99년	중소산업
7. Rompin	Rompin 까지 5km	57.33	57.33	-	57.33	37.67		7.50%	99년	석유화학
8. Tanjung Gelang Ⅰ (Kuantan Port)	Kuantan 까지 36km	40.64	40.64	-	40.64	96.88		7.50%	99년	석유화학
9. Tanjung Gelang Ⅱ (Kuantan Port)	Kuantan 까지 40km	57.04	67.04	-	67.04	96.88		7.50%	99년	석유화학
TOTAL		2505.12	2395.95	587.20	1808.75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 /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연락처	관리회사	Pahang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주 소	15th Floor, Kompleks Teruntum, Jalan Mahkota 25000 Kuantan, Pahang Darul Makmur								
	TEL/FAX	09-513 5566 / 09-513 0510								
	담당자명	Tuan Haji Ahmad Sabri Hussin(공단개발 매니저)								
	Email 홈페이지	pknp@pahang.gov.my /www.pahang.gov.my/pknp								

7. Penang 주 공단정보

가. The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Port Authorities&Municipalities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 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1. Bukit Minyak	Butterworth 까지 15km	433.14	300.39	213.47	86.92	131.27	0.0093	11%	60년	일반산업
2. BioTech	Butterworth 까지 15km	41.62	118.06	10.36	107.70	131.27	0.0093	11%	60년	바이오테크
3. Bukit Tengah	Butterworth 까지 15km	240.16	195.32	194.08	1.24	N/A	0.0093	11%	60년	일반산업
4. Bayan Lepas	GeorgeTown 까지 6km	146.00	110.20	105.79	4.41	215.28	0.0112	11%	60년	경공업 및 지원산업
5. Bayan Lepas4 (Extension)	GeorgeTown 까지 16km	12.49	10.50	9.20	1.30	215.28	0.0112	11%	60년	경공업 및 지원산업
TOTAL		873.41	734.47	532.90	201.57					
연락처	관리회사	Penang Development Corporation								
	주 소	No.1, Persiaran Mahsuri, Bandar Bayan Baru 11909 Bayan Lepas, Penang, Malaysia								
	TEL/FAX	04 - 634 0111/ 04 - 642 3616								
	담당자명	Mr. Roslan Hassan								
	Email 홈페이지	rbh@pdc.gov.my / www.pdc.gov.my								

8. Perak 주 공단정보

가. Perak SEDC

공단이름	위치 (Ipoh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1. Ceramic Park,										
a. Ceramic Park (Phase 1)		78.49	43.00	38.68	3.52	53.82	0.80	10%	60년	세라믹 공업
b. Ceramic Park (Phase II)	16km	75.64	50.12	48.23	5.11	53.82	0.80	10%	99년	경공업
c. Ceramic Park (Bumiputera)		3.35	3.35	2.25	1.00	37.67	0.80	10%	60년	중공업
2. Pengkalan II IE,										
a. Pengkalan II (Phase IV)		32.89	17.99	17.25	0.74	75.35	0.70 – 0.80	10%	60년	경공업
b. Pengkalan II (Phase 3C)	18km	22.26	14.20	0.00	14.20	86.11	0.70 – 0.80	10%	99년	중공업
c. Pengkalan Raya		22.66	16.19	0.00	16.19	75.35	0.70 – 0.80	10%	99년	
3. Kinta Tambahan (Phase II)	10km	14.25	8.31	5.68	2.63	75.35	0.80	10%	99년	경공업
4. Kanthan (Phase IV)	24km	38.47	28.35	0.00	28.35	64.58	0.80	10%	99년	경공업
5. Kamunting Raya IE										
a. Kamunting Raya (Phase I)	9km	408.89	120.24	109.07	9.35	75.35	0.70	10%	99년	경공업
b. Kamunting Raya (Phase 2 & 3)		323.74	323.74	275.18	48.56	75.35	0.70	10%	99년	중공업
TOTAL		1020.64	625.49	496.34	129.65					

연락처		
	관리회사	Perak SEDC (PKNPK), Wisma Wan Mohamed
	주 소	Jalan Panglima Bukit Gantang, P.O. Box 217, 30904 Ipoh, Perak Darul Ridzuan
	TEL/FAX	05-529 6647, 05-529 6600 / 05-241 0224
	담당자명	Mr. Zaffani Azul Islami (공단개발 매니저)
	EMAIL	E-mail : zaffani76@yahoo.com

나. Lumut Marine Terminal SDN. BHD.

공단이름	위치 (Lumut 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1. Lumut Port IE	8km	431.00	358.15	281.76	76.39	75.35-107.64	0.30	9%	89년	경공업
TOTAL		431.00	358.15	281.76	76.39					
연락처	관리회사	Lumut Marine Terminal Sdn. Bhd								
	주 소	Lot 1, Lumut Port Industrial Park, 32000 Setiawan, Perak darul Ridzuan								
	TEL/FAX	05-692 811/ 05-692 8119								
	담당자명	Mr. Harun Halim Rasip (전무)								

9. Perlis 주 공단정보

가. Perlis State Economic Development

공단이름	위치 (Kangar 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1. Chuping	14km	26.70	22.26	18.62	3.64	53.81	0.54	8%	60년	일반산업
2. KualaPerlis	15km	59.21	52.94	23.91	29.03	64.58	0.54	8%	60년	일반산업
3. Pauh	30km	485.63	-	-	-	계획단계				
4. Perlis Halal Park(Padang Besar)	45km	창고용 1개 구역 및 중소기업용 22개 구역	-	-	-	건축단계				
TOTAL		571.54	75.20	42.53	32.67					
연락처	관리회사	Perlis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주 소	No. 173-191 Taman Kemajuan, Jalan Raja Syed Alwi, 01000 Kangar Perlis Indera ayangan								
	TEL/FAX	04 - 9761088 / 04 - 9762181								
	담당자명	Mr. Shahidan Shaari								

10. Sabah주 공단정보

가. K.K.I.P SDN BHD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Kota Kinabalu 공단(KKIP)	Kota Kinabalu 까지 25km	451.01	451.01	238.05	212.96	* 161.00 – 194.00	RM0.10	10%	99년	자원기반류의 고부가가치제품제조업 포장 및 기타 업무지원관련 **SMI
TOTAL		408.06	408.06	17.06	391.00					

연락처	
관리회사	K.K.I.P Sdn. Bhd. CEO(최고경영책임자)
주 소	First Industrial Zone 1, No.9 Jln 1A, K.K.K.I.P Selatan, 88460 Kota Kinabalu Industrial Park Sabah Floor, Amenity Center Lot 11B
TEL/FAX	088-498001-005, 088-498 014 / 088-498 011
담당자명	Mr. Chong Hon Len, Mrs. Lynette Hoo
Email	kkip@po.jaring.my

주) * : 기반시설 완비된 부지, 공공시설지원 요금
**SMI : small premium industry

나. Sandakan Bulkers SDN. BHD.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Sawit 팜오일 공업단지 (Sawit POIC), Sandakan, Sabah	Sandakan City Center 까지 약14km/ Ulu Sibuga Road 인근.	410.09	190.097	38.497	151.6	12.00	추후통보	추후 통보	99년	팜오일관련사업 예)정제, 올레오케미컬 바이오디젤, 포장공장
TOTAL		410.09	190.10	38.50	151.60					

공단 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연락처	관리회사	Sandakan Bulkers Sdn Bhd								
	주 소	Lot No.C-1, Block C, 1st Floor, Plaza Tanjung Aru, Jalan Mat Salleh Tanjung Aru 88100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TEL/FAX	Tel: +60 (88) 270 430 / +60 (88) 270 433								
	담당자명	1. Mr. Bryan Chee (bryan.chee@sawitpoic.com) 2. Ms. Judith Ignatius (Judith.ignatius@sawitpoic.com)								
	Email 홈페이지	www. sawitpoic.com								

11. Sarawak 주 공단정보

가. The Bintulu Development Authority

공단이름	위치 (Bintulu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 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내부 지역	강변 지역				
1. Kidurong 공업지역	18km	284.00	247.00	196.50	50.5	77.42	-	0.11	17%	60년	경공업
2. Kidurong 공단 Phase II(KINDAII)	15km	244.00	207.00	0.00	207.00	95.00	-	0.11	17%	60년	경공업
3. Jepak	14km	200.00	170.00	158.13	11.87	54.12	75.35	0.11	17%	60년	목재기반산업
4. Kemena Phasell (구 IKE1Ext)	15km	150.00	100.00	2.02	97.98	54.12	75.35	0.11	17%	60년	목재기반산업
TOTAL		878.00	724.00	356.65	367.35						
연락처	관리회사	Bintulu Development Authority (총책임자)									
	주 소	Wisma Bintulu, Jalan Tanjung Kidurong 97000 BintuluTn. Hj. Mohidin Bin Hj. Ishak									
	TEL/FAX	086-332 011/ 086-315 811									
	담당자명	Tn. Hj. Mohidin Bin Hj. Ishak (총책임자)/Mr. Adie B. Asad (매니저 -부동산개발부서)									
	Email/ 홈페이지	bda@bda.gov.my / www.bda.gov.my									

12. Selangor 주 공단정보

가. Perbadanan Kemajuan Negeri Serangor

공단이름	위치 (KL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공단 건물세 (RM/sq.m)	연간 부지평가율 (부지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Daerah Hulu Selangor Pusat Perindustrian Zurah Rasa	40km	197.05	185.13	115.95	69.18	7.00 5.25 3.50	0.2518	12%	99년 60년 30년	공업 및 지원산업
Daerah Sepang Selangor Science Park II, Bukit Baja, Sepang	25km	296.00	0.547	245.81	254.81	40.00 30.00 20.00	0.4973	9.45% (공업용) 4% (나대지)	99년 60년 30년	복합산업 및 청정산업
Daerah Gombak Batu 20, Rawang	25km	3.79	3.79	0.24	2.8	20.00 15.00 10.00	2.11	13%	99년 60년 30년	경공업 및 청정산업
TOTAL		496.84	189.467	371.00	326.79					
연락처		관리회사	Selang or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주 소	Persiaran Barat, Off Jalan Barat 46505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TEL/FAX	03- 7957 1342(03-7957 5066) / 03-7575250 ext. 4210							
		담당자명	Mrs. Hajah Kanisah Bt. Saabin, Kontroler Pembangunan Wilayah Tengah							

나. Central Spectrum (M) SDN. BHD.

공단이름	위치 (KL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부지평가율 (부지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 부지(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4. a Pulau Indah Industrial Park (기반시설 구비)										

공단이름	위치 (KL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부지평가율 (부지가격당)	임대 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 부지(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Phase 2,A, 2B& part of 2D	45km	564.71	227.56	277.56	2.77	215.00 (RM20/sq.ft)	0.9041-0.9364	7.50%	99년	경공업 및 일반산업
Phase 2 C (Selangor Halal Hub Pulau Indah, Phase 2)	45km	303.56	98.96	98.96	98.96	237.00 (RM22/sq.ft)	0.99-1.03	7.50%	99년	하랄제품 (식품 및 비식품)
TOTAL		868.27	376.52	376.52	101.73					

연락처		
	관리회사	Central Spectrum (M) Sdn. Bhd.
	주 소	No.7, Jalan Perigi Nanas 8/6, Indah Point, Pulau Indah, 42920 Port Klang, Selangor.
	TEL/FAX/H.P	60-3-3101 2020 / 60-3-3101 3030/ 60-12-385 4488
	Email	jun@pulauindah.com.my, marketing@pulauindah.com.my
	담당자명	Puan Hajah Junaidah Mohd Shazilli (마케팅매니저)

13. Terengganu 주 공단정보

가. Terengganu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1. Jakar III	Kemaman내	38.35	30.33	19.87	10.46	50.00	0.08-0.20	7%-9%	60년	일반산업
2. Telok Kalong	Kemaman 까지 9.6km	1,429.00	1200.00	1,050.00	150.00	60.00	0.08-0.20	7%-9%	60년	중공업
3. SeriMedang	Jerteh까지 17km	113.30	90.07	56.79	33.28	20.00	0.08-0.20	6%-10%	60년	일반산업
4. Wakaf Tapai	Kuala Terengganu 까지 28km	158.00	119.00	80.50	38.50	7.00-25.00	0.08-0.20	6%-10%	60년	일반산업
5. Batu Rakit	Kuala Terengganu 까지 5km	174.39	137.50	22.70	114.80	30.00	0.08-0.20	6%-10%	60년	일반산업

공단이름	위치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6. Sungai Bari, Setiu	Setiu 까지 8km	60.00	60.00	-	60.00	20.00	0.08-0.20	6%-10%	60년	일반산업
7. Batu 7, Dungun	Dungun 까지 11km	200.00	114.00	42.69	71.31	35.00	0.08-0.20	7%-9%	60년	일반산업
8. Bukit Kor	Kuala Terengganu 까지 18km	27.00	20.00	4.73	15.27	30.00	0.08-0.20	6%-10%	60년	일반산업
TOTAL		2200.04	1770.90	1277.28	493.62					
연락처	관리회사	Terengganu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주 소	Tingkat 14, Menara Permint, Jalan Sultan Ismail 20200 Kuala Terengganu, Terengganu Darul Iman								
	TEL/FAX	09-6222155/ 09-6233880								
	담당자명	Hj. Abd. Rahman b. Mohd. Yusof								

나. The Lembaga Kemajuan Tengah-Ketengah

공단이름	위치 (Kemaman 까지 거리)	산업부지				매매가 (RM/sq.m)	연간 공단건물세 (RM/sq.m)	연간 평가율 (부지가격당)	임대기간	선호입주 사업유형
		총개발 부지 (ha)	총매매 가능부지 (ha)	총할당 부지 (ha)	현재잔여 부지 (ha)					
1. Ceneh Baharu	47 km	85.51	85.51	54.78	30.73	7.00	0.08-0.20	7%-9%	60년	일반산업
2. Al-Muktafi Bilah Shah	48 km	73.93	73.93	61.14	12.79	7.00	0.08-0.20	7%-9%	60년	일반산업
TOTAL		159.44	159.44	115.92	43.52					
연락처	관리회사	Lembaga Kemajuan Terengganu Tengah (KETENGAH)								
	주 소	Kementerian Pembangunan Luar Bandar, Bandar Al- Muktafi Billah Shah 23400 Dungun, Terengganu Darul Iman								
	TEL/FAX	09-822 3100, 09-822 3101, 09-822 3102, 09-822 3103/ 09-822 3104								
	담당자명	En. Mahadi Amin bin Ahmad								

3. 생활여건

가. 주택여건

최근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증가로 인한 외국인 유입으로 주택임차료가 인상중에 있다. 시내의 경우 가구가 비치된 3실 아파트의 월 임차료는 약 RM 7,000(US$ 2,201)이상이며 암팡 한인 타운의 경우 동일한 조건이면 RM 1,500(US$ 471)-RM 3,000(US$ 943)에 임차할 수 있다.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구할 경우,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감안, 가져온 가구가 많을 경우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unfurnished) 아파트를 물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많은 주택(콘도미니엄)을 짓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주택(콘도미니엄)을 짓고 있는 곳도 있다.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은 한국에 비해 1/3 정도로 저렴하다. 예를 들어 암팡 한인타운에 소재한 콘도미니엄의 경우 방이 3개있고 약 32평 정도의 집값은 현재 약 9천 5백만 원이다. 물론 시내나 고급주택단지에 건설되는 콘도미니엄 중에는 3억에서 10억 정도의 (80평에서 120평) 고급주택도 있다. 말레이시아정부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 4월1일 부터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였다. 주택 구입 시 나이에 따라 60%-70%의 장기저리주택융자(년/6-7%)를 해주는데, 외국인도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주택과 땅(Free Hold)은 외국인도 소유가 가능하다.

나. 교육여건

국제학교는 영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한 학교와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한 학교가 있다. (전국적으로 약 20여개) 말레이시아는 주로 영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한 학교들

이 많이 있으며 학비는 1년에 4백만 원에서 1천 3백만 원 정도이며 미국식 학교는 약 1천 5백만 원 이다. 국제학교의 학기는 9월에 시작한다.

□ 입학절차 및 필요서류

- 영문번역공증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대사관에서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소정의 시험을 봐야 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 최근 국제학교 입학자 수의 증가로 일정시간을 기다려야 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장기체류비자가 있어야 신청을 받아준다.
- 자녀 학교입학서류(기본)는 영문번역공증 또는 영문 번역한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대사관에서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다. 의료여건

외국인의 경우 주로 사설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공공의료기관(정부병원)에 비해서 의료수가는 높으나 의료기술은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대형병원이 있고, 한인회에서 Allianz보험과 단체의료보험계약을 맺어, 개인이 가입하는 것보다 40-50% D/C된 가입비를 적용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사는 진료를 할 수 없으나 한인타운 부근에 한국 한의원이 8개 있어 진료를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

□ 병원

병 원 명	전 화	비 고
Ampang Puteri	4270-2509	교민 많이 이용
KL 종합병원	2692-1044	국립 종합병원
Gleneagles Hospital	4257-1300	사립 종합병원

□ 약국(대형 슈퍼, Pharmacy 또는 Guardian 체인점 등)

- 개점시간 : 10:00 ~ 21:00
- 항생제의 경우 약사의 처방 필요. 감기약, 두통약 등 일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

라. 대중교통

택시 이외에 버스, 지상철 2개 노선 및 모노레일 1개 노선이 있으나 여행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시내 이동시 택시이용이 편리하고 요금은 서울의 1/2 수준이며,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도 무방하고 콜택시도 활성화 되어 있다.

□ 택시요금

- 일반 택시 : RM 2 (1Km 주행 후 매150m당 RM 0.10 가산)
- 대형 택시 : RM 4 (200m 주행시 RM 0.20 가산)
  - 심야탑승 (24:00-06:00) : 50% 할증요금 부과
  - 출퇴근시간에는 일반요금의 2~3배 요금을 청구하기도 함
  - 콜택시(출퇴근시간에는 잘 운행 안함)는 RM 2이 추가됨

□ KLIA 공항 → KL 시내간 교통

신공항고속도로 개통으로 거리(약 60KM)가 축소(택시로 50분 소요)되었으며 택시요금은 일반택시의 경우에는 RM 70, 고급택시는 RM 100이다. 요금은 택시에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 내 택시카운터에서 바우처(voucher)를 구입해야 한다. 택시 이외에는 공항과 시내 Central station을 오가는 KLIA Express라는 직행기차가 있는데 25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RM35이다. 중앙역과 호텔사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택시바우처는 역시 중앙역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요금은 RM 10 정도이다.

마. 한국식품 등 생필품 조달여건

라면, 된장, 고추장, 미역 등 한국식품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식품점(슈퍼)이 K.L에 6개, 방앗간이 2개 있으며 현지 유명 슈퍼에서도 한류열풍으로 한국식품코너를 따로 마련하여 팔고 있다. 이외에도 현지 중국식품이나 일본슈퍼마켓에서 우리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바. 기타 일반사항

□ 한국과의 시차 : 1시간 차이 (한국 자정 = 말련 23:00)

□ 주요 기관 근무시간

- 관공서 : 09:00 - 18:00 (월-금)
- 대사관 : 08:00 - 12:00 / 13:00 - 17:00 (월-금)
- 업 계 : 08:30 - 17:30 (월-금), 08:30 - 12:30 (토)
- 은 행 : 09:30 - 15:30 (월-금), 09:30 - 11:30 (토)
- 백화점 : 10:00 - 21:00

  * KEDAH, KELANTAN, TERENGGANU 지역은 금요일이 공휴일이며, 목요일이 HALF-DAY임.

□ 환전

- 환율 : '05. 7월부터 고정환율제를 폐지, 변동환율제 도입
  ('08. 3월 현재 환율은 US$ 1 = RM 3.2 수준)
- 환전장소 : 환전상(대형쇼핑몰 등), 은행, 공항, 호텔 등이 있으나 은행보다는 소규모 환전상을 이용하는 것이 환율우대를 받음

□ 국제전화

- 국제전화 (말련 → 한국)
  - IDD통화 : 00-82-2(서울)-국내 전화번호
  - 수신자부담통화 : 1 800 80 8282-0-국내 전화번호
    (카드 없이 공중전화를 통해서도 이용가능)
- 공중전화카드 구입
  - 호텔에서 판매하며, RM 10, RM 5, RM 2 짜리가 있고, 공중전화는 동전 또는 카드를 사용

□ 자동차

한국산 기아, 현대, 쌍용 등이 수입 또는 현지조립 생산되고 있으며, 일본, 유럽 등지의 자동차 회사가 현지에 진출, 현지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Toyota, Honda, Benz, Volvo 등) 구입 가능한 차종은 대단히 다양한 편이다. 현지조립차의 경우 차량에 따라 주문 후 차량 인도시까지 대체로 2개월의 시간이 소요 되는 경우도 있다. 차량 가격은 대체로 한국보다 비싸며 MM2H 비자 소지자는 현지조립차량 구입 시 세금을 면제받게 되어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기름값(리터/520원), 보험료, 도로세 등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므로 운행비는 아주 적게 든다.

□ 화폐

말레이시아의 화폐단위는 링깃(RM)이며, 1링깃은 약 270원이다. 환율은 1US가 약 RM 3.2이다. 2005년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면서 국제시세에 따라 환율이 바뀐다. 환전은 은행에서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허가를 받은 환전소가 많이 있다. 대부분의 물가는 저렴하지만 담배 · 술 · 자동차 등 기호소비품의 가격은 한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비싼 편이다. 예) 담배는 약 8.2링깃, 맥주 1병 15링깃(일반카

폐 기준), 휘발유 1ℓ 는 1.95링깃, 시내버스 1.2링깃, LRT(전철) 2링깃, 현지신문 1부 1.2링깃, 일반택시 기본요금 2링깃, 맥도널드 기준 햄버거 8~9링깃, 필름(24장) 12링깃, 생수(1병)= 1.5링깃, 영화 1편 8링깃 등이다.

□ 식 당

Kuala Lumpur에는 50개가 넘는 한국식당이 있으며 한식, 중식, 일식 등 다양한 식당들이 많이 있다. 중국식당에서는. 광동성, 복건성 등 지방의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가 있으며 호텔을 제외하면 가격은 저렴하다.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유럽식당, 멕시코식당, 일본식당, 인도식당 등이 있어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식비에는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팁을 추가로 줄 필요는 없다.

【 한식당 】

식 당	전 화	소재지	비 고
궁 정	2166-5181	Nikko 호텔 뒤	전망, 시설 좋음
고려원	2142-7655	Crown Plaza호텔 옆	음식 양호, 교통편리
한국관	2164-7055	Mini Twin Tower	음식 양호, 전망 좋음
서울옥	2166-5576	Equatorial Hotel 옆	음식 양호

【 말레이식당 】

식 당	전 화	소재지
Seri Melayu	2145-1833	Jalan Conlay
Seri Angkasa	2034-2741	KL Tower

【 중국식당 】

식 당	전 화	소재지
Noble House	2145-8822	Jalan Imbi
Marco Polo Restaurant	2142-5595	Jalan Raja Chulan
Tai Thong Restaurant	2148-8621	Jalan Imbi
Restaurant Overseas	2144-9911	Jalan Imbi

【 일본식당 】

식 당	전 화	소재지
Kampachi	2161-7777	Hotel Equatorial
Kamimura	2166-8928	Menara Weld
Ichiban Restaurant	2148-8988	HLA Building

□ 종교활동

이슬람이 국교이나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고 있다. 현재 쿠알라룸푸르에는 한인교회 20여 곳, 불교 반야원 1곳, 성당 1곳 등 교민들의 약 60%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 치안상태

치안상태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며 중범죄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나 최근 들어 오토바이 날치기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야간 야외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 한국교민현황

말레이시아 전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수는 약 24,000명(재외거주자 등록은 1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쿠알라룸푸르 및 인근지역(암팡 및 몬끼아라)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 체재 시 유의사항

- 줄서기 등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경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주재국의 인종, 종교 또는 정치현실에 대한 대화는 자제

- 사물 또는 방향을 가리킬 때는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며 신체적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음.
- 말레이시아는 다민족국가로 민족별로 식생활이 상이하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돼지고기 요리는 금기시 되고 있음.
- 식당의 경우 봉사료가 음식요금에 추가되므로 별도 팁은 필요 없음.
-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이 물로 씻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대용 화장지를 지참하는 것이 좋음.
-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싫어하며, 대신 어깨를 가볍게 두들겨 주는 것이 좋음. 왕족과 동석시에는 다리를 꼬고 앉거나 등을 보이는 것은 실례임.

□ 현지 주요 웹사이트

- 짜리(검색포털) - http://www.catcha.com.my
- Mesra(검색포털) - http://www.mesra.net
- Bluehippo(검색포털) - http://bluehippo.com.my
- Google Malaysia(검색엔진) - http://www.google.com.my
- MSN Malaysia(커뮤니티) - http://www.msn.com.my
- Paradise Island of Malaysia(관광섬정보) - http://www.islands.com.my
- KTM(열차예매) - http://www.ktmb.com.my
- All Malaysia(지역정보) - http://www.allmalaysia.info
- TM net(전화/인터넷) - http://www.tm.net.my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II. 투자유치제도

III. 투자유치제도

1. 투자제도

1.1 투자제도동향(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침)

□ 제조부문의 외국인투자지분에 관한 정책

말레이시아정부는 제조부문에의 외국인투자를 항상 환영하고 있다. 또한 제조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가. 신규, 확대 또는 다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정책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의 한도는 수출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졌다. 그러나 1998년 7월 31일부터 말레이시아정부는 제조부문에의 신규투자, 투자확대 또는 다변화 투자에 대한 지분참여한도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수출물량과 관계없이 10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회사가 생산능력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활동과 제품에는 이 지분제한완화정책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분이 제한되는 특정 활동과 제품은 종이포장, 플라스틱포장(플라스틱병, 필름, 플라스틱판과 비닐봉지), 플라스틱사출주조컴포넌트, 금속스탬핑과 금속조립, 전기배선(wire harness), 인쇄 및 철강 서비스센터이며 이 경우에는 특정 지분제한지침이 우선하였다.

말레이시아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2003년 6월 17일부터 모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를 전면 자유화하였다. 따라서 수출정도나 당해 제품/활동의 적용대상 제외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물론 기존 기업의 확대/다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서도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새 지분정책은 다음 회사에도 적용된다.

- 제조업허가취득을 면제받은 회사 중 현재 자본금이 250만 링깃에 달하거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상근근로자 수가 75명 이상이 되어, 제조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회사
- 지분제한조건을 면제받은 기존 허가업체로서 자본금이 250만 링깃에 달해 신규로 지분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회사

나. 기존회사에 적용되는 지분정책

2003년 6월 17일 이전에 회사에 부과된 지분 및 수출조건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회사는 이 제한조건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신청이 있으면 정부는 이를 사례별로 심사해서 공적에 근거하여 승인하는 유연한 방식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수출조건이 부과되었던 회사도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레이시아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무관세제품 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물량의 100%까지 국내시장 판매를 허용
- 국내공급이 부족한 제품 또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온 5%이하의 공통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부과제품 에 대해서는 생산량의 80%까지 국내시장 판매를 허용

1.2 신투자법(외국인투자보호)

말레이시아정부의 안전한 투자환경조성 의지에 힘입어 현재 말레이시아를 역외기지로 삼기 위해 50여 국가의 4,000여 외국인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다.

가. 투자지분에 대한 소유권

특정지분참여로 승인을 받은 회사는 원래의 승인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프로젝트의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지분참여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 투자보장협정

외국인투자자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국민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유화 및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 국유화나 수용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의 보장

- 이득금, 자본 및 기타 비용의 자유로운 이전의 보장
- 투자분쟁 시 1966년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투자분쟁 해결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의 보장

말레이시아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연합기구 및 국가는 다음과 같다(알파벳순):

□ 국가연합기구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이슬람회의기구(OIC)

□ 국가

알바니아	독일	파키스탄
알제리	가나	파푸아뉴기니
아르헨티나	기니	페루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바레인	인도	루마니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벨기에-룩셈부르크	이란	세네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탈리아	스페인
보츠와나	요르단	스리랑카
부르키나파소	카자흐스탄	수단
캄보디아	북한	스웨덴
캐나다	한국	스위스
칠레	쿠웨이트	대만
중국	키르키즈스탄	터키
크로아티아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쿠바	레바논	아랍 에미리트
체코	마케도니아	영국
덴마크	말라위	미국
지부티	몽골	우루과이

이집트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베트남
핀란드	네덜란드	예멘
프랑스	노르웨이	짐바브웨

다. 투자분쟁해결협약

외국인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해 말레이시아정부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하에 제정된 투자분쟁해결협약을 1966년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국가 간의 투자분쟁 시, 워싱턴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본부건물에 소재하는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조정 및 중재할 것을 정하고 있다.

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는 1978년 말레이시아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정부간 단체인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협의회(AALCC)의 후원하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상대로 무역, 통상, 투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해결체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으로 인한 혹은 계약과 관련한, 또는 계약의 위반, 종료 및 무효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1.3 투자제한규정

말레이시아에는 투자규제에 있어 정책 및 법률형태의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신경제정책은 "NEP"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의 투자정책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970년에 계획되었으며, NEP의 목적은 가난퇴치와 인종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부미푸트라, 비-부미푸트라 그리고 외국인의 자본소유 구조를 30%, 40% 그리고 30%로 각각 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외국투자위원회("FIC")는 총리부서로 설립되어 정부의 지침과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특히 자산 취득과 합병 및 경영권 취득을 규제하고 있다.

NEP의 목적에 기초해, FIC는 자산 취득, 기업과 경영의 합병 및 경영권 취득에 관한 지침을 발행하였으며, 또한 1971년 FIC를 기업계획부서의 기구로 설정하였다.

나. 신개발정책(New Development Policy)

1990년 NEP가 종료된 이후, 정부는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경제정책의 틀로 신개발정책(NDP)을 소개하였다. NEP의 두 가지 목적인 가난의 퇴치와 부의 윤리적 재분배를 고수하는 한편, NDP는 고속성장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 더욱 핵심을 두고 있다.

다. 정부격려종합정책(The Government Stimulus Package)

정부격려종합정책은 자산취득규정, 기업 및 경영의 합병 및 경영권 취득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21일부터 효력을 갖고 적용이 되었다. FIC의

새로운 지침은 2004년 8월 1일 소개되었으며(오늘날 소유권의 취득, 현지 및 외국 소유권에 관한 합병 및 경영권 취득에 관한 지침으로 알려짐("FIC 지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회사의 말레이계 지분이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말레이시아인 및 외국인의 지분인수. 부미푸트라(토착 말레이)의 소유권의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소유권에 의해 잔여지분은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외국 및 말레이시아 합작소유권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취득 과정에서, 부미푸트라의 지분소유가 51% 이상이었다면, 이 기업에서 부미푸트라의 소유는 언제나 51%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정부에서 면제권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미푸트라의 소유권 참여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FIC의 승인하에 면제되는 외국 및 말레이시아인의 지분인수 한계수준은 5백만~1억 링깃이다. FIC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말레이시아와 외국소유권의 주식 취득/행사(voting)에 관한 기존 비율은 유지될 것이다.
- 제조업체허가와 관련한 승인처리과정은 국제무역 및 산업 부서(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의 업무로, 기업의 제안은 안전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SC")의 안전위원회법안 1993의 32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FIC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BMSM에 상장되길 희망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소유권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하기 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미푸트라의 소유권 참여비율은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유가증권의 발행/제안에 관한 SC의 정책과 지침에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정의된 경우, 30%의 부미푸트라의 주식소유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 다음의 경우 소유권 조항의 준수기한이 완화된다.
  - FIC의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소유권 조항이 부과된다.
  - 사례의 실태를 기초해 준수기한이 1년으로 연장될 것이다.
- 외국자산은 단위당 RM 150,000 을 초과하는 토지자산을 수에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다.

라. 규제당국

□ MIDA

관료주의를 철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위원회(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라는 투자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의 목적은 세금 및 투자 인센티브, 수입 및 관세면제 등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포함해 제조업 프로젝트에 관한 처리과정을 전달받고 결정을 양도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질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MIDA에는 재정 및 인적자원부(the Ministries of Finance and Human Resources), 말레이시아 세관(the Royal Malaysian Customs), 환경부, 직업안전 및 건강부(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enaga Nasional Berhad(말레이시아의 주요 전력 제공업체)와 Telekom Malaysia Berhad(말레이시아의 정보통신기술 제공업체)의 고위관료를 상주시킨다.

□ MITI

MITI는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활동 개발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마. 제조

□ 산업조정법안 1975

산업조정법안 1975에 따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MITI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licence)에 해당하는 경우 MITI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조기업의 주식자금이 250만 RM 을 초과하거나
- 75명 이상의 정직원을 채용하거나
- 광학디스크 관련 제조활동에 참가한다.

제조업체가 ICA의 필수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조허가를 신청할 때 필수사항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제조기업의 주식자금이 250만 RM을 초과하거나 또는 75명 이상의 정직원을 채용한 경우,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의 진흥 및 조정을 하는 정부의 주요 기관인 MIDA가 규정한 제조허가양식을 필요로 한다.

□ 신규, 확장 또는 분산 프로젝트에 관한 소유권 정책

외국의 제조업 프로젝트의 소유권 참여는 수출수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1998년 7월 31일 이후, 말레이시아정부는 외국이 신규 제조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확장/분산 제조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완화정책에 따라, 외국투자자는 수출에 상관없이 100%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정책은 2003년 12월 31일 이후로 접수된 신청부터 적용되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전략사업과 특화사업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이포장재, 플라스틱포장재(병, 필름, 시트(sheet), 가방), 플라스틱인젝션몰드부품(injection moulded component), 금속쇄광(stamping), 금속제작(fabrication), 배선설비(wire harness), 인쇄 및 철강 서비스센터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특수소유권지침을

따라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6월 17일부터 전체 제조업체에 관한 소유권 보유를 완전 자유화시켰다. 외국투자자는 수출 그리고 제품/활동에 상관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물론 기존 기업의 확장/분산 프로젝트에서 100%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새로운 소유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 이전에는 제조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으나, 현재 주식자금이 250만 RM을 초과하거나 75명 이상의 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면허를 받아야 함.
- 기존의 허가 기업은 소유권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현재 주식자금이 250만 RM에 도달한 경우 규정준수를 해야 함.

□ 기존 기업에 적용 가능한 소유권 정책

2003년 7월 17일 이전에 기업에 부과된 소유권 및 수출조항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조항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사례의 실태를 기초로 이러한 요청과 승인에 대해 유연하게 고려할 것이다. 다음 지침에 따라, 수출조항을 준수하는 기업은 MIDA에 승인을 받아 말레이시아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 관세에 적용받지 않는 생산품의 매출 100%, 또는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 매출 80%까지 국내시장이 적절하지 않거나, 일반효율 우선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CEPT)의 5%이하의 관세가 적용되어 ASEAN 국가로부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경우.

바. 석유산업

□ 석유 개발 법안 1974

MITI는 또한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처리 또는 정제산업에 관한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마케팅과 유통은 국내무역 및 소비자업무 부서(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가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상류부문(upstream)과 관련해서는 총리의 지침과 규제를 따라야 한다. 육지와 영해에서 석유자원을 탐사하는 전체적인 소유, 권리 및 특권에 관해서는 'Petroliam Nasional Berhad' ("Petronas")라고 불리는 기업에 권리를 귀속시킨다.

사. 다중매체 우선지대(Multimedia Super Corridor)("MSC") 및 다중매체 개발기업 (MultimediaDevelopmentCorporation)("MDC")

가치창출을 위해 다중매체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투자자의 경우, 정부는 MSC의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MDC의 MSC자격을 부여받은 기업은 정부의 보증금(Government's Bill of Guarantees)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것이다.

□ 재정 인센티브

- Pioneer 지위: 수익을 내기 시작한 날을 기초로, MSC자격기업의 법령소득에 관한 말레이시아 소득세 100%를 면제 받을 것이다. 동 인센티브는 5년간 주어지며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 말레이시아의 소유가 최소 51% 이상인 MSC기업 중 중소기업에 관한 R&D 적격성.
- 다중매체제품의 무관세수입.

□ 비재정 인센티브

- 현지 및 외국 지식노동자의 채용에 관한 제한철폐.
- 소유권의 자유(부미푸트라 주식비율과 같은 현지인 소유권 필수사항 면제).
-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인프라에 관한 국제자금원(source capital)에 있어서의 자유, 그리고 국제 자금 대출에 관한 권리.

□ 기타 인센티브

- 위치에 관계없이 MSC자격기업이 관심을 갖는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사이버법안(cyber laws)의 개발 및 포괄적인 틀.
- 인터넷 의무검열.
- MDC(Multimedia Super Corridor)의 원스톱 센터를 통한 비자발행, 보고 필수요소의 허가 적용과 승인 및 준수와 같은 업무 지원.
- MSC에 위치한 기업에 관한 세계적인 수준의 IT 인프라.
- MSC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국제 경쟁통신요율(tariffs) 및 서비스.
- MSC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고품질 계획도시 개발.
- MSC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지역 최고의 다중매체 대학을 포함한 우수 R&D 시설.
- MSC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우수 자연환경 지대 조성.

MSC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주체로, MDC의 MSC의 자격을 부여받아 외환조절규정(exchange control regulations)의 면제를 받는다. 이는 자신의 계좌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외환통제공지에도 나타나

있듯이, 특정 인물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이스라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통화는 제한된다. 또한 MSC기업은 감사를 위한 통계양식 / 보고 / 명세서(statement)를 필요로 한다.

MSC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다중매체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중소비자(heavy user)가 되어야 한다.
- 충분한 지식노동자를 채용한다.
- 말레이시아에 기술이전 또는 지식을 제공하거나, MSC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말레이시아의 지식경제발의(initiative)를 지원한다.

MSC의 자격을 충족한 기업은 특혜(preferential designation)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MSC의 적격활동에 필요한 법적인 독립체를 설립한다.
- 회사를 MSC 설계 사이버도시에 위치시킨다.
- 환경지침을 준수한다.

현존 기업에게 상기된 세금 인센티브는 지난 3년간 회사의 법적수익이 평균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활동 또는 MSC에 실행된 신규투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아. 외국투자위원회

제안된 투자가 석유나 허가제조활동 또는 다중매체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 FIC의 승인을 반드시 취득해야 할 것이다.

- 말레이시아의 토지자산에 관한 외국소유권의 취득

- 외국자본의 소유권 및 조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말레이사의 통제권 또는 경영권 취득
- 기업인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의 의결권주식의 15%, 기업이 아닌 경우 30% 이상이 되는 경우
- 합작투자협정, 경영협정과 기술지원 및 기타 협정을 통한 말레이시아기업 및 경영 통제
- 말레이시아 또는 외국 자본에 상관없이 말레이시아의 기업 또는 경영에 관한 합병 또는 경영권 취득
- 말레이시아 또는 외국 자본을 통해 1,000만 RM을 초과하는 자산 및 자본 취득 (2003년 5월 21일부터 1,000만 RM으로 개정)
- 기업의 행사권 50% 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법인의 주식자본 취득 예. 법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승인 이전 FIC의 필수사항에 대해 면제를 받는다.

자. 증권 위원회

증권 위원회("SC")는 증권 위원회 법안 1993("SCA")을 준수하는 법적인 실체라 할 수 있다. SCA의 33A(1)항에서 경영권 취득 합병에 관한 말레이시아 코드 1998로 알려진 경영권 취득 및 합병에 관한 코드를 규정하고 있다("경영권 취득 코드 1998").

경영권 취득을 제안하는 인사, 또는 주식회사의 의결권 주식 33%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상장 기업에 상관없이) 또는 기업의 통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영권 취득에 관한 코드 조항 1998을 준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감사(가능한 경우 합병을 기초로)를 기초로 했을 때 주식 또는 납입 자본이 1,000만

RM을 초과하는 기업의 주식 33%를 인수하는 경우, 또는 자본이 2,000만 RM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권 취득 코드 1998을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자본 서비스 및 시장 법안 2007 ("CSMA") 2007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경영권 취득 및 합병과 관련이 있는 CMSA의 VI부 2조(Division)는 1998년의 경영권 취득 코드를 대신할 2008년의 경영권 취득 코드로 합쳐질 것이다.

차. 말레이시아의 분배무역서비스에 있어 외국 참여에 관한 지침

말레이시아의 분배무역서비스에 관한 외국 참여의 지침("DTS 지침")은 2004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외국 참여에 관한 제안은 분배무역위원회(Committee on Distributive Trad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지사 설립 및 재배치, 기존 지사/매장의 확장, 기타 기업(operator)에 관한 경영권 취득, 토지자산 구매, 분배무역에 관한 위원회의 승인/허가 취득 이전의 전제 및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의료, 의학 및 수술에 필요한 제품, 독성물질 및 폭발물, 무기, 탄약, 농작물과 동물에 관해서는 DTS지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규제와 법안을 따르게 된다.

분배무역은 재판매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있어 유통망과 중개업(intermediaries)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유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유통에 포함된 2개의 직간접적 집단(또는 단계) 또는 사슬 내에 2개 이상의 집단(또는 단계)이상
- 관련 법안에서 정의된 실제 물리적 처리 또는 전자거래
- 관련법 안에서 정의된 인사 또는 전자거래
- 제품 및 서비스의 소유에 있어 권리를 이전하는 또는 이전하지 않는 데 관한 거래

DTS지침의 분배무역에서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직판, 제품 제조 · 공급, 국내시장에서의 상품 유통, 전체 국가의 국제무역기업을 포함하는 위원회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외국의 소유권이 있는 전체 분배무역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준수해야 한다 :

- 1인 이상의 부미푸트라 이사 선임
- 관리직을 포함, 말레이시아의 인종 구성에 맞게 직원 고용
-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현지 공항 및 항고의 이용 증가
- 말레이시아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기타 전문서비스에 있어 현지기업 활용
- 국내무역 및 소비자업무 부서(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에 연간 재무제표 제출
- 현지위원회의 법규규정 준수

도매무역이란 '조직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신규제품 및 중고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재판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매무역에 대해서는 '최종재는 소비자에게 신제품, 중고 제품 · 서비스를 판매/재판매 하는 경우(최종 및 기업 소비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조직의 경영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조직이 소비재를 판매/재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DTS지침에 따라, 도매 및 소매 무역에 있어 외국의 참여는 기업법안 1965의 법인요소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1995년 1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의 도매 및 소매 무역에 있어 외국의 지사설립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

카. 국제조달센터 계획

국제조달센터("IPC") 계획은 현지 또는 외국 소유 법인에 상관없이, 현지설립하는 회사들의 법인이 소재, 부품, 최종제품 등을 말레이시아 및 외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에서 조달 또는 판매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반할 것이다.

1) 국제조달센터(IPC)자격을 가진 기업에 있어 인센티브 및 시설

IPC자격을 부여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세금 인센티브〉

- IPC 자격을 갖춘 기업은 1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소득를 면제받는다.
- 면세된 수입으로 인한 배당금 역시 소득세로부터 자유롭다.

세금 인센티브의 자격을 받기 위해, IPC 자격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기업의 연간 총 판매매출이 최소 1억 RM 을 초과해야 한다.
- 연간 소득에 있어 국내시장의 매출비율을 20%로 제한한다. 국내시장의 매출비율이 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릏 면제받지 못한다.
- 자유무역지대(Free Zones) 그리고 허가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 ; LMWs)의 판매는 국내매출로 간주될 것이다.
- 말레이시아 내의 딜러, 수입업자, 자회사, 기업에 유통시키기 위해 최종재, 부품, 예비 부품을 모아두는 통합 및 합병 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설〉

- IPC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기업.

- 제한 없이 IPC 활동을 위해 수출을 함에 있어, 허가받은 상업은행을 통해 한 개 이상의 외환계좌를 개설한다.
- 프로젝트 판매를 기초로 수출을 함에 있어, 허가받은 상업은행을 통해 외환거래 계약을 한다.
- 프로모터의 100% 소유권을 허가한다.
- 최종소비자에게 유통시키기 전, 재포장, 화물 통합 및 합병을 위해 자유산업지대(free industrial zones), 자유상업지대(free commercial zones), 보세창고(bonded warehouses), 허가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에 관세를 면제받은 원료, 부품 또는 최종제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IPC의 자격에 있어 중요한 요소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 기업법안 1965에 따라 최소 납입자본이 500,000 RM이 되어야 한다.
- 연간 기업의 최소 지출(운영 경비)가 150만 R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말레이시아의 항구 및 공항을 이용을 늘린다.
- 3년째 연간 매출이 5,000만 R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IPC자격기업의 국내매출은 연간 판매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PC자격기업은 연 매출의 30%까지 생산자 직송(drop shipment)방식을 통해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원료와 제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IPC자격의 신청서는 MIDA에 제출해야 한다.

2. 투자정책

2.1 주요정책

가. 부미푸트라

부미푸트라란 '땅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말레이계를 우대해 말레이계와 소수민족 간의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중국계에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적의 제도다.

16세기부터 말레이인들은 영국, 포르투갈 등 서구열강에게 자원을 수탈당했다. 1955년 독립 후에는 19세기부터 몰려든 중국계 노동자들의 후손에게 모든 상권을 빼앗겼다. 인도계 이민자들 역시 상당수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을 차지했지만 교육받지 못한 대다수 말레이계는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계 상권의 지배력은 점점 커졌고, 결국에는 지난 1969년 5월 13일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에 유혈충돌이 빚어졌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에서 발발한 첫 번째 인종폭동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사건 당시 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상황은 무척 심각했다.

이때 말레이시아정부가 인종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채택한 것이 바로 부미푸트라 정책이다. 당시 정부의 목표는 "1990년까지 자본, 경영인, 기업종업원의 인종구성비를 주로 화교인 비말레이인 4, 말레이인 3, 외국인 3의 비율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술탄을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와 엄격한 이슬람식 규율도 인종갈등 억제와 국가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근대화를 주도한 마하티르 전 수상은 이슬람식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종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았다.

정부는 현재(2008년 2월)까지도 꾸준히 부미푸트라 정책을 이어오고 있으며, 각종

기업체는 이 제도에 따라 말레이계 소유지분을 30% 이상 보장해야 한다. 단, 제조업 등 일부 외국인 투자규모가 크고 활발한 분야에 있어서는 지분제한을 폐지 또는 약화했다. 심지어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학교는 말레이계 국적자를 우선 받아들이고 나머지 남은 수요를 소수민족 및 외국인에게 오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말레이계 학생은 입학했지만 그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적의 인도계 학생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낙방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말레이계가 소유한 부(富)의 비중은 지난 70년 1.5%에서, 최근 20%까지 부쩍 높아졌다. 거기다 정치권 및 공직에도 말레이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에는 소수민족인 중국, 인도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여겼던 부모세대들은 이러한 차별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다르다. 다 같은 엄연한 시민인데 왜 2류 취급을 받아야하느냐는 것. 최근 총선을 앞두고 더욱 불거진 인도계 민족들의 데모시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들은 "인종차별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데, 그 요점은 결국 부미푸트라 정책의 폐지에 있다.

마하티르 정권에서 부수상까지 지내다 불미스러운 일로 정계에서 물러나야 했던 안와르 이브라힘(현 야당 지도자)도 "부미푸트라 정책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최근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약 53%를 차지하는 말레이계를 뿌리깊게 지지해 주고 있는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단 국민들의 관심도가 예상보다 너무 낮다. 또한 외신에서 보도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시위자들의 규모도 사실상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려해도 말레이시아정부가 '국가안전법'에 따라 시위집회자들을 재판도 없이 구속할 수 있는 '막강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이렇다 할 결실을 맺기도 쉽지 않다.

나. 지분율 철폐

□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제한 철폐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는 산업구조 고도화로서 노동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인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렵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비율(C/E :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RM 55,000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조업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1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정부는 서비스, 유통업은 물론 제조업에 대해서도 자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단독투자를 제한하였으나 2003년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완전 자유화하였으며, 종전의 수출비중이나 팜오일, 플라스틱, 목재 등 말레이시아 전통산업 투자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업에 관한한 100% 외국인에 의한 지분소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금융업과 유통업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 업종에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지분제한 규정이 있는데, 서비스 업종의 경우 그동안 말레이시아계가 전체 지분의 70% 이상(외국인 30%)을 소유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4년 말부터 유통업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전체 지분의 30%는 말레이시아국민 중 말레이계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Bumi Putra정책)이외의 모든 제한을 철폐하였다.

그러나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말레이계의 30% 이상 지분 의무 보유 외에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하의 제한이 여전히 적용된다.

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말레이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기본 법규와 지침은 1986년에 제정된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86 (투자진흥법)과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제정한 Foreign Investment Guideline(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등인데 전자는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투자법령으로서 전반적인 투자진흥규정이며, 후자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일종의 투자지침이다.

Foreign Investment Committee는 투자규모별 승인, 부동산 등 투자대상 제한 등의 업무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모든 외국인투자가들이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곳인데 실제 접촉은 실무기구인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alaysia Industry Development Agency, MIDA)에서 담당하고 있다.

라. 제9차 말레이시아 계획(2006-2010년)

□ 지속적 경제성장

- 매년 6% 경제성장 목표: 제조(6.7%) 및 서비스(6.5%) 분야가 전체 경제성장 견인
- 2010년 일인당 GNP US$ 6,400 및 구매력 기준 GNP US$ 13,878을 목표
- 대외교역 증대: 무역규모 RM 1조(US$ 3,021)시대 개막
- 민간부문 활성화: 연 2.5%의 안정된 물가수준을 바탕으로 민간소비는 평균 6.9%, 민간투자는 11.2% 증가 예상

□ 사회 · 경제적 불균형 완화 목표

-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 및 도시-농촌 간 격차 완화
- 인종 간, 부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지원

□ 지식 및 혁신역량 배양 및 선진의식 고취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대폭 확대
- 국가 교육시스템 향상

□ 주요 예산 배정내역 (2006-2010년)

• 총 RM 2천2백억 투입

- 정부예산인 RM 2천억(US$ 566억)과 민간자본 RM 2백억(US$ 56억)이 투입될 예정

【9차 계획 예산 배정내역】

(단위: US$ 백만, %)

부문	9차 계획				8차 계획
	정부예산	민간자본	총지출	전체비중 (%)	기지출
교육/훈련	12,768	2,942	15,710	23.0	13,580
교통	9,899	634	10,096	14.8	9,880
에너지/공공설비	6,772	0	6,772	9.9	3,951
통상/산업	6,177	310	6,274	9.2	3,160
국방	4,732	491	5,223	7.6	5,372
농업	3,551	350	3,660	5.4	7,749
건강/의료	3,326	878	3,599	5.3	2,952
주택	9,947	486	3,575	5.2	2,165

주: US 1$=3.22 RM

□ 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 교통 및 상하수도 건설에 RM 469억(US$ 145억) 배정

- LRT시스템 확장(클랑 밸리, 조호지역)
- 페낭에 제2대교, 모노레일 및 외곽도로 건설(RM 48억)
- 조호지역 항만시설 및 Senai 공항확장(지역 물류 허브 육성)
- Gombak 및 KL 지역에 종합 transport terminal 건설
- 동부해안지역 고속도로 건설(RM 18억/US$ 31억))
- 수도공급설비 확충(RM 82억/US$ 25억))
- 파항-셀랑고르 간 수로 건설(RM 40억/US$ 12억))

- SJDC(조호남부개발계획) 프로젝트에 RM 102억(US$ 31억) 배정
  - 조호지역에 주정부건물 및 다리 신설
  - 세관, 이민국, 검역소 등 종합 complex 건설
  - 해안인접도시(Danga Bay) 및 사이버시티 건설

2.2 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 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부문, 그리고 연구개발(R&D), 교육 훈련 및 환경관리활동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것이다. 또한 세제상의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소비세의 면제 형태로 제공된다.

1) 제조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①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제조부문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는 개척자격(Pioneer Status) 부여와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혜택이다. 개척 자격과 투자세 공제자격은 부가가치, 사용기술 및 산업간 연계정도와 같은 특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자격이 있는 활동과 제품을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이라 칭한다. (부록 7.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일반 참조)

□ 개척자격

개척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의 부분감면혜택을 받는다. 법정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감면기간은 생산일(생산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달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개척자격 부여와 투자세가 공제되는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액에 대해 100% 세금이 면제되는 개척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 법정소득액은 총 소득에서 수익적 지출액(revenue expenditure)과 자본공제액(capital allowances)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말레이시아반도의 "동쪽 회랑"은 켈란탄 주, 테렝가누 주, 파항 주, 그리고 조호르 주의 머싱(Mersing)지역을 말한다.

** 한편 펄리스 주가 2006년 9월 2일자로 권장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로써 펄리스 주에서 권장활동을 수행하거나 권장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현재 권장지역에 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척자격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 투자세 공제

회사는 개척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

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의 경우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100%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장지역으로 이전하는 제조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기존회사가 사업비용 절감과 경쟁력 있는 사업환경을 찾아 권장지역으로 제조활동을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한차례 더 신청할 수 있다.

-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5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자격. 소득세는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을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테크기업이란 권장활동에 종사하거나 신기술분야의 권장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정의된다. (부록 7.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하이테크기업 참조). 하이테크기업

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5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이테크기업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말레이시아 국내에서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최소 1%가 되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운영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관련 학위소유, 최소 5년 경력의 과학 및 기술직원 비율이 회사 총 직원의 7%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적 프로젝트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제품과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며,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산업간 연계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 이하의 중소기업은 과세소득 중 50만 링깃까지는 인하된 법인세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척 자격 유지 기간 중 누적 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 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었고, 자본금이 50만 링깃 이하이며, 말레이시아인의 투자지분이 60% 이상인 소규모 제조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다.

- 법정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 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될 수 있다. 또는
-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단독소유기업이나 파트너십이 이 감면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시설/활동을 인수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유한회사(limited company)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소규모기업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 창출이 15% 이상 또는
- 당해 프로젝트가 농어촌인구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 또는 영위하는 활동은 소규모기업에 권장되는 제품과 활동목록(부록 7.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소규모기업 참조)에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기업의 산업연계 프로그램(Industrial Linkages Programme, ILP)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직원훈련, 제품개발과 검사, 공급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장 감사에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된다. 산업연계 프로그램(ILP)에서 권장하는 제품 또는 활동(부록 7.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산업연계 프로그램 참조)을 신청하는 공급업체(중소기업 포함)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공급업체의 해외시장용 권장제품 생산과 권장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인된 산업연계 프로그램(ILP) 참여업체로서 가격, 품질 및 생산능력 면에서 세계적 기준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의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 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를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산업을 위한 인센티브

□ 특수기계와 설비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특수기계와 설비, 즉 공작기계, 플라스틱사출기계, 플라스틱압출기계, 물류장비, 포장기계, 로봇과 공장자동화설비, 특수/공정기기 또는 특정산업용기기 및 이들 기계설비의 부품과 구성요소를 제조하는 업체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장비 생산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기존의 내국인 소유 회사가 크레인, 채석기계, 배칭 플랜트(batching plant)와 항만 하역장비와 같은 중장비 생산에 재투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5년간 70% (권장지역은 100%)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 기계설비 생산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기존의 내국인소유회사가 특수기계와 설비 및 공작기계를 포함하는 기계설비 생산에 재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5년간 70% (권장지역은 100%)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

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 (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⑧ 자동차부품 모듈 또는 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

대상 자동차 모듈(module) 또는 시스템 부품을 설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신규업체와 기존업체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5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이 인센티브의 대상 모듈과 시스템은 프런트코너 모듈, 리어코너 모듈, 계기판 모듈, 스트러트(struts), 충격흡수장치와 스프링어셈블리 모듈, 범퍼 모듈, 프론트크로스멤버 모듈, 통합기능도어 모듈, 연료탱크 모듈, 시트 모듈, 페달 모듈, 도어트림 모듈, 플로어콘솔 모듈, 타이어와 바퀴 모듈, 제동장치, 와이퍼시스템, 배기시스템, 오디오시스템, 난방, 통기, 에어컨디셔 시스템, 에어백시스템, 전력 및 신호분배 시스템, 경보시스템, 좌석벨트시스템, 실외조명시스템, 차체원형(body in white) 모듈, 엔진

관리 모듈, 안전시스템, 텔레매틱스(telematics), 항법시스템(navigational system), 엔진연료분사(injection)시스템과 차량지능화시스템이다.

⑨ 팜오일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팜오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파티클보드(PB, 건축용 합판), 중밀도 건축용 섬유판(MDF), 합판, 펄프 및 종이와 같은 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규회사

-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10년간 100%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 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 기존회사의 재투자

-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10년간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⑩ 제조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재투자액 공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기존사업의 확대, 현대화 또는 자동화, 또는 동종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의 다변화로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기업은 재투자액 공제 (Reinvestment Allowance, RA)를 신청할 수 있다. 재투자액 공제는 회사의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액의 60%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의 법정소득액의 70%까지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 중 미사용분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재투자액 공제를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를 상계할 수 있다.

-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 및 말레이시아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서 재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정한 생산수준을 초과 달성하는 회사. 각 하위 부문별 지정 생산수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국세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IRB, Tel : 603-6209-1000 / E-mail : Ihdn@hailnet.org.my / URL : http://www.hasilnet.org.my)에 문의.

재투자액 공제는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 대상기업은 해당 프로젝트 완료시, 즉 건물 준공 또는 공장/기계 가동개시 후 재투자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투자를 위해 취득한 자산은 재투자 후 2년의 기간 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세금면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회사는 개척자격 취소 및 재투자액 공제 자격 취득의 목적으로 개척자격 또는 개척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재투자액 공제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투자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개척자격 또는 개척인증 반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

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속자본공제

재투자액 공제기간 15년이 경과한 후에 권장제품 생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를 신청할 수 있다.

가속자본공제(ACA)는 40%의 초기 공제와 연간 20%의 공제를 받는 형식으로 3년 이내의 자본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 공제이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이 발급한 권장제품생산증명서를 첨부하여 내국세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에 대한 가속자본공제

전력공급 차질로 인한 사업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를 구입하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2년간의 가속자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가속자본공제(ACA)는 20%의 초기 공제와 연간 80%의 공제를 받는 형식으로 2년 이내의 자본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정한 장비에 한해 자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05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업화 건축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

공업화 건축시스템(IBS)은 건축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환경을 만들며, 외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공업화 건축시스템(IBS) 부품제작을 위한 생산용 주형(moulds)을 구입하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3년간의 가속자본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06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한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감면

수출증진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출되는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는
- 수출되는 제품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제품의 수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인의 투자지분이 60%이상인 내국인소유 제조업체는 다음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당한 수출신장을 달성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소득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 신규시장 진출에 성공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소득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 당해 업종에서 최고의 수출증가액을 달성한 회사는 수출증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룹공제(Group Relief)

민간부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에 설립된 모든 거주기업들에 대해 그룹공제(Group Relief)를 부여한다. 그룹공제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액 중 미사용분의 50%에 한해 동일 그룹 내 다른 회사(승인된 식품생산

업, 산림 플랜테이션,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광학 및 광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신규회사를 포함한다)의 수입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 그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 청구회사와 양도회사는 각각 보통주 해당 납입자본금이 250만 링깃을 초과해야 한다.
- 청구회사와 양도회사의 회계기간이 일치해야 한다.
- 그룹 내 청구회사와 양도회사의 직간접 보유지분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 당해 70%의 지분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2년간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 독점권 또는 외국인소유기업의 매입으로 인한 결손금은 그룹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현재 아래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기업은 그룹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개척자격
  - 투자세 공제/투자 공제
  - 재투자 공제
  - 운송이익의 면제
  -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따른 소득세 면제
  - 인센티브 투자회사

전술한 인센티브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승인된 식품생산업, 산림 플랜테이션,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광학 및 광통신 사업에 대한 그룹 공제는 중단된다. 단 전술한 사업에 대한 그룹 공제 인센티브를 받은 회사는 계속해서 자회사가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그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06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

2) 농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986년 투자진흥법에 따라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회사"란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협회(cooperative societies and associations)
- 농업에 종사하는 단독소유기업 및 파트너십

농업부문의 권장제품 또는 권장활동(부록 7.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일반 참조)을 생산 또는 영위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농업부문에 대한 주요 투자 인센티브

□ 개척자격

제조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장제품을 생산하거나 권장활동을 영위하는 농업부문기업은 개척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척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소득세의 부분감면혜택을 받는다. 법정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감면기간은 생산일(농산물을 처음으로 판매한 날로 정한다)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액에 대해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개척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자세 공제(ITA)

권장제품을 생산하거나 권장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는 개척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혜

택을 받는다.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의 경우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100%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강화된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프로젝트가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제가 가능한 자본에 대한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자본 지출도 포함된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식재(planting)
- 농작물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농업 프로젝트 개시 시점과 농작물 가공 시점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종합 농업 프로젝트는 가공 또는 제조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추가로 5년간 투자세 공제혜

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식품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식품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식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그 자회사와 함께 다음의 투자 장려 패키지(incentive package)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장려패키지 A:

- 식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한 회사는 당해 자회사에 대한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다.
- 당해 자회사는 수익을 낸 첫 해로부터 10년간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 세금면제기간과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의 면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금이 면제된 소득에서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투자장려패키지 B:

- 식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한 회사는 당해 자회사가 이익을 내기 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그룹공제(group relief)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 당해 자회사는 수익을 낸 첫해로부터 10년간 법정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 세금면제기간에 발생한 손실은 10년간의 감면기간 후에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 세금이 면제된 소득에서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투자장려패키지의 대상 식품은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케나프(kenaf), 원양어업, 채소, 과일, 허브, 향신료, 양식수산업과 소, 염소 및 양의 사육이 여기에 해당된다.

회사는 인센티브 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식품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된다. 신청서는 농업 & 농업기반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존회사가 상기식품의 생산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5년간 상기의 신규투자와 동일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생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신규회사와 기존회사 모두 이 인센티브가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식품의 생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업 & 농업기반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랄(Halal)'식품 생산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수출용 '하랄'식품 생산에 대한 신규투자를 장려하고 최신현대기계장비 사용을 늘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하랄'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이슬람교개발국(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이 발급하는 '하랄'인증을 받은 회사로서 '하랄'식품 생산에 투자하는 회사는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를 통해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 공제액 중 미사용분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교개발국(JAKIM)의 '하랄'인증을 받기 위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JAKIM의 홈페이지 http://www.halaljakim.gov.my/를 참조 요망.

○ 식품가공시설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국민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내국인소유기업이 권장식품가공활동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 5년 동안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 100%)에 해당하는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내에 발생한 추가공제 가능 자본지출액에 대해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가 되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년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②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 재투자액 공제

쌀, 옥수수, 채소, 괴경류, 축산물, 수산물 등 필수식품 생산과 기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활동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개인이나 회사는 재투자액 공제(Reinvestment Allowance, RA)를 신청할 수 있다.

재투자액 공제는 회사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60%를 공제하는 형식으

로 이루어지며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공제액 중 미사용분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 및 말레이시아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서의 재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소득액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한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식재(planting)
- 농작물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원기반산업에 대한 재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고무, 오일 팜 및 목재 기반사업을 영위하며 수출잠재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상기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업종의 회사가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재투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 5년 동안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 100%)에 해당하는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내에 발생한 추가공제 가능 자본지출금액에 대해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 닭과 오리사육 현대화에 대한 인센티브

농업부문의 현대화와 환경친화형 영농을 장려하기 위해,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축주가 축사시설을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재투자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 과세연도까지 유효하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폐쇄형 축사시설이 다음의 최소 사육능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사육 주기당 육계/육용오리 20,000수 또는
- 사육 주기당 산란용 닭/오리 50,000수 또는
- 사육 주기당 닭/오리의 종계(parent stock) 또는 원종계(grandparent stock) 20,000수

모든 프로젝트는 농업 & 농업기반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속자본공제

재투자액 공제(RA)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장농업활동과 권장식품생산에 재투자하

는 회사는 가속자본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속자본공제는 쌀, 옥수수, 채소, 괴경류, 축산물, 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농업활동과 기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적용된다. 가속자본공제(ACA)는 20%의 초기 공제와 연간 40%의 공제를 받는 형식으로 2년 내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이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이 발급한 권장농업활동영위증명서 또는 권장식품 생산증명서를 첨부하여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공제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한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에 따라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 또는 특별산업용 건물공제(special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s)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한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식재(planting)
- 농작물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미 개척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기 공제가능 지출이 발생하는 한 계속 농업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무나무 재배에 대한 가속농업공제

가구산업에 대한 고무나무의 정상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고무나무를 재배하지 않던 농원이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에 고무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고무나무 재배에 따른 정지(整地), 식재와 관리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각기간을 2년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는 가속 농업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 관세연도까지 유효하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100% 공제

1967년 소득세법 부속서 4A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정한 최소 면적의 경작 및 이용 요건을 충족한 농장은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해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는 채소, 과일(파파야, 바나나, 패션프루트, 스타프루트, 구아바와 망고스틴), 괴경류(tubers), 근채류, 허브, 향신용 작물, 사료용 작물 및 수경재배 작물의 경작; 관상어 양식; 어류와 참새우양식(지수식 양식, 육상 수조 양식, 수중 가두리 양식과 해면 가두리 양식); 새조개류, 굴, 홍합과 해조류 양식; 새우, 참새우, 어류의 부화, 그리고 특정 종의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 인센티브에 따라 위의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개인은 다른 수입원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잔여분을 과세연도의 후속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공제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자본 공제나 농업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한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식재(planting)
- 농작물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1986년 투자진흥법에 의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세금감면기간이 개시 또는 만료되지 않은 회사는 이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감면

신선과일, 건조과일, 생화, 건조화(dried flowers), 관상식물, 관상어를 수출하는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소득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식품 냉장유통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냉장실과 냉장 냉동 트럭시설을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식료품의 수집과 처리와 같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개척자격 부여 또는 투자세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규회사

신선농산물용 냉장유통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회사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5년 동안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 100%)에 해당하는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동안 발생한 추가공제 가능 자본지출금액에 대해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가 되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 기존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선 농산물용 냉장유통 시설 및 서비스에 재투자를 하기 위한 기존회사의 재투자 신청서를 접수한 기존의 내국인 소유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70%(권장지역은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동안 발생한 추가공제 가능 자본지출액에 대해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랄(Halal)" 인증과 품질시스템 및 표준인증 취득비용의 이중공제

세계시장에서 말레이시아기업의 "하랄"식품을 비롯한 "하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다음의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경비는 소득세 산정 시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말레이시아 이슬람교개발국(JAKIM)이 발급하는 '하랄'인증과 품질시스템 및 표준인증
- 국제 품질시스템 및 표준인증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교개발국(JAKIM)의 '하랄'인증을 받기 위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JAKIM의 홈페이지 http://www.halaljakim.gov.my/를 참조 요망.

□ 등나무(rattan)와 목재기반제품 수출시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공제

등나무(rattan)와 목재기반제품(제재목과 베니어는 제외)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는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농업부문 관련 다른 인센티브는 18절을 참고하시오.

3)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①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생명공학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받은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사가 수익을 낸 첫 해로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또는
-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투자세 전액 공제혜택. 2006년 9월 21일 발효된 바이오넥서스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는 세금감면기간이 만료된 후 10년간 대상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 20%의 특혜세율을 적용 받는다.
- 바이오넥서스지위를 부여 받은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 원료/컴포넌트,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공제
- 수출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공제
- 2006년 9월 2일부터 생명공학활동을 위한 전용 건물은 10년간 특별산업용건물 공제(IBA)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바이오넥서스지위회사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

2006년 9월 2일부터 바이오넥서스지위를 부여받은 자회사에 투자하는 모회사는 당해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이때에는 당해 자회사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 바이오넥서스지위회사에 대한 회사 또는 개인의 투자

2006년 9월 2일부터 바이오넥서스지위를 부여 받은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 또는 개인은 종자자본 및 초기단계 자금 투자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

□ 생명공학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바이오넥서스지위를 부여 받은 회사가 생명공학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때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 내의 기간 동안 인지세 및 부동산양도소득세(RPGT)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생태관광(eco-tourism)과 농업관광(agro-tourism) 등 관광 프로젝트는 세금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호텔업, 휴가캠프(holiday camp) 건설, 하계캠프 등 휴양 프로젝트, 그리고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시설의 건설이 포함된다.

호텔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 중저가 호텔(관광부가 인가한 3성급 이하의 호텔)의 건설
- 기존 호텔의 확장/시설 현대화

① 호텔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개척자격

개척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의 부분감면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법정소득액의 3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세금감면기간은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한 생산일로부터 개시된다.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 라부안연방지역(Federal Territory of Labuan)과 말레이시아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 개척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하여 제공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자세 공제(ITA)

회사는 개척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세 공제를 부여받은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의 60%(권장지역은 100%)를 공제받는다. 회사는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회사가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의 확장, 현대화 또는 개조 및 보수(renovation) 에 재투자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추가로 한 차례 더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 5년 동안 법정소득세에 대한 70%(권장지역은 100%)의 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 호화유람선업(Luxury Yacht Industry)에 대한 인센티브

호화유람선업은 관광상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호화유람선을 제작하는 회사는 개척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말레이시아 랑카위섬에서 호화유람선 수리와 유지 · 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말레이시아 내에서 호화유람선 용선(傭船)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 해외홍보활동에 대한 이중공제

호텔과 관광사업자(tour operator)는 해외홍보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 외의 지역에서 실시한 홍보와 매스미디어 광고비용
-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홍보책자, 정기간행물과 안내책자의 출판비용과 무료배송비용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에 지출된 비용. 단 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 한한다.
- 광고계약 협상 또는 성사를 위한 해외출장 또는 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무역박람

회, 회의 또는 포럼 참가를 위한 해외출장 시, 지출된 교통비 등의 비용. 단 해외체제기간 중 지출은 숙박비는 1일당 300 링깃, 식비는 1일당 150 링깃을 초과할 수 없다.

- 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무역박람회, 국제회의, 포럼의 개최에 지출된 비용
- 말레이시아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해외영업사무소의 유지관리 비용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된 무역박람회에 대한 이중공제

회사는 또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개최되는 승인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사업자(Tour Operator)에 대한 세금 면제

○ 외국인관광객

항공, 선박, 또는 육상교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를 출입국하는 관광을 포함하여 단체 외국인관광객을 연간 최소 500명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는 당해 관광사업에서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관광부의 인가를 받은 관광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 내국인관광객

국내 패키지여행으로 연간 최소 1200명의 내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회사는 당해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여기에서 국내 패키지여행이란 항공, 육상 또는 해상교통편을 이용하여 내국인관광객(외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은 제외)들이 참여하는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관광패키지로서 최소 1박의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인센티브는 2011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와 무역박람회의 주최에 대한 세금 면제

- 국제회의의 말레이시아 유치를 촉진하는 내국기업으로서 500인 이상의 외국인 참가자를 유치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말레이시아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전시회의 주관운영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당해 무역전시회는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당해 업체는 연간 500명 이상의 외국인방문객을 유치해야 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공연에 대한 공제

음악단체 또는 문화단체를 홍보 운영하거나 관광부가 승인한 국내/해외 문화공연을 후원하는 회사는 이로 인한 지출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예술, 문화와 유산의 공연 및 전시에 대한 민간부문의 후원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공연 및 전시의 후원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공제액 한도는 30만 링깃에서 50만 링깃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해외 수입 공연 및 전시 후원금에 대한 공제액 한도는 연간 20만 링깃으로 계속 유지된다. 이 공제 제도는 2007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대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관광객을 위한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국민차(national cars) 구매에 대해 국내소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006년 9월 2일부터 관광객들이 오지탐험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는 국내에서 조립 · 생산된 사륜구동차량에 대해서도 국내

소비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환경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①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10년간 전액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ITA).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성 유해폐기물의 보관, 처리 및 폐기에 대한 인센티브

독성 유해폐기물의 보관,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적절한 시설 구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통합된 방식으로 독성 유해폐기물을 직접 보관, 처리, 폐기하는 업체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5년간 법정소득액의 70%, 권장지역은 100%에 해당하는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손실액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다음 개척사업소득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5년 동안 발생한 추가 공제가능 자본지출액에 대해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

자세 공제가 이루어지며,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 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는 개척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폐기물 재활용활동에는 농업폐기물 또는 농업부산물의 재생이용, 화학제품의 재생이용과 재생목재를 원료로 한 패널판지(panel boards) 또는 제품의 생산활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자격이 주어진다.

- 5년 동안 법정소득액의 70%, 권장지역은 100%에 해당하는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손실액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다음 개척사업소득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동안 발생한 추가공제 가능 자본지출액에 대해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가 이루어지며,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 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를 위한 가속자본공제

환경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해 40%의 초기 공제와 연간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년 내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회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회사로서 현장 또는 다른 곳에 자체발생 폐기물의 보관, 처리, 처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
- 폐기물 재활용활동을 시행하는 회사

자체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추가로 상각기간을 1년으로 단축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하며 에너지, 용수 & 통신부(Ministry of Energy, Water and Communications Malaysia)가 발급한 당해 기계가 전적으로 에너지 절약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① 에너지 절약을 제공하는 회사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경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10년간 법정 소득액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한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② 회사 자체 소비용 에너지의 절약을 실천하는 회사

회사 자체 소비용 에너지의 절약을 실천하는 회사도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재생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바이오매스, 수력전기(10 메가와트 이하) 및 태양열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10년간 법정소득액의 100%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07년 9월 8일부터 같은 그룹내 다른 회사들은 어느 한 기업이 위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된다.

이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한 '바이오매스에너지원'의 정의는 야자유공장/농장의

폐기물, 미곡도정공장폐기물(rice mill waste), 사탕수수공장폐기물, 목재/제재소폐기물, 종이재활용공장폐기물, 생활폐기물과 바이오가스[매립식 쓰레기처리, 야자유공장의 액체폐기물(POME), 축산폐기물 등에서 생성되는 가스]로 하며, 에너지형태의 정의는 전기, 증기, 냉수(chilled water)와 열로 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자체소비를 위한 재생가능 에너지 발생에 대한 인센티브

2007년 9월 8일부터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으로 에너지를 발생하여 자체 소비하는 회사는 5년 내 발생한 공제 가능한 자본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IT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이 자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적격 장비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서 정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9)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1986년 투자진흥법상에서 연구개발(R&D)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소재, 장치, 제품, 생산물 또는 공정의 생산 또는 개선을 위해 연구결과를 이용할 목적으로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시행되는 체계적 또는 집중적인 연구로 다음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제품의 품질관리 또는 소재, 장치, 제품 또는 생산물의 통상적인 시험
-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
- 통상적인 데이터 수집

- 효율성조사 또는 경영연구
- 시장조사 또는 판매 촉진

말레이시아의 보다 통합된 R&D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제품의 설계(design), 개발 및 시제품 제작(prototyping)을 영위하는 회사도 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계약R&D회사

계약R&D회사, 즉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외의 다른 회사에 R&D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10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사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R&D회사

R&D회사, 즉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R&D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R&D회사가 투자세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R&D회사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요건: 계약R&D회사와 R&D회사가 각종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행하는 연구가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것이며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것
  - 회사 수입에서 R&D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 것
  - 제조업기반의 R&D의 경우 적정자격을 갖추고 연구기술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 회사 전체 인력의 50% 이상일 것
  - 농업기반의 R&D의 경우 적정자격을 갖추고 연구기술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 회사 전체 인력의 5% 이상일 것

□ 사내(社內) 자체 연구개발

사업 발전을 위해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하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50%의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차 인센티브

상기 기재된 R&D 회사/활동은 한 차례 더 5년간의 개척자격 부여 또는 10년간의 투자세 공제 혜택 중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공공부문 연구개발의 상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연구기관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연구성과에 대한 상업화에 착수한 자회사에 투자한 회사는 자회사에 투자한 액수에 상당하는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다. 또한
- 연구성과에 대한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법정소득액에 대한 소득세가 10년간 전액 면제되는 개척자격을 부여받는다.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상기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말레이시아인이 투자 회사(지주회사; holding company)와 상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의 지분 7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 투자회사가 연구결과를 상업화하는 회사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해야 한다.
- 인센티브 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연구결과가 상업화되어야 한다.

②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 연구개발에 대한 이중공제

- 회사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자본적 지출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승인된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또는 승인된 연구소, 승인된 연구회사, R&D회사 또는 계약R&D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척자격을 부여받은 회사에 대한 세금면제기간 동안 발생하는 승인된 R&D지출은 세금면제기간 만료 후 누적 및 공제받을 수 있다.

- 말레이시아인 직원의 훈련 등 해외에서 수행된 R&D활동에 대한 지출액에 대한 이중 공제는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원의 연구결과 상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둔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원들은 연구결과의 상업화로 얻은 소득에 대해 5년간 50%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연구는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① 의료기기 시험연구소에 대한 인센티브

의료기기 시험연구소는 현지 제작된 의료기기가 품질이 높고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서비스로 간주되고 있다.

□ 신규 의료기기 시험연구소에 투자하는 회사

2007년 9월 8일부터 신규연구소를 설립하려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의 자격이 주어진다.

- 법정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5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회사 수입에 대해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 가능한 자본 관련 지출액에 대하여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 기존 의료기기 시험연구소 환경을 개선하는 회사

2007년 9월 8일부터 기존 연구소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 관련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자본적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인적자원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 투자세 공제

기술 또는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 회사는 10년간 100%의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술 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존회사도 훈련장비의 개량 또는 시설 및 훈련능력의 확충으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이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05년 10월 1일부터 이 인센티브의 대상기관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 과학분야의 민간고등교육기관(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HEIs) 및

- 훈련장비의 현대화 및 훈련역량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에 착수하는 과학분야의 기존 민간 고등교육기관((PHEIs)

신청적격 과학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생명공학기술
  -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 식물 생명공학기술
  - 식품 생명공학기술
  - 산업·환경 생명공학기술
  - 제약 생명공학기술
  - 생물정보학 생명공학기술
- 의학 및 보건학
  - 노인의학
  - 임상의학
  - 의료생명과학
  - 생화학유전학
  - 환경보건학
  - 지역사회보건학
- 분자생물학
  - 면역학
  - 면역유전학
  - 면역생물학
- 재료과학 및 기술
- 식품과학 및 기술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 특별산업용건물 공제

승인된 산업, 기술 또는 직업훈련에 사용된 건물에 지출이 발생한 회사들은 건물의 건립 및 구입 시 발생하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특별산업용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기자재에 대한 세금 면제

승인된 훈련기관과 사내 훈련 프로젝트와 모든 사립고등교육기관도 실험 · 실습실 기자재, 작업실, 방송실, 어학실습실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자재에 대해 수입관세, 판매세, 국내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 면제

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비거주자(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된 교육훈련에 대한 이중공제

인적자원개발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HRDF)에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승인된 교육훈련에 대한 지출에 대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부문의 경우 교육훈련은 사내 훈련시설 또는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제조부문의 경우 교육훈련은 승인된 훈련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이 실시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이중공제가 승인된다.

호텔과 관광업체의 경우 사내 또는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관광업계의 직무기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미취업 졸업생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졸업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부문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위원회(SC)의 감독하에 있는 주식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미취업 졸업생 훈련 프로그램의 참가자에 지급한 수당에 대해 이중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 인센티브 제도에는 당해 회사들의 자체 사내 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이 강화된 인센티브는 2006년 9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공제혜택은 3년간 제공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 전 교육훈련에 대한 공제

사업개시 전 발생한 교육훈련 지출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회사는 훈련생들을 직원으로 고용할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비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공제

회사가 자사 직원이 아닌 거주자에 실무훈련을 실시하여 발생된 지출은 1회에 한해 공제가 고려될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부금에 대한 공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법적 단체에 의해 설립 유지되는 기술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현금 기부는 1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적자원개발기금(HRDF)

제5장 산업인력을 참조 요망.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pproved Service Projects, ASPs) 또는 운송, 통신부문 프로젝트로서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하위사업부문을 이용하는 경우 부여되는 세금감면혜택은 다음과 같다.

①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의한 세금감면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s)를 시행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Section 127)에 따라 5년간 법정소득액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의 85%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10년간 법정소득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967년 소득세법 부칙 7B에 의한 투자공제(IA)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의한 인센티브 대신 1967년 소득세법 부칙 7B(Schedule 7B)에 의한 투자공제(Investment Allowance, IA)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공제(IA)하에서는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액은 법정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으며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에 상계할 수 있다.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은 법정소득액의 85%까지 상계할 수 있다.

국가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액은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 원료/컴포넌트와 기계, 장비, 부품과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 판매세와 국내소비세의 면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 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와 컴포넌트를 수입할 때는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구매한 기계 또는 장비는 판매세와 국내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운송 통신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발전소와 항만운영회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과 소모품

에 대해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① 선박운항에 대한 세금 면제

해운회사가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이 인센티브는 거주자에게만 부여된다. "말레이시아 선박"이라 함은 1952년 상선해운령 개정안(Merchant Shipping Ordinance 1952)에 의거 말레이시아 선박으로 등록된 외항선으로 연락선(ferry), 바지선, 예인선, 보급선, 선원용 선박, 거룻배, 준설선, 어선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선박'에 취업, 승선한 모든 개인이 당해 승선근로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말레이시아선사에 ISO인증 컨테이너선을 용선(임대)함으로써 비거주자가 수령한 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동기와 트레일러 판매세의 면제

컨테이너운송회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동기와 트레일러에 대해서도 판매세 면제가 고려될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SC)에 대한 인센티브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SC)는 현재 말레이시아의 수도이며 경제중심지인 쿠알라룸푸르의 남쪽에 위치한 동서 15㎞ 남북 50㎞의 지역으로, 멀티미디어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 분배,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

MSC지위는 말레이시아정부가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SC)에 참여하여 정보통신기술업(ICT)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멀티미디어 개발공단(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MDeC)을 통해 부여하는 지위이다. MSC지위를 부여받은 기업은 말레이시아정부 보증선언(Bill of Guarantee)에 의해 보장되는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① MSC지위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MSC 사이버시티/사이버센터 즉, 사이버자야, 테크놀로지파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 UPM-MTDC, 페낭 사이버시티-1, 케다 주의 쿨림 하이테크파크, KL 센트럴, 멜라카 국제무역센터 및 MSC사이버포트 조호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MSC지위 멀티미디어 회사, 그리고 사이버시티 외부의 고등교육기관에 소재한 멀티미디어 학부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10년간 법정소득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개척자격 또는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사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 연구개발(R&D)보조금(내국민의 소유지분이 50%를 넘는 MSC지위회사의 경우)에 대한 신청자격 부여

MSC지위신청서는 멀티미디어개발공단(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MDeC)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혜택

- 멀티미디어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종합적인 사이버법(cyberlaws) 체계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 인터넷 무검열

- 세계수준의 물리적 기반시설과 IT 인프라
-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통신요율(telecommunication tariffs)과 서비스
- MSC 내 회사들에 대한 멀티미디어 개발공단(MDeC)의 자문과 서비스
- 고품질의 계획된 도시개발
- 우수한 R&D시설
- 자연친화적이며 보호적인 환경
- 기계, 설비 및 자재에 대한 수입세, 국내 소비세 와 판매세 면제

15) 정보통신기술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 가속자본공제

회사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관련 자산 구입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20%의 초기 공제와 연간 40%의 공제를 제공하는 가속자본공제(ACA)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개발비용은 5년간 매년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운영지출비 공제

회사는 경영 및 생산과정 개선을 목적으로, IT사용과 관련하여 컨설턴트 고용비를 포함해 1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면제

정보통신기술부문회사는 수출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법정소득액에 대해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지식기반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는 생산기반경제로부터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기업들의 지식집약형 활동 투자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일정 회사를 대상으로 "전략적 지식기반지위"를 부여한다. 이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식콘텐츠 창출 잠재력
- 고부가가치사업
- 하이테크의 이용
- 다수의 지식근로자 고용
- 전사적 지식기반 마스터플랜의 보유

"전략적 지식기반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5년간 법정소득액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개척자격.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회사 수입에 대해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5년 내에 발생한 공제대상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은 100%)에 대한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다.

회사가 전사적 지식기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발생한 지출은 소득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의 신청은 전사적 지식기반 마스터플랜이 시행에 들어갈 때 할 수 있다.

17) 제조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다음과 같은 제조업 관련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개척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가 이루어진다.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조달, 창고보관, 배송(운송 및 화물 서비스), 포장 및 세관 통관 등 전체 공급망(supply chain) 관리를 포함하는 통합물류서비스
- 상표개발, 소비자개발, 포장디자인, 광고와 판매촉진을 포함한 통합 시장지원서비스
- 증기, 탈염수 및 산업용 가스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중앙공익설비
- 냉장실, 냉장트럭 및 기타 국내산 신선식료품의 수집, 보관 및 유통 등의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냉장유통시설

□ 개척자격

제조업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는 회사는 5년간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개척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척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은 사업수입에서 차기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자세 공제

회사는 개척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권장지역은 100%)의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를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

을 상계할 수 있다. 상계 후 잔존하는 법정소득액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제조업 관련 서비스부문에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는 18절을 참고하시오.

18) 사업운영본부에 대한 인센티브

승인된 사업운영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OHQs)는 일반적으로 해외사무소 또는 관계회사들에 대해 지역적 국제적으로 공제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말레이시아에 사업운영본부(OHQs)를 설립하는 회사는 사업운영본부(OHQ)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의한 세금 면제 및 편의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국내외의 사무소나 관계회사에 공제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사업운영본부(OHQ)지위 및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따른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운영본부(OHQs)지위의 승인, 인센티브 및 기타 편의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하는 회사는 사업운영본부(OHQs)지위 및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 1965년 회사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에 설립될 것
- 납입자본금이 50만 링깃 이상일 것
- 연간 총 사업비용(운영지출)이 150만 링깃 이상일 것
- 고위 전문/경영인력이 3인 이상일 것
-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레이시아 국외 관계회사가 3개사 이상일 것
- 모회사 또는 본부 및 기타 관계회사들을 포함하는 해외사업망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것
- 상당수의 유자격 전문, 기능, 보조 인력을 종업원으로 거느리는 회사들로 구성

된 견실한 회사망이 구축되어 있을 것

- 공제대상서비스를 3가지 이상 수행할 것
- 공제대상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일반관리와 행정
  - 사업기획과 조정
  - 원료, 부품과 완제품의 조달의 총괄조정
  - 기술지원과 유지관리
  - 마케팅관리와 판매촉진기획
  - 자료/정보 관리 및 처리
  - 말레이시아 국내외 사무소 또는 관계회사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
  - 말레이시아 국내외 사무소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 말레이시아 국외 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재무 및 자금관리 서비스

- 신용대출의 제공, 외국정부, 말레이시아 국외의 외국은행 또는 외국회사(말레이시아 국내법인 또는 거주기업이 아니어야 함)가 발행한 주식 및 유가증권의 거래 및 투자(채권, 어음, 양도성예금증서와 단기재정증권을 포함한다)
- 라부안의 역외은행이 발행한 외화 표시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및 채권의 거래 또는 투자
- 말레이시아의 지정 은행 또는 라부안의 역외은행의 외화예금투자
- 외화자금을 이용하여 인가받은 딜러 및 라부안의 허가받은 역외은행을 통한 환위험연계매매(hedging)목적의 외환거래 및 금리/통화 스왑(swap)
- 환위험연계매매(hedging)목적의 금융선물계약의 거래/옵션. 단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 네가라 말레이시아은행(BNM)이 승인한 거래소 회원과의 거래에 한한다.

재무 및 자금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은 말레이시아 내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 및 라부안의 역외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사업운영본부(OHQs)회사의 납입자본, 공제대상 활동으로 얻은 누적된 이익금, 또는 사무소의 누적된 이익금, 또는 말레이시아 국외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설립한 사업운영본부(OHQs)는 말레이시아 내 관계회사에 대한 재무 및 자금관리 서비스가 금지된다. 단 당해 관계회사가 1989년 은행 및 금융기관법(BAFIA)에 따른 면허기관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말레이시아 국외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기업금융 자문서비스
  - 관계회사에 대한 말레이시아 링깃화를 제외한 통화 표시 신용관리서비스 제공
  - 관계회사에 대한 말레이시아 링깃화를 제외한 통화 표시 신용대출의 주선
  - 말레이시아 링깃화를 제외한 통화의 금리 또는 통화 스왑(swap)의 주선
  - 사업운영본부(OHQs)회사는 관계회사가 보유한 채권 및/또는 말레이시아 국외 제3자로부터의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팩토링, factoring).
  - 관계회사 상호간에 청구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 대금은 사업운영본부(OHQs)가 재청구할 수 있다(재송장, re-invoicing).
  -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출된 물품에 대한 수출대금을 제외한 관계회사 간의 지급의 사업운영본부(OHQs)에 대한 상계는 자유롭게 허용된다.
  - 사업운영본부(OHQs)는 관계회사에 리스할 목적으로 기계, 장비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리스).
  - 사업운영본부는 당해 관계회사에 다시 리스할 목적으로 관계회사소유의 기계, 장비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판매 후 리스).

□ 지분요건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따라 사업운영본부(OHQs)지위 및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회사는 외국인의 지분소유가 100% 허용된다.

□ 인센티브

승인된 사업운영본부(OHQs)회사는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따라 다음의 수입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년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소득: 사업운영본부(OHQs)회사가 말레이시아 국외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제공한 서비스로 발생한 소득
- 이자소득: 사업운영본부(OHQs)회사가 말레이시아 국외 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제공한 외화대출금의 이자에서 발생한 소득
- 로열티: 말레이시아 국외사무소 또는 관계회사를 대리하여 수행된 R&D활동으로 받은 로열티

세금면제기간 동안 사업운영본부(OHQs)회사가 말레이시아 내 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제공한 공제대상서비스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 당해 소득이 공제대상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전체 소득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 한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의 사업운영본부(OHQs)는 잔여 면제기간 동안 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편의

승인된 사업운영본부(OHQs)에 부여되는 다른 편의는 다음과 같다.

- 외화수출대금을 예치하기 위해 허가받은 역내은행에 익일잔고에 제한이 없는 외화계정(FCA)을 개설할 수 있음.

- 수출대금 외의 외화미수금을 입금받기 위해 허가받은 역내은행, 라부안의 허가받은 역외은행 또는 해외은행에 익일잔고제한이 없는 외화계정(FCA)을 개설할 수 있음
- 원하는 한도의 링깃화 국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운영본부(OHQs)는 대출받은 자금을 거주자에게 대여하거나 거주자를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한 말레이시아 내 허가받은 역내은행, 허가받은 종합금융회사 및 비거주자로부터 원하는 한도의 외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외화자금 또는 외화차입금을 사용하여 액수의 한도 없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목적의 환전 시 국내 신용대출이 없는 때에는 한도 없이 외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국내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1역년당 1천만 링깃까지 환전할 수 있다.
- 국내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전문서비스의 경우 외국은행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업운영본부(OHQs)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용도의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 기계, 설비 및 자제에 대한 수입세, 국내소비세,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사업운영본부(OHQs)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체류일수에 따른 과세소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 파견외국인의 고용

파견외국인의 고용에는 외국인파견직 신청과 고용허가증 신청이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OHQ지위를 신청하는 회사는 주요 직위를 포함해 외국인파견직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납입 자본금이 50만 링깃 이상인 회사에 한하여 회사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진다. 모든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MIDA에서 외국인파견직 신청시, 해당 회사는 고용허가증 신청서를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에 제출해야 한다. 일단 고용허가증이 발급되면, 파견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19)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 국제조달센터(IPCs)

국제조달센터(IPC)는 말레이시아 국내에 설립된 회사로 말레이시아 국내외의 관계회사 그룹 및 비관계회사들을 위해 원료, 부품 및 완제품의 조달과 판매를 수행하며, 이에는 말레이시아 국내 및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과 말레이시아 국내 및 제3국에의 판매가 포함된다.

□ 지역물류센터(RDCs)

지역물류센터(RDC)는 그룹회사들이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 완제품, 컴포넌트와 부품을 말레이시아 국내외의 판매점, 수입업체, 자회사 또는 기타 비관련회사로 배송하기 위한 집하 및 통합배송 거점이다. 이와 부가가치활동에는 대형화물의 개봉, 재포장과 라벨링이 포함된다.

①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 지위의 승인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은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IPC/RDC)의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 1965년 회사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에 설립될 것
- 납입자본금이 50만 링깃 이상일 것
- 연간 총 사업비용(운영지출)이 150만 링깃 이상일 것
- 말레이시아 항만과 공항을 이용할 것
- 사업개시 3년차 연간 매출액이 5천만 링깃 이상일 것

- 국내판매액이 연간 판매액의 20% 이하일 것.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공급되어 생산자 직송(drop shipment) 방식을 통해 다른 국외 목적지로 배송된 물품이 연간 매출액의 30% 이하일 것.

② 지분요건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따라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IPC/RDC)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는 외국인의 지분소유가 100% 허용된다.

③ 인센티브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IPC/RDC) 지위가 승인된 회사는 다음 인센티브의 고려 대상이 된다.

-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따른 10년간 법정소득액에 대한 세금의 전액 면제
- 세금이 면제된 소득에서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은 세금이 면제된다.

ㅁ 적격기준:

전술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IPC/RDC) 지위가 승인된 회사는 다음의 추가기준들도 충족하여야 한다.

- 연간매출액이 1억 링깃 이상일 것.
- 자유지역(FZ) 및 승인된 보세제조창고(LMW)에 대한 판매를 포함한 국내시장 판매분이 총 매출액의 20% 이하일 것. 국내시장 판매분이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판매 초과분은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④ 기타 편의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IPC/RDC) 지위가 승인된 회사는 다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IPC/RDC)의 요건에 의한 외국인파견직의 설치
- 외화수출대금을 예치하기 위해 허가받은 역내은행에 익일잔고에 제한이 없는 외화계정(FCA)을 1계좌 이상 개설할 수 있다.
- 향후 예상매출에 의거하여 수출대금을 선도매도하기 위해 허가받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선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기 전에 재포장, 화물 집하 및 통합을 위해 자유산업지역(FIZs), 자유상업지역(FCZs) 또는 승인된 보세제조창고(LMWs)로 원료, 컴포넌트 또는 완제품을 반입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IPC/RDC)회사의 파견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체류기간에 따른 납입 소득세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⑤ 파견외국인의 고용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IPC/RDC) 지위를 신청하는 회사는 주요 직위를 포함하여 외국인파견직을 신청할 수 있다. 최저 납입자본금이 50만 링깃 이하인 회사에 한하여 외국인파견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외국인파견직 신청 시, 회사는 고용허가증 승인을 받기 위해 고용허가증 신청서를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에 송부하여야 한다. 일단 고용허가증이 승인되면 파견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20) 대표사무소 및 지역사무소에 대한 인센티브

외국인회사의 대표사무소/지역사무소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되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위해 허용된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 사무소들은 전적으로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1965년 회사법에 정한 설립요건이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 등록요건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 대표사무소

승인된 대표사무소는 양국간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고 말레이시아산 물품과 제품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투자 및 사업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 지역사무소

승인된 지역사무소는 외국인회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계열사, 자회사 및 대리점을 통괄 조정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무소는 운영되는 지역 내에서 지정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무소의 설립 및 파견외국인 고용에 대한 승인은 2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① 허용된 활동

승인된 대표/지역사무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사업활동의 기획
- 말레이시아 및 지역 내 투자와 사업기회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또는 타당성조사의 시행
- 원료, 컴포넌트 또는 기타 산업제품의 발굴
- 연구 및 제품개발
- 회사의 계열사, 자회사 및 대리점의 통괄조정센터 역할

② 허용되지 않는 활동

승인된 대표/지역 사무소는 다음의 활동은 할 수 없다.

- 무역(수출입 포함), 사업, 기타 모든 상업적 활동의 영위

- 창고시설의 리스, 상품의 선적/환적 또는 보관은 모두 국내 대리점 또는 국내 배송업체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 외국회사를 대리한 사업계약의 체결 또는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말레이시아 내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지사의 일상업무에 참여하는 행위
- 사업거래의 수행 또는 사업수행을 통한 수입의 획득

③ 지분요건

대표/지역 사무소는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자본주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분 조건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④ 인센티브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파견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체류일수에 따른 과세소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⑤ 파견외국인의 고용

승인된 대표/지역 사무소는 관리직급 및 기술직급에 파견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대표/지역 사무소의 설립 및 외국인파견직의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파견직 승인 즉시 회사는 이들의 고용허가증 승인을 받기 위해 고용허가증 신청서를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에 송부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생활환경을 평가 이해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이 발행한 "말레이시아 내 파견외국인의 생활(Expatriate Living in Malaysia)"을 참조.

21) 기타 인센티브

이 절은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제조업, 농업, 관광, 환경관리,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루고 있다.

① 산업용건물 공제

산업용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는 제조업, 농업, 광업, 기반시설, 연구,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 및 관광부에 등록된 호텔업과 같은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 또는 매입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 제공된다. 대상회사는 10%의 초기 공제와 연간 3%의 공제를 받아 30년에 걸쳐 지출액 전액을 상각할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MSC 내 건물에 대한 산업용건물 공제

사이버자야 내에 MSC지위 회사들이 사용할 건물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사이버자야 내에서 MSC지위회사들이 입주한 신축건물의 소유자들에 대해 10년간 산업용건물 공제(IBA)가 제공된다. 대상 신축건물에는 준공은 되었으나 아직 MSC지 회사들이 입주하지 않은 건물도 포함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공제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한 회사는 100%의 기반시설공제(infrastructure allowance)를 받을 수 있다. 대상회사는 제조업, 농업, 호텔업, 관광업 기타 산업/상업 활동을 영위하며 교량, 부두, 항만과 도로 등 모든 영구구조물의 재건축, 연장 또는 개량으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기반시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회사는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공제 후 잔여 법정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수수료의 공제

사업비용의 절감과 기업의 규제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감사수수료 지급으로 발생한 지출은 소득세 산정 시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으로 본다. 이 인센티브는 2006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

신청서는 내국세 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창업투자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현재 창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 companies, VCCs)는 다음의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투자금의 70% 이상을 종자자본, 창업자금 또는 초기단계자금의 형태로 벤처회사(venture companies, VCs)에 투자한 경우 10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 벤처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세 공제

단, 2007 과세연도부터 종자자본금 증가를 위해 투자금의 50% 이상을 종자자본, 창업자금 또는 초기단계자금의 형태로 벤처회사(venture companies, VCs)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는 10년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상장기업의 세계시장진출과 세계적 기업과의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부르사말레이시아(Bursa Malaysia)에 상장된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인지세 및 부동산양도소득세(RPGT)가 면제된다. 이 면제 혜택은 2005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권위원회가 승인한 인수합병에 대해 주어지며, 당해 인수합병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소유회사의 인수에 대한 인센티브

국내생산을 위한 선진기술을 취득하거나 국내상품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에서 외국인소유회사를 인수하는 말레이시아인소유회사는 5년간 인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는 말레이시아인소유회사의 조정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공제의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소유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외국에서 특허, 디자인, 모형(models), 설계(plans), 등록상표 또는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소득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 혜택은 해당금액을 5년 동안 매년 20%씩 공제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관세 관련 인센티브

□ 원료/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완제품의 수출 또는 내수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다. 수출용 완제품에 대해서는 원료/부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통상적으로 완전 면제된다. 단 당해 원료/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되나 품질과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내수용 완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와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당해 과세대상 원료/부품으로 만들어질 완제품이 수입관세 대상품목이 아닌 때에도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다.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는 수입이 확인된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완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일체의 공급(Kitting)을 위한 수입의료장비의 관세 면제

국내 의료장비 제조업체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업체가 의료장비 시스템 일체를 공급 또는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단 이때 당해 의료장비는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계와 장비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과세대상이나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수입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판매세

가 완전 면제된다.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완전 면제된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부품과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제조회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예비부품(spares)과 소모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아웃소싱 제조활동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말레이시아 상표 소유자가 제조활동을 아웃소싱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내외 계약생산업체에 의한 완제품 생산 시, 사용된 원료와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의 면제
- 국내 계약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완제품에 사용될 해외 계약생산업체의 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의 면제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MRO) 활동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유지보수, 수리 및 정비업(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을 영위하는 항공우주회사는 원료, 부품, 기계, 장비, 예비부품 및 소모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단 이때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수입품에 대해 OEM회사가 발행한 부품 및 부속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미국의 FAA서식 8130-3호

- 유럽연합의 EASA서식 1호
- 이행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
-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 납품업체가 발급한 증명서
- 판매자증명서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판매세의 면제

1972년 판매세법에 따라 승인된 제조업체는 제조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10만 링깃 미만인 제조업체는 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생산품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들 제조업체도 승인을 받은 다음, 제조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범주의 상품은 투입단계와 생산단계에서 모두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에는 규제물품, 의약품, 유제품(milk products), 납결염색을 한 직물(batik fabrics), 향수, 미용제품 또는 화장품, 사진용 카메라, 손목시계, 펜, 컴퓨터와 컴퓨터주변기기, 컴퓨터부품과 액세서리, 판지 상자/케이스, 인쇄제품, 농업 또는 원예용 분무기, 합판, 재생타이어, 무정전전원공급장치(uninterruptible power system), 기계류와 수출용 제조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물품(포장재 포함)이 포함된다. 신청은 관세국에 할 수 있다.

□ 수입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의 환급

1967년 관세법 제99절, 1972년 판매세법 제29절과 1976년 국내소비세법 제19절에 의거하여 제조업체가 이 법들에 정한 조건에 따라 부품, 원료 또는 포장재를 1년 내에 수출용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입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

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소비세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 중 일부 선정품목에 부과된다. 국내소비세 부과대상물품은 주류, 담배궐련, 자동차, 트럼프용 카드와 마작용 타일이다.

주요 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 또는 허가된 구내(국내소비세 부과대상물품의 경우)로부터 물품이 이동하여 자유지역(FZ), 승인된 보세제조창고(LMW), 랑카위섬 또는 라부안 섬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상품 수출로 간주한다.

신청서는 공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세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 수출 증진에 대한 이중공제

거주기업이 말레이시아의 제조상품, 농산품과 서비스의 수출기회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특정 지출은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해외광고, 선전 및 홍보활동
- 배송비용을 포함한 상품견본(samples)의 해외공급
- 수출시장조사
- 상품의 해외공급을 위한 입찰 준비
- 기술적 정보의 해외공급
- 무역/산업전시회, 가상무역전시회(virtual trade show)와 무역포탈(trade portals)에의 전시 및 참가비용과 회사직원의 업무상 해외출장 시 교통비
- 업무상 해외출장 중인 회사대표의 숙박비(1일당 300 링깃 한도)와 식비(1일당 150 링깃)

- 수출품 판촉을 위한 해외 판매사무소와 창고의 유지관리
- 수출품 포장디자인 전문가의 고용, 단 회사가 국내 전문서비스를 이용한 때에 한한다.
- 입찰목적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단 입찰목적으로 확인된 것에 한한다.
-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건축공학모델, 투시도면(perspective drawings), 및 3-D 애니메이션 준비. 이는 2005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된 무역 또는 산업 전시회의 참가
- 해외에 소재한 말레이시아 상설 무역전시센터에서 개최된 전시회 참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등록된 파트너십과 단독소유기업도 상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들 회사가 상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법률서비스
- 회계서비스(세무와 경영자문서비스도 포함된다)
- 건축서비스(단지계획과 조경서비스도 포함된다)
- 토목건설 및 통합적 토목건설 서비스(감정평가 및 적산(quantity surveying)도 포함된다)
- 의료 및 치과 서비스

개척자격기업은 개척자격 기간 만료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도 이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수출품 판촉에 대한 단일공제

거주기업이 말레이시아의 제조상품, 농산품과 서비스의 수출기회를 창출하는 활동

으로 발생한 특정 지출은 단일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출은 다음과 같다.

- 특허권, 등록상표와 제품인가서(product licensing)의 해외등록
- 말레이시아에 초청받은 잠재수입업체에 제공한 호텔숙박비(3박 한도)

□ 수출신용보험료에 대한 이중공제

수출신용보험료 납부액은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보세창고에 대한 특별산업용건물 공제

수출용 상품과 재수출용 상품의 보관창고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연간 10%의 특별산업용건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제조업체가 자사 상품을 사바 주와 사라왁 주로부터 말레이시아반도의 항구로 해상 운송할 경우, 화물운송료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로제타넷(RosettaNet)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로제타넷은 전 세계 공급업체들 간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관리, 연결하기 위한 개방형 전자상거래 메시지 교환방식의 표준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제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제타넷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회사들이 로제타넷 말레이시아의 관리와 운영 및 국내 중소기업의 로제타넷 채택 지원에 지출한 비용과 기증에 대해 소득세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지출과 기증에는 장비(컴퓨터와 서버)의 기증과 로제타넷 말레이시아의 관리를 위한 상근직원의 급여,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기증,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의 공유, 국내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로제타넷 사용법 교육이 포함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말레이시아상표 판촉에 대한 이중공제

말레이시아상표를 육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상표의 등록된 소유권자인 회사 또는 이와 같은 그룹 내 회사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때에 한하여 당해 상표광고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말레이시아상표의 등록된 소유권자가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
- 한 과세연도에 1개 회사만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당해 제품이 수출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환경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환경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는 당해 장비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에 대해 40%의 초기공제와 연간 20%의 공제를 받아 3년에 전액을 상각할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환경보호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승인된 단체에 전적으로 환경보호와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기부금은 단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직원주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조업,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와 호텔 관광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관련하여 당해 건물의 건축/매입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특별산업용건물 공제(IBA)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직원용 탁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직원들을 위한 탁아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지출은 당해 지출액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특별산업용건물공제(IBA)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한 탁아시설을 제공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기부금과 기증물에 대해서도 단일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내국세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한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V. 투자 절차

IV. 투자 절차

1. 사전준비 단계

1.1 사업타당성 조사

가. 투자금지업종(Negative List) 여부 확인

나. 말레이시아 국내외시장 조사

다. 합작파트너 선정 및 양해각서 교환

라. 자본금규모(사업규모) 확정

라. 원자재 및 한국인력 수급계획 등

1.2 시장조사 및 말레이시아기업 신용조사

회사명	BRIS Information Services Sdn Bhd		
개 요	BRIS Information Services Sdn Bhd는 기업 및 소비자 신용정보 사로, 말레이시아에 투명한 신용사회를 정착하는데 기여함. 기업 및 소비자가 일상적인 업무거래 시 신용조사를 필수요건으로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신용거래확립을 목표로 함.		
경영진	Rating Agency Malaysia Bhd, DP Information Network Pte Ltd (DP Info) Basis Holdings Sdn Bhd		
주 소	22-24, Lorong Medan Tuanku 1, Off Jalan Tuanku Abdul Rahman, 5030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2615-1128	Fax	603-2691-5281/603-2698-9981
E-mail	customer@bris.com.my	Website	http:/www.webbest.bris.com.my
제 공 서비스	• 신용정보조사 • 무역회사서비스 다양한 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산업용 특정 신용데이터베이스 관리 • 비상사태 감시서비스 고객 관련 정보 중 소송, 채무불이행 및 기타 변경사항 보고 • 회사조사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의 소유권 및 재무 관련 법적 정보 제공 • 파산조사 개인회사 및 기업의 파산상태 조사		

회사명	Aware Tage Research		
개요	Aware Tage Research는 시장조사회사로 고객의 사업목표달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경영진	Lek Tan(Research Analyst) Lily Wong(Senior Consultant) Kim Tay(Senior Consultant) Brian Bong(Project Manager) Rosman(Field Manager)		
담당자	Lek Tan (Research Analyst)		
주소	Unit 7A, Level 2 Central Station Kuala Lumpur (Mail Box: 50) 5047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2260-1028	Fax	603-2260-1029
E-mail	lektan@awaretage.com	Website	www.awaretage.com
제공 서비스	• 산업조사서비스 다양한 분야의 산업구조, 개요, 최근 동향 및 관련 통계자료 제공 • 상품추적서비스 할인마트의 신규 및 기존 상품 추적서비스, 판매 및 유통 구조, 브랜드별 소비자행동패턴 조사 • 소비자시장조사서비스 현재 및 잠재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브랜드 인지도 조사, 소비자 선호도 파악		

회사명	Malaysian Institure of Economic Research		
개요	Th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MIER)는 1986년 2월 2일 영업 시작. MIER은 비영리 기관으로 경제, 금융 및 사업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핵심역할 담당		
경영진	Dr.Mohamed Ariff(Executive Director) Tan Sri Dato' Mohd Sheriff Mohd Kassim (Chairman–Projek Lebuhraya Utara–Selatan Berhad) Tan Sri Dato' Abdul Khalid bin Ibrahim , Emeritus Professor Dato' Dr K J Ratnam Datuk Khatijah Ahmad(Chairman and Managing Director – KAF Investment Bank Berhad) Tan Sri Dato' Tan Teong Hean ,Tan Sri Dato' Thong Yaw Hong(Co–Chairman–Public Bank), Tan Sri G K Rama Iyer (Director–Bumiputra–Commerce Bank Berhad)		
담당자	Mr. Dan Percival/Ms. Kala Rani/Ms. Susela Nathan–Thangavelu		
주소	Th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Level 2, Podium, City Point, Jalan Sultan Hishamuddin, PO Box 12160, 50768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 2272–5897/2272–5895/2272–0091 2273–0334/2272–0207	Fax	(603) 2273–0197
E–mail	admin@mier.po.my kala@mier.po.my suzy@mier.po.my	Website	http://www.mier.org.my
제공 서비스	•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 금융 및 사업조사의 핵심업무 수행 • 국내외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고객 요청 경제연구 프로젝트 수행 • 국내외 기타 연구기관과 협력 업무 • 조사업무 결과 발표, 의견교환 장려를 위해 다양한 심포지엄 및 회의 진행 •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기관의 공무원 교육		

2. 설립절차

2.1 현지법인 설립

가. 사업운영방식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 중 어느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단독소유권(sole proprietor)을 가진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소유기업
- 2명 이상(그러나 20명 이하)이 공동소유주(partnership)로서 운영하는 파트너십
- 1965년 회사법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시아 국내설립법인 또는 외국기업으로서 운영

말레이시아의 모든 단독소유기업과 파트너십은 1956년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등록해야 한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들은 자산이 불충분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십 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
  - 주소: 2nd, 10-18th Floor,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622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4047 6000
  - 팩스: (603) 4047 6317

- 웹사이트: www.ssm.com.my
- 이메일: enquiry@ssm.com.my

나. 회사의 설립형태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의 규제를 받는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회사를 명시하고 있다.

- 유한주식회사(회사주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 책임사원의 개인적인 책임이 주식의 액면가와 보유 혹은 인수키로 약정한 주식의 수로 한정된다.
- 유한책임회사(보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 책임사원들이 회사 청산 시 회사정관 및 부속정관에 정한 금액한도 내에서 채무책임을 질것을 보증한다.
- 무한책임회사. 책임사원의 책임에 제한이 없다.

□ 유한주식회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흔한 회사의 설립형태는 유한주식회사이다. 이러한 유한주식회사에는 개인회사(Private companies; Sendirian Berhad, 약칭 Sdn. Bhd.) 또는 주식회사(Public companies; Berhad, 약칭 Bhd.)가 있다.

주식자본을 가진 회사로서 회사정관 및 부속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 때에는 개인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 주식양도권의 제한
- 종업원과 일부 전직종업원을 제외한 책임사원의 수를 50명으로 제한. 단 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및 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었던 전직종업원은 책임사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 주식과 회사채의 공모(公募) 금지
- 회사에의 예탁자금 공모(公募) 금지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또는 개인회사로 설립된 회사도 1965년 회사법 26항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한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주식을 공모(公募)할 수 있다.

- 설립취지서(prospectus)를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등록한다.
- 주식발행 당일 혹은 이전에 설립취지서 사본 1부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제출한다.

주식회사는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KLSE)가 정한 요건에 따라 거래소에서 주식이 매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후속적인 유가증권의 발행(예를 들어, 우선권 또는 보너스 방식의 발행, 또는 인수에 따른 발행 등)은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다. 회사 설립절차

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명칭이 사용 가능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Form 13A신청서를 작성하여 RM30과 함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명칭이 사용 가능하다면 신청이 승인되고, 제안된 회사명은 당해 신청인 앞으로 3개월간 예약된다.

제안된 회사명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예약기간인 3개월 내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정관 및 부속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법규준수진술서(Declaration of Compliance, Form 6)
- 이사 선임 전 이사로 선임될 자에 의한, 또는 법인 설립 전 발기인에 의한 법정 신고서(Statutory Declaration, Form 48A)

회사정관은 회사명, 설립목적, 수권 자본금액(있는 경우) 및 그 금액의 정액주식으로의 분할 등을 명시한다. 회사부속정관은 회사의 내부경영과 사업운영을 관장하는 규정을 기재한다.

일단 설립증서가 발행되면 회사정관에 서명한 자와 기타 때때로 회사의 사원이 될 자들은 유한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소권과 피제소권을 갖는 법인이 된다. 1965년 회사법에 따라 법인은 공동날인되어 계속 승계될 수 있으며, 토지를 보유할 권리와 청산 시 각 책임사원이 회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자산에 기여할 책임을 갖게 된다.

□ 국내법인의 설립요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그 곳에 이 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인감과 문서에는 읽기 쉬운 로마자로 된 회사명과 회사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는 자사주 거래가 금지되며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도 안 된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1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개인회사는 주주들에게 여러 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의 간사(Secretary)는 성년의 자연인으로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회원이거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공인된 회사감사

를 말레이시아의 회사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최소한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소재해야 한다.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자회사의 이사는 통상 70세 이하이어야 하나 반드시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

라. 외국회사의 등록절차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현지법인 등록절차와 동일하며,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 또는 말레이시아 내 CCM지부에 Form 13A를 기입하여 30 링깃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안된 회사명이 사용 가능한 경우 신청이 허가되고 회사명은 3개월간 예약된다.

승인을 얻은 후에 신청인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국에서 발행된 법인설립증서(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문서)의 인증사본
- 회사정관과 부속정관 기타 회사정관을 구성하거나 정의하는 문서의 인증사본
- 이사명부 및 법에서 정한 이들의 신상명세(Form 79)
- 말레이시아인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이사의 권한을 명시한 정관(memorandum)
-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가 받아야 할 소송서류와 통지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하는 임명장(memorandum of appointment) 또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 회사 대리인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법정신고서(Form 80). 회사대리인은 1965년 회사법에 정한 회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소정의 수

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해야 한다.

모든 외국회사는 말레이시아 내에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또는 사업을 개시한지 1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에 등록된 사무소의 현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후 1개월 이내에 연차사업보고서(Annual Return)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기주총 후 2개월 이내에 본사의 대차대조표 사본 1부, 말레이시아 내 사업운영에 사용된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부채에 관한 감사필 자산부채현황표 1부 및 감사필 손익계산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전자등록시스템(E-Lodgment)

'전자서류정리'라고도 하는 전자등록시스템(E-Lodgment)는 정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의 전자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회사 및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말레이시아정부 홈페이지(www.gov.my)와 공공포털사이트(Public Service Portal)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관련 법률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 홈페이지 www.ssm.com.my에서 얻을 수 있다.

2.2 지점 개설

말레이시아에서의 지사 설립절차나 비용은 현지법인 설립보다는 까다로운 편이나 MSC(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지역) 입주예정업체나 IT업체는 용이한 편으로 현재까지 한국의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은 대한항공 등 1 ~ 2개사에 불과하며, 대부분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 지사 설립 절차 】

① 말레이시아 Companies Commission 에 외국인 지사 설립 신청서 제출
-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며 현지 에이전트(법무사) 정보도 제출

② 현지 회사등록 DB 통해 기존 회사명과 중복여부 확인
- 해외 모회사와 지사명이 동일해야 하며, 기존회사명과 중복 시 기존회사의 동의를 거쳐야 회사명 사용 가능

③ 지사 설치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주식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스탬프, 서비스세금을 제외하고 총 RM 9,000 소요

④ 지사승인
- 신청서 제출 후 보통 3주 소요

【 지사 설립 시 제출서류 】

- 모회사 법인등록증 사본
- 모회사 정관
- 말레이시아 지사 사무실 주소
  - 사무실 설립 전의 경우 보통 법무사 주소를 활용
- 에이전트 정보
  - 풀 네임이 기재된 대표자 여권사본,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등
- 등재 이사진 정보
  - 등재 이사의 여권사본,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국적, 직업 등

【 연락사무소(Representive Office) 설립 절차 】

1) 말레이시아 공업개발청(MIDA)에 신청서 제출
 –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활동계획, 모회사 법인등록 정보 운영자금 조달 정보(모회사 혹은 은행, 동남아지역 사무소 등) 기재 필요
2) 신청서 제출과 함께 회사 브로슈어, 최근 모회사의 재무재표, 연락사무소 운영 시 예상되는 각종 지출항목 요약서 등 3개 자료 의무 제출
3) 승인
 – 보통 신청서 제출 후 21~28일 소요
 * 소요비용: RM 7,070 (법무사 수수료 포함)

3. 인수합병 및 합작사업

가. 개요

말레이시아에서의 인수합병과 합작회사 설립 시에는 견실한 금융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규제, 지침 및 권장절차를 따라야 한다. 규제, 지침 및 권장절차란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효율성이 나타나며, 기업이 주주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법적 승인

일반적으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의 성공은 다음 기관들의 승인여부에 달려있다.

- Equity Compliance Unit,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FIC 지침하에)

- 국제산업무역부(Ministry of International Industry and Trade)
- 부르사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Securities)
- 증권위원회(주식공개 매일공시문서)
- 재무부(적용가능 시)
- 인수하는 회사와 인수되는 회사의 임원 및 주주
- 기타 관련 법정 당국

인수합병에서 공기업자산의 매매 및 매입과 관련이 있는 경우, 1993 증권위원회법(Securities Commission Act, SCA) 제32절과 1965 회사법(Companies Act)을 준수해야 한다.

인수과정에서 경영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주식의 규모가 큰 경우, 1993 증권위원회법(Securities Commission Act, SCA) 제33절과 1998 인수합병에 관한 말레이시아 법(Malaysian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 Take-over Code)과 같은 특정 법 및 규제에 의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회사의 남아 있는 모든 주주에게의 인수제안을 통해 인수가 이루어질 때, 인수자는 주주에게 인수제안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주식공개 매일공시문서(Offer document)를 발행한다. 주주는 인수되는 회사의 소유지분만큼 제3사의 현금 또는 지분을 제공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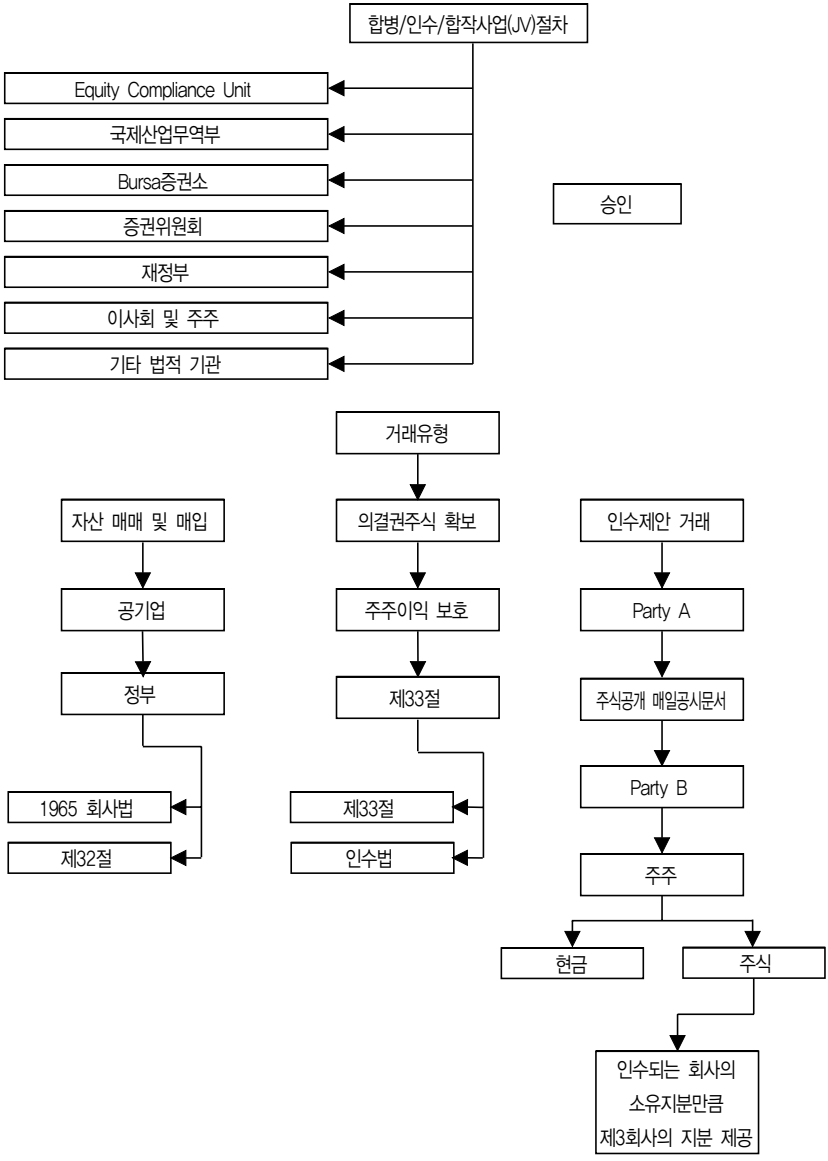
합병/인수/합작사업(JV)절차
Equity Compliance Unit
국제산업무역부
Bursa증권소
증권위원회
재정부
이사회 및 주주
기타 법적 기관
승인
거래유형
자산 매매 및 매입
공기업
정부
1965 회사법
제32절
의결권주식 확보
주주이익 보호
제33절
제33절
인수법
인수제안 거래
Party A
주식공개 매일공시문서
Party B
주주
현금
주식
인수되는 회사의
소유지분만큼
제3회사의 지분 제공

다. 외국인투자위원회(FIC)

1974년 말레이시아정부가 설립한 외국인투자위원회(FIC)는 자산 및 지분 인수, 현지 및 외국인 기업의 합병과 매수 관련 규제지침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소유권 유형과 달리, 제안된 자산 및 지분 인수, 합병 및 매수는 직간접적으로 말레이시아기업이 소유권 및 경영권에 보다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안된 자산 및 지분 인수, 합병 및 매수는 직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경제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말레이시아회사 참여확대(특히 부미푸트라회사의 참여), 소유권, 경영, 수입 분배, 성장, 고용, 수출, 품질, 상품 및 서비스범위, 경제적 다양화, 현지 원자재처리 및 품질향상, 교육, 효율성 및 연구개발 관련 분야
- 제안된 자산 및 지분 인수, 회사 및 기업의 합병 및 매수는 국방, 환경보호 및 지역 발전과 같은 국가정책 측면에서 불리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관련 인수당사자는 제안된 자산 및 지분 인수와 회사 및 기업의 합병, 매수는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과 국가개발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의 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또한 상기 지침은 다음 거래시 적용된다.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회사 고정자산의 제안된 인수
- 자산 및 지분의 제안된 인수와 소유권 혹은 경영권이 외국인 사에게로 인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말레이시아회사의 합병 및 매수
- 단일 및 연합 외국인회사에 의한 15%이상의 의결권, 또는 외국인회사에 의해 말레이시아 회사의 30% 이상의 의결권의 제안된 인수

- 합작사업협정, 경영권협정, 기술보조협정 등을 통한 말레이시아회사 장악
- 말레이시아회사 및 외국인회사에 의한 회사 합병 및 매수
- 말레이시아회사 및 외국인회사에 의한 총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타 자산 및 지분의 제안된 인수

상기지침은 말레이시아정부가 승인한 특정 프로젝트와 다음과 같이 정의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부기관에 의한 인수

정부기관에 의한 인수는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FIC지침에서 제외된다.

- Minister of Finance Incorporated, Menteri Besar Incorporated와 State Secretary Incorporated에 의한 인수

Minister of Finance Incorporated, Menteri Besar Incorporated와 State Secretary Incorporated에 의한 인수 또한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FIC지침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경우 상기 인수자는 FIC지침에 따라 FIC지침의 승인을 획득해야 하므로 상기 당사자의 처분 및 매각은 포함하지 않는다.

- 법률회사, 정부소유회사와 자회사에 의한 인수

법률회사,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소유의 회사와 자회사에 의한 인수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FIC지침에 따라 F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영화된 프로젝트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민영화한 프로젝트는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FIC 지침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민영화된 프로젝트 계약의 당사자 및 당회사만이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타 회사 및 당사자는

정부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FIC 지침에 따라 F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의 정의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소유 회사 및 자회사를 민간분야에 매각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인수자는 FIC지침에 따라 F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인수합병 및 합작사업 거래 관련 주요 쟁점

조건부 매매 및 매입 협정(Conditional Sale and Purchase Agreement) 관련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고려사항
- 선례조건
- 매입가 결정의 기초
- 자금출처
- 인수자 책임의 부채
- 금융관련 추가 공약(commitment)

□ Proposed Mandatory Offer 관련 주요 쟁점

- 고려사항
- 조건
- 보증
- 기간
- 인수대상회사 지위목록 작성
- 자금출처

□ 합작사업협정 관련 주요 쟁점

- 합작사업 구조
- 합작사업 목표
- 각 당사자에 대한 합작사업의 재정적 기여
- 자산 및 근로자를 합작회사로 인계할 당사자 결정 여부
- 합작사업용 지적재산소유권
- 각 당사자의 책임사항 및 차기 절차 등 경영 및 관리
- 부채 및 손익 공유방식
- 공동 경영자 사이의 분쟁해결방식
- 합작사업 철수전략
- 비공개협의

마. 합작사업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한국회사의 사례

- Klang에 위치한 대기업 Acmar International와 Menos 21 Co Ltd의 합작사업을 통해, 한국인 개발업자와 건설회사는 개발가치 15억 링깃에 달하는 D'Rapport@Ampang이라는 최고급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Acmar가 이 프로젝트에서 건축을 담당하는 한편, Menos21은 제품 마케팅과 디자인을 담당하게 된다.
- Sunway City Bhd(Suncity)는 아시아와 유럽의 부동산 투자와 개발 관련 합작연구를 위해 최근 한국의 Daol Trust & Fund Compay Ltd(Daol Fund)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공식 합작사업제휴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1992년 10월 19일에 주식회사가 된 Inokom Corporation Bhd는 납입자본금

100만 링깃으로 Berjaya Group Berhad(35%), Pesumals(M) Sdn Bhd(30%), Renault(15%), Hyundai Motor Company(15%), Hyundai Motor Sdn Bhd(5%)와 합작사업을 하였다. 주요 활동분야는 말레이시아 시장진출용 Inokom 브랜드의 운송수단제조에 착수하여 한국의 Hyundai Motor Company와의 제휴를 실용적으로 이용하였다. 2004년 4월 Sime Darby Corporation은 Hyundai Berjaya Corporation., Hyumal Motor Sdn. Bhd. 와 Inokom Corporation Bhd. 각각 현금 총 168.87만 링깃에 달하는 지분 51%를 인수함으로써 현대기업의 말레이시아 신규 합작사업 파트너로 활동하였다.

- Naza Group Companies(Naza)는 1996년에 한국의 Kia Motors Inc(Kia)와 합작사업제휴를 맺어 기아의 기본방침에 따른 말레이시아시장 진출용 Naza브랜드의 자동차를 제조 및 유통하였다.
- AmInvestment Bank Berhad (AmInvestment)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투자은행업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의 우리 금융그룹dml 일원인 우리투자증권(Woori)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AmInvestment Bank Berhad와 우리투자증권이 각각 확립된 사업 프랜차이즈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다. 해당분야로는 특히 해외 인수합병, 기업공개 참여, 프로젝트 자금조달, 이슬람 법률문서 발행,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와 개인자본을 포함하는 자금경영사업이다. 이 양해각서의 양 당사자는 또한 경제, 금융회사와 금융시장 관련 연구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제휴할 예정이다. 이로써 확실한 의사결정, 다양한 투자은행 거래 및 개혁을 위한 유통범위 확대, 이슬람제품 공급 및 자금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 부지(부동산)인수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례

- Suncity는 Luxury Court Sdn Bhd에 Sunway South Quay의 249-unit 호화 콘도미니엄 프로젝트를 170만 링깃에 매각하였다. Luxury Court Sdn Bhd는 부동산개발업체인 CI Korea와 Daol Fund의 합작회사로서 351억 링깃(107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며, 한국업체로는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부동산경영 전문업체이다.
- IT제조업체 Hanju I & D Co Ltd는 Bukit Jalil에 위치한 Berjaya Group의 Savanna 콘도미니엄의 204 세대를 6400만 링깃에 매입하였다. 당시 전 소유주가 콘도미니엄을 개조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제2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인투자자와 퇴직자에게 재분양 했던 것이다.

4. 말레이시아 투자진출 관련기관

4.1 중앙정부 투자전담기관

□ 투자유치기관(MIDA),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말레이시아의 외국인투자유치기관인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alaysia Industry Development Agency : MIDA)은 통상산업부 산하의 외청으로서 국가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 및 조정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되어 말레이시아 산업정책과 제조업분야 투자유치정책의 입안 및 집행권을 보유한다.

1988년 10월 정부로부터 'CENTER OF INVESTMENT(COI)'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래 제조업과 제조업지원서비스(물류, 조달 등)에 대한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투자상담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우리나라 Invest Korea 내 종합행정지원실과 같이 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서비스센터는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MIDA 소속 행정지원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투자와 관련된 제반절차 및 허가사항 · 서식배포 · 서식작성 요령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에서부터 투자파트너 물색 및 소개, 투자민원처리와 투자실행위원회에 상정할 개별안건 취합 등의 업무까지 수행한다. 한편 주정부도 중앙정부조직인 MIDA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별도조직을 보유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및 서비스 프로젝트를 이행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가장 먼저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은 말레이시아에 제조업 혹은 서비스사업을 설립 ·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본부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 및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걸쳐 16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에는 여러 주(州)에 10개의 사무소를 두어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운영하는데 각종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투자기회를 조사하려는 투자자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서 더 많은 정보와, 투자결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주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활동 】

• 지역 내 외국인투자 유치 조정

각 주정부에는 경제계획국(Economic Planning Unit)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있으며, 산하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두고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절차 안내 및 지역 내 공단 안내, 공장건설에 따른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공단조성 및 분양/운영

주정부는 산하의 주경제개발공사(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또는 민간업체에게 공단조성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위임하여 운영함.

• 공장건설에 따른 제반허가

공장건설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13개 관련 부서 및 기관(소방시설, 수도 및 용수, 환경, 전기·전력, 안전, 통신, 도로, 부동산, 하천관리 등) 전부의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주정부는 이 과정에 대한 조정 및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음.

□ 기본정보

- 주소: Block 4, Plaza Sentral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팩스: (603) 2267-3633/(603) 2274-7970
- 이메일: promotion@mida.gov.my
- 홈페이지: www.mida.gov.my

□ MIDA 한국사무소

- 주소: Mohd. Zukepli Embassy, Counsellor (Investment), Embassy of Malaysia(Investment Section), 17th Floor, SC First Bank Building 100, Gongpyung-dong Jongro-gu Seoul 110-702 Republic of Korea
- 전화: (822) 733 6130 / 6131
- 팩스: (822) 733 6132
- 이메일: midasel@chollian.net

4.2 투자관련 법무법인 및 컨설팅기관

가. 컨설팅회사

□ Price Water House Coopers

- 주소: 11th Floor, Wisma Sime DarbyJalan Raja Laut, 50350 Kuala Lumpur
- 전화: (603) 2693-1077/ 2173-1188
- 팩스: (603) 2693-0997/ 2173- 1288
- 이메일: pwcmsia.info@my.pwc.com
- 웹사이트: http://www.pwc.com/my

□ Ernst & Young

- 주소: 4th Floor, Kompleks AntarabangsaJalan Sultan Ismail, 50250 Kuala Lumpur
- 전화: (6)03.2144 2333
- 팩스: (6)03.2144 0709
- 이메일: -
- 웹사이트: http://www.ey.com

□ KPMG

- 주소: Wisma KPMG Jalan Dungun, Damansara Heights, 50490 Kuala Lumpur
- 전화: (603) 2095 3388
- 팩스: (603) 2095 0971
- 이메일: -
- 웹사이트: http://www.kpmg.com.my

□ Deloitte KassimChan

- 주소: Level 19, SS21/58Damansara Uptown, 47400 Petaling JayaP O Box 1009350704 Kuala Lumpur
- 전화: (603) 7723 6500, (603) 7726 1833
- 팩스: (603) 7726 3986, (603) 7726 8986
- 이메일: myaaa@deloitte.com
- 웹사이트: http://www.deloitte.com/

□ RSM Robert Teo, Kuan & Co.

- 주소: Penthouse, Wisma RKT,No.2, Jalan Raja Abdullah, Off Jalan Sultan Ismail, 5030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697-2888
- 팩스: (603) 2691-7733
- 이메일: robert.teo@rsmi.com.my
- 웹사이트: http://www.rsmi.com.my

□ Utmost Strategic Training Services Sdn Bhd(노무관리 및 컨설팅 담당)

- 주소: Suite 36-4, Jalan 14/48A, Sentul Raya, Off Jalan Sentul, 5100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019-214-8328(H/P)
- 팩스: (603) 8942-8962
- 이메일: utmoststrategic@yahoo.com
- 담당자: Faliq Wahab(Executive)
  Wahab Salleh (HR Advisor, Samsung Group Malaysia)

• 담당자연락처: 016-241-3401/faliqwahab@yahoo.com
016-6165-136/wahabsalleh@yahoo.com

나. 변호사 사무소

□ Shearn Delamore & Co.

• 주소: Kuala Lumpur Office 7th Floor, Wisma Hamzah-Kwong Hing No.1, Leboh Ampang 5010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070-0644
• 팩스: (603) 2078-5625 / (603) 2078-2376
• 이메일: info@shearndelamore.com
• 웹사이트: www.shearndelamore.com.my

□ Skrine

• 주소: Unit No. 50-8-1, 8th Floor, Wisma UOA Damansara 50 Jalan Dungun Damansara Heights 5049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094-8111
• 팩스: (603) 2094-3211
• 이메일: webmaster@skrine.com
• 웹사이트: http://www.skrine.com

다. 인재파견회사

□ Kelly Services

- 주소: Lot13.02 13th, 6Changkat Raja Chulan, Kuala Lumpur 50200.Floor MCB Plaza
- 전화: (603) 2078-8833
- 팩스: (603) 2070-4740
- 이메일: kl@kellyservices.com.my
- 웹사이트: http://www.kellyservices.com

□ Manpower staffing Services (M) Sdn Bhd

- 주소: Suite 20.01, Level 20, Centrepoint South, The Boulevard,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 전화: (603) 2087-0000
- 팩스: (603) 2087-0002
- 이메일: kl@manpower.com.my
- 웹사이트: http://www.manpower.com.my

□ Jobstreet

- 주소: Jobstreet. Com Sd n Bhd Wisma Jobstreet.com 27 Lorong Medan Tuanku 1 (Off Jalan Sultan Ismail) 50300 Kuala Lumpur
- 전화: (603) 2176-0333
- 팩스: (603) 2698-7200
- 이메일: ads-my@jobstreet.com
- 웹사이트: http://www. jobstreet.com.my

라. 부동산중개업소

□ Rahim & Co Real Estate Agents SDN BHD

- 주소: Level 17, Menara UniAsia 1008 Jalan Sultan Ismail 50250 Kuala Lumpur
- 전화: (603)2691-9922/ext. 253/H.P : 016-274-9297(Grace)
- 팩스: (603)2691-0096
- 이메일: gracelee@rahim-co.com/robertang@rahim-co.com
- 웹사이트: http://www.rahim-co.com

□ Jones Lang Wootton

- 주소: 8th Floor, Bangunan Getah Asli(Menara) 148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 전화: (603)2161 2522
- 팩스: (603)2161-8060
- 이메일: sunnylai@jlwmalaysia.com
- 웹사이트: http://www.jlwmalaysia.com

□ KGB-Lambert Smith Hampton

- 주소: 8-9-9, Megan Avenue Ⅱ, 12 Jalan Yap Kwan Seng, 50450 Kuala Lumpur
- 전화: (603)2161-5355
- 팩스: (603)2164-5355, 2164-1355
- 이메일: kgv-lsh@tm.net.my
- 웹사이트: http://www.reality.com.my

마. 기타 유용한 웹사이트

□ 기업정보 열람가능 사이트

- 전화번호부: http://www.yellowpages.com.my
- 기업위원회(CCM/사업자등록하는 기관): http://www.ssm-einfo.com.my
- 기업 신용정보 조회(bris - 45링깃 유료): https://webbest.bris.com.my
- 수퍼페이지: http://www.superpages.com.my

□ 한국 관공서 및 주요업체

-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 http://www.mofat.or.kr/malaysia
- 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 http://korea.net
- 한나 프레스 - http://www.hannahpress.net
- 말레이시아 한인회 - http://www.mykorean.org
- 한나 홈스테이 - http://www.himeducation.com

□ 말레이시아 관공서 및 공공기관

- Immigration Department(이민국) - http://www.imi.gov.my
- Ministry of Foreign Affairs(외무부) - http://www.kin.gov.my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무역통상부)
  - http://www.miti.gov.my
-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투자진흥청)
  - http://www.mida.gov.my
- Bank Negara Malaysia(중앙은행) - http://www.bnm.gov.my
- Export-Import Bank of Malaysia(수출입은행) - http://www.exim.com.my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V. 경영관리

V. 경영관리

1. 초기관리

1.1 직원 파견

가. 파견외국인의 고용

말레이시아정부는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직종에 말레이시아인이 교육훈련을 받아 고용될 것을 희망한다. 따라서 회사조직의 모든 직위에 말레이시아의 다민족구성이 반영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가 보다 많은 말레이시아인 인력을 양성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회사는 훈련된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는 파견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주요 직위", 즉 영구적으로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직책들이 허용된다.

말레이시아의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기술이전과 외국기술의 말레이시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파견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정책을 더욱 자유화하였다. 2003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 파견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새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납입자본금이 미화 2백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체

- 5개의 주요 직위를 포함하여 10개까지 외국인파견직이 자동 승인된다.
- 파견외국인은 임원직에는 최장 10년까지, 비임원직에는 5년까지 고용될 수 있다.

2) 외국인 납입자본금이 미화 20만 달러 이상 2백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체

- 1개 이상의 주요 직위를 포함하여 5개까지 외국인 파견직이 자동 승인된다.
- 파견 외국인은 임원직에는 최장 10년까지, 비임원직에는 5년까지 고용될 수 있다.

3) 외국인 납입자본금이 미화 2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체는 현행 지침에 의거해 주요직위와 한시적 직위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 외국인 납입자본금이 50만 링깃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직위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금액기준은 단지 지침일 뿐이며 허용되는 주요 직위의 수는 신청건별 타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한시적 직위는 전문적인 자격과 실무경력이 요구되는 임원직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술적 능력과 경력이 요구되는 비임원직의 경우 5년까지 파견외국인이 고용될 수 있다. 한시적 직위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인을 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들 내국인으로 대치하여야 한다.
- 허용되는 주요 직위와 한시적 직위의 수는 신청건별 타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말레이시아인 소유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R&D직위 등의 기술직에 외국인의 고용이 자동 승인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활동을 제외하고 제조업부문에 고용된 파견외국인의 연령은 27세 이상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활동에 고용된 파견외국인의 연령은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회사 내에서 한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환 배치된 파견외국인은 새로 고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에는 원래 발급받은 고용허가증에 직위를 변경하여 기재하게 된다. 다른 외국인의 후임으로 고용된 외국인 역시 새로 고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모든 고용허가증은 당해 직위에 대해 승인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주요 직위에 있는 외국인은 고용허가증을 5년마다 갱신한다. 단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여권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 고용주가 요구하는 당해 주요 직위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고용허가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나. 외국인 파견직 신청

제조부문과 관련 서비스부문의 신규 및 기존 회사(확대/다변화를 하지 않는 회사 포함)의 외국인 파견직에 대한 모든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업허가 취득을 면제받은 회사와 제조업허가 취득 대상 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말레이시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제조업, 건설, 서비스(가사고용인, 식당종업원, 환경미화원, 화물취급노동자; 사회복지요양소, 셀프서비스식 세탁소, 섬 리조트의 노동자 및 골프장의 캐디)와 농업부문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반도에 소재한 회사의 모든 신청서는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부문에는 지정된 국적 소지자만이 취업할 수 있다.

국가	부문/활동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건설업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인도	농업, 서비스업(요리사) 및 건설업(고압전선 설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승인은 각각의 신청건별 타당성과 수시로 결정되는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영주권자 중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승인된 취업부문	연간 고용부담금
제조업	1,200 링깃
서비스업	1,200~1,800 링깃
건설업	1,200 링깃
농업	360~540 링깃
가사 고용인	360 링깃

보다 상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출입국관리국(Immigration Department)의 홈페이지 http://www.imi.gov.my에서 얻을 수 있다.

라. 말레이시아 입국

1) 입국시점에 발급되는 허가증

입국 시 유효한 여권과 일시체류를 허용하는 비자(해당되는 경우)를 소지하고 있어서 출입국관리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때에는 사회적 또는 사업상 방문을 위한 방문허가증(Visit Pass)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적 또는/그리고 사업 목적의 입국자에게는 방문허가증(사회)이 발급된다.

- 회사의 회의 또는 세미나, 회사의 회계검사 또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회사의 소유자와 대표
- 사업기회와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투자자 또는 사업가
-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회사의 외국인 대표. 단 당해 제품의 직접 판매 또는 유통을 영위할 목적이 아닐 때에 한한다.
- 자산의 매도, 임대 또는 이를 위한 협상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산소유자
- 말레이시아 내 행사 취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대중매체기관의 기자
- 스포츠행사 참가자

사업 방문허가증은 취업 또는 새 기계설치 또는 공장건설의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2) 말레이시아 도착 후 발급되는 허가증

사회 또는 사업상 방문 목적의 입국신청서를 제외한 하기의 모든 체류허가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입국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들 모든 신청서에는 신청 시 말레이시아 내 보증인이 작성한 당해 체류허가신청자의 말레이시아 체류기간 중 필요한 때에

는 생계와 숙박, 그리고 귀국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체류허가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허가증 (일시취업목적)

일시취업목적의 방문허가증은 4개월 미만 또는 월 소득 3,000 링깃 이하의 직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② 고용허가증

고용허가증은 월 소득 3,000 링깃 이상 2년 이상의 고용계약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③ 방문허가증 (전문직)

전문직 방문허가증은 대행회사와의 단기계약에 의한 직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대상 외국인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예술인
- 영화촬영목적의 입국
- 말레이시아정부의 인정을 받은 연구원
- 국제단체의 회원
- 자원봉사자
- 초청받은 강연자/연설자
- 종교적 목적의 입국
- 기계/컴퓨터 설치 또는 유지보수의 전문가
- 훈련생 또는 기술 훈련생(호텔 및 리조트에서는 관리 훈련생)

이 방문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1회에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청서는 해당 대행회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④ 부양가족허가증

부양가족허가증은 고용허가증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된다. 이 허가증의 신청은 고용허가증 신청 시 동시에 하거나 고용허가증이 발급된 후에 할 수 있다. 방문허가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일시취업 또는 전문직)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허가증(사회)이 발급된다.

⑤ 말레이시아국민의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고용허가증(배우자 프로그램)

1996년 2월 13일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말레이시아 내 취업의사가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는 외국인배우자들이 말레이시아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도 일치한다.

□ 신청자격

- 말레이시아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유효한 관련 비자(해당되는 경우)를 소지할 것
- 말레이시아 법에 따른 합법적인 결혼관계일 것
- 신청자는 유효한 정규직 채용제의를 받은 상태일 것. 단, 자영업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없다.
- 교육 또는 보건 분야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신청자는 각각 교육부 또는 보건부와 같은 해당 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모든 신청서는 아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민국 본부의 고용허가부 (Employment Pass Division) 또는
- 주 이민사무소 (State Immigration Offices)

⑥ 학생허가증

학생허가증은 승인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등록된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1.2 금융, 전기, 통신, 용수 신청

사업	기관	연락처	웹사이트	비고
용수	Syarikat Bekalan Air Selangor (Kuala Lumpur and Selangor state)	603 2282 6244	www.syabas.com.my	주 마다 기관이 각각 있음
전기	Tenaga National Berhad	603 2296 5566	www.tnb.com.my	
금융	Maybank	603 7844 3696	www.maybank2u.com.my	현지 어느 은행에서나 신청 가능
통신	Telecom Malaysia	603 240 9494	www.tm.com.my	인터넷폰도 신청 가능
가스	Gas Malaysia Sdn Bhd	603 5192 3000	www.gasmalaysia.com	

2. 지적재산권

2.1 개요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허권, 등록상표권, 산업디자인권, 저작권(Copyright), 지리적표시권과 집적회로설계권 등으로 구성된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적 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에 조인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조인하였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법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내외국인투자자들에게 공히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2.2 특허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특허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특허법에서도,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

으며, 각 주체가 사용할 경우 1회에 5년씩 2회에 걸쳐 추가로 연속하여 갱신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TRIPS협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 대상범위 내 특허제품에 대해 이 법은 이미 타국에 판매되고 있는 특허제품의 수입(병행수입권)을 허용한다. 정부는 공공질서나 사회도덕에 반하는 경우 특허의 상업적 이용을 금할 수 있다. 또한 동법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의 규정을 반영하여 강제실시허가 대상범위 내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006년에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였고, 2006년 8월 16일 이 조약이 말레이시아에서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MyIPO)에서 PCT절차에 따라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3 등록상표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등록상표법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한다.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그로부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사용 또는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

TRIPS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상품의 국내수입을 금지하는 국경조치를 법으로 규정해두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 9월 28일 발효된 니스와 비엔나 협정(Nice and Vienna Agreement)에 가입했다. 니스협정은 상표등록을 목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에 관한 것이다. 반면, 비엔나협정은 상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상표에 대한 분류항목을 설정한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등록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출원인은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상표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2.4 산업디자인

말레이시아에서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의 보호는 1996년 산업디자인법과 1999년 산업디자인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산업디자인법은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가능한 산업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에 기초하여 창작된 산업디자인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산업디자인등록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디자인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산업디자인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산업디자인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2.5 저작권(Copyright)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해 포괄적인 보호를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성격, 보호의 범위와 보호방식을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는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으로 하며,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간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한 그 다음 역년의 시작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법의 강제집행을 위한 규정을 삽입하였다는 점이다. 2003년 10월 1일에 발효된 1987 저작권법 수정안은 국내거래 및 소비자 업무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의 집행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속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영장없이 구속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MDTCA의 특별팀은 저작권침해 복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당해 복제물과 복제장치를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2.6 집적회로 설계

2000년 집적회로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등록하지 않는다.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

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이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 시, 배치설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배치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이 법은 TRIPS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의 기술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7 지리적 표시

2004년 지리적 표시법은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명칭을 딴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 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포도주, 주정, 자연물, 농산물, 수공예품과 같은 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질서와 사회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에 문의(연락처에 관한 사항은 주소 – 유관기관 참조)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myipo.gov.my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3. 노무관리

3.1 고용 및 해고

고용이라 함은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고용상태를 해지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용은 쉬우나 해고는 어렵다. 말레이시아의 노동법은 노동자가 고용된 기간 동안 착취나 차별 및 희생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망을 갖추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Malaysia)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노동법은 아래와 같다.

1) 고용법 1955(Employment Act, 1955)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어린이 및 청소년 고용법 1966(Children and Young Person(Employment Act 1966))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14세와 16세 사이의 청소년 고용 금지와 보호 관련 조항이다.
3) 외국인 노동자 보상계획(Workmen Compensation Scheme for Foreign Workers)
   이 규정은 외국인노동자가 작업하는 도중에 발생한 산재에 대한 보상을 다루고 있다.
4) 고용인 사회보장법 1991(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1991)
   내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을 다루고 있다.

5)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52)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6) 직업안정법 1967(Occupational Safety Act, 1967)과 공장 및 기계법 1967 (Factories and machinery Act, 1967)

실업에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보장에 관해 다루고 있다.

7) 산업 관계법 1967(Industrial Relation Act, 1967)

산업철수와 관련하여 산업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8) 인적자원개발법 2001(Human Resource Development Bhd Act, 2001)

특정 산업분야에서 교육비용으로 이 기관에 급여의 1%를 납부하는 것에 관해 다루고 있다.

9) 산업법원

단체협약을 포함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실업자들의 취업을 위해 노동부는 Electronic Labour Exchange라고 불리는 온라인 취업신청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구직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서 취업신청을 하는 동시에 인터뷰 등을 할 수도 있다.

고용법을 준수하지 않고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산업관계법은 만약 본인이 고용주로부터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여길 경우 산업관계부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법 1955는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해 해고를 포함한 어떤 징계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의심이 갈 만한 잘못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산업법원은 판결을 위해 인력자원부에서 참조한 케이스들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법 1955는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비롯한 기타 모든 권리사항들

에 대해 노동자가 노동부에 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견청취와 판정을 위해 노동법원으로 탄원내용이 이첩된다.

3.2 말레이시아 고용법

가. 고용법 1955

고용법 1955는 노동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계약을 맺은 모든 고용인에게 적용된다.

1) 직업에 관계없이 1500 링깃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
2) 임금에 상관없이 숙련된 노동자나 견습생을 포함하여 수공업에 종사하는 자
3) 수공업 관련 업종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자
4) 기계추진식 자동차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5)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선박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영국 상업해운법(Merchant Shipping Act)에 따라 인증된 선장, 항해사 등 고급선원이 아닌 자
   - 상업해운조례 1952(Merchant Shipping Ordinance 1952) 7부에 명시된 바대로 국내에서 인증된 임대인이 아니거나
   - 상업해운조례 1952 3부에 따른 협약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국내에서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자

고용법에 의해 보장된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휴무일

모든 고용인들은 고용주가 지정한 날짜에 따라, 매주 최소 하루의 휴무일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고용인이 휴일근무를 할 경우, 반일 이하를 근무하면 일일급여의 반을, 하루 이하 반일 이상 근무하면 일일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근무시간

고용인들은 근무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

- 30분 미만의 휴식시간으로 5시간 이상 근무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연장
- 주당 48시간 이상의 근무

□ 공휴일

모든 고용인은 정부에서 지정한 아래 4대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다.

- 말레이시아 독립기념일(Malaysian National Day)
- 국왕 생일(Birthday of King)
- 군주/술탄/주지사의 생일
- 노동절(Workers/Labour Day)

□ 정기 휴가

고용인들은 아래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 같은 고용주로부터 2년 미만의 근무를 한 경우에는 매 12개월 당 8일

- 2년 이상 5년 이하 근속한 경우에는 매 12개월 당 12일
-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매 12개월 당 16일

□ 병가

고용인들은 고용주들의 경험에 기초한 아래와 같은 판단 후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 고용주가 지정한 등록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또는
- 만약 지정된 의사가 없을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합리적인 시간이나 거리를 따져볼 때 지정된 의사에게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등록된 의사나 기타 의료계 종사자의 진단에 따라 유급병가를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2년 이하 근속한 고용인이 연간 가능한 병가일수는 14일
  - 2년 이상 5년 이하 근속한 고용인의 연간 가능한 병가일수는 18일
  - 5년 이상 근속한 고용인이 연간 가능한 병가일수는 22일
  - 의사나 기타 의료계 종사자들로부터 인증 받은 경우 연간 입원 가능일수는 60일

□ 연장근무

연장근무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정상근무일은 계약서에 합의된 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매달 고용인이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무시간은 104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인은 한 달에 104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연장근무하는 고용인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정상근무일의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는 정상시급 기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 휴가일근무에 대한 급여는 정상시급 기준으로 2배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 법정공휴일근무에 대한 급여는 시급의 3배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 출산 /육아 휴가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근로자들은 60일 이상의 출산/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육아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이 넘는 기간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급 출산/육아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용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임신기간 중에 같은 고용주에 고용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출산 4개월 전에는 고용된 상태이어야 한다.
- 아이가 5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고 출산수당은 급여일로부터 7일내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용법에 지정된 사항에 따라 모든 고용주들은 여성 고용인들의 유급 출산 휴가나 및 등록된 의사의 확인에 따라 출산휴가기간, 그리고 산후 90일 동안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고용주가 관련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고용주는 다른 고용주로부터 일정 비율(고용인이 임신기간 중 근무한 전체 근무일수에서 다른 고용주에게 근무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출산의 정의 : “출산”이라고 함은 최소 28주의 임신을 통해 사망여부에 관계없이 신생아를 분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출산행위는 신생아의 실제 출생날짜에 따라 종료되며 둘 이상의 신생아인 경우에는 출산행위를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날짜에 따라 출산이 종료된다.

나. 고소와 조사(Complaints and inquires)

노동부 감독관(director general of Labour)은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의 급여나 아래와 같은 현금지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해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조건
-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조항이나 하부 법규의 근거
- 어떤 결정에 따른 이행이 지정된 문서에 따라 금액의 제한 없이 고용주가 일정 금액의 지급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의미하는 경우.

□ 고소에 따른 조사에 있어서 노동부 감독관의 부가권한

고용법 1955의 적용범위에 추가적으로, 임금이 1500 링깃 이상 5000 링깃 미만의 고용인들도 노동부 감독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정부공고와 기타 정보에 대한 의무

1) 상업, 무역, 전문직종과 관련된 어떤 사업, 농업이나 산업분야를 인수 혹은 설립하려 제안하는 고용주
2) 인수 혹은 설립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 · 인수하려는 제안을 한 고용주
3)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의 이름이나 장소를 변경하거나, 사업 시작 및 인수 후 90일 이내로 직원을 고용했거나, 하려는 고용주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과 함께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등록된 이름 및 주소, 사업 내용
- 관리자 혹은 책임자 성명
- 직종과 설립 시 채용된 전체 고용인 숫자

□ 법률 위반 및 형벌

고용법을 위반한 고용주는 법정에서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에 따른 대부분의 벌금은 회당 5,000 링깃에서 10,000 링깃 사이이다.

3.3 고용계약

고용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고용법 1955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간부나 매니저 지위 같이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고용계약이나 서비스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입
- 조합의 간부 여부에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 노동조합법 1959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

어떤 특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한달을 초과하는 고용계약의 경우, 즉 업무 완료를 위해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한 달을 초과하거나 초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언급해야 한다. 이 계약은 고용인과 고용주 양자에 대한 계약종료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 진행을 위한 특정 부분에 대한 고용계약은 계약해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3.4 고용계약 해지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그러한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알려야 한다.

1) 사전통보 없는 계약 해지: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통보규정이 없는 경우, 통보기한이나 통보유효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계약 해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특정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 규정을 고용인이 위반(이유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고용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해고
-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위
-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해 고용인을 징계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기준에 의거한 임금을 지급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고용주가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관계는 파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연속으로 이틀을 결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의 계약관계는 파기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결근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

거나 고용주에게 미리 알렸거나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 또는 결근에 대해 사전에 알려줄 기회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로 처리한다.

3.5 외국인 고용계약/외국인노동자 고용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고용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외국인주재자
- 반숙련/비숙련 외국인노동자
- 가사노동자

□ 외국인주재자

아래는 외국인주재자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1) 해외 납입자본이 미화 2백만 달러 이상인 회사의 경우, 자동적으로 주요 직위를 포함하여 외국인주재원 5명을 둘 수 있으며, 더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가능하다.

2) 해외 납입자본이 미화 2백만 달러 미만인 회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외국인주재원을 둘 수 있다.

- 주요직위에 외국인주재원을 둘 경우, 납입자본금이 최소 50만 링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은 단지 가이드라인이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주재원 수는 달라질 수 있다.
- 전문적인 능력이나 경험이 필요한 임원직의 경우에는 외국주재원이 최고 10년까

지 근무할 수 있으며, 기간 결정 여부는 말레이시아인이 그 자리를 위해 훈련이 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 기술적인 능력이나 경험이 필요한 비임원직의 경우에는 외국인주재원을 최고 5년까지 둘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말레이시아인이 그 자리를 위해 훈련되는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인 주재원의 고용에 관련된 기타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같은 회사에서 외국인주재자가 부서이동만 하는 경우, 새로 고용인패스(employment pass)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부서이동에 따른 변동사항만 수정하면 된다.
- 새 외국인주재원이 기존의 주재원을 대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 고용인패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 모든 고용인패스는 등록된 직위에 대해 승인된 기간만큼만 유효하다. 그러나 주요 직위자의 경우에는 5년마다 고용인패스를 갱신할 수 있다. 모든 고용인패스 소지자는 고용인패스 유효기간에 상응하는 다목적입국비자(multiple entry visas)를 발급받게 된다.

주요 직위자와 임원 및 비임원의 고용인패스는 프로젝트를 승인받기 위한 회사의 신청과 동시에 말레이이시아 산업개발청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제안한 회사
-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신규 품목 생산을 제안한 기존 회사, 그리고
- 프로젝트 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를 제안한 기존 회사.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주재원 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하고 있다.

- 담당: The Director General
- 주소: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6th Floor, Wisma Damansara Jalan Semantan 50490 Kuala Lumpur
- 전화: (03) 2095 3633
- 팩스: (03) 2095 7970
- 이메일: promotion@mida.gov.my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회사에서 외국인이 주재원 증원신청을 할 경우, 쿠알라룸푸르 이민국을 통해 Standing Committee for Malaysianisation and Foreign Labour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담당: Secretary, Standing Committee for Malaysianisation and Foreign Labor Immigration Head Office Putrajaya Federal Teritory

최근 이민국은 다수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주재원의 부인들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근무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최소 3년 이상 social visit pass로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한 외국인주재원의 부인들은 더 이상 노동허가증(work permit) 신청을 해야 할 불편 없이 직업을 구할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영주권 없이는 노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듯이, 기존에는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용주로부터 고용 상태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 반숙련 /미숙련 외국인노동자

반숙련 및 미숙련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 플랜테이션산업
- 건설업
- 제조업
- 서비스업(가사노동자, 주유원, 슈퍼마켓 점원, 청소부, 식당직원)
- 가사도우미

위에서 명시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정된다. 그리고 가사노동자의 경우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태국 국적자만 가능하다.

□ 지침

고용주에 대한 규정은 말레이시아반도, 사바, 라부안연방 직할 관할지와 사라왁 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

□ 말레이시아반도

상기 분야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이민국등록부와 내무부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이후, 고용주는 방문비자(Visit Pass, 임시고용)신청서를 아래 주소로 제출해야 한다.

Director
Foreign Workers Division
Immigration Department Head Quarters
Putrajaya Federal Teritory

□ 사바와 라부안연방 직할 관할지

고용주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적자만 고용할 수 있으며, 방문비자(Visit Pass, 임시고용)를 신청하기 전에 사바 노동부의 승인과, 인도네시아 외국인노동자 위원회와 라부안연방 직할 위원회로부터 외국인고용쿼터에 대한 허가를 아래에서 받아야 한다.

The Secretariat

Co-ordinating Committee for Indonesian Foreign Workers

- 주소: For Sabah and the Federal Territory of Labuan Sabah Immigration Office, 4th & 5th floor, Wisma Dang Bandung Building, Jalan Tuanku Abdul Rahman, 88550 Kota Kinabalu, Sabah
- 전화: 0880 216 711

허가서와 채용쿼터를 받으면, 고용주는 Kota Kinabalu, Sandakan, Tawau, Labuan 중에 가까운 곳에서 방문비자(임시고용)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에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지침을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은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건설분야
2) 플랜테이션분야
3) 특정 서비스분야
4) 제조분야

- 고용주가 국내노동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호텔업계

- 다양한 분야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 힘든 식당이나 호텔의 요리사
-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트레이너 및 강사
- 제조분야(숙련, 반숙련, 기술직 및 전문직 외국인노동자에 한함)

이 가이드라인은 숙련, 반숙련, 미숙련 분야에 속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며, 관리직이나 전문직, 감독직 분야의 주재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고용주가 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 제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필요한 직종에 대한 구인광고를 낼 것
- 인력개발부 산하 고용사무소와 연락을 취할 것
- 공급과 노동자 부족을 증빙하는 확정문서

□ 가사노동자

이민국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인가정부를 고용하려면 이민국 산하 가사노동자부서(Maid Division)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의 수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18세에서 50세 사이의 외국인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자는 가까운 주 이민국사무소에서 고용인에 대한 임시고용패스(temporary employment pass (TEP))를 신청해야 한다. TEP를 받으면, 해당 외국인노동자는 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내무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가정부들의 체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정부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25세에서 40세의 일할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만 한다. 1998년 1월 2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국적

의 가정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한 달 수입이 3,000 링깃 이상이어야 하며, 필리핀과 스리랑카 국적의 가정부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10,000 링깃 이상이어야 한다.

3.6 노사분쟁

관리자로서 고용주는 조직 내의 고용인이나 근로자 관리의 책임을 진다. 노동자 관리에는 세 주체가 있는데, 이는 고용주, 고용인/노동조합, 정부의 3부로 나뉘어져 있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대립이나 분쟁은 회사의 인사방침과 단체협약, 기타 고용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서비스관련계약 등에 의거하여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다루어야 한다.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규정은 어느 조직에서든지 인사정책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노동조합에 등록된 고용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고용주에게 불만사항이 있을 때마다 고용인은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만약 고용주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에 대하여 관련절차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동부나 산업관련부(labour or Industrial Relation Department)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회사와 같은 외국회사들에 있어서 고충사항 처리절차는 한국의 본사에 불만사항이 전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고용인의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고될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노동 관련 분쟁이 있으면 노동부나 산업관련부(Industrial Relation Department)에서 개입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표준규정으로 두고 있다. 고용주가 노동 관련 충돌이나 분쟁을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담당자와 조직관련 임원은 인사 및 노동법 관련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충돌이나 분쟁이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무엇이 노동분쟁을 일으키는가?

일반적으로 충돌이나 분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인의 고충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아서 불만이 고조되는 경우
2) 서비스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양쪽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노동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간과 조건의 적용에 대해 노동자/노조와 고용주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
4) 고용주가 어떤 문제에 대해 잘못 다루는 경우
5) 제기된 문제에 대한 늑장 대응
6) 불공평한 인사정책

□ 노동분쟁 해결 방법

1) 고용인들에게 고충사항을 절차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제공
2)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임원을 임명
3) 즉각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협상기회 제공
4) 분쟁에 대해 서로 양보하는 방법 실행

노동 관련 충돌이나 분쟁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면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피켓시위, 근무태만, 초과근무 거부나 파업 등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3.7 임금체계

가. 일반 임금지급

고용법 1955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지정된 임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정 기간의 임금에 대해 합법적인 공제액보다 적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고용주는 노동관리국(the Director General of Labour)에 신청하여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노동관리국이 지정된 임금지급기일을 맞출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기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계약 종료에 따른 지급

계약기간의 종료 및 지정된 업무의 종료 그리고 자진퇴사 및 해고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한다.

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계약 종료 혹은 계약 위반에 대한 임금지급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사전통보 대신 임금을 지급하거나, 고용인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종료 등의 경우, 고용주는 해당 계약 종료일을 넘겨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라. 해고임금 및 강제휴업에 따른 수당 지급

고용(해고 및 강제휴업 수당) 관련 법규 1980(Employment (Termination and Layoff Benefits), Regulation 1980)에 따라, 연속으로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고용되었거나, 연속 4주의 기간 내에 12일 이상 근무기회를 갖지 못하고 강제 휴업을

당한 고용인은 아래와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2년 이하의 고용기간의 경우 연간 10일치의 임금
- 2년 이상 5년 미만의 고용기간의 경우 연간 15일치의 임금
- 5년 이상의 고용기간의 경우 연간 20일치의 임금

해고수당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해고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고용인에게 7일 이내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근무나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수당, 출석수당, 다른 기타 보상과 관련된 모든 지급은 임금 지급일로부터 7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지급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고용인과의 합의에 따라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3.8 사회보장

1969년 발효된 고용인 사회안정법 1969는 노동자보상법 1952(Workmen Compensation Act 1952)와 고용인보장법 1991(Employees Provident Act 1991)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보장법이다. 고용인 사회안정법의 목적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직업병에 걸릴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 계획은 노동자들이 근무 중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상황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집행기관이 설립한 사회안정조직을 통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무료 의료서비스

- 장애에 대한 혜택
- 피부양자 혜택
- 질병연금
- 유족연금
- 상시 시중 간호수당
- 재활치료를 위한 설비 지원

이 법에 따라, 모든 고용인들은 이 조직에 가입해야 하며 혜택 받는 고용인들을 대표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SOCSO의 "한번 가입으로 평생 가입 Once in, always in" 개념에 따라, 고용인이 다른 고용주의 직장으로 옮기더라도 가입은 유효하다. 이 법은 SOCSO부서에서 집행하며,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산하에 있다.

3.9 노동조합 & 노동관리 문제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말레이시아 노동조합의 역사는 현재 사기업분야 407개 조합에 431,457명의 조합원과 공공부분 222개 조합에 371,332명으로, 총 629개의 조합에 803,962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기업분야와 공공분야의 노동조합은 말레이시아 노동조합회의(Malaysia Trade Union Congress (MTUC)) 소속이다. 공공분야는 공공서비스 노동자조합회의(Congress of Unions of Employees in the Public and Civil Service (CUEPAC))에 소속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고용주협회 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 (MEF)라고 알려진 말레이시아 고용주조합은 노조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노동법에 의해 고용주

가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전체 850만 노동자의 10% 미만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실제 말레이시아의 노동인력은 1,150만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두 가지 형태의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다.

- 전국 노동조합(National Union)
- 사내 노동조합 또는 기업 노동조합, 회원들은 MTUC의 조언을 받는 전국 노동조합이나 사내 조합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이유

-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
-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임금과 수당 인상
- 직업안정

□ 노동조합의 목적

- 회원들의 산업적 및 사회적, 지적 이익의 향상
- 회원들의 정당하고 적합한 비율의 급료 유지
- 회원들의 물질적, 사회적, 교육적 이익의 향상
- 특정 혹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한 입법활동 지원

□ 노동관리 문제

현재 모든 노동조합은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산하 노동조합등록부(Registrar of Trade Union)에 등록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 구성의 최소 인원인 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등록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노조설립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목적 중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 만약 노동조합의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이미 등록된 이름이 있는 경우, 현혹할 수 있는 이름인 경우.
- 노동조합이 비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모든 노동조합은 인력자원부 산하 노동조합등록부의 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의 목적은 조합이 법을 준수하고 조합기금이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만약 조합의 운영에서 법에 저촉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다.

4. 세무

4.1 본세

가. 소득세

말레이시아는 지역기반의 단일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또는 파생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법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세계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은행업, 보험, 항공 또는 해상운송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또는 파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나. 부동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부동산
- 부동산회사(Real Property Company)에 투자

부동산회사(RPC)는 부동산 또는 주식, 또는 둘 모두를 소유하며 전체 유형자산의 75% 이상의 시장가치를 보유한 지주회사(controlled company)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구성원이 50명이며, 5명 이하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를 의미한다. 부동산양도소득세율은 5-30%이며 처분 이전의 과세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2007년 4월 1일 이후 과세대상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 인지세

인지세는 1949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라. 간접세

간접세는 다음과 같다.

- 상품의 수출입에 따른 관세
-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상품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상품에 관한 판매세
-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세

마. 지방세

말레이시아에서는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한다. 주정부는 각 주의 지자체 내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세와 건물세(quit rent)를 부과하고, 사업운영에 대한 인허가수수료를 부과한다.

바. 재산세

말레이시아에는 재산세가 없다.

4.2 소득세

가. 과세연도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과 같이 역년에 기초한다. 그러나 기업은 역년이 아닌 회계기간을 채택한다. 소득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나. 신고납세제도(Self Assessment System)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세금의 종류는 아니며 납세자에게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신용도를 산정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납세자는 신고양식(Return form)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고 국내세입위원회(Inland Revenue Board(IRB), URL : www.hasil.org.my, Tel : +603-42893500)에 양식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는다. 납세자에게 평가 회답이 보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납세

하여야 한다.

과세기준연도 2001년부터 회사에 대해 신고납세제도(SAS)가 도입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개인 및 기타 납세자에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SAS에 따라, 내국세수입국의 부과과세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며, 과세액은 소득신고서 제출일에 결정된다.

다. 항소

과세에 대한 항소는 소득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라. 처벌

지불연기, 소득신고서 미제출, 탈세, 소득누락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1967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형벌,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된다. 지불연기의 경우 약정기간 내 납세하지 않으면 1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후 60일 동안 납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5%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마. 소득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원은 다음과 같다.

- 사업상의 소득과 이윤
- 취업으로 얻는 소득과 이윤
- 배당금, 이자소득 또는 할인료
- 임대수입, 로열티 또는 사례금
- 상기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연금, 연간 배당금 또는 기타 정기적인 지급액
- 상기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또는 이윤

상기 목록에서 언급된 소득은 각각 개별 소득원으로 간주된다.

바. 사업소득 및 지출

□ 지출면제

총 소득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지출에 한하여 사업소득세가 면제된다.

□ 이월된 미사용 사업 결손금

미사용 사업 결손금은 이월하여 다음해 사업소득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자본공제액

감가상각에 관한 조항은 소득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지출에 한하여 자본공제액이 부여된다.

- 공장 및 기계에 대한 자본공제액
- 산업용건물공제
- 농업공제
- 삼림공제

□ 미사용 자본공제액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다음 해의 동일사업 소득원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이중과세협정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목록은 표1을 참고 요망.

표 I. 이중과세협정

【 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불에 관한 세금 】

주재국		로열티%	이자%	기술/관리급여%	배당금%
비협정국가		10	15	10	없음
협정국가					
1.	알바니아, 공화국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2.	아르헨티나 *	10	15	10	없음
3.	호주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없음	없음
4.	오스트리아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5.	바레인	8	없음 또는 5	10	없음
6.	방글라데시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7.	벨기에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8.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8	10	10	없음
9.	캐나다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10.	칠레 **	10	15	5	없음
11.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12.	크로아티아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13.	체코공화국	10	없음 또는 12	10	없음
14.	덴마크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15.	이집트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16.	피지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17.	핀란드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18.	프랑스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19.	독일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없음	없음
20.	헝가리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21.	인도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22.	인도네시아 #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23	이란 **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24.	아일랜드	8	없음 또는 10	10	없음
25.	이란 **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26.	이탈리아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27.	일본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28.	요르단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29.	카자흐스탄 **	10	10	10	없음

	주재국	로열티%	이자%	기술/관리급여%	배당금%
30.	한국, 대한민국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31.	쿠웨이트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32.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33.	레바논	없음 또는 8	없음 또는 10	10	없음
34.	룩셈부르크	없음 또는 8	없음 또는 10	8	없음
35	몰타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36	모리셔스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37	몽고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38	모로코 **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39	미얀마 **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40	나미비아	5	없음 또는 10	5	없음
41	네덜란드	없음 또는 8	없음 또는 10	8	없음
42	뉴질랜드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43	노르웨이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44	파키스탄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45	파푸아 뉴기니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46	필리핀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47	폴란드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48	루마니아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49	러시아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50	사우디아라비아-구 협정 *	10	15	10	없음
	사우디아라비아-신 협정 **	8	없음 또는 5	8	없음
51	세이셀	10	10	10	없음
52	싱가포르-구 협정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싱가포르-신 협정	8	없음 또는 10	5	없음
53	남아프리카공화국	5	10	5	없음
54	스페인 **	7	없음 또는 10	10	없음
55	스리랑카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56	수단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57	스웨덴-구 협정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스웨덴-신 협정	없음 또는 8	없음 또는 10	8	없음
58	스위스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59	시리아 **	12	10	10	없음

주재국		로열티%	이자%	기술/관리급여%	배당금%
60	대만	10	10	7.5	없음
61	태국	없음 또는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62	터키	10	없음 또는 15	10	없음
63	UAE	10	없음 또는 5	10	없음
64	영국	8	없음 또는 10	8	없음
65	미국 *	10	15	10	없음
66	우즈베키스탄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67	베네수엘라 **	10	15	10	없음
68	베트남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69	짐바브웨 **	10	없음 또는 10	10	없음

주의 1. 외국인에 대한 승인된 로열티 또는 산업로열티 그리고 승인된 대출 및 장기대출에 대한 이자(각 이중과세협정에서 정의)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면제된다.
2. 각각의 이중과세조약에 따른 세율은 소득세법안 1967항(ITA 1967)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세율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3. 소득세법안 1967항에 명시된 세율은 이중과세협정에 명시된 최대 세율보다 낮으며, 낮은 세율이 이 부분에서 적용되며 상기 표에 기입된다.
4. 대만의 경우, 말레이시아 주재 타이페이 경제문화사 부처에 대해 소득세면제령(Income Tax Exemption Order)을 통해 이중과세공제를 부여하고 있다.

* 제한이중과세협약
** 공시된 DTA(Double Taxation Agreement) : 아직 발효되지 않음
# 조약에 관한 제한조항을 개정한 의정서는 공시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음

4.3 법인세

가. 단수체계

말레이시아는 과세귀속방식을 2008년 1월 1일부로 단수과세체계로 개편하였다. 단수체계하에서, 기업수익세는 최종확정세이며, 주주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나. 거주세(Tax Residence)

회사 운영 및 관리를 말레이시아에서 행하는 회사는 말레이시아 거주법인으로 간주된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말레이시아의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거주법인으로 간주한다.

다. 세율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26%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연도 2009년부터 25%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석유산업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38% 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라. 외국계 지점

외국계 지점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에서 파생되는 소득에 대해 26%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연도 2009년부터 25%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이자소득의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단, 이중과세협정을 맺은 국가는 제외된다.

마. 준수사항(Compliance Requirements)

□ 예납세액

신고납세제도(SAS)에 의거해, 회사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납세액을 내국세수입국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회계연도 6월과 9월에 예납세액을 변경할 수 있다.

처음 경영을 시작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운영개시일 또는 소득창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납세액을 내국세수입국에 신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사는 회계연도 6

월과 9월에 개정된 예납세액을 내국세수입국에 제출할 수 있다.

회사가 해당 연도 예납세액을 30% 이상 적게 신고하는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 납부

매 회계연도 2월부로 매 역월 10일 혹은 10일 이내에 예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규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6월부터 월별 납부를 해야 한다. 월별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각 회계연도 마감 이후 7개월 이내에 환급받는다.

□ 중소기업 (SMEs)

중소기업(SMEs)은 예납세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운영을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2년간 분할 납부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관련 과세연도의 회계연도 시작 시 보통주거래대금으로 발생하는 납입자본금이 250만 링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50% 이상 주식 변화

휴면회사 주식(50% 이상)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월된 미사용 사업 결손금과 자본 공제액은 무시된다.

4.4 개인과세

가. 거주세(Tax Residence)

1년(Calendar year)에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은 과세대상 거주자로 본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182일 이하일 경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에 한하여 거주자로 본다.

나. 세율 및 인적공제

거주자 개인은 공제 후 과세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세율은 표Ⅱ를 참고, 거주자 개인에 적용되는 공제 및 환급 목록은 표Ⅲ을 참고하시오.

표 Ⅱ. 세율

【 말레이시아 거주인에 관한 소득세율 】

	납세대상 소득범위	계산(RM)	세율(%)	과세(RM)
A	0 – 2,500	처음 2,500	0	0
B	2,501 – 5,000	다음 2,500	1	25
C	5,001 – 10,000	처음 5,000 다음 5,000	3	25 150
D	10,001 – 20,000	처음 10,000 다음 10,000	3	175 300
E	20,001 – 35,000	처음 20,000 다음 15,000	7	475 1,050
F	35,001 – 50,000	처음 35,000 다음 15,000	13	1,525 1,950
G	50,001 – 70,000	처음 50,000 다음 20,000	19	3,475 3,800
H	70,001 – 100,000	처음 70,000 다음 30,000	24	7,275 7,200
I	100,001 – 150,000	처음 100,000 다음 50,000	27	14,475 13,500

	납세대상 소득범위	계산(RM)	세율(%)	과세(RM)
J	150,001 – 250,000	처음 150,000 다음 100,000	 27	27,975 27,000
K	250,000 초과	처음 250,000 이후 매 링깃마다	 28	54,975 .....

표 III. 개인 세금 감면 및 환급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세금 감면	RM
납세자 – 개인 감면	8,000
배우자 – 소득이 없거나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3,000
남편 – 소득이 없거나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3,000
자녀 (배우자나 남편이 신고할 수 있음)	
• 자녀 한 명당 (18세 이하)	1,000
• 장애아(미혼)	5,000
대학교,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장애인 포함)	
• 말레이시아 국외 (동등학력 이상)	4,000
• 말레이시아 내(동등학력 이상)	4,000
생명보험료/승인된 기금 기부금 : 납세자(최대)	6,000
교육보험 또는 의료보험 : 납세자(최대)	3,000
EPF연금계획에 따른 연금 프리미엄 : 납세자(최대)	1,000
부모 의료비(최대)	5,000
중병 납세자, 배우자, 자녀 의료비(건강진단비 500 링깃 포함)	5,000
장애인(추가공제)	
• 납세자	6,000
• 배우자	3,500
장애인 납세자,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용 보조장비	5,000
기술, 법률, 회계, 이슬람금융 등의 자격증 취득, 지식습득, 직업교육 등의 수수료 및 교육비	5,000
납세자, 배우자 또는 자녀용 책, 저널, 잡지 및 기타 출판물 구입	1,000
컴퓨터 구입(3년에 한 번)	3,000
Skim Simpanan Pendidikan Nasional에의 자녀를 위한 예금(최대)	3,000
스포츠장비 구입	300

비거주자 개인은 적용세율이 총소득의 28%이며 어떠한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 배우자 개별과세

아내의 모든 소득원은 남편의 소득원에 상관없이 개별 과세된다. 단, 배우자 간의 합의에 의해 통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라. 말레이시아의 고용인

말레이시아의 고용인은 소득의 일부가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 관계없이, 고용기간 동안 발생한 총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파생되는 고용소득은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에서 고용활동을 한 기간 동안 파생된 소득
- 말레이시아에서의 고용활동기간에 포함되는 휴가기간 동안 파생된 소득
- 말레이시아에서의 고용활동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말레이시아 국외 업무수행으로 파생된 소득

마. 파견외국인에 대한 면제

□ 말레이시아 체류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

거주세 납세의무에서 제외되는 개인이 말레이시아 내 고용활동으로 창출한 소득은 다음의 기간 동안 고용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에 제외된다.

- 1역년에 말레이시아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일 경우
- 2역년에 걸쳐 연속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일 경우

단, 전문 엔터테이너와 비거주자 임원직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바. 이중과세협정

□ 말레이시아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183일 이하인 경우

말레이시아의 이중과세협정 체결(273-275 page 표1 참고)과 관련,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내 고용활동을 통해 발생한 개인소득은 다음의 조건 충족 시 면제된다.

- 고용인의 말레이시아 체류기간이 회계연도의 총 183일 미만일 것
-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받은 직원의 급여
- 당사자가 말레이시아에 보유한 영구적인 기업의 확정된 납세대상 이익에 대한 급여는 공제될 수 없다.

사. 사업운영본부(Operational Headquater, OHQ)/지역사무소

사업운영본부지위를 부여받은 회사 혹은 외국계 회사의 말레이시아 지점에 고용된 비시민권자의 소득이 말레이시아 국외 고용활동기간 중에 파생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이와 같은 면제는 말레이시아 국외 고용활동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며 개인적 사유 혹은 휴가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국제조달센터/지역물류센터(IPC/RDC)

국제조달센터 및 지역물류센터의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는 사업운영본부(OHQs) 혹은 지역사무소의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 라부안 역외회사

□ 매니저

라부안 역외회사의 비시민권자 매니저 자격으로 얻은 총소득 50%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효력발생일: 과세연도 1992부터 과세연도 2010까지이다.

□ 이사

역외회사의 비시민권자 자격으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효력발생일: 과세연도 2002년부터 과세연도 2010년까지이다.

□ 역외회사

역외회사란 1990 역외회사법에 의거해 법인화된 회사를 의미하며, 1990 역외회사법에 의거해 등록된 외국인 역외회사, 허가받은 말레이시아 역외은행, 역외유한합작회사 및 역외신탁회사를 포함한다.

차. 소득신고서 제출

현지고용인과 파견외국인은 이듬해 4월 30일까지 말레이시아 내국세수입국에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원을 보유한 경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카. 납부

개인 및 기타 납세자의 연간 의무납세액이 1000 링깃을 초과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내국세수입국 지침에 따라 6번에 걸쳐 격월로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 차액

납부기한은 이듬해 6월 30일까지 이다.

고용된 자의 경우, 분리과세공제(Schedular Tax Deductions)제도에 의거, 매월 고용인의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납부된다. 세금 차액 납부기한은 4월 30까지이다. 소득세 납부 지연 시 미납세액의 최대 15%의 벌금을 부과한다.

4.5 소득세 원천징수

가. 비거주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내국세세입청에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신고해야 한다.

		세율 %
a	이자	15
b	로열티	10
c	연예인에 대한 보수	15
d	섹션 4A에 나타난 소득의 특정 등급*	10
e	서비스분야의 계약 지불에 있어 외국인계약자,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	13

* 원천과세는 최종확정세로, 세율은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Table Ⅰ).

**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
1	비상주계약자,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	10
2	주재 및 외국인 고용인	3 13

나. 거주인에게 지불된 이자

승인된 금융기관에서 거주인에게 지불한 이자는 말레이시아 내국세세입청에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거주인이 받은 특정 이자는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5. 통관

5.1 수입

육지, 바다, 항공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해당 항구, 공항, 역은 세관 법안에 관한 첫 번째 항 1977에 명시되어 있다. 세관관세조항 2007에 전체 수입 또는 수출 상품과 징수되는 관세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이 외에 세관관세조항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관한 판매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제품이 수입되는 시점에서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이다.

EDI(전자 데이터 교환)기반 커뮤니티시스템을 채택해 수화물검사를 하는 포트 클랑 커뮤니티시스템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구와 공항에서는 관세신고가 수동으로 처리된다. EDI 메일박스는 세관, 국제운송업체, 터미널운영자 및 화물운송업자와 연결되어 있다. 시스템은 세관의 항구 또는 공항을 통해 선적서류를 전송한다. 모든 관련 부서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수동 서류제출 방식을 대체한다. 이 시스템은 수출입 정식 세관 수속과 관련된 일을 처리한다.

육지, 바다 또는 항공에 상관없이, 해당 제품이 통관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세관절차를 필요로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고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는 모두 세관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규정된 형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 1양식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2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사바와 사라왁) 간에 상품이 오가는 경우 세관 No.3양식을 구비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스스로 또는 운송업자를 통해 이들 양식을 준비하고 제출한다. 수입되는 상품에 있어 화물의 송장가치가 RM10,000 이상인 경우 수입된 상품은 상업적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세관 신고〉

1) 양식 No.1- 수입물품 신고
2) 양식 No.2- 수출물품 신고
3) 양식 No.3- 연방 정부 내 물품운송 허가

세관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은 말레이시아 왕립세관(Royal Malaysian Customs)이며 홈페이지는 www.customs.gov.my이고 연락처는 +603-2698 8044이다.

- 수입상품이 수입관세를 내야 하거나
- 수입상품이 수입관세 부분면세를 받는 경우

세관 No.1A와 함께 No.1 양식을 구비해야 한다. No.1A는 가격신고양식이다.

나. 분류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 모두 정확한 관세 코드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 세관관세조항 2007에서 관세코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분류에 HS COD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HS CODE 시스템은 다목적 국제상품명칭으로 세계세관위원회가 개발하였다. 법적 그리고 논리적 구조를 통해 5,000개 상품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일된 분류를 위해 잘 정의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190개 이상의 국가와 경제권에서 세관관세코드로 사용하고 있다. HS CODE는 상품설명 및 코드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을 따르고 있다. 세계세관위원회가 발간한 주석을 통해 HS CODE를 해석할 수 있다.

다. 평가

세관에 신고한 수입상품의 가치는 WTO 세관평가시스템에 기초한 세관(평가규범) 규정 1999에 따른 거래가치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거래가치란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때의 가격 또는 상품에 대해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다. 거래는 독립된 두 집단간의 거래이어야 한다. 만약 두 독립집단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관은 신고된 수입상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 되었는지 조사할 것이다. 이후 세관은 사후수입감사를 수행할 것이다. 사후수입감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두 집단 간에 특별 합의가 있는지와 서로 관련된 기업인지를 조사할 것이다. 독점판매, 프랜차이즈 등은 거래가치에 영향을 주는 합의로 간주된다.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를 세관이 발견한 경우, 세관은 세관의 평가규칙을 통해 제품가치를 재평가할 것이다. 신고가치와 세관에 의해 평가된 가치가 다른 경우, 이를 기초로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재평가할 것이다.

라. 금지상품

말레이시아 내 반입이 금지된 상품이 있다. 세관(수입금지)조항 1998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관(수입 금지) 명령 1998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부칙으로 구성된다.

1) 제1 부칙-완전히 수입이 금지되는 재화
2) 제2 부칙-수입면허 없이는 수입이 불가한 재화
3) 제3 부칙-수입면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조치로 인해 말레이시아에 수입이 불가한 재화
4) 제4 부칙-제공된 방법 외에는 말레이시아에 수입이 불가한 재화

첫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절대 금지된 경우이다.

- 지폐, 은행권, 동전의 인쇄물 또는 복사물
- 음란 또는 외설 인쇄물, 그림, 사진 또는 서적
- 단검류 등

상기 목록의 제품은 절대 수입금지 품목이다.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최대 RM 5,0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수입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다.

쌀, 설탕, 자동차, 비철합금 등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입 허가 또는 승인(Approved Permit (A.P.))을 받아야 한다. 이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JK69양식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각 A.P.는 하나의 위탁화물에 주어진다. 위탁화물이 수입된 후에는 A.P.는 만료된다.

마. 운송업체

세관관리영역으로부터 상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자는 세관법 1967의 90조에 따라 세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기업을 대신해서 세관 No.1양식과 공급자의 송장, 화물인환증/항공화물운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업무이다. 기업의 편에 있으며 항구나 공항의 세관에 앞에 언급한 서류를 제출한다. 세관공무원이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산정한 이후에, 통관을 위한 허가를 준다. 이후 운송업자는 상품을 트럭이나 트레일러의 컨테이너에 적재한 다음 수입업체로 배송할 것이다. 운송업체는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항공화물과 해운화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항구에 출입이 가능하다. 기업은 2개의 운송업체를 고용할 수 있다. 화물운송업체의 계산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 세관양식
- 화물증명
- FCZ처리비 / EDI요금
- 터미널요금
- 항공편전환요금
- 세관검사료
- 적하료
- 취급료
- 항공화물 CAF
- 배송료
- 총 수수료

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세관은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일정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면제한다.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는 기계와 장비로,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한다.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 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MIDA는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 승인부여권한이 있는 재무부에 해당품목을 추천할 것이다. 승인이 날 때까지 1년 또는 2년이 소요된다.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하고, 모든 위탁화물에 대한 서류과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허가기간 동안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수입된 상품이 제조에 얼마나 쓰였는지, 그리고 나머지 수량은 얼마나 남았는지에 관한 Appendix K (상품의 이동)를 매월 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을 원하는 경우 만기가 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사. 기타 면제

□ 일시적 수입

홍보, 조사 또는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한다. 전시회, 무역박람회, 그리고 기타 전시를 목적으로 한 상품도 이에 해당된다. 수입 시점에서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세관에 수입관세와 판매세 납부금액에 대해 보증을 선다. 면제기간은 6, 9, 12개월이다. 관세가 면제된 상품은 만료일 이전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 생산샘플

제조를 위한 생산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선다. 상품은 판매되거나 처분될 수 없으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 수리를 위해 수입된 상품

수리를 위해 수입되고 최종적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동일한 경로로 수입되고 재수출되는 상품,
- 수입과 재수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수입 및 재수출이 세관공무원에 의해 등록된 경우,
- 은행 보증을 받은 경우,

□ 택배서비스를 통한 상품 수입

다음 국제공항에서 택배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수입한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된다.

- 세팡항공 화물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LIA)
- 바얀 레파스(페낭)
- 세나이(조호 바루)
- 코타 키나바루
- 쿠칭
- 수방

수입된 상품의 경우, 총 가격이 위탁화물(C.I.F) 당 500.00 링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2 보세창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개인보세창고와 공공보세창고 등 두 가지 유형의 허가창고 또는 보세창고가 있다. 개인보세창고 면허는 자사의 상품을 보관하는 기업에게 수여되고, 공공보세창고 면허는 모든 수입업자의 관세 상품을 보관하는 기업에게 수여된다. 보세창고는 상품 통관을 위한 내륙시설이다.

수입업자는 기간제한 없이 보세창고에 상품을 보관할 수 있다. 보세창고에서 상품을 통관시킬 때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납부한다. 세관 No.9양식을 통해 상품을 신고해야 하며, 이 서류를 보세창고의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인보세창고는 서류감독을 받는데, 개인보세창고의 경우 상품 보관과 이동에 관한 서류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공공보관창고는 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한다. 보세창고의 역할로는 보관, 적하, 재포장 및 재라벨 등을 들 수 있다. 상품은 관세 그리고 세금 납부를 연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5.3 수출

육지, 해상 또는 항공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수출신고양식 - 세관 No.2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출업자는 수출관세 납부 또는 수출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출금지조항 1998에 수많은

상품이 정리되어 있다. 거북이 알, 말레이시아반도의 등나무와 특정 독성화학물질 등은 수출 절대제한 품목이다.

기타 말레이시아 동물, 가금류, 목재, 스테인리스 철강판과 막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무 또는 팜유로 제조한 일정 상품의 경우 말레이시아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출관세 면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상품이 말레이시아 영해 또는 영공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항구 또는 공항의 세관에 신고를 한 경우라면 수출된 상품으로 간주한다. 말레이시아 외의 지역으로 상품이 배를 통해 선적되는 것은 물론, 말레이시아 내 라부안, 랑카위, 티오만, 자유지역(free zone) 및 합작개발 지역으로 상품이 이동하는 것 역시 수출에 해당한다. 세관법의 목적에 따라, 이들 지역은 말레이시아 외 지역으로 간주된다. 수출업자의 경우 이들 지역에 상품을 이동하는 경우, 수출 신고 세관 No.2양식을 구비해야 한다.

5.4 기타 정보

말레이시아의 항구 또는 공항의 관련단체, 또는 세관원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관은 www.customs.com.my를 운영해 말레이시아의 수입업체, 수출업체, 제조업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kastam@customs.gov.my로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세관컨설턴트를 통해 자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세관을 통해 세관절차에 관한 지침서를 얻을 수도 있다.

6. 금융관리

6.1 말레이시아 금융체계

말레이시아의 금융제도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 금융기관
- 금융시장

금융기관은 은행권 기관과 비은행권 금융중개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은 크게 자금 및 외환시장, 자본시장, 파생금융시장과 역외시장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도표 1: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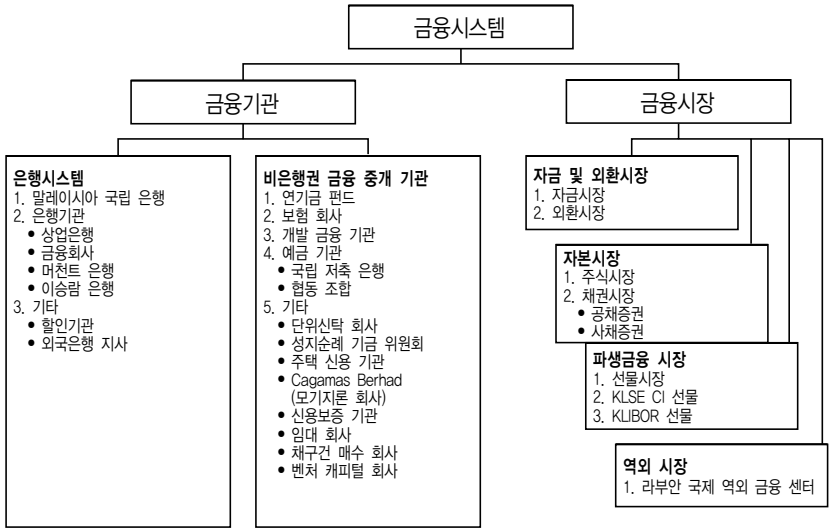

6.2 말레이시아 금융관리

□ 은행시스템

금융부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은행권 시스템의 경우, 금융권 전체 자산의 약 67%를 점유하는 가장 큰 분야로서,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ank Negara Malaysia)과 은행기관 (상업은행, 금융회사, 머천트은행, 이슬람은행), 그리고 기타 부분(할인기관 및 외국은행 지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말레이시아 국립은행 (BNM)

중앙은행에 관한 말라야법령 1958(the Central Bank of Malaya Ordinance 1958)에 따라 국립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BNM)은 1959년 1월 26일 설립되었다. BNM의 주요 설립목적은 물가안정과 통화운용 및 금융안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통화발행, 정부에 은행 및 금융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외환관리법령을 시행하며 은행시스템 최후의 대출 보루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1989년 10월 1일 공표된 '은행 및 금융기관에 관한 법령 1989 (BAFIA) 서문'에 따라 금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 및 예금 지급준비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립중앙은행의 보증금 관련 권한이 확대되었다.

나. 상업은행

은행시스템에서도 상업은행부문은 가장 크고 중요한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예금 및 대출 및 금융 관련 보증과 같은 소매 금융서비스
- 신용장, 환어음 할인, 선적보증, 신탁인수 및 은행인수어음과 같은 금융기관 거래
- 국고기금 관련 서비스
- 국경 간 통과 관련 지불서비스
- 안전보증금 및 주식 관련 보관서비스

상업은행들은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당좌계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일한 금융기관이다.

다. 금융회사

금융회사들은 금융 및 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1989(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9)에 따라 BNM의 관리를 받고 있다.

- 저축 예금 계좌에 대한 수신 관련 업무
- 임대 및 할부 관련 업무
- 관련 부처 승인에 따라 BNM과 관련한 기타 관련 업무

라. 머천트은행(또는 투자은행)

머천트은행은 투자인수, 금융, 신디케이션론 관련 업무, 기업 금융 및 관리 자문서비스, 주식 발행 및 상장뿐만 아니라 투자포트폴리오 관리업무도 하고 있다. 투자은행에 관한 기본 제도의 도입에 따른 머천트은행, 주식중개회사 그리고 할인기관 간의 합병은 국내 및 국제 경제환경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활발한 투자은행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 이슬람은행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법과 은행관련법은 일반적인 은행시스템과 나란히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다. 이슬람은행 설립에 따른 법적 근거는 1983년 4월 7일 발효된 이슬람은행법(Islamic Banking Act (IBA)에 있다. IBA는 BNM에 이슬람은행 및 관련 유사은행들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Shariah 율법에 기초를 둔 이슬람 은행이 10개가 있고 그 외에 이슬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 은행이 8개가 있다.

바. 할인기관

일반적으로 할인기관은 단기자금시장 관련 업무 및 금융기관이나 기관 사이의 콜머니, 1일물자금 및 단기예금자금들에 대한 유통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사. 말레이시아 주재 외국은행 지사

현재 32개의 외국은행 지사들이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되어 있다. 일반적인 은행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업간의 교섭 및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 비은행권 금융중개기관

비은행권 금융중개기관으로는 크게 보험회사, 연기금펀드 및 투자개발금융기관들이 있다. 연기금펀드(PPFs)는 가입자들의 금융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서 퇴직, 의료, 재해 및 사망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연기금 펀드는 은행기관 다음으로 자산을 결집시키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금융 관련 기관 이다.

투자개발금융기관들(DFIs)은 경제 관련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사회기간망 개발 및 국제무역등과 같은 경제 하부분야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이 개발기관들은 전략분야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및 비금융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은행기관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금융 관련 법규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스템에 관련한 주요 법규와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은행 및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 1989 (BAFIA)

BAFIA는 포괄적인 법률로서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NM)이 다양한 분야의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도록, 등록된 모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규 및 비정규 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책임과 함께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한 아래와 같은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외국등록기관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설립 및 인수, 사무소 개소에 관한 규제
-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예비금, 자본, 순 운영자금 및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
- 감사역 지정,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 공개 및 BNM에 통계자료 제출

2) 보험법 1996

보험법 1996에 따라, BNM은 기본적인 관리 및 기관 허가와 운영에 관한 주요 지침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규범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등급을 유지한다.

3) 돈세탁방지법 2001

돈세탁방지법 2001 (AMLA)은 돈세탁 방지, 감시 및 처벌 그리고 돈세탁에 관련되거나 이를 통해 파생된 자산 몰수, 그리고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의심되는 계좌이체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포괄적 신규 법률이다.

6.3 법인금융

가. 법인 설립 및 금융모델링

신규시장 진출 및 신제품 출시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인 예측에 기반하여 이 부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의 복잡한 분야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쟁자와 고객, 수입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포지셔닝 등이다.

처음 시장에 진입할 때는 경제적인 강점이나 약점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미시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잠재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분에서 보완적인 기술과 지식은 새로운 사업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산업지식과 함께 계량경제모델과 수량적 분석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및 사업 환경에서 가능한 가장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경제이론을 도입해야 한다.

모든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 차입금 사용 등과 함께 복잡하고 국제적인 그룹들에게서 어떻게 자본을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주주들에게 최대의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떻게 자본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그들의 결정이 주주 가치 극대화에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최적화된 자본구성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본율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수할 수 있는 자본이 회사 전략에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규시장 진입, 신제품 출시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을 고려할 때는 다양한 시장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 자금조성

자금 확장계획에 따라 금융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검토와 복잡한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국제자본시장은 도전적인 환경이며 분석과 경험을 기초로 알맞은 지역과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라. 인수합병

일반적으로 합병이란 규모가 비슷한 두 기업의 자원을 통합하여 단일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두 회사의 주주 및 오너들은 합병된 사업분야의 소유권과 합

병 이후 최고 경영층 자리를 분담 소유한다. 일반적으로 합병은 두 회사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이뤄지지만, 이에 반해 인수는 상대회사의 의결권이나 사업운영 그리고 자산의 인수를 통해 이뤄진다.

회사 인수과정은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인수 후보회사 물색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수를 목표로 하는 회사에 접근하기 전에, 인수회사 경영진은 인수할 자산을 지불하겠다는 직접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협상은 일반적으로 피인수 경영진 혹은 오너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다. 때로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제3자를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기도 하다.

인수나 합병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상당한 가치를 더할 수도 있지만, 가치평가에서 협상, 그리고 완료 단계까지 각 단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업법인과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라 획득한 자산 및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FI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수상청 직속의 FIC는 이러한 지침을 관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말레이시아회사에 대한 인수, 합병 및 취득에 대한 지침은 아래 사항에 적용된다.

- 외국사업자가 제시한 인수 또는 말레이시아 대규모 고정자산
- 소유권 및 지배권이 외국사업자에게 넘어가는 말레이시아 내 기업 및 회사, 자산의 인수·합병 취득에 관련된 인수 제안
- 외국인사업자나 외국소속단체가 국내회사의 주식을 15%이상 인수하는 모든 경우나 외국사업자에게 30% 이상의 의결권을 양도하는 모든 경우
- 합작, 경영협력, 기술지원협력 또는 기타 협정을 통한 말레이시아회사 및 사업체 지배.
- 5백만 링깃을 초과하는 자산이나 권리 인수 신청

참조 : 5백만 링깃 이하의 자산이나 권리의 인수 혹은 지배권에 관해서는 취득에 대한 다른 조건에 따른다.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자산 구매, 판매 과정에 참여한다면, 증권위원회법률 1993 (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 (SCA))의 32항과 회사법 1965(the Companies Act 1965)의 적용을 받게 된다.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주식의 인수에 관해서는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증권위원회법률 1993(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 (SCA))의 33항과 인수합병에 관한 말레이시아 코드 1998(the Malaysian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 1998)등 특정 법률 및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위와 같은 법률의 목적은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을 경쟁력 있고, 공개적이며 효율적으로 만들고, 인수 및 합병 상황에서 해당 회사와 관련된 모든 주주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는데 있다.

마. 가치평가

가치평가에 대한 정교한 기술적 지식과 심층적인 산업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들에 대한 이해 및 분석도 비지니스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가치평가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인수, 합작투자, 협력의 경우 사업 및 자산에 대해 믿을 만한 평가를 하는 것이 구매자, 판매자, 잠재적 협력업체의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핵심 원동력이 된다.

합병, 인수를 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정 산업분야의 가치원동력은 물론, 사업 관련 포괄적인 전략 · 목적의 이해가 필수인 자문전문가들은 사업의 전체 및 부분을 평가하는 데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사업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재편성에 대한 결정은 비즈니스 각 분야에 대한 가치

의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평가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다.

6.4 외환관리

말레이시아는 특별 지정된 법규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제외하면, 환전하는데 있어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우 자유로운 외환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98년 9월 1일 이후, 말레이시아정부는 외부 경제개발로부터 오는 위험과 취약성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외환정책 유지를 위해 각종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무역업계나 외국인직접투자자들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반적인 예금계좌를 통한 일반적인 환전이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및 투자자본, 이익자본, 배당자본 등의 본국송금 등은 자유롭다.

1998년 10월 1일부터 여행객들은 1인당 1000 링깃 이하는 자유롭게 반출 및 반입할 수 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외환을 반입하는데 대한 금액제한은 없다.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경우 출국 시 최고 10000 링깃 상당의 외환을 반출할 수 있다. 반출이나 반입의 경우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져야 한다.

말레이시아 외환관리 정책의 기본 목적은 수출이 말레이시아에서 신속히 진행되고 국제통화거래에서의 지불이나 수취과정에 대해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ank Negara Malaysia ; BNM)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금융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국제수지통계의 감시 및 편찬을 위해 말레이시아 거주자는 비거주자 사이의 10,000 링깃 이상의 각각의 지불이나 영수에 따라 서류 P와 R 등 통계형태로 작성을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요 외환관리정책은 아래와 같다.

가.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

외환관리국(비거주자들의 말레이시아 직접·포트폴리오 투자를 책임지는 관청으로 이하 '관리국'으로 함)으로부터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외환통제법 1953(ECA)하의 외환통제당국은 아래와 같다.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www.bnm.gov.my	+ 603-2698 8044

나. 대외계좌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좌를 대외계좌라고 한다. 대외계좌 간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외계좌에서의 링깃화 인출은 링깃화로 된 자산구매를 제외하고 모두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나 지사사업체의 은행계좌는 대외계좌가 아니다.

다. 해외송금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가능하다.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목적으로 10,000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출 진행

모든 수출 대금은 수출날짜나 판매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간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로 송금되어야 한다. 모든 수출이나 수입 업무는 외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제외). 수출업체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승인절차 없이 지정된 어느 은행에서라도 외환계좌 또는 복수통화계좌(multi-currency account)를 개설할 수 있다. 다음은 익일한도금액(overnight limits)이다.

- 수출대금 기준 월 평균 2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overnight balance가 미화 1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수준까지.
- 수출대금 기준 월 평균 1천만 링깃에서 2천만 링깃 사이의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overnight balance 가 미화 5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수준까지.
- 수출대금 기준 월 평균 5백만 링깃에서 1천만 링깃 사이의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overnight balance 가 미화 3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수준까지.
- 수출대금 기준 월 평균 5백만 링깃 이하의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overnight balance가 미화 1백 만 달러에 상당하는 수준까지.

마. 회사간 거래계좌

매달 말레이시아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는 당국의 구체적 조건하에 말레이시아 국외에 있는 회사, 계열사 및 지사, 그리고 기타 회사 간에 이용하는 거래계좌 개설에 대해 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하기 경우는 회사 간 거래계좌에서 제외된다.

- 말레이시아제품에 대한 수출 진행

• 대외 대부기관으로부터 말레이시아회사로의 진행 절차

회사는 원자재 공급에 대한 자매회사 또는 해외 모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회사 간 거래계좌를 통해 수출 진행과정에 대한 상쇄를 관리국에 신청할 수 있다. 수출 진행을 상쇄하는 것이 허용된 회사들은 제공된 서비스로 인한 부가가치만큼만 송금하면 된다.

바. 내부 투자

말레이시아는 금융력이 뒷받침되는 해외투자를 언제나 환영한다. 해외로부터 5백만 링깃 상당의 융자의 경우에는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조건이 공정하고 적당하며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융자의 경우에는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 말레이시아 비거주자가 소유한 회사의 국내 융자

말레이시아에 운영중인 비거주자통제기업(NRCCs)은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국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다만 수출 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에만 환전을 위한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해야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에서 금융계획을 세우는 NRCC는 우선 충분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NRCC는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최초 만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남아 있는 해외 장기대출 포함)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내 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 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NRCC가 받은

국내 대출의 총 금액 중 말레이시아 내 말레이시아인 소유의 금융기관으로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들은 NRCC가 원하는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에 금융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아. 말레이시아 국내은행을 통한 외화 대출

말레이시아의 상업은행과 머천트은행들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금융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국내 조달하는 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외화로 신디케이트론을 발행하거나 대출이 허용된다. 국내 거주자들은 필요한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 모두 합해 5백만 링깃 상당(예를 들어, 국내 상업은행, 머천트은행 및 비거주자로부터 각각 1백만 링깃을 대출받을 경우)의 금액까지 외화로 자유롭게 대출 가능하다. 총 금액이 5백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국내시장에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차용인의 외환을 대출받기 위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자.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합계 5백만 링깃 이상에 상응하는 외화를 비거주자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국내 거주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급이 외환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담보 지급은 허용된다. 그러나 라부안 국제역외금융센터(Labuan International Offshore Financial Centre, IOFC)를 활성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거주인 상환청구 불능조건이며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역보증이 되지 않는 라부안의 역외은행 · 역외담보는 관

리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거주인이 비거주인으로부터 빌린 링깃화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6.5 투자금융 및 증권상장

회사는 채권발행이나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조달을 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한 번도 주식발행을 한 적이 없다면, 기업공개(IPO)라고 한다. 즉 IPO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일반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다.

개인소유회사의 경우는 소수의 주주들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회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소유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 일반에게 회사소유의 주식을 부분적으로 판매하게 된다. 따라서 IPO를 한다는 것은 "공개화 하는 과정(going public)"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회사는 엄격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수천 명의 주주들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매분기마다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공개회사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다중 검증과정을 통해서, 차입을 할 때 보다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을 거래의 일부분으로 하여 쉽게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가 있다. 공개시장에서 매매는 유동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유능한 직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인 자사주식 소유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

주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은 상당한 신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기초가 탄탄한 개인회사들만이 IPO를 할 수 있었으며, 상장된다는 것마저도 쉽

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서비스 관련법 2007, 212조(212 of the Capital Market and Services Act 2007)에 따라 Bursa Malaysia에 등록하려는 모든 회사들에게는 증권위원회(SC)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등록과 관련해서 발행되는 안내서 또한 SC의 등록이 필요하다. 모든 등록관련 서류가 완전히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증권위원회(SC)는 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공개(IPO)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인들은 SC와 함께 사전접수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인들은 기업공개(IPO)의 신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맞는 특화된 대책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상담인이란 "신청인이나 접수인을 대신하여 거래소와 관련한 신청서나 안내서 혹은 관련 어떤 서류이든지 조언, 제공, 제출 및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증권위원회는 IPO신청서에 제시한 3개월의 시한을 맞추기 위해 상담인들에게 완벽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요구한다. 미비한 서류는 심사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반려될 수도 있다.

기업공개(IPO) 신청서는 투자관련 부처들인 Securities Issues Department(SID), Asset Valuation Audit(AVA), Equity Compliance Unit(ECU) 과 Prospectus Department(PD)에서 진행 및 심사하게 된다.

SID는 IPO제안서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한다. 평가는 주식공개에 대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신청자의 양적, 질적 평가를 위해 실행된다. 평가는 신청자나 계열사, 임원 그리고 주요 주주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기록들이나 회사 소유와 관련한 문제들이 없는지 평가하게 된다.

자산평가는 합리적이고 사실에 입각하며, 자산가치 평가지침 및 기타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AVA에서 시행된다. 그리고 공개된 자산이 IPO의 요강에 따랐는지에 대한 적합성도 평가하게 된다. 만약 자산가치가 용납될 수

없는 경우증권위원회(SC)는 저평가판정을 내리거나 재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ECU는 지분 인수, 국내외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FIC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외국인 및 말레이계의 참여율 등, 신청자의 지분구조에 대한 IPO 제안 효과를 검토한다. 이는 국가개발정책의 요구사항에 일치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The Prospectus Department는 정보누락이 없고 주식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없는지 IPO 요강을 확인한다. 그리고 또한 투자자들이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이 성실하게 공개되는지도 평가한다.

결정단계에서는 Issues Committee에 제출된 신청서 권장사항에 따른 종합성, 지속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내부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는다.

SC는 신청제안서에 표기된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한 상담인에게 결정문을 발행하게 된다. 거부된 경우에는 상담인과 신청자가 참가하는 모임을 주최하고, 거부사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상담인과 신청자는 거부결정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종단계에서, SC는 등록시키기 전에 IPO 요강을 재확인한다. 등록이 되면 상담인이나 신청인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요강을 맡겨야 한다. 해당 요강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발행되고 오퍼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이다. Bursa에 주식이 등록된 경우에는 공개요강 발행일로부터 13일 내에 가능하다.

주식위원회법 1993(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이 발효된 1993 년 3월 1일 이래로 자본발행 위원회Capital Issues Committee의 기능과 인수, 합병 패널의 기능은 주식위원회로 위임되었다. 주식위원회(SC)는 증권과 선물관련 산업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증권 산업에 대한 단속 및 모니터링, 개발뿐만 아니라 정부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조언의 역할도 하고 있다. 주식

공개발행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SC는 관련 승인기관들인 FIC, MITI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에 대한 연결 역할도 하게 된다.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Kuala Lumpur Stock Exchange), 말레이시아 증권 거래 및 정보 시스템(MESDAQ),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이뤄지는 쿠알라룸푸르 옵션 및 금융선물 거래소(the Kuala Lumpur Options and Financial Futures Exchange), 금융선물이 거래되는 말레이시아 금융거래소(Malaysia Monetary Exchange), 쿠알라룸푸르 상품거래소(Kuala Lumpur Commodities Exchange) 등이 증권 산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기관들이다.

다양한 거래소는 자격심사와 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구성원들과 대표자들이 건전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이 되도록 규제를 실행한다. 참고로 MESDAQ회사들은 신생 기업들이지만 하이테크산업분야의 잠재력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7. 회계

7.1 개요

회사법 1965(The Companies Act, 1965)에 따라 법인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이사회의 승인을 위한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연간 재정결산서를 준비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 세금기준일에 맞춰 12월 31일로 하고 있다.

회계보고서는 회계표준에 맞춰 회사법 1965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소득세 평가를 위해 내국세무위원회(Inland Revenue Board)에도 제출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회계와 감사 표준화를 위해 국제회계표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과 국제감사표준방법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을 사용하고 있다.

회사법은 이사들에게 회사의 거래와 재정상태, 회계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기록들을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거래는 완료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로 기록해야 한다. 합법적인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의 보고서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책임자급 의견서와 감사인의 의견서로 입증되어야 한다.

회계기록은 등록된 회사 사무실이나 말레이시아 내의 기타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만약 등록된 사무실에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작성한 결의안이 있어야만 한다. 회계기록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밖에서도 보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이고 공정한 회계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기록들은 말레이시아에 보관해야 한다. 만약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서 회계기록을 확인하고자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회계기록은 거래완료 후 7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KLSE)에 상장된 회사는 회사법에서 요구하는 상기된 보고서 외에도 추가 공개사항들이 연간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회계보고서는 공공부문의 법률과 민간부문의 규제당국 양쪽에서 관장한다. 등록된 공공부문은 주로 의회보고용이다.

공공부분의 규정은 주로 의회에서 공표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승인된 규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회계보고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말레이시아 법률은 아래와 같다.

- The Companies Act 1965
- The Income Tax Act 1967
- The 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 and
- The Financial Reporting Act 1997

민간부문은 전문가 집단과 법률 관련 분야 및 기타 권한을 가진 당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부문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문의견이나 공공의 반대 의견은 수용자 입장에서 참고자료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회계보고서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 참고하는 주요 민간부문은

-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의 등록규정
- 말레이시아 회계기관Malaysian Institute of Accountants(MIA)이 발행한 선고문

회사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각각의 감독 당국과 법률은 아래와 같다.

- 회사법에 따른 충족사항은 회사법에 영향을 받는 회사들에 한해서 적용된다.
- KLSE 등록 매뉴얼에 대한 충족사항은 KLSE에 등록된 회사들에만 적용된다.
- 승인된 회계표준Approved Accounting Standards 및 재정보고서법은 유한회사나 등록된 회사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에 따른 충족사항은 모든 회사조직이나 개인기업에서 산정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적용된다.

금융보고서법 1997 The Financial Reporting Act, 1997에 따르면 MASB가 발행한 선고문과 승인된 회계기준(Approved Accounting Standards)은 말레이시아 회계보고서의 가장 좋은 실례로 간주되고 있다. 이 선고문은 또한 국제회계사협회에서 발행한 감사지침서의 주요 모델이기도 하다.

가. 법적 신청 요구사항

공식적으로 감사를 받은 순익대차대조보고서는 회사설립일로부터 18개월 전이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갖는 연간 정기총회(AGM)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최종보고일로부터 최대 15개월 안에 매 역년 중 한번은 AGM 전에 공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회의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최신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연간 결산리포트는 감사받은 보고서와 이사회의 리포트와 함께 AGM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제출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회사는 반드시 AGM 개최일 또는 그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작성된 연간 결산리포트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회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외국회사들은 가능하면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전년도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관련 서류들의 사본을 AGM 이후 2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을 규제하는 회사법 조항에 부합해서 감사된 손익계산서,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함에 따른 자산의 사용과 부채의 증가, 회사법 규정에 부합하는 감사인의 보고서를 비치해야 한다.

나. 감사

회사법 1965 는 말레이시아 내 회사들의 감사와 금융 관련 필요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1965의 9번째 스케줄 The Ninth Schedule of the Companies Act 1965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The Malaysian Accounting Standard Board (MASB)는 말레이시아의 회계표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MASB는 국제회계표준위원회(IASB)의 국제회계보고서표준(IFRS)

을 기준으로 회계보고서표준(FRS)을 발행했다.

모든 회사의 재정 관련 서류는 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의 보고서에는 회사법 1965와 관련된 회계표준에 따라, 대차대조표 날짜에 맞춰 회사활동과 동 날짜의 종료에 따른 손익계산서 및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된 회계보고서에 전문가적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법은 해당 회사가 장부 감사를 위해 공인된 외부 감사기관을 지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AGM을 개최하기 전에 언제든지 회사의 이사나 구성원들은 첫 번째 연간 정기총회(AGM)까지 회사에서 상주할 공인된 외부 감사원을 지정해야 한다. 계속되는 AGM 일정에 따라서, 구성원들은 다음 AGM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에서 상주할 감사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감사원의 주요 역할은 회사의 연간 정기총회(AGM)가 개최되기 전에 작성된 회계와 회계 관련 보고서를 구성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회사법은 감사원의 보고서의 공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감사원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실적에 대한 진실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여주어야 하며 모든 관련 사항들이 회사법 9번째 스케줄에 규정된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회계 관련 적용

회사법 외에도, 현지 회계 당국에서는 해당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하는 회계표준을 발행했다. 감사를 위해, 현지 회계 당국은 해당 위원회에서 승인한 국제회계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그리고 현지 회계 당국은 최고의 회계적용을 위해 현지 회계 가이드라인이나 기술기관지를 발행했다. 현지 회계 당국에서 발행한 회계기준은 국제

회계표준위원회에서 승인한 국제회계표준약관과 일치해야 한다.

최근 말레이시아 회계표준위원회와 금융보고서재단은 규격화된 회계표준을 마련했으며, 관련 법규로 의무적인 부분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금융보고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개방을 위한 조치이다.

7.2 말레이시아 기업회계

가. Malays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MASB) 이력

말레이시아 회계표준위원회(MASB)는 금융보고서법 1997 Financial Reporting Act 1997 (the Act)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금융 및 회계리포트 표준을 개발하고 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설립되었다.

MASB는 금융보고서재단(FRF)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금융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새로운 틀은 표준 설립절차에 관련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나 사용자 관리자와 금융 전문가 등을 포함, 모든 관련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독립된 표준 설립 얼개이다.

MASB의 기능과 권한은 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승인된 신 회계표준을 발행하고 현행 회계표준을 검토, 개정하거나 도입하는 역할
- 회계보고서 작성에 대한 주요 원칙 발표
- 금융 표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지원
- 필요한 경우 일반인에 대한 컨설팅
- 제안된 새로운 표준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틀 개발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된 금융표준 변경

- 신규 혹은 현행 회계표준이나 주요 조건, 제안된 표준의 변경 여부에 대한 FRF의 의견 수렴
- 금융 표준에 대한 범위 및 적용 결정
- 재정부에서 지시한 여타 기능에 대한 실행

말레이시아 회계표준위원회(MASB)의 역할은 사용자와 준비인, 감사인이나 말레이시아 일반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국제적인 최고수준의 금융 및 보고서 표준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폭넓은 배경에서 볼 때 MASB는 사용자와 준비인, 감사인이나 말레이시아 일반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보고서의 국제적인 수준 도달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MASB는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해 주도된다.

- 사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분명하고 확실한 국가회계표준의 개발
- 국내회계표준을 국제적인 표준과 조화시키는 것
- 사용자와 준비인, 감사인과 일반인들과의 교육 및 소통을 통해 향상된 표준의 사용 및 적용 장려
- 이슬람회계표준을 포함한 회계표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 이슬람시장 및 신흥시장에서의 회계보고서의 개발 보조 및 증진

나. 금융보고서재단(FRF) 프로필

금융보고서재단(FRF)은 금융보고서법 (Financial Reporting Act 1997)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FRF는 준비자, 사용자, 조정자와 금융 전문가 등 표준화된 설립 절차에 따라 관련된 모든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수탁자로서 FRF는 회계표준위원회

(MASF)의 활동을 감독하고 금융 및 펀딩 관련 업무를 조정하며, MASB에 대한 제안된 표준과 의결들에 대한 첫 번째 검토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FRF의 기능과 권한은 아래와 같다.

- 회계기준과 개념틀의 개발 및 발행에 관련해서 실행을 할 경우, 회계표준위원회(MASF)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 MASB의 활동에 대한 평가
- MASB의 금융 관련 조정이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 MASB 예산 승인
- 인력을 배치하고 고용하며 법에 따라 MASB와 금융보고서재단(FRF)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결정하는 것.
- FRF 와 MASB에서 진행 중인 사업활동에 재정조달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관리
- FRF의 올바른 회계와 연간 금융보고서 준비
- 연간 금융보고서 감사를 위한 감사원 지정
- 연간 금융보고서 제출과, 재정부에 감사 결과를 제출하고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FRF와 MASB의 활동 보고
- 재정부에서 지시한 기타 기능에 대한 활동

7.3 세법에 기초한 금융정책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창출된 수입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세법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역외지역 면세는 말레이시아 소득세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거주인이 운영하는 은행금융, 항공 및 해양 운송사업 및

보험사업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면세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해당 사업을 관리 및 통제하는 기능 혹은 사업의 일부가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세금 목적상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는 지역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이사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 즉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는 곳을 의미한다. 원천과세가 이뤄지는 곳을 제외하고는 거주인 회사 비거주인 회사에 대한 세금은 실질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결정하는 회계이익에 대한 주요 조정은 원천 자본비용과, 예상되는 향후 채무에 대비한 일반적인 예비금과 같은 과세와 관련되어 발생하지 않은 비용들, 특히 승인받지 않은 예금에 대한 기부금이나 연기금, 승인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 같은 금지된 비용, 그리고 생산목적의 수입과 전혀 혹은 전적으로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회계 감가상각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이나, 산업용 빌딩, 산업용 빌딩으로 간주되는 건물들(상업용 빌딩은 제외)을 위해 사용된 공장이나 기계설비에 사용된 비용지출 그리고 농장이나 플랜테이션 또는 산림경작과 관련있는 자본지출 등은 세금감가상각이 해당된다.

회사에 대한 과세평가는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적인 과세평가시스템을 따른다. 말레이시아는 법인세 귀속 시스템(Imputation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회사의 법인세 비율은 2008년 26%에서 2009년 25%로 낮아지게 된다. 더욱이 2008년부터 배당금이 면세되는 동시에 이익은 회사단계에서 과세되는 단일시스템이 적용된다.

8. 마케팅관리

가. 정의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산업소비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마케팅 관리를 '적절한 홍보(the right Promotion)를 통하여 적절한 제품(the right Product)을 적절한 장소(the right Place)와 적절한 가격(the right Price)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면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케팅매니저는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주로 제품, 가격, 장소, 홍보(4P's-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간단히 말해 시장에 맞춰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나. 마케팅 기회와 과제

말레이시아시장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마케팅 기회를 찾기 쉽다. 또한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시장은 인종적 배경, 소득, 교육과 기타 인구통계학 및 심리학적 특징에 기초하여 다양한 하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계, 중국계와 인도계는 각각 매우 독특한 시장을 형성한다. 각 인종의 문화적, 사회적 및 종교적 배경은 소비패턴, 구매성향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시장의 다양성으로 인해 시장을 분류하고, 제품을 홍보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 또한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은 소비자로 구성된, 인종을 초월하는 '서구 지향적'인 시장도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30대 미만 인구가 절반 이상이며, 이들이 시

장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활력이 넘친다는 점이다. 이 '젊은 시장'(youthful market)은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에 보다 수용적이면서 변화무쌍하고 새로운 소비패턴에 기꺼이 따른다. 식자율, 넓은 인구분포, 생활수준 및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말레이시아사회의 역동성과 변화는 마케팅관리에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학적인 변화와 급속히 성장하는 풍족한 말레이시장의 가치, 태도 및 기대 변화는 마케팅 관리의 기회와 도전을 부여할 것이다.

다. 전략적 마케팅

복잡다변하며 여러 인종이 혼재하는 말레이시아시장에서 마케팅의 역할은 장기적인 생존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 주석, 광물 및 벌목 시장에 관여하는 회사는 10여년 후 이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떠한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가?
- 영국과 유럽 에이전시에 의존하던 자동차유통업체는 일본산 자동차가 장악하기 시작한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성장하는 부미푸트라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회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 특정 종교집단이 보험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언할 경우 회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상은 전략적인 마케팅에 있어 다루어야 할 쟁점과 과제의 예시이다. 불행히도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마케팅 계획은 말레이시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지 않다. 장기 마케팅 계획은 일부 혁신적인 회사에 국한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마케팅 심사와 전략적인 마케팅 계획에 대한 활용은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 생산정책

생산정책과 관련해서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회사는 소규모 회사보다 폭넓은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제조업체가 국제적인 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모회사의 생산정책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내용물과 포장용기(예를 들어, 화장실용 비누)의 변경 없이 말레이시아로 제품을 직접 수출한다. 이 같은 전략은 말레이시아시장에서 흔히 실행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연구개발 활동이 부족하고, 해외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접근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품개발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회사는 한정되어 있다. 회사는 말레이시아시장용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개념을 일괄 정리하는데 지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 하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마케팅관리가 소비자지향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현지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 부족에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케팅을 하기 전에 신제품의 생존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마케팅 역시 널리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말레이시아시장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신제품의 실패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마케팅을 시도하는 회사는 소수의 혁신적인 회사에 국한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시장 및 현지 미디어 이용가능성으로 대표적인 페낭(Penang)을 시험마케팅 장소로 이용한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국제적 브랜드(특히 미국과 영국 브랜드)와 외국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기간 수입품에 의존해온 결과이다. 소비자는 대체로 광고효과를 통해 수입품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계 기업이 현지에서 제작하고 거래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국제적 브랜드명(Rothsman, Colgate, Lux)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지 제조업체도 외국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적이고 광고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브랜

드명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 현지 제조업체들은 거의 동일한 상표와 포장용기를 사용한 이미테이션 브랜드(예를 들어, Colgate를 모방한 Calgate)를 생산한다. 요즘 유명한 브랜드명을 딴 모조품이 유통되면서 모방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정부관리들이 400백만 달러 상당의 이미테이션 화장품을 적발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제품이 진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현지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마. 광고와 판매홍보

과거에 현지 외국계 대기업의 광고전략은 주로 모회사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광고는 저비용과 이용가능성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말레이시아 시장에 부적합했다. 전형적인 예로, 어느 담배제조업체가 모회사의 'Change to Wonderful Life'라는 담배광고용 문구를 수입했지만, 중국어, 말레이어 또는 타밀어로 번역하는데 실패 하였다. 요즘은 말레이시아시장에 맞게 광고를 수정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광고대행업체는 보다 말레이시아적인 광고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TV와 극장용 광고의 제작 및 상영에 대한 정부 규제와 지침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담배광고의 경우 광고문구를 담배갑에만 표기하도록 제한하는 등 정부의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보다 뛰어난 창조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현지 제조업체와 회사들은 외국계 회사만큼 적극적으로 광고효과의 이점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는 광고효과가 불러오는 이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광고비용 또한 비싸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규모가 크고 혁신적인 회사에 한해서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광고를 이용하고 있다.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광고가치에 대한 인식도 늘어남에 따라, 보다 많은 회사들이 판매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고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업체는 TV, 라디오, ASTRO(케이블TV), 인쇄매체, 인터넷, 극장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문맹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청각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라디오광고는 대중적이고 널리 이용되고 있다. TV광고는 가장 비싸지만, 부유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광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대부분의 인쇄매체는 소규모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미디어이다. 소규모 현지화된 회사의 예산 내에서 선택된 현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문, 지역가이드, 출판물 광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판매프로모션 서비스는 특히 소비자 제품라인의 마케팅 주도형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콘테스트, 상금, 프리미엄(덤), 무료 샘플, 전시회 등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은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세제 마케팅에 있어서 프리미엄 이용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프리미엄을 포함하지 않고 세제를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판매프로모션기술은 그 효율성이 증명되었으며, 특히 직접적 가격경쟁을 회피하기위해 그 방법 또한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미니마켓과 야채가게 등 소규모 가게에까지 전파되고 있다. DM(Direct Mailing) 기법 또한 프로모션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광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 및 전문 미디어의 부족, 현지의 고품질광고 생산 및 광고자료의 처리시설 제한성이 있다. 다인종 시장에서 광고하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다. 말레이시아의 다른 언어, 사회문화적 다양성은 마케팅에 있어서 골치아픈 요소이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인종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다른 어필과 테마는 필수적이며, 다른 인종의 언어, 사회문화적 뉘앙스를 서로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데이터의 부족은 이런 문제점을 심화시킨다. 시장 특징에 대한 적절한 정보, 소비자의 태도와 미디어 개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마케팅관리자는 많은 경우 자

신의 직감과 선택에 의존해야 한다. 광고 프로그램의 사전점검과 효과성 평가 역시 중요하다.

바. 가격책정

가격책정방법은 전통적인 방법과 서구적인 방법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통단계에 있어서 할인이 수용된다. 대형 슈퍼마켓과 서구식 백화점만이 고정가격을 적용한다.

고가격 전략은 제품의 홍보와 품질을 강조하는 대형회사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회사들은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고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격을 유지하는 가격경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요즘과 같은 고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격경쟁 흐름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보다 가격에 대한 광고가 빈번해졌으며, 가격광고는 산업판매분야에까지 확대되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판매가격 및 마진에 대한 빈번한 검토가 필요하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또한 소비자의 태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며, 마케팅관리를 몇 년이 지난 데이터에 의존할 수 없게 한다.

사. 외상과 지불

전통적으로 도매단계의 공급은 외상판매가 일반적이며, 외상기간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30일에서 180일,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80년대의 경기침체와 1997년 외환위기,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의 증가로 인해, 기업들은 외상기간의 축소, 부채관리, 현금거래 시 인센티브 제공 및 할인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 유통 및 대인판매

비록 식민지시기 이후로 하우스 에이전시(전속광고대리점)의 역할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수출입업을 지배한다. 그들은 여전히 말레이시아 원자재 수출과 제품 수입의 연결통로로서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현지 제조업체로 다양해지고 있다. 유통채널에서는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를 거친다. 특히 소매업 단계에서 다양한 중개업체가 존재한다. 이는 주로 소규모로 제품을 구매하는 분산된 시장을 위해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미니마켓, 슈퍼마켓, 쇼핑아케이드, 백화점, 연쇄점, 외곽 쇼핑센터 등 새로운 아웃렛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유통채널이 첨단상품화 계획과 재고관리 기법을 활용한 대규모 및 전문 소매업체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Amway, Fortiss, Newton 등 대인판매를 통한 유통채널의 큰 발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회사들은 전통적 소매 및 도매 아웃렛을 통해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맨을 비롯하여 유통업자로 활동하는 개개인을 통해 대인판매를 한다.

마케팅전략에 있어서 소규모 제조업체 및 기업들은 자신들의 영업사원을 통해 그들의 제품을 밀어 넣는 압박전략(Push)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대인판매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견인전략(Pull) 에 의존하는 대형 회사와는 반대 양상을 나타낸다.

자. 환경적 규제와 문제점

말레이시아에서 환경 규제와 문제점은 마케팅활동에 제약을 가져온다. 중요한 환경규제로는 증가하는 정부의 개입과 사업규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광고, 가격책정, 포장, 유통에 있어서의 정부 가이드라인과 규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마케팅 능력을 요구한다. 게다가 일부 기업들은 사기업에 비해 실질적인 이점을 누리는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펼쳐야 한다.

다른 요소로는 증가하는 소비자운동이 있으며, 소비자 중심주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마케팅은 광고의 신뢰성, 적절한 제품 레이블링, 비교목적의 가격책정과 판매촉진 속임수 등의 이슈에 직면할 것이며 향후 그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환경단체과 기타 공공이익단체(건강, 종교 등)는 마케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한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쉽거나 간단하지 않다. 기업은 이러한 환경 요소와 문제를 인지하고, 대항해 싸우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차. 시장 특성

□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큰 시장

- 일차자원 수출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제반 연관 산업의 미발달로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 가공무역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지진출 외국기업 및 현지기업이 대부분 완제품조립산업 위주의 제조활동을 하고 있어, 기계설비, 중간재 및 부품 등 자본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 전체 인구의 약 23.1%인 중국계가 상권 장악

- 동남아 화교네트워크는 물론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등지의 화교경제권과도 연계

□ 세계적 업체들의 경쟁 치열

-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추진으로 5천여 개의 다국적기업이 진출, 전기전자 등 공산품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품질 및 가격 경쟁이 치열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약 150개의 기업이 진출)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내구소비재 구매증가 및 고급화

- 1인당 GDP가 싱가포르를 제외한 주변 동남아시아국가 대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급 확대 및 소비패턴의 고급화가 나타나기 시작

카. 말레이시아 상관습

□ 상거래 관행

- 거래 초기 소액 무역결재는 은행을 통한 L/C와 T/T방식을 혼용하고 있으며 거액의 결제자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인수도조건(D/A), 지불도조건(D/P) 결재방식 요구도 빈번함.
- 수입상의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해 세관에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 클레임 처리 등 거래과정을 반드시 정식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두어야 향후 분쟁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
- 관공서는 급여수준(사기업의 1/2 수준)이 낮아 능동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도 2-3일 정도 걸리는 것은 빠른 편임.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오타 발생시 해당 서류만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 최근에는 민원처리기한을 법으로 축소시켜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있음.
- 평상시에 관련 공무원과 친밀관계를 유지해 놓는 것은 업무처리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요청을 통해 당일 팩스로 받을 수도 있음.

□ 상담 시 유의사항

- 중국계 화교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영문과 한문이 병기된 명함 준비가 필요하며, 명함상의 직위가 높을 경우 현지 바이어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음.
- 현지시장 협소 및 가족단위 중소무역업체가 많아 1회 오더물량이 소규모이나, 일반적으로 일단 구매선을 결정하면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음.
- 이슬람신도의 경우 돼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음주보다는 식사접대 또는 선물증정이 바람직함. 식사접대 시 메뉴는 현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닭고기 요리가 무난
- 서류, 명함 등을 건네줄 때 오른손을 사용해야 함
  - 이슬람신도들의 경우 왼손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
- 현지인들은 이름 앞에 Dato, Datuk, Tan Sri 등 작위 또는 Dr, Ph 등 학위를 나타내는 칭호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므로 호칭 시에도 붙여주는 것이 좋음.
  - 인사호칭 : Dato(주, 연방정부가 수여), Tan Sri(두 번째로 높은 작위), Tun(비왕족 중 가장 높은 직위, 22명으로 제한하며 국왕이 수여), Tunku, Tengku, Ungku(왕족에게 사용), Haji(메카 순례한 자)
- 말련 소비자들은 유명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선진국의 고가제품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한 편이며 '97년 경제위기 이전 고속성장에 따라 중·고급브랜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
- 상담 전 시내 백화점, 상가 등을 미리 방문하여, 현지인의 기호, 유행상품 등을 파악 후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함.
- 현지바이어의 경우 관례적으로 독점수입권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으며 합작투자 요구 또한 많음. 상담 바이어가 충분한 사업경험 및 합작투자여력이 없다면 상담 중에 답을 피하는 것이 좋음.

- 일반적으로 긴팔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것이 보편적인 비즈니스 복장으로 중요한 미팅이 아닌 경우 양복 윗도리를 입지 않는 경우가 많음.

9. 사업분쟁 해결 및 중재

여기에서는 분쟁해결뿐만 아니라 분쟁회피도 다룰 것이다. 발생 가능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분쟁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쟁해결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고려하는 분쟁해결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다. 대부분은 소송과 중재에 대해 다룰 것이다.

소송은 중요한 부분이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세히 다룰 것이다.

- 만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 할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분쟁해결 방식이므로
- 법정을 통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면 어떠한 형태의 분쟁해결도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 금지명령이나 회사청산과 같은 일부 구제책은 강제성이 있는 법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중재 역시 중요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세히 다룰 것이다.

- 국제적인 분쟁과 같이 상업적 성격을 지닌 분쟁해결에 선호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 대부분의 법률시스템에 의해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대안적인 분쟁해결 방식들에 대해 간략히 다룰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간의 업무적인 관계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와 같은 대안적인 방법들의 주목적은,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중재와 같은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본 조사에서는 저자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자나 무역업종사자들이 어떻게 잠재적인 어려움들을 피하는지를 알아보고, 또 일부 실패한 사례의 연구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9.1 사업분쟁 해결

가. 분쟁회피

이 분야는 이번 조사의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야중의 하나이다. 분쟁해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당사자들은 비용과 시간, 사업 효율성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업적 계약이나 어떤 법적인 관계에 기초한 접근방법 중에서 가장 고려해 볼 만하고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좋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진행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은

-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전에 말레이시아 법률회

사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는 게 좋다. 외국의 법률전문가들이 간과할 수 있는 국내법의 함정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국내의 일반적인 법률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법률가들이 계약을 다룰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나. 분쟁해결 형태

분쟁해결은 “강성(hard)”과 “연성(soft)”로 나눌 수 있다. "강성"해결은 일반적으로 판사나 중재인 같은 판결인이 이해당사자들의 사태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 대한 변호를 바탕으로 적절한 해결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강성”해결은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는 더 부드러운 “연성”방식과 대비된다. 강성방식은 분쟁 중간이나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상업적인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정을 통해서 강제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대한 결정을 통해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과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해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강성"해결은 소송과 중재를 수반한다.

분쟁해결의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로 "연성"방식이 있다. 연성과 강성 해결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분쟁해결 절차 진행상의 차이 외에도 그러한 진행 절차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다. 연성 해결 방식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데 반해, 강성방식은 필연적으로 상대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을 불러오는 경향이 있다.

① 소송

말레이시아는 상급재판제도에 따라 하급법원,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과 연방법원과 같은 상고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급법원은 하급법원법 1948 (the Subordinate Courts Act 1948)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형사상의 기소와 관련 없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을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채무변제, 개인피해에 대한 보상, 고용 관련 소송과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 등이 민사소송에 해당된다.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의 잘못되거나 거짓된 행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나 피해 배상을 원하는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과 관련된다. 같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피고 또한 원고에 맞서 반소할 수도 있다.

형사기록법원(Sessions Court)과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이 하급법원에 해당된다. 치안판사법원은 25,000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분쟁에 대한 민사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형사기록법원은 25,000 링깃 이상 250,000 링깃 미만에 대한 민사재판을 진행한다. 하급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은 지방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다.

지방법원은 250,000 링깃을 초과하는 분쟁에 대한 민사재판을 진행한다. 지방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은 250,000 링깃을 초과하는 분쟁에 대해 고등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는 반면에 250,000 링깃 이하의 분쟁에 대한 상고는 고등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강제명령, 포고, 청원서 청산(예외적인 경우), 부도, 부부관계 및 미해결된 피해보상과 관련된 250,000링깃 이하의 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고등법원에서 자동으로 연방법원으로 상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원제도와 함께 법령에 근거하여 무역분쟁. 정당한 사유나 해명 없이 해고되어 탄원한 사항들과 같은 고용 관련 이슈 등을 판결하는 산업재판소가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직원고용이 수반되는 투자를 하려면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소송의 단점으로는 법원에 계류된 다른 사건들로 인해 다른 분쟁해결절차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많아진다는 점이다. 재판결과는 문서화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확정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법원이 분쟁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장점은 중재에서는 불가능한 긴급명령이행과 같이 해당 구제에 대한 판결 권한과 재량이 있다는 사실이다. 소송은 또한 분쟁당사자가 다수일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들을 소송에 참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건설하청업자들을 고용주가 고소하고 실제 피고는 제3자라고 주장할 경우에 법원은 해당하는 제3자를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소송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계약적인 합의에 대한 이행에 강제력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소송의 또 다른 장점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쟁을 종료할 수 있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멤버의 자발적인 청산을 제외한 일반 청산절차의 경우에는 법원만이 회사 청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에 의해서 진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청산명령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소송의 큰 장애는 사업상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관계가 악화된 감정에 의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도표는 말레이시아 법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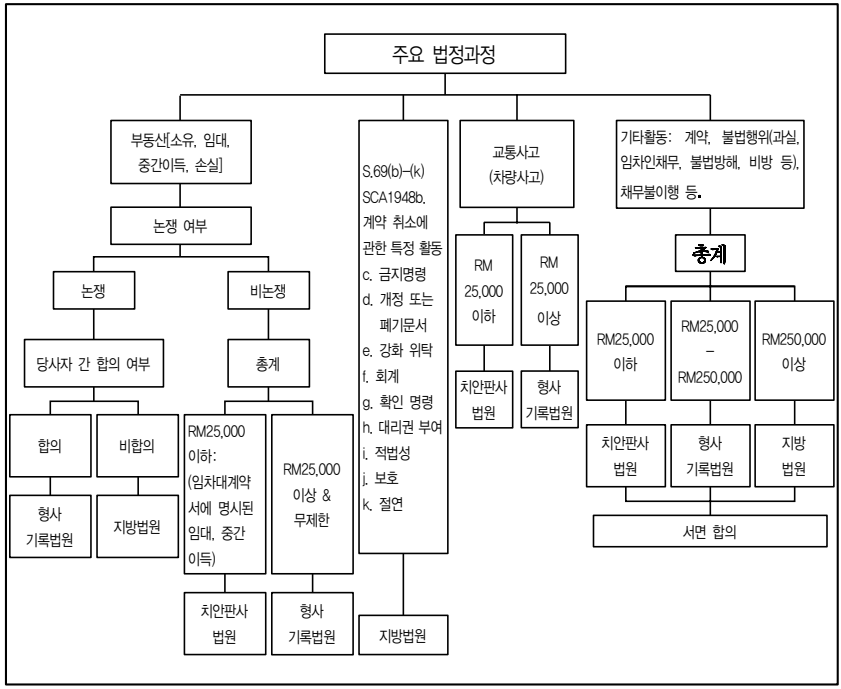

② 중재

□ 중재 일반

중재는 국제무역분쟁 해결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중재의 장점으로는

-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심판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관련 법적, 기술적, 상업적 전문지식을 가진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적 등과 같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이유로 특정 중재자를 선택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 분쟁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중재절차는 법적 진행절차와 반대로 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상업적인 민감한 정보가 일반에게 노출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재절차의 진행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

주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서 작성된 기록들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 당사자들은 분쟁절차 진행 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법정에서는 주로 국어인 말레이시아어로 진행되는데 영어 및 기타 언어 사용을 고려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중재당사자들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적인 중재의 경우 보통 당사자들의 국적장소가 아닌 중립적인 장소에서 진행되는 게 관례이다.
- 당사자들은 자체 법적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법원에서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는 한, 오직 지방법원의 변호사와 소송대리인만이 서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반도)의 법정에 설 수 있다. 사바와 사라왁 주(일명 동말레이시아)에는 각각의 독립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말레이시아 법률가들은 특별한 근거가 없이는 이 법정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중재에서 법적대리인에 대한 제한은 일반 법정만큼 엄격하지 않다.
- 중재는 일반적으로 법정에 서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연기나 휴회를 야기하는 법정 판결보다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더 쉽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근무지 이동이나 퇴임 및 승진 등으로 담당판사가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국제중재재판소에서는 종종 기한을 정해 놓고 진행한다.
- 중재는 소송과는 반대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제출할 증거의 요건도 엄격하지 않다.
- 법원의 인증.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재법 2005(the Arbitration Act 2005)에 따라 중재내용(중재에서 합의된 사항)을 법정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지방법원에서 중재내용(내/외국인 포함)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중재의 단점으로는 만약 심의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절차 진행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종결하는데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송

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중재에서 가능한 구제방법이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여타 분쟁해결방법과 비교해서 가장 제한적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구제책이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중재자나 또는 중재패널위원 중 한 사람이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처음 중재자와 함께 진행된 절차에서부터 계속 중재를 이어가는데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 중재자가 오기까지 모두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정된 감독관이나 기관 없이 국제상공회의소 같은 기관의 후원하에 양 당사자와 중재자 사이에서만 진행되는 특별위원회나 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하는 Perubuhan Akitek Malaysia (PAM)와 중재법2005(Arbitration Act 2005)에 따르는 Kuala Lumpur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KLRCA) 등이 당사자들이 중재원에 동의할 수 없거나 중재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그리고 위 감독기관들과 함께 런던 중재기관(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CIArb) of London) 말레이시아 지부와 말레이시아 중재원기구(Malaysian Institute of Arbitrators)도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따라서 충분한 중재원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투자분쟁 조정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국제분쟁조정회의(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따라 설립된 자율기관이다. 말레이시아는 이 협정에 서명한 가맹국이며 ICSID협정국이 되기 위한 비준된 협정서를 기탁했다. ICSID의 주요 목적은 당사자(예를 들어 타 가입국들이 인정하는 가입국이나 투자자) 사이의 법적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서 국제투자분쟁 화해나 중재를 통한 공정한 국제적인 포럼을 창설하는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ICSID는 분쟁에 대한 화해나 중재는 하지 않지만,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화해위

원회나 구성한 중재심판위원회를 위한 도구와, 진행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ICSID에 의뢰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만, 한번 합의되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회의에서 만들어진 중재결정은 다른 조약국의 법정에서 유보할 수는 없으며 다만 회의에서 제공한 구제책을 적용할 수는 있다.

□ 중재법 2005 (The Arbitration Act 2005)

말레이시아에서 중재는 중재법 1952(the Arbitration Act 1952)를 대체한 중재법 2005(the Arbitration Act 2005)에 따라 진행된다. 구법을 기초로 작성된 계약의 경우는 2006년 3월 15일부터 유효한 사항부터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UNCITRAL Model Law의 조항과 말레이시아가 비준한 중재안의 강제성을 다룬 뉴욕회의 1958(York Convention 1958)의 주요 조항을 기초로 하고 있다.

③ 분쟁 해결을 위한 기타 수단

□ 협상

협상은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상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나 해결에 이르기 위해 당사자들이 시도하는 합의 교섭 과정이다. 이것은 분쟁해결의 걸출한 방법이다. 많은 분쟁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직접 합의할 수 있으나, 복잡한 법적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협상은 기본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협상기한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통신수단을 통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CEO나 결정권을 가진 개인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협상이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대표단을 구성하고 상급단

체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직접 결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행과정은 비공개적이며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제3자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와 결과를 모두 직접 다루게 된다.

협상의 한 가지 뚜렷한 장점은 엄격한 법적 구제책보다 유연한 구제 방법이라는 점이며, 이상적이고 창의적인 구제책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일한 단점은 해결 방법에 대한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해결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 조정

조정자인 제3자의 도움으로 협상을 하는 방법이다. 이 분쟁해결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반적으로 중재인의 능력과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분쟁기간이 결정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보다는 작지만, 협상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소요된다. 협상과 마찬가지로 구제책이 좀 더 다양하여 창의적인 구제책을 찾을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중의 어느 한쪽이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중재자가 "분쟁해결사(Peace maker)"로서 당사자 상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므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 간의 상호관계는 일반적으로 조정 이후에도 유지된다. 그리고 중재자의 도움 덕분에 협상에 비해 해결에 이를 수 있는 확실성이 높지만,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재자의 역량과 중재에 적합한 이슈인지에 따라서 소송보다는 해결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은 권장할 만하며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 분쟁해결위원회

분쟁해결위원회는 계약체결 전이나 계약 작성 과정에서 설립되는 기구이다. 분쟁해결위원회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위원회는 인증받은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약서 지속기간 동안 종종 모임을 갖는다. 분쟁해결위원회의 기능은 좀 더 큰 분쟁으로 야기되기 전에 생기는 계약 작성 문제들에 대해 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다. 전형적으로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거나 당사자들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당사자들은 자주 분쟁해결위원회의 결정을 중재로까지 가지고 간다. 분쟁 해결 위원회는 주로 큰 규모의 건설 관련 계약에서 사용된다. 계약이 오랜 기간 사용되는 상황에서, 분쟁해결위원회를 이용하면 계약당사자들이 분쟁이나 이견에 대해 초기단계서부터 계약내용과 업무성격에 대한 경험과 전문능력을 갖춘 패널들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효과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팀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작은 계약에서 분쟁해결위원회의 유용성은 더 제한적이다. 그밖에 당사자 사이에 아주 큰 규모의 거래가 따르지 않은 일정 규모의 계약에서의 사용은 사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반해 완전한 중재로 이어지기 전에 잠재적인 주요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상업적 편리함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하며, 잦은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방법은 사용해볼 만한 유용한 가치가 있다.

9.2 사례 연구

한 외국회사가 말레이시아회사와 합작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 파트너회사가 지분의 51%를 갖고, 외국회사가 49%를 갖는 형태로 진행되었다.("the JV Co."). 합작합의서의 조항은 기술라이센스와 외국회사로부터의 구매뿐만 아니라 JV Co.의 운영에 대한 내용도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사항은 외국투자자의 국적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 말레이시아 변호사로부터는 법적 자문을 받지 않았으며, JV Co.의 계약서와 협회의 조항은 합작합의서에 따라 수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은 아무 일이 없었다면 장점이 되었겠지만, 여기서는 불운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예방장치를 만드는데 충분한 관심 없이 진행된 것도 문제였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외국인투자자가 JV Co.의 운영을 가까이에서 감독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파트너와 필요한 합의 없이 외국법인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외국투자자는 말레이시아파트너에게 적절한 이익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JV Co.에 투자했던 외국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외국인투자자는 말레이시아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JV Co.를 청산하기 위해 말라야 고등법원에 청원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판사들의 부족으로 인해 심리와 처리 기간에 수년이 걸렸다. 비록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를 찾은 외국인투자자의 불운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 분명하긴 하지만, 만약 JV Co.에 대한 통제와 예방을 위한 적당한 제도를 처음부터 도입했다면 문제는 사전에 감지되었을 것이며,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Ⅵ. 회사정리

VI. 회사정리

1. 말레이시아 파산법

말레이시아 파산법은 파산법 제1967조("BA 1967")에 포함된 조항으로 결정된다. 법원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어음만기 시,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개시할 때 파산명령을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파산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내린 판결 집행을 채권자가 개인적인 채무자(법인이 아닌)에 대항하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강제 집행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진다.

파산절차의 약식 분석은 다음과 같다.

가. 파산절차 시작을 위한 출소기한 시기

출소기한조항 1953조의 항목 6(3)에 준하여, 파산절차 제기에 대한 출소기한 시기는 판결일로부터 12년이다, 그러나 이자연체는 판결일로부터 6년 동안 청구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 법정 최소

파산절차 시, 전체 빚은(판결이 포함한 것에 따라) RM 30,000 이상이어야 하고 파산공지가 먼저 발포되고 채무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2003년 개정된 BA1967조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부채를 RM 10,000에서 RM 30,000으로 늘렸다. 사건에서 채무자는 판결 채무의 양도에 대해 제한시간 내에 답하지 않으면, 그가 파산행위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채권자는 고등법원에 파산탄원을 제기할 수 있다. 파산탄원의 제기에, 법원은 관리명령과 파산선고를 위한 진행을 하게 된다("AORO"). 판결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가 될 수 있다.

다. 파산선고의 결과

파산재산에 대한 권리(동산이나 부동산 모두 다)가 Jabatan Insolven si Malaysia의(이전의 법적양수인) Insolvency("DGI")의 Director General에게 귀속되어 관리되며, 파산에 따라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라. 파산의 기본의무

파산의 기본의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ORO 이후 DGI의 관청에 바로 제출해야 한다. 그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은행계좌 장부, 은행진술서, 그리고 자산 및 금융사항관련 문서/권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은 실무진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AORO 에 충실해야하고 DGI의 특정 지시를 따라야하며, 주어진 규제사항을 어겨서는 안 된다. DGI에게 수입과 소비에 대한 진술서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해야한다. 파산자의 수입, 거주지, 권한, 자산의 소유권과 다른 관련 사항의 변화를 DGI에 통보해야 한다.

마. DGI의 책임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DGI의 책임

- 권한, 채무 그리고 파산 건의 상황 조사
- 파산자의 모든 권한에 대한 관리인/수탁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 명명된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처분이익 분배
- 파산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특히 국외로 나가고자하는 요청, 투기사업에의 연루, 회사에서의 지위 유지 등을 고려
- 상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고등법원에 제출할 보고 자료 준비
- BA 1967번의 33A항에 따라 파산자에게 면책 제공

바. 채무불이행 파산자에 대한 규제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다.

- 치안판사나 개회법정판사, 지방의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
- 고등법원(BA 1967조의 38항(1))이나 DGI의 동의 없이는 외국여행을 금지
- DGI나 고등법원의 최초동의 없이 회사의 당좌경영에 활동적으로 포함되거나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
-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 혹은 DGI의 승인 없이 친척이나 배우자가 소유하는 회사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38항(1)(d)그리고/혹은 BA1967조 (e))
- DGI 혹은 고등법원의 승인 없이 일반적인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

사.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의 권리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 각 채권에 대해 RM 10.00의 서류수수료와 함께 채권증명 서류형태로 DGI에 "입증할 수 있는" 채권을 요구할 권리
- 지불 보증한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권리
- 채권자회의에 참석하고 파산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

아. 빚의 변제 순서

빚의 변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지불 보증한 채권자(즉 금융기관)
- 모든 지방세와 토지세(예를 들어, 파산선고날짜로부터 12개월 내에 파산으로 인해 지불 못한 토지세 및 임대료)
- 법정채권자(즉 소득세와 말레이시아의 내국세입청이 파산자에게 부과한 각종 세금)
- 노동자별로 RM 1,000.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동자의 임금 및 급여(일반적으로 파산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
- 파산자가 고용한 노동자들의 기금 납입금, 즉 EPF(사회보장보험)에 납부한 보험료(파산 판결일 전 12개월 동안 지불 가능한 것에 한정)
- 노동자 보상에 관련된 법에 의해 지불해야할 노동자 보상금
- 무담보 채권자

자. 법원명령 또는 DGI 지시의 불이행에 대한 파산조치

다음은 법원명령 또는 DGI 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파산조치이다.

- 출두명령에 따라 파산자가 DGI의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았을 경우 파산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정해진 시간 내에 파산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월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BA 1967조의 91(2)항에 따라 파산자를 명령에 따르게 하기 위해 예비 심문을 집행할 수 있다.

차. BA 1967 개정법

BA 1967조는 2003년에 새로 개정되었고,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탄원을 신청한 채권자에 대한 필요조건은 "사회적 보증인(Social Guarantor)"에 대하여 파산신청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가진 빚을 탕감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부채를 RM 10,000.00 에서 RM 30,000.00으로 늘렸다.
- DGI는 채무자에게 별다른 사유 없이 파산면책증명서를 발행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DGI의 통제권과 조사, 기소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DGI에 경찰권을 주고 조사원에게 조사, 기소, 법률 집행권을 부여했다.

2. 회사의 제명

회사명의 제명은 아래의 신청지침을 참고.

회사명 제명	
308항(1)	308항(3)
지침: 1. 공식적인 정리해산 과정의 착수 없이 해산한다. 2. –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지침: 1.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리해산된 회사를 제명할 것이다. (a) 청산인의 부재 (b) 사무가 완전히 종료 되었으며 청산인은 6개월 동안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다; (c) 사무는 271항(법정해산)에 따라 완전히 종료되었으며, 자산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가능 한 자산은 회사의 해산에 있어 법원의 명령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치 않다.
필요조항: 1.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서 회사명을 제명하기 위한 신청개시에 따른 주주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수 주주의 동의) 2. 회사는 신청이 이루어질 때에 자산 및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3. 회사는 청구명부에 미결제비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4. 회사는 회사법 1965에 따른 미해결벌금 또한 없어야 한다. 5. 회사는 미불세나 정부 혹은 다른 기관에 대한 채무가 없어야 한다. 6.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관한 회사의 정보는 최신정보여야 한다. 7. 회사는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어떠한 법적 소송절차에도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8. 회사는 주주에게 자본환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9. 회사는 회사를 소유하지 않으며 혹은 다른 법인의 자회사여서는 안된다. 10. 회사는 보증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필요조항: 1. 사무는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불변해야 한다. 해산명령이 승인된 이후에 회사상태 불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사무는 완전히 종료되어야 하며 이용 가능한 자산 또한 존재치 않아야 한다. 3. 회사는 신청 작업에 앞서 청산인에 의해 관리가 필요한 자산이 없어야 한다. 4. 회사는 미불벌금을 갖지 않아야 한다. 5. 회사의 재산관리에 있어 청산인에 의해 초래되는 모든 미불세금 채무가 정리되어야 한다. 6. 회사의 재산관리에 있어 청산인에 의해 초래되는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모든 부채가 정리되어야 한다. 7. 청산인이나 회사는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어떠한 법적 소송절차에도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절차: 1. 모든 필요조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2. 점검표에 표시된 모든 사항들을 확인한다.	신청절차: 1. 청산인에 의한 진술서가 동반되어야 한다

□ 신청비

완전한 신청서와 함께 RM 120.00의 신청비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제출해야 한다.

□ 제명신청의 취소

신청자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의 서명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는 청산 전 언제라도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보통지

제명은 증서발행 관련자에게의 통지, 관보발행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관보가 발행되면, 회사는 해산해야 한다.

3. 회사의 청산

일반적으로, 한 회사는 자발적 청산 혹은 법원명령에 의해 청산된다. 다음 사항을 참고.

	자발적		법정
	멤버의 자발적 청산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	
청산 환경	• 특정 사건의 발생. • 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고정기간 만기. • 특정 판결을 통해 회사가 청산. • 회사의 지불능력이 있을 경우. 즉 회사가 부채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자산 보유(자산>부채).	• 이사진은 부채로 인해 회사의 존속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 •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즉 회사는 부채를 해결할만한 능력이 없음(자산<부채).	회사법 1965의 218항에 의거, 청원자의 신청에 따라 법정에 의해 승인된 청산명령에 따름. • 부채가 만기에 도달했지만, 회사가 이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자산<부채).
청산 절차	이사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이사회를 통해 의결 실시 • 회사는 청산되고 이사 과반수가 지불능력을 선언하며, 또한 이에 서명한다. (form 66) • EGM(Evaluation Grid Method)이 요청되며 청산인이 지명됨	이사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이사회를 통해 의결 실시 •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으며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임시청산인이 지명된다. • 사원회의 및 채권자회의가 소집된다. • 이사진은 회사의 사태와 파산계획 관련 상황을 발표하기 위해 모든 채권자를 회의에 참석시켜야 함. (form 61, 62)	
청산 개시	의결 통과 시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언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등록될 시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이는 임시청산인이 파산의 통과 이전에 지명되었을 시에만 적용가능하다).	법정명령과 동시에, 청산인의 소유가 됨.
최종 회의 및 청산	회사의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고, 납세절차가 완료되면, 회사총회가 소집된다. 회사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와의 최종회의(form 69)의 공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청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회사의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면, 회사총회 및 채권자총회가 소집된다. 회사는 등록부와의 최종회의(문서 69)의 공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청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회사의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면, 회사총회 및 채권자총회가 소집된다. 청산인의 해제 및 기업의 청산을 위해 법정에 신청.

4. 지점의 폐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섹션 340 11절 1부에 의거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폐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 말레이시아에서의 폐업 결정
-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업운영을 중지
- 사업운영 중지이후 7일 이내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폐업 통지
- 폐업 통지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가 회사명을 제명함.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

- 주소: 2nd, 10-18th Floor,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622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4047 6000
- 팩스: (603) 4047 6317
- 웹사이트: www.ssm.com.my
- 이메일: enquiry@ssm.com.my

VII. 우리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방안

VII. 우리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방안

1. 진출기업의 성공사례

1.1 삼성전자의 말련투자 성공요인은 철저한 현지화전략

□ 기업개황

기 업 명	삼성그룹(삼성전자, 삼성코닝, SDI) (현지법인: SAMSUNG Malaysia Electronics (SME) Sdn. Bhd.)
진출지역	말레이시아 KL, 세렘반, 클랑, 페낭
진출연도	1979년 삼성물산 KL 사무소, 1989년 전자렌지 생산법인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2006년 누적 투자액 US$ 15억
주요품목	청소기, TV, 모니터, CRT, CRT용 유리
종업원수	현지 종업원 6,000 명
홈페이지	www.samsung.com.my

- 1989년 9월 이래, 총 US$15억을 세람반 전자복합단지에 투자한 삼성전자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성공적인 외국 투자기업
-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남쪽으로 80여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복합단지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코닝의 해외법인이 입주, 모래를 이용하여 브라운관 유리를 만들고, CRT 튜브를 이용하여 브라운관을 만들어 최종 완제품인 컴퓨터용 컬러 모니터를 생산할 수 있는 일괄 생산체계를 완비
- 이 단지는 생산품의 95% 이상을 세계 각국에 수출함으로써 말레이시아 경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기업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 시장환경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2,700만 명 수준으로, 그리 큰 경제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시장에는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 또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시장의 경우,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로 인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5억 6천만 아세안시장을 겨냥한다면, 이 시장이 결코 협소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말레이시아의 전기 · 전자산업은 1970년대 초 다국적기업들이 저렴하고 기술력 있는 노동력을 찾아 말레이시아로 진출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전기 · 전자제품의 생산기지로서의 말레이시아의 투자가치를 높이 평가한 미국, 일본, 유럽, 대만, 한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이어졌으며, 이 중 삼성전자의 말레이시아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들 중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성공적 유치로 인해, 현재 말레이시아는 반도체기기(semiconductor device)와 음향입력장치(audio input equipment) 부문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말레이시아의 내수시장 공략보다는, 수출을 위한 중간재와 완제품의 생산거점으로서 말레이시아를 활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정부의 지속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 자유화정책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세계경제와의 통합성(integration)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이 중심에 위치한 전기 · 전자산업은 생산, 고용, 수출 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해, 전기 · 전자산업의 수출액은 US$ 759억을 기록하며 말레이시아 총 수출액의 47.7%를 차지해, 최대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내, 전기 · 전자산업의 총 투자액 중 외국인에 의한 투자가 RM 86억을 기록해, 전체 투자액의 85.8%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 전기 · 전자산업 내에는 모토로라, 파나소닉, 소니, 필립스, 삼성 등 거대 다국적기업들을 포함한 1,0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전기 · 전자산업에 대한 내 · 외국인 투자 규모 】

(단위: RM 1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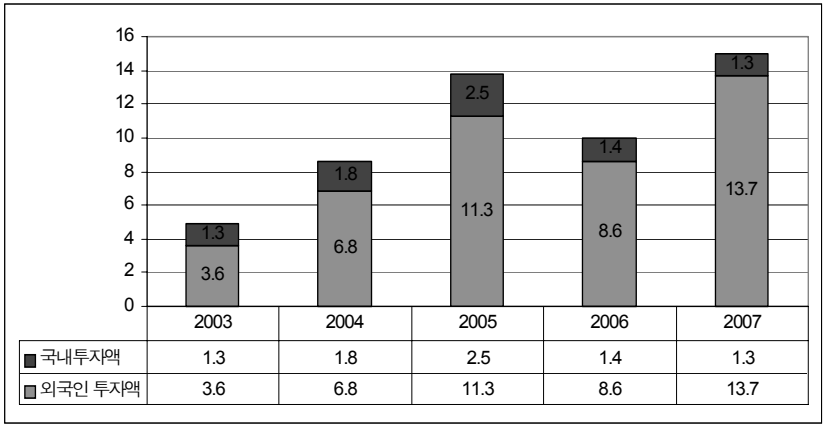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투자액	1.3	1.8	2.5	1.4	1.3
외국인 투자액	3.6	6.8	11.3	8.6	13.7

자료원: MITI(통상산업부)

말레이시아의 전기 · 전자산업은 과거 노동집약적 제품 생산 위주에서 탈피, 현재는 최신집적회로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많은 거대 글로벌기업들의 왕성한 재투자와 사업확장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전자산업과 세계와의 연계성(global linkage)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외에 말레이시아에 사업운영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OHQ), 지역물류센터(Regional Distribution Center),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er, IPC),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등을 개설하는 다국적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전자부문 주요 다국적기업으로는 인텔, 델, 삼성전자, 모토로라, 소니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인텔(Intel)사의 경우, 1972년 US$ 100만의 투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투자액이 총 US$ 30억을 넘어섰으며, 10,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5,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델(Dell) 사의 경우, 글로벌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에 글로

벌 비즈니스센터를 구축, IT 지원개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총 누적투자액이 US$ 15억을 넘어 외국인투자기업 중 3위를 기록하였으며, 현지 종업원 수는 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말레이시아시장의 경쟁동향을 살펴보면, 전자제품부문의 경우 세계 유명브랜드와 일본, 한국, 중국, 대만 그리고 현지 제조사들까지 경쟁에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과 LG는 현지에서도 최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주로 일본 가전업체들과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전자업체들의 경우, 시장진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중국과 대만산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높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인식이 일본과 유럽, 미국 등에 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전자업체의 다수는 현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이다.

□ 진출과정 및 사업성과

진출과정	
1979	삼성물산. KL 사무소 개설
1989	삼성전자. 전자레인지 생산 법인
1990	삼성 SDI. CRT 생산 법인
1992	삼성 코닝. 브라운관용 유리 생산 법인
1995	삼성전자. TV/Monitor 생산 법인
2006	중공업 합작법인(MSLNG)

1990년 첫 삽을 뜬 이래 총 US$ 15억을 세람반 전자복합단지에 투자한 삼성전자는 가장 성공적인 외국투자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남쪽으로 80여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복합단지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코닝의 해외법인이 입주, 모래를 이용하여 브라운관용 유리를 만들고, CRT 튜브를 이용하여 브라운

관을 만들어 최종완제품인 컴퓨터용 컬러 모니터를 생산할 수 있는 일괄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단지는 생산품의 95% 이상을 세계 각국에 수출함으로써 말레이시아 경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기업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말레이시아 GDP의 1.7%, 전자제품 수출의 3%를 담당하고 있다.

16만평의 부지 위에 세워진 현대화된 생산시설과 더불어 6,000여명의 현지 직원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 이곳은 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수출주력기업 유치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정책에 부합하여 현지인들에 대한 기술전수, 현지 협력업체의 개발, 육성 등의 현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련 삼성전자의 현지 구매비중은 1997년 43%이던 것이, 2000년 48%, 2005년에는 56%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현지사회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요 수상 경력	
1998년	말레이시아 최우수기업상, Caring Employee AWARD(근로자복지 우수기업상)
2000년	PM's HIBISCUS AWARD(환경부문 총리상)
2001년	Productivity AWARD(생산성 우수상)
2001년	PM's QUALITY AWARD(품질부문 총리상)
2005년	PM's Most Competive Employer Award & Caring Employee Award (가장 경쟁력 있는 고용자 부문 및 근로자복지 부문 총리상)

1997년 복합단지 준공식에 참석한 마하티르 총리는 거대한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그곳에 근무하는 현지인들을 격려한 뒤에 각료회의에서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관련 부처에 삼성전자복합단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시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삼성그룹 전자복합단지의 전방위기업 활동은 현지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1998년에 우수 다국적기업들을 물리치고 말레이시아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성공요인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삼성전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현지화 전략에 있다. 10여 년간 축적된 현지인들의 경험과 기술의 활용, 지속적인 현지 협력업체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체제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 말레이시아 토착기업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등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기업활동을 이끌어낸 점이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특유의 전통 및 관습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삼성에 근무하는 현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열성은 삼성 고유의 기업문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업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과 그에 따른 기숙사 등의 복지시설은 다른 해외투자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인종간에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각종 행사와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융화시킨 사례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된 바 있다.

①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화

삼성은 1979년 삼성물산 KL 사무소 개설 이래, 말레이시아의 투자여건과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계 기업으로서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말레이시아에서, 현지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성공적 사업운영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② 일괄생산체계의 구축

삼성전자의 말레이시아투자 성공요인으로 일괄생산체계로 인한 생산경쟁력 강화를 꼽을 수 있겠다. 현지에서 직접 모래를 이용해 Glass Panel 과 Funnel을 생산하고, 이를 CRT 생산 후 TV/ Monitor로 가공하는 일괄생산체계를 보유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1989년 세렘반 전자복합단지 입주 시 각 관련사와 협력

업체들이 동반 진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다.

③ 인간존중경영

말레이시아에서 삼성전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 성공적인 인간존중경영 노력을 들 수 있다. 상호간의 존중, 애정, 신뢰, 진실성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기업이 소홀하기 쉬운 복지후생과 종업원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경영방침을 강화해,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사회단체지원 등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다양한 인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더불어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우수인력의 확보, 양성 및 제도의 현지화에 노력하여 오랜 기간 복합 단지에서 근무하며 축적된 현지인의 경험과 기술이 국내수준 못지않게 성장하였고 지속적인 현지 협력업체 개발로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④ 지속적인 경영혁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영혁신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적용하고 있다. 6시그마, TPM, PI, SCM 등을 경영과 생산에 접목해, 시장선도자의 위치를 유지하며,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⑤ 우수 현지인력 확보 노력

삼성전자의 인재중심경영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의 4대 국립대인 UM, UKM, UPM, UTM 등과 제휴를 맺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 직원을 우수 인력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 계층별 교육과정
  - 신입사원 입문교육
  - 간부 승격 교육
  - 리더쉽 교육
- 전문가 육성과정
  - 6-Sigma 벨트교육
  - Process Inovation
  - MBA과정 지원

⑥ 말레이시아의 투자입지를 최대한 활용

삼성의 말레이시아투자 성공의 다른 요인으로 말레이시아가 가진 투자잠재력을 꼽을 수 있겠다.

- 경쟁력 있는 사업비용
- 우수한 인적자원
- 친외자도입 정책
- 시장중심형 경제정책
- 우수한 사회간접자본
- 아세안시장 진출의 교두보

⑦ 지역사회기여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삼성전자는 말레이시아 대표적 외국계 글로벌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삼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제공해 주는 장애자시설 지원,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 쓰나미와 같은 각종 재난복구지원 및 2003년부터 동남아시아지역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해 'Digital Hope'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기업으로서 현지에서 대규모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는 외국계 투자기업의 현지화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겠다.

□ 시사점

① 철저한 시장조사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기업으로써는 현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경쟁상황, 투자여건, 성장잠재력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동남아시아시장을 쉽게 생각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대부분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② 현지화전략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 외국계 기업들에게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현지 파트너와 손을 잡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힘들며, 일부는 참여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 진출을 고려중인 한국업체로서는 현지의 유력 파트너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현지 법인설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지화전략을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1.2 차별화된 기술/품질로 지속 성장을 추구한 HENIKWON

□ 기업개황

기 업 명	Henikwon Corporation Sdn. Bhd
진출지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진출연도	1983년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USD 1천만불
주요품목	중전기부스닥트
종업원수	250명 (한국인 15명)
홈페이지	www.henikwon.com

□ 회사 소개

1983년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한국인 기업이며, 중전기제품 생산 전문화업체로서 각종 중전기제품을 생산하여 아시아, 중동 및 유럽의 36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HENIKWON BRAND의 중전기부스닥트시스템은 산업용 전기제품시장의 선두주자이며 세계적 BRAND인 SIEMENS, GE, SCHNEIDER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품질과 철저한 고객서비스 체제로 경쟁력 우위에서 2001년 이래 중전기제품 최대 시장인 아시아시장의 65% 중동시장의 53%, 유럽시장의 1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양주 및 남미시장에서도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전기제품시장에서 외국제품 진출이 극히 어려움은 물론 세계적인 BRAND인 SIEMENS, GE, SCHNEIDER 제품조차도 공급이 전무한 일본시장에 진출하여 BRAND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싱가폴 창이 국제공항과 홍콩 첵락콕 국제공항은 물론 영국의 히드루 국제공항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기술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IT산업의 산실인 영국 INTEL공장에의 성공적인 제품공급으로 전

세계의 다른 INTEL공장으로의 추가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대만의 최대 IT 공장인 RITEK, 태국의 MICROCHIP공장, 인도의 SIMENS공장과 GE공장에도 독점 공급하고 있다.

□ 시장 환경

현재 4조 불로 추정되는 세계 건설시장은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기본적인 인프라시장인 발전설비의 투자 및 일반 건설시장이 상승세를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건설시장의 12.5%를 점유하는 5,000억 불 규모의 전기설비시장에서 전기적 특성상의 품질우수성과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부스닥트시스템시장은 견고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업수주 성과

- 사회간접시설
  - 공 항 : 영국 히드로 공항, 홍콩 첵락콕 공항, 싱가폴 창이 공항, 타이완 카오싱 공항,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공항, 인도 방갈로 공항 및 하이드라바드 공항
  - 지하철 : 홍콩 카우룽 지하철, 싱가폴 MRT
  - 발전소 : 말레이시아 탄중빈 발전소 / 지마 발전소
    베트남 포첸 발전소 / 우옹비 발전소, 싱가폴 주롱 발전소
  - 항만설비 : 스리랑카 퀸엘리자베스 항구
  - 상수원설비 : 아부다비 멀파 상수원, 타이완 라오추안리 상수원

- 첨단IT단지
  - 인텔공장 : 영국 아일랜드 사업장, 인디아 뱅갈로 사업장, 중국 첸두 사업장

- 인도 : 노키아 사업장, 델 컴퓨터 DMRC IT Park, WIPRO IT Park, TCA Software Park, HSBC Data Center
- 일본 : 카루마, 엔플러스 반도체
- 타이완 : 라이텍 반도체
- 태국 : 마이크로칩 반도체, 베트남 후지츠 반도체
- 필리핀 : 글로브 텔레콤, Lexmark, I-Hub IT단지
- 싱가폴 : NTUC IT빌딩

• 석유화학단지
- 싱가폴 엑슨모빌 정유공장, 사우디 라빅 석유화학단지, 란 리갈 석유화학단지, 필리핀 페트론 바탄 정유공장, 베트남 동콰 정유공장

• 유전 개발
- 인도네시아 듀마이, 인도네시아 탕고 LNG, 카타르 가스와 LNG, 아부다비 가스

• 대단위제조사업장
- 인도 현대 자동차, 말레이시아 프로톤 자동차, 방글라데시 직물공장

• 상업 및 종합휴양시설
- 루마니아 세마파크, 싱가폴 정션8 쇼핑몰
- 말레이시아 자스코 백화점,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 호텔,
- 쿠웨이트 아랴야 타워,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호텔
- 아랍에미레이트 주메이라 해변 종합휴양지
- 홍콩 사이언스 파크, 인도 타지 호텔
- 바레인 시프 투윈 타워, 몰디브 시 쇼핑몰

□ 영업전략

① 최고와의 경쟁

날로 급성장하는 세계 중전기제품시장은 유명 BRAND 몇 개가 전 세계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바,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착실한 기술축적과 함께 독자 브랜드 육성과 홍보를 통하여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기업들에 대한 OEM 납품 등 손쉽게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독자브랜드로 아시아시장에서 최고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여 설립 10년 만에 유명 BRAND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60%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시아시장에서의 이러한 알찬 경험을 토대로 중동 · 유럽 · 남미 시장에 진출하여 똑같은 유명 BRAND와 경쟁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시장을 확보하였다.

② 소액 다품종 개발전략 (틈새시장 공략)

급성장하는 세계 시장에 힘입어 대형 프로젝트만 선호하며 경쟁하는 세계적인 BRAND사들의 성향과 세계적인 BRAND로서 군림하는 특성에 따라, 특히 이질적 서구 문화로부터 소외된 소형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접근하여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주며 실적을 쌓아가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세계적인 대형 BRAND 측에서 보기에는 소형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화 50만 불 이상이었으며, 유명 BRAND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수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틈새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지금의 시장리더가 되는 첩경이었다.

③ BRAND 이미지 제고에 주력

소형 프로젝트이지만 세계시장에서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를 우수한 경쟁력으로 성공리에 수주한 경험에 힘입어 세계 속의 BRAND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세

계적인 박람회에, 그것도 세계적인 BRAND와 경쟁적인 위치에 출품하여 대등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주요 전문잡지에 광고를 게재함은 물론, 주요국 공항 인근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HENIKWON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투자를 한다.

□ 성공 요인

① 지속적인 연구개발

제품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품질경쟁력에서 출발한다는 단순하면서도 웅변적인 창업자의 경영철학과 엔지니어들의 적극적인 열정으로 부스닥트의 시장선도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회사 설립 초기 저압용 부스닥트를 제작하며 수많은 선진기업 제품과 공장을 벤치마킹하면서 회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품의 효율과 안정성으로 설정하고,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을 채택하여 디자인, 엔지니어링하며; 회사 제품의 대외적 신임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고객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생산개발에 많은 투자를 실시하였다. 저압에서 시작한 사업을 고압으로 확대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제품군 체제를 구비하였으며 계속적인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② 감동적인 고객서비스

차별화된 대고객서비스로 마케팅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행하였다. 영국 히드로 공항 청사 건설에 회사의 부스닥트를 공급한 후, 고객으로부터 제품설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자 당일로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고객사로부터 어느 경쟁사도 하지

못하는 최상의 서비스라는 극찬을 들었다.

또한 세계 굴지의 영국계 은행 HSBC 인도 데이터처리 및 고객대응 콜센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가 제공한 열정적인 서비스로 인하여, 같은 은행의 필리핀과 스리랑카의 건설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③ 구성원의 가치공유 및 팀워크

모든 회사의 구성원이 도전, 혁신, 팀워크, 고객만족 등 회사가 지향하는 4대 가치를 공유하며 주간 회의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등 반복적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HENIKWON의 가족으로서 우리 회사라는 주인의식을 함양해 단합된 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④ 종합 중전기업체로서의 비젼

“종합 중전기 생산 전문 업체”의 명확한 비전을 조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 방향으로 응축된 조직의 힘이 발휘되어 아시아 및 중동 시장에서 시장선도자가 되었고 유럽, 남미 및 일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다.

□ 우리나라 주요 투자기업 리스트

【 대한항공 】

기본 정보			
City	Kuala Lumpur		
주소	12th Floor, Menara Hap Seng, No. 1&3,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Tel	(603) 2144-0200	Fax	(603) 2141- 3703
Pres	나창엽		
주요 현황			
업종	운송업	취급분야	화물, 여객 운송
진출형태	지점	진출연도	1977년
종업원현황	본사파견: 14명, 현지채용: 102명	설립자본금	
국내 모기업			
명칭	대한항공㈜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0		
Tel	(02) 2656-2001		

【 기아자동차 】

기본 정보			
City	Kuala Lumpur		
주소	Suite 22-06 22nd floor, Menara Tan&Tan 207 Jalan Tun Razak 50400 Kuala Lumpur		
Tel	(603) 2713-4910	Fax	(603) 2713-4915
Pres	문제호		
주요 현황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승용차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진출연도	
종업원현황	본사파견: 7명, 현지채용: 3명	설립자본금	
국내 모기업			
명칭	기아자동차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Tel	(02) 3464-1114		
CEO	정몽구		

【 삼성 SDI 】

기본 정보			
City	Sungai Gadut		
주소	Lot 635 &660, Kawasan Perindustrian Tuanku Jaafar, 71450 Sungai Gadut, Negeri Sembilan arul Khusus		
Tel	(606) 677-6160	Fax	(606) 677- 6164
Pres	조대형		
주요 현황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진출형태	생산법인	진출연도	1990년
종업원현황	본사파견: 30명, 현지채용: 2300명	설립자본금	
국내 모기업			
명칭	삼성 SDI㈜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575번지		
Tel	(031) 210-7114		
CEO	김순택		

【 삼성물산 】

기본 정보			
City	Kuala Lumpur		
주소	1404, 14th Floor, Kenanga International, Jalan Sultan Ismail, 50250 Kuala Lumpur		
Tel	(603) 2161-5133	Fax	(603) 2161-5907
Pres	장영준		
주요 현황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 화학, 프로젝트, 자원
진출형태	판매법인	진출연도	1979년
종업원현황	본사파견: 4명, 현지채용: 20명	설립자본금	
국내 모기업			
명칭	삼성물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삼성프라자 빌딩		
Tel	(02) 2145-2114		
CEO	이상대		

【 대우 】

기본 정보			
City	Kuala Lumpur		
주소	Suite 308, 3rd Floor, Kenanga International, Jalan Sultan Ismail, 50250 Kuala Lumpur		
Tel	(603) 2161- 8033	Fax	(603) 2161-5790
Pres	정탁		
주요 현황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 화학, 금속, 기계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진출연도	1977년
종업원현황	본사파견: 4명, 현지채용: 10명	설립자본금	
국내 모기업			
명칭	㈜대우 인터내셔널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고 5가 541 대우센타빌딩		
Tel	(02) 759-2100		
CEO	강영원		

【 포스코 】

기본 정보			
City	Kuala Lumpur		
주소	Suite Level 39,04A, Menara Citibank165,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Tel	(603) 2166-2828	Fax	(603) 2166-9663
Pres	정충환		
주요 현황			
업종	제1차금속	취급분야	철강
진출형태	사무소	진출연도	2005
종업원현황	본사파견: 3명, 현지채용: 2명		
국내 모기업			
명칭	포스코(POSCO)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Tel	(054) 220-0114		
CEO	이구택		

【 웅진 】

기본 정보			
City	Kuala Lumpur		
주소	Suite 32-1, Level 32, Wisma UOATI, No 21, Jalan Pinang, Kuala Lumpur		
Tel	(603) 2059-0000	Fax	(603) 2166-1677
Pres	박재영		
주요 현황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정수기, 청정기, 비데
진출형태	판매법인	진출연도	2006
종업원현황	본사파견: 11명, 현지채용: 58명	설립자본금	
국내 모기업			
명칭	웅진코웨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달기교 2가 내외빌딩 5-10층		
Tel	(02) 2172-3730		
CEO	홍준기		

【 대림산업 】

기본 정보			
City	Kuala Lumpur		
주소	9th Floor, Menara Hap Seng,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Tel	(603) 2145-9911	Fax	(603) 2145-8877
Pres	이철복		
주요 현황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진출연도	2004
종업원현황	본사파견: 1명, 현지채용: 1명	설립자본금	
국내 모기업			
명칭	대림산업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Tel	(02) 2011-7114		
CEO	김종인		

【 대한전선 】

기본 정보			
City	Kuala Lumpur		
주소	Suite 1503, 15th Floor, Kenanga International, Jalan Sultan Ismail, 50250 Kuala Lumpur		
Tel	(603) 2161-8017	Fax	(603) 2161-3628
Pres	Gahrg		
주요 현황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지하케이블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진출연도	2007년
종업원현황	본사파견: 2명, 현지채용: 3명	설립자본금	
국내 모기업			
명칭	대한전선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94-15		
Tel	(02) 316-9433		
Pres	임종욱		

2. 투자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가. 유망투자분야

□ 건설업

- 건설업은 말레이시아 GDP의 3%를 차지하며, 2007년 명목수치는 171억 링깃(약 54억 달러)에 달한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건설부문의 증가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작년 정부는 제9차 말레이시아 경제개발계획(9MP)의 실행을 가속시키면서 4.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주거용 주택부문에서 최고급 부동산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특정 대도시의 건설 활동 증가로 이어졌다.

- 제9차 말레이시아 경제개발계획(9MP, 2006~2010)에서 공공건물과 민간자본 주도(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각각 620억 달러와 60억 달러가 지원됨으로써 건설부문은 2010년까지 연간 3.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9MP는 하기 5개 경제개발지역을 선정하였으며, 9MP하에 실행될 인프라 및 공공부문 프로젝트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시멘트, 철강 산업 등 건설 관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역	주	웹사이트	대형 프로젝트
Iskandar Development Region(IDR)	Johor	www.rida.com.my	아래 표 참조
Northern Corridor Economic Region (NCER)	Penang, Perak, Selangor, Kedah	www.ncer.com.my	- 페낭대교 확장 - 제2 페낭대교 - Ipoh와 Padang Besar의 상호 프로젝트 - 페낭섬 모노레일 - Butterworth Container Port 확장
East Coast Development Region (ECER)	Kelantan, Terengganu, Pahang, Johor 주 Mersing 지역	www.ecerdc.com	전체 투자액 1120억 링깃(약 354억 달러) 중 40%를 ECER의 주요 교통연결 및 기타 핵심 인프라시설에 투자할 계획
Sabah Development Corridor(SDC)	Sabah	www.sdc.gov.my	- Lahad Datu 북부 순환도로 건설 - Lahad Datu에 팜오일 산업단지용 항구건설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 (SCORE)	Sarawak	www.sarawakscore.com.my	Tanjung Manis, Mukah, Similajau 개발(개발지역의 3대 핵심산업성장지역)

자료원: 각종 보고서 종합

【 Iskandar Development Region(IDR)에서 승인된 9MP 프로젝트 】

(단위: 링깃(백만))

대형 프로젝트	9MP 할당액
강 수질개선(Seget, Skudai, Terbaru강)	903.0
교통체증 분산(업그레이드 등)	680.0
Senai-Desaru 고속도로 토지획득	596.0
교통체증 분산(인터체인지)	423.0
보안(경찰서 등)	330.0

자료원: Ninth Malaysia Plan, Economic Planning Unit

- 말레이시아 건설업이 세계 최고수준의 관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IDB(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건설업 개발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CIMP(Construction Industry Master Plan:건설업 마스터플랜)을 발족함. CIMP는 2015년까지 실행되며 브랜드의 상품화 강화, 친환경 시행, 인적자원 개발 등 7개 전략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 중추사업 중 하나로 미리 제조된 부품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함으로써 노동력 의존도를 줄이는 IBS(Integrated Building System)로드맵이 있으며, 프로젝트 절반 이상에 IBS를 적용하는 계약자는 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 시장 접근
  - 말레이시아 계약자는 다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현지계약자(Local Contractor)	외국계약자(Foreign Contractor)
1. 지분의 70% 이상을 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해야 현지계약자로 분류됨 2. 정부 프로젝트 등의 대부분의 입찰은 말레이시아 기업 또는 말레이계 기업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말레이계(부미푸트라) 기업은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말레이계가 소유하여야 함.	1. 지분의 3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면 외국계약자로 분류됨 2.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는 건설기술인 경우, 외국계약자에게도 입찰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음. 3. 입찰과 관계없이 외국기업이 말레이시아에 건물을 짓고 싶다면, 100% 외국법인을 세워도 무방함

자료원: CIDB(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공사에 입찰을 원하는 외국기업은 유망고객 또는 광고를 통한 입찰과 무관하게 CIDB(www.cidb.gov.my)에 임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말레이시아에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CIDB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Registrar of Companies(www.ssm.com.my)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특정 프로젝트의 건설만이 허용되며,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의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 주의사항

- 계약별 액수가 50만 링깃(약 1억 5700만원) 및 그 이상인 건설 프로젝트 및 공사에 착수하는 주요 계약자는 전체 계약액의 0.125%의 세금을 내야한다.
- CIDB 등록부에 의하면, 현재 6만 3000명의 현지 계약자와 100명의 외국 계약자가 CIDB에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현지 회사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특정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만 외국계약자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이다.
-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말레이시아인(말레이계) 1명을 이사(sleeping director/수수료로 2,000링깃 정도를 매월 지불해야 함)로 두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주는 것이 각종 입찰에 유리하다.

□ 생물공학산업

• 말레이시아의 생물공학부문은 국가경제에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국민총생산량(GDP)의 2.5%를 차지할 것이며 2020년까지 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부문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설립된 Malaysian Biotechnology Corp. Sdn Bhd(Biotech Corp.)은 100여개의 생물공학회사에 300억 링깃(약

94억 달러)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9차 말레이시아 국가개발계획(9MP ; 9th Malaysian Plan)에서 정부는 농업, 건강관리 및 산업 생명공학부문을 개발부문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20억 링깃이 할당되었다.
- 생명공학 투자환경
  - 풍부한 자원
    - 동물군: 15만 종의 무척추동물, 1천 종이 넘는 나비, 1만 2천 종이 넘는 나방, 3백 종이 넘는 포유류
    - 식물군: 1만 5천 종이 넘는 식물종자, 1천 1백 종이 넘는 양치류
    - 바다생물: 4천 종의 어류,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산호생태계
  - 숙련된 인적자원
    - 37개의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정책은 과학 및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3개 대학은 생명공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2개 기업은 화학공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차후 5년 내로 2만 3천 명의 연구인력과 5천 명의 연구개발과학자 및 숙련된 노동력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개발 지원
    -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를 위한 정부 자금 마련
    - 업용 곡물, 식용 곡물, 관상용 식물 등 농업 및 식품산업분야에서의 우수한 연구개발 전문지식
    - 생물공학 및 여타 기술집약적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과학 및 기술공원, 배양센터와 임상실험센터 설립
    - 세계적인 연구소 및 대학교와 생명공학 협동센터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
    - 생명공학연구를 실행하는 공공연구소로는 Malaysian Agricul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MARDI), Malaysian Palm Oil Board(MPOB),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IMR), Foreset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FRIM), Malaysian Rubber Board(MRB), Malaysian Institute for Nuclear Technology Research(MINT), Institute of Natural Products and Vaccinology가 있음.

- Bio-Nexus Network
  - 2006년 9월 7일에 발족된 Bio-Nexus Network는 말레이시아 전체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시설, 인프라, 능력 등 생물공학 회사와 조직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이다.
  - Bio-Nexus의 일환으로 설립된 연구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있다.
    -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 상업화 및 보급을 담당하는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technology at MARDI(Malaysian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게놈 시퀀싱(Genome sequencing), 구조생물학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열대 생물자원의 연구를 시행할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의 National Institute of Genomics & Molecular Biology
    - National Institute of Pharmaceuticals & Nutraceuticals, National Institue of Natural Products, Vaccines and Biologicals(9Bio)는 건강관련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센터 역할 수행
- 세금 인센티브
  - 회사의 영업활동 첫 해부터 10년 동안 수입세 100% 면제 또는 5년 내에 승인된 자본에 대해 투자세보조금 100% 지급
  - BioNexus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 원자재/부품 및 기계/도구에 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

- 연구개발로 인한 지출의 이중공제
- 수출 촉진으로 인한 지출의 이중공제
- BioNexus지위를 가진 자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70%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BioNexus회사는 세금면제기간(10년) 동안의 수입에 대해 20%의 양보세율을 적용받음.
- BioNexus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인 및 기업 투자자에게 초기 투입자본의 총 투자액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생명공학회사와 인수합병을 실시중인 BioNexus회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와 부동산취득세를 면제받음.
- 생명공학 연구활동에만 사용될 건물에 대해서 10년 동안 산업건물보조금 지급

□ 전기/전자산업

【 2003년-2007년도 승인된 전기전자 제조 프로젝트(FDI) 】

(단위:링깃(백만))

년도	프로젝트 건수	외국인투자
2007	99	13,737
2006	125	8,601
2005	177	11,319
2004	160	6,826
2003	263	3,630

자료원: MIDA

【 2005년-2007년도 전기전자 수입액 】

(단위:RM(10억))

년도	총수입액 대비 비중(%)	전기전자 수입액	총수입액
2007	44.0	266.3	504.6
2006	47.7	281.0	480.8
2005	49.6	264.7	434.0

자료원: MATRADE

- 말레이시아 전기전자산업의 주요 분야는 반도체부품으로, 직선회로 및 디지털집적회로, 메모리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초소형 집적회로), 광전자공학, 독립장치(discrete devices), 하이브리드제품 및 데이터배열(data arrays) 등이 있다.
  - 말레이시아는 집적회로 및 발광다이오드(LED)용 웨이퍼 제작, 태양전지, 고급 포장 및 전자회로 등 고부가가치제품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 전기제품분야
  - 가전제품, 전기 부속품, 전선 및 기타 제품을 포함
  - 말레이시아의 태양열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태양열산업단지 조성 준비를 갖추면서 전기제품분야에서 성장산업으로 도약이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PTM(Pusat Tenaga Malaysia-에너지 센터)이 관리하는 말레이시아 통합 광전지 설치 프로젝트(Malaysia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MBIPV)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기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열 에너지 사용률을 높이고 생산능력 향상 및 말레이시아 태양열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다. MIDA와 PTM이 제휴하여 이 분야 주요 기업의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 전자부품분야
  - 2006년-2007년 UNCTAD 통계자료 안내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반도체장치 수출분야에서 5위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 반도체 회사는 제품개발 및 디자인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룸. 다국

적기업들 사이에서는 집적회로(IC) 디자인, 인가 및 기술설명에 더불어 포장 및 제조과정 개발에 초점을 둔 디자인센터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

□ 기계설비산업

【 2003년-2007년도 승인된 기계제조 프로젝트(FDI) 】

(단위:링깃(백만))

년도	프로젝트 건수	외국인투자
2007	43	1,220
2006	53	656.9
2005	41	570.0
2004	35	116.1
2003	42	172.4

자료원: MIDA

【 2005년-2007년도 기계, 보조장치 및 부속품 수입 】

(단위: 링깃(백만))

년도	시장점유율(%)	금액
2007	8.5	42.7
2006	7.8	37.4
2005	8.4	36.4

자료원: MIDA

- 기계설비분야(M&E)는 산업발달 초기의 단순조립 및 기계작업에서 점차 진보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첨단기계설비, 자동화기기, 중장비류 제조단계에 도달했다. 기계설비분야는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가스, 건설 및 전력발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이다.
  - 말레이시아의 기계설비산업은 생산품질, 첨단기술 사용, 디자인 및 개발, 기술혁신 및 유통면에서 점차 전 세계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말레이시아회사들은 몰드와 다이, 금속주조, 머시닝, 금속압축, 표면처리 및 금속가공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국제적으로 능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 말레이시아정부는 기계설비분야가 말레이시아의 산업화 촉진에 지속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이테크산업 및 고부가가치 기계설비산업 장려에 힘쓰고 있다.

□ 석유화학산업

유가의 급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 내 원유생산 및 석유화학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동말레이시아 빈툴루라는 도시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고 최근 남해화학의 멜라민수지 생산공장 투자가 이에 해당된다.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말레이시아에는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가 있으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외국인 고용 자유, 해외 송금 자유, 벤처자금 활용 등의 혜택이 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각종 고지서 전산화, 교통 시뮬레이션, 온라인 교육 분야 등이 유망하다.

□ 물류산업

말레이시아의 로지스틱서비스(물류서비스) 업체들은 포워딩, 창고임대 및 운송은 물론, 최근 부품 유통, 조달, 공급자 관리망 구축(Supply Chain Management)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정부는 최근 물류서비스 사업자(PLs- Party Logistic Service Provider)가 기존 포워딩과 운송 전문의 2PLs 사업자와의 인수 및 합병으로 서비스를 통합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3PLs의 역할을 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물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창고 및 운송비 부담경

감을 위해 말레이시아 물류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한국과 태평양으로 가는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기타 진출전략

□ 아시아지역본부(Opertational Headquater)로 활용

말레이시아를 아시아지역본부로 활용하는 다국적기업이나 한국기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1990년 이후 총 133개사의 해외 주요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지역본부(Opertational Headquater)를 설립하였는데, 이 중에서 미국 26개사, 일본 14개사, 독일 12개사, 영국 10개사, 네덜란드와 호주가 각각 9개사를 설립하였다. 현재 이들 지역본부의 납입자본금은 총 RM 6.1억, 연간 운영비로 총 RM 15억을 지출하고 있으며, 총 6,62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정부는 지역본부 설립기업에 대해 세금감면은 물론 MSC(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지역 내 투자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미국 종합과학회사 듀폰, 미국 종합화학회사 다우케미컬, 카드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음료회사 펩시콜라, 반도체회사 인텔, 일본 통신전자기기 종합회사 NEC, 전자기기 종합회사 SHARP ,독일 전자기기 종합회사 지멘스, 종합과학회사 바스프 등이 모두 기존에 홍콩, 시드니, 싱가포르에 있던 지역본부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했다.

이들은 전체 운영비용이 싱가포르의 65%로 저렴할 뿐 아니라 각국 공장과 지사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2004년에 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이전하였다.

□ 국제조달센터의 설립

지금까지 총 191개의 국제물품조달센터(IPC- International Procurment Center)가 설립되었는데 이들 센터의 연간 매출액은 무려 RM 632억에 달하고 있는데 일본이 전체 센터 중 85개를 설립하였고 미국이 13개의 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들 물품조달센터는 당초 아시아지역 내 자사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공급하기 위해 아웃소싱 기능만 수행하였으나 최근엔 물품 아웃소싱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어 자사는 물론 유사 업종에까지 물품을 납품하며 주로 전기 · 전자업체와 화학 및 기계류, 가구 제조업들이 센터를 설립하였다.

말레이시아는 가구생산의 원목 공급지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석유화학제품의 선두 공급국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페낭의 전기 · 전자 복합단지에는 1천 개의 전기 · 전자 업체가 입주하여 있어 물품 조달 및 아웃소싱 비즈니스에 매우 적합하다.

VIII. 부 록

VIII. 부 록

Ⅷ. 부록 CONTENTS

1. 서류양식
1.1 투자승인신청서
1.2 세금면제신청서

2. 투자절차 맵

3. 말레이시아 정부부처/유관기관

4. 임금체계

5. 말레이시아 개황

6. 권장활동 및 제품 목록

1. 서류양식

1.1 투자승인신청서

ICA/JA-1
(2 Feb 2007)

APPLICATION FOR MANUFACTURING LICENCE
AND/OR INCENTIVE
AND/OR EXPATRIATE POSTS
FOR A NEW MANUFACTURING PROJECT

(I) Type of application (Please tick (✓) where relevant):

(a) Manufacturing Licence ☐

(b) Incentive:

(i) Pioneer Status ☐

or

(ii) Investment Tax Allowance ☐

(c) Expatriate Posts ☐

(II)

Proposed products/activities	HS tariff code	Proposed factory location

MIDA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A. PARTICULARS OF APPLICANT/COMPANY

1. (a) Name of applicant/company:

_____

(b) Correspondence address:

_____

_____

_____

Contact person: _____ Designation: _____

Telephone no.: _____ Fax no.: _____

E-mail: _____ Website: _____

2. (a) Name of company which will undertake the manufacturing project:

_____

(b) Has the company been incorporated under the Companies Act, 1965?

☐ Yes ☐ No

If yes, please fill in the following:

(i) Date of incorporation: _____ (ii) Company registration no.: _____

(iii) Income tax reference no.: _____ (iv) Income tax branch office: _____

(c) Address of registered office:

_____

_____

_____

Telephone no.: _____ Fax no.: _____

E-mail: _____

3. If the above company has been incorporated, please provide a copy each of the following

(i) Form 9 or 13 (ii) Form 24 (iii) Form 44 (iv) Form 49 (v) M&A

B. PROJECT COST*

	Phase 1** RM	Phase 2** RM	Total RM
1. Fixed assets***			
(i) Land (Specify area in hectares): _____			
(ii) Factory building (Specify built-up area in m^2): _____			
(iii) Plant and machinery			
(iv) Other equipment			
Total fixed assets			
2. Pre-operational expenditure			
3. Working capital			
Total project cost			

*** If assets are rented/leased, please indicate the annual cost of rental/lease below:

	RM
(i) Land (Specify area in hectares): _____	
(ii) Factory building (Specify built-up area in m^2): _____	
(iii) Plant and machinery	
(iv) Other equipment	
Total rental/lease	

Note:

* If there is more than one factory location, please provide the same information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 To be filled if the second phase is implemented after 3 years

C. FINANCING

		RM	%
1.	Authorised capital		
2.	Shareholders' funds		
	(a) Paid-up capital		
	(i) Malaysian individuals		
	Bumiputera		
	Non-Bumiputera		
	(ii) Companies incorporated in Malaysia*		
	(iii) Foreign nationals/companies (Specify name and nationality/ country of origin)		
	Total of (i), (ii) and (iii)		**100%**

* For 2(a)(ii), please provide equity structure as follows:

Name of company:		Name of company:	
	%		%
Bumiputera		Bumiputera	
Non-Bumiputera		Non-Bumiputera	
Foreign nationals/companies (Specify name and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Foreign nationals/companies (Specify name and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Total	**100%**	**Total**	**100%**

RM

3. Loan

   Domestic _____

   Foreign (Specify country of origin): _____

   _____

   Total _____

4. Other sources (Please specify):

   _____ _____

   _____ _____

   Total _____

Total of 2, 3 and 4 _____

5. State the name of any other company in Malaysia manufacturing the same/similar products in which the applicant company or any shareholder of the applicant company has equity participation.

Company registration no.	Name of company

6. Particulars of Board of Directors*

Name and residential address	Nationality	% shares held in the company

Note:

* If the space provided is insufficient, please provide the information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D. MANPOWER*

Please fill in where relevant
Please note that the information is required to enable the government to undertake the appropriate manpower planning to meet the specific manpower needs of companies proposing to establish projects in Malaysia.

Category	Full-time employment						
	Malaysian			Foreign national			Total
	Degree	Diploma/ Certificate	Others	Degree	Diploma/ Certificate	Others	
1. Managerial staff with							
(a) Technical qualifications							
(i)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ii) Mechanical Engineering							
(iii) Chemical Engineering							
(iv) Others (Please specify): _____							
(b) Science qualifications							
(i) Chemistry							
(ii) Physics							
(iii) Biotechnology / Microbiology							
(iv) Pharmacy							
(v) Computer Science							
(vi) Others (Please specify): _____							
(c) Other qualifications / experience (e.g. economics, marketing, finance & accounting. Please specify): _____							
2. Technical and supervisory staff with							
(a) Technical qualifications							
(i)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ii) Mechanical Engineering							
(iii) Chemical Engineering							
(iv) Others (Please specify): _____							

Note:

* If there is more than one factory location, please provide the same information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Category	Full-time employment						
	Malaysian			Foreign national			Total
	Degree	Diploma/ Certificate	Others	Degree	Diploma/ Certificate	Others	
(b) Science qualifications							
(i) Chemistry							
(ii) Physics							
(iii) Biotechnology / Microbiology							
(iv) Pharmacy							
(v) Computer Science							
(vi) Others (Please specify): _____							
(c) Other qualifications / experience							
Craft skills							
(i) Plant maintenance mechanic							
(ii) Tool & die maker							
(iii) Machinist							
(iv) IT personnel (Including CAD/CAM designer & DCS operator)							
(v) Quality Controller							
(vi) Electrician							
(vii) Chargeman							
(viii) Welder							
(ix) Other special skills related to the sector (Please specify):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e) _____							
f) _____							
g) _____							
3. (a) Sales and clerical							
(b) Other general workers							
4.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Total							

Note:
**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are those involved in the production/assembly line who receive mainly on the job training for a period between 3 to 6 months,e.g. production operators

E. MANUFACTURING PROCESS AND POLLUTION CONTROL

1. Please attach the manufacturing process flow chart and explain the major processes. Indicate processes according to type of machinery used as follows:

   R - robotic machinery

   A - automatic machinery

   S - semi-automatic machinery

   M - manual operation

2. From the manufacturing process flow chart, please provide details on emission of pollutants.

Point of emission	Type of pollutants	Quantity

F. SOURCES OF TECHNICAL KNOW-HOW

Name and address of supplier	Years of experience	Relationship with applicant (e.g. machinery supplier, parent company/associate company)

G. MAIN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POLLUTION CONTROL EQUIPMENT

Description	Type*	Unit	Function	Country of origin	Cost (RM)

Note:

* Indicate:

R - robotic machinery A - automatic machinery S - semi-automatic machinery M - manual operation

394
프레이저 부지 입주가이드

H. MAIN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Quantity* per annum	Value per annum (RM)	Source			
			Local manufacturer		Import	
			% of value	Name and address	% of value	Country of origin

Note:
* Units as specified in the "Malaysian Trade Classification and Customs Duties Order"

I. PRODUCTION SCHEDULE*

Products/activities	Year 1		Year 2		Year 3		Maximum annual production capacity per 8-hour shift
	Quantity**	Ex-factory value (RM)	Quantity**	Ex-factory value (RM)	Quantity**	Ex-factory value (RM)	
Total							
Number of shifts							

Note:
* If there is more than one factory location, please provide the same information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 Units as specified in the "Malaysian Trade Classification and Customs Duties Order"

J. MARKET

Products/activities	% of market			
	Year 1	Year 2	Year 3	
For domestic market				Principal consumers
For FZ/LMW* market				
For export market				Destinations

Note:
* Free Zone/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K. PRODUCT PRICING

Item	% of ex-factory price for each product*		
	Product 1	Product 2	Product 3
(a) Cost of imported raw materials/components			
(b) Cost of local raw materials/components			
(c) Cost of energy and fuel			
(d) Cost of labour			
(e) Depreciation			
(f) Interest payments, indirect taxes, quit rent & etc.			
(g) Administrative and marketing costs			
(h) Cost of technology (including royalty, management services and other related costs)			
(i) Manufacturing profit			
Total	**100%**	**100%**	**100%**

Note:
* If there are more products, please provide the same information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L. DETAILS OF EXPATRIATE POSTS

Please complete this section if the applicant is applying for expatriate posts. Please exclude the expatriate posts that have been directly applied for to the Immigration Department or any other department.

1. New/additional posts applied for

Designation*	Type of post (key/term post)	Number	Duration (years)

Note:
* Please list according to priority

For each expatriate post applied for, please submit the following details:

(a) Job function

(b) Minimum academic/professional qualification required

(c) Minimum period of experience required

(d) Justification for request

(e) Proposed training scheme for Malaysian personnel to fill the relevant posts

2. Existing/approved posts (if any)

Designation	Name and nationality	Duration approved	Date post filled	Expiry date

For each existing/approved expatriate post, please submit the following details:

(a) Name of Malaysian who has taken over/will take over the post

(b) If the post has not been/will not be Malaysianised, state reasons and the company's plan on the post.

3. Please attach the organisational structure of the company indicating the positions of the expatriate posts.

M. DECLARATION

I, _____, hereby declare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particulars furnished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_____
(Signature of applicant)

_____ _____
Date (Designation)

1.2 세금면제신청서

PC 1 (2007)
(2 Feb 2007)

APPLICATION FOR
IMPORT DUTY AND/OR SALES TAX EXEMPTION
ON MACHINERY AND EQUIPMENT

1. Type of application (Please tick (✓) where relevant):

   (a) Machinery and equipment ☐
   (b)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
   (c) Consumables ☐

   for:

   (a) New project ☐
   (b) Expansion/diversification/ modernisation project ☐
   (c)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
   (d) Recycling of waste ☐
   (e) Product testing and quality control ☐
   (f) Others (Please specify) ☐ _____

2.

Finished products*	☐ **	HS tariff code	Factory address

Note:
* Please list all products manufactured by the company

** Please tick ☐ for products that are relevant to the application

MIDA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A. PARTICULARS OF COMPANY

1. (a) Name of company:

_____

Type of company registration (Please tick (✓) where relevant):

(i) Registrar of Business ☐

(ii) Registrar of Companies ☐

(iii) Others (Please specify): ☐

_____

Date of incorporation: Company registration no.:

_____ _____

(b) Correspondence address:

_____

_____

_____

Contact person: Designation:

_____ _____

Telephone no.: Fax no.:

_____ _____

E-mail: Website:

_____ _____

2. (a) Particulars of Manufacturing Licence issued by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No.	Licence no.	Serial no.	Effective date	Equity condition	Export condition

(b) Sales Tax licence no. (CJ2) : _____

or

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Sales Tax licence no. (CJ7) : _____

(c) Tax incentive approved, if applicable:

(i) Pioneer Status ☐

(ii) Investment Tax Allowance ☐

(iii) Others (Please specify) ☐

_____

3. Employment*:

* Please fill in the manpower structure as in Appendix A

4. Please attach a copy of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OSH) registration certificate or acknowledgement letter from DOSH.

B. PROJECT COST*

		RM
1.	Fixed assets**:	
	(i) Land (Specify area in hectares): _____	_____
	(ii) Factory building (Specify built-up area in m^2): _____	_____
	(iii) Plant and machinery	_____
	(iv) Other equipment	_____
	Total fixed assets	_____
2.	Pre-operational expenditure (if applicable)	_____
3.	Working capital	_____
	Total project cost	_____

** If assets are rented/leased, please indicate the annual cost of rental/lease:

	(i) Land (Specify area in hectares): _____	_____
	(ii) Factory building (Specify built-up area in m^2): _____	_____
	(iii) Plant and machinery	_____
	(iv) Other equipment	_____
	Total rental/lease	_____

Note:

* If there is more than one factory location, please provide the same information for each factory location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C. FINANCING

		RM	%
1	Authorised capital		
2.	Shareholders' funds:		
	(a) Paid-up capital:		
	(i) Malaysian individuals		
	Bumiputera		
	Non-Bumiputera		
	(ii) Companies incorporated in Malaysia*		
	(iii) Foreign nationals/companies (Specify name and nationality/ country of origin)		
	Total of (i), (ii) and (iii)		**100%**
	(b) Reserves (excluding capital appreciation)		
	Total of (a) and (b)		

* For 2(a)(ii), please provide equity structure:

Name of company:		Name of company:	
	%		%
Bumiputera		Bumiputera	
Non-Bumiputera		Non-Bumiputera	
Foreign nationals/companies (Specify name and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Foreign nationals/companies (Specify name and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Total	**100%**	**Total**	**100%**

RM

3. Loan:

   (i) Domestic _____

   (ii) Foreign (Specify country of origin): _____

   _____

   Total _____

4. Other sources (Please specify):

   _____ _____

   _____ _____

   Total _____

Total of 2, 3 and 4 _____

D. MACHINERY AND EQUIPMENT

1. For machinery and equipment which are manufactured locally, please give reasons for importing these machinery and equipment. Provide confirmation letter from local manufacturers to support the application.

Machinery and equipment	Reasons

2. Please attach:

   (a) The manufacturing process flow chart and explain the major processes

   (b) The machinery layout plan and indicate the location where the machinery and equipment applied for will be installed

E. FINISHED PRODUCTS

Production and market:

Finished products	Date of commencement of production	Current annual production (Quantity)*	Maximum annual production capacity (Quantity)*	Market			Major customers	Major export destinations
				Domestic %	FZ/LMW %	Export %		

Note:

* Units as specified in the "Malaysian Trade Classification and Customs Duties Order"

F. DECLARATION

I , _____ , hereby declare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particulars furnished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_____
(Signature of applicant)

_____ _____
Date (Designation)

_____
(Company's seal)

Appendix I

EXEMPTION FROM IMPORT DUTY AND SALES TAX ON IMPORTED MACHINERY AND EQUIPMENT

Name of company: _____

Factory address: _____

_____

_____

No.	Description of machinery and equipment	HS tariff code	Country of origin	Customs station*	Quantity applied**	CIF value (RM)	Import Duty		Sales Tax*** (RM)	Total duty/tax **** (RM)	Functions of each machinery and equipment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Rate	Value (RM)			
(1)	(2)	(3)	(4)	(5)	(6)	(7)	(8)	(9)	(10)	(11)	(12)
						Total					

Note:

The text in the table should be at least of font size 10.

* For more than one customs station, give the breakdown by each station

** Units as specified in the "Malaysian Trade Classification and Customs Duties Order"

*** Formula used for Sales Tax : Sales Tax rate x [CIF value (Column (7)) + Import Duty (Column (9))]

**** Formula used for total duty : [Import Duty (Column (9)) + Sales Tax (Column (10))]

Appendix II

EXEMPTION FROM SALES TAX ON LOCALLY PURCHASED MACHINERY AND EQUIPMENT

Name of company: _____

Factory address: _____

_____

_____

No. (1)	Description of machinery and equipment (2)	HS tariff code (3)	Name of local manufacturers (4)	Quantity applied* (5)	Value (RM) (6)	Sales Tax (RM) (7)	Functions of each machinery and equipment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8)
					Total		

Note:

The text in the table should be at least of font size 10.

* Units as specified in the "Malaysian Trade Classification and Customs Duties Order"

MANPOWER*

Please fill in where relevant
Please note that the information is required to enable the government to undertake the appropriate manpower planning to meet the specific manpower needs of companies.

Category	Full-time employment						
	Malaysian			Foreign national			Total
	Degree	Diploma/ Certificate	Others	Degree	Diploma/ Certificate	Others	
1. Managerial staff with							
(a) Technical qualifications							
(i)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ii) Mechanical Engineering							
(iii) Chemical Engineering							
(iv) Others (Please specify): _____							
(b) Science qualifications							
(i) Chemistry							
(ii) Physics							
(iii) Biotechnology / Microbiology							
(iv) Pharmacy							
(v) Computer Science							
(vi) Others (Please specify): _____							
(c) Other qualifications / experience (e.g. economics, marketing, finance & accounting. Please specify): _____							
2. Technical and supervisory staff with							
(a) Technical qualifications							
(i)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ii) Mechanical Engineering							
(iii) Chemical Engineering							
(iv) Others (Please specify): _____							
(b) Science qualifications							
(i) Chemistry							
(ii) Physics							
(iii) Biotechnology / Microbiology							
(iv) Pharmacy							
(v) Computer Science							
(vi) Others (Please specify): _____							

Note:
* If there is more than one factory location, please provide the same information for each factory location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Appendix A

Category	Full-time employment						
	Malaysian			Foreign national			Total
	Degree	Diploma/ Certificate	Others	Degree	Diploma/ Certificate	Others	
(c) Other qualifications / experience							
Craft skills							
(i) Plant maintenance mechanic							
(ii) Tool & die maker							
(iii) Machinist							
(iv) IT personnel (Including CAD/CAM designer & DCS operator)							
(v) Quality Controller							
(vi) Electrician							
(vii) Chargeman							
(viii) Welder							
(ix) Other special skills related to the sector (Please specify):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e) _____							
f) _____							
g) _____							
3. (a) Sales and clerical							
(b) Other general workers							
4.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5. Farm workers***							
Total							

Note:
**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are those involved in the production/assembly line who receive mainly on the job training for a period between 3 to 6 months,e.g. production operators
*** Farm workers are those involved as agricultural farmhands and labourers who perform a variety of simple farming tasks

기타 각종 신청서류는 MIDA홈페이지(http://www.mida.gov.my) 접속 후 "FORMS & GUIDELINES 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투자절차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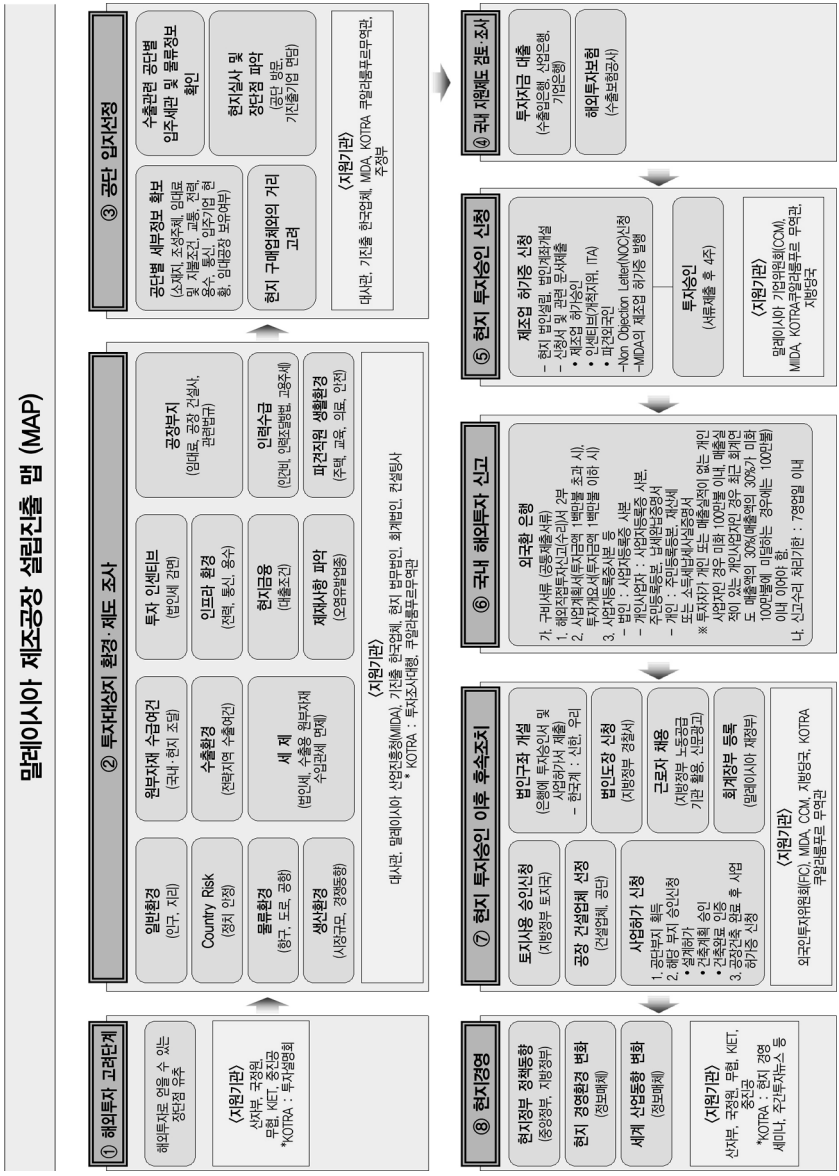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제조공장 설립진출 맵 (MAP)
① 해외투자 고려단계
해외투자로 얻을 수 있는 장단점 유추
〈지원기관〉
산자부, 국정원, 무협, KIET, 중진공
*KOTRA : 투자설명회
② 투자대상지 환경·제도 조사
일반환경 (인구, 지리)
Country Risk (정치 안정)
물류환경 (항구, 도로, 공항)
생산환경 (사업규모, 경영용이)
원부자재 수급여건 (국내· 현지 조달)
수출환경 (전략지역 수출여건)
세 제 (법인세,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투자 인센티브 (법인세 감면)
인프라 환경 (전력, 통신, 용수)
현지금융 (대출조건)
제재사항 파악 (오염유발업종)
공장부지 (임대료 공장 건설사, 관련법규)
인력수급 (인건비, 인력조달방법, 고용주세)
파견직원 생활환경 (주택, 교육, 의료, 안전)
〈지원기관〉
대사관,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 기진출 한국업체, 현지 법무법인, 컨설팅사
* KOTRA : 투자조사대행, 쿠알라룸프무역관
③ 공단 입지선정
공단별 세부정보 확보 (소재지, 조성주체, 임대료 및 지불조건, 전력, 용수, 통신, 입주기업 현황, 임대공장 보유여부)
현지 구매업체와의 거리 고려
수출관련 공단별 압주제반 및 물류정보 확인
현지실사 및 정단점 파악 (공단 방문, 기진출기업 면담)
〈지원기관〉
대사관, 기진출 한국업체, MIDA,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주정부
④ 국내 지원제도 검토·조사
투자자금 대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해외투자보험 (수출보험공사)
⑤ 현지 투자승인 신청
제조업 허가증 신청
– 현지 법인설립 법인계좌개설
– 신청서 및 관련 문서제출
• 제조업 허가증인
• 인센티브(개척지위, ITA)
• 파견외국인
–Non Objection Letter(NOC)신청
–MIDA의 제조업 허가증 발행
투자승인
(서류제출 후 4주)
〈지원기관〉
말레이시아 기업유치팀(CCM), MIDA, KOTRA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정부
⑥ 국내 해외투자 신고
외국환 은행
가.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1.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2부
2.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 시),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 시)
3.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의무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법상사업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화 100만불 이내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이내 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신고수리 처리기한 : 7영업일 이내
⑦ 현지 투자승인 이후 후속조치
토지사용 승인신청 (지방정부 토지국)
공장 건설업체 선정 (건설업체, 공단)
사업허가 신청
1. 공단부지 확득
2. 해협 부지 승인신청
• 설계허가 승인
• 건축허가 승인
• 건축모료 인증
3. 공장건축 완료 후 사업허가증 신청
법인구좌 개설 (은행에 투자승인서 및 사업허가서 제출)
– 환율제 : 신한, 우리
법인도장 신청 (지방정부 경찰서)
근로자 채용 (지방정부 노동공급기관 활용, 신문광고)
회계장부 등록 (말레이시아 재정부)
〈지원기관〉
외국인투자위원회(FIC), MIDA, CCM, 지방당국, KOTRA 쿠알라룸프무역관
⑧ 현지경영
현지정부 정책동향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지 경영환경 변화 (정보매체)
세계 산업동향 변화 (정보매체)
〈지원기관〉
산자부, 국정원, 무협, KIET, 중진공
*KOTRA : 현지 경영 세미나, 주간투자뉴스 등

3. 말레이시아 정부부처/유관기관

□ 정부부처

PRIME MINISTER'S DEPARTMENT

- 주소: Perdana Putra Building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02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8 8000
- 팩스: (603) 8888 3444
- 웹사이트: www.pmo.gov.my
- 이메일:ppmnun@pmo.gov.m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

- 주소: Wisma Tani, Lot 4G1,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24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70 1000
- 팩스: (603) 8870 1467
- 웹사이트: http://agrolink.moa.my
- 이메일: webmaster@agri.moa.my

MINISTRY OF CULTURE, ARTS AND HERITAGE MALAYSIA

- 주소: TH Perdana Tower, Maju Junction 1001 Jalan Sultan Ismail 50694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612 7600
- 팩스: (603) 2693 5114 / 2697 6100
- 웹사이트: www.heritage.gov.my
- 이메일: info@heritage.gov.my
  webmaster@heritage.gov.my

MINISTRY OF DEFENCE

- 주소: Jalan Padang Tembak 50634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692 1333
- 팩스: (603) 2691 4163
- 웹사이트: http://mod.gov.my
- 이메일: cpa@mod.gov.my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 주소: Lot 2G3, Precin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23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2 5500 / 1800-886-800
- 팩스: (603) 8882 5763
- 웹사이트: www.kpdnhep.gov.my
- 이메일: nsuzana@kpdnhep.gov.my

MINISTRY OF EDUCATION

- 주소: Federal Government Complex, Parcel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04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4 6000
- 팩스: (603) 8889 5235
- 웹사이트: www.emoe.gov.my
- 이메일: webmaster@moe.gov.my
  julina@bdpk.moe.gov.my

MINISTRY OF ENERGY, WATER AND COMMUNICATIONS

- 주소: Block E4/5, Government Complex, Parcel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50668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8883 6000
- 팩스: (603) 8889 3712
- 웹사이트: www.ktkm.gov.my
- 이메일: webmaster@ktkm.gov.my
  norliza@ktak.gov.my

MINISTRY OF ENTREPRENEUR AND COOPERATIVE DEVELOPMENT

- 주소: Lot 2G6, Precin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0 5000
- 팩스: (603) 8880 5106
- 웹사이트: www.mecd.gov.my
- 이메일: webmaster@mecd.gov.my

MINISTRY OF FEDERAL TERRITORIES

- 주소: Level 1-4, Block 2 PjH Tower,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9 7888
- 팩스: (603) 8888 9140
- 웹사이트: www.kwp.gov.my
- 이메일: admin@kwp.gov.my

MINISTRY OF FINANCE

- 주소: Finance Ministry Complex, Precin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2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2 3000
- 팩스: (603) 8882 3892 / 3894
- 웹사이트: www.treasury.gov.my
- 이메일: pertanyaan@treasury.gov.m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주소: Wisma Putra No. 1, Jalan Wisma Putra, Precint 2 62602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7 4000/4570/8889 2746
- 팩스: (603) 8889 1717/8889 2816
- 웹사이트: www.kln.gov.my
- 이메일: webmaster@kln.gov.my

MINISTRY OF HEALTH

- 주소: Block E1, E6, E7 & E10, Parcel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0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3 3888
- 팩스: (603) 2698 5964
- 웹사이트: www.moh.gov.my
- 이메일: thanabalan@moh.gov.my
  jamilah_shahid@moh.gov.my
  iadam@moh.gov.my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 주소: Block E3, Parcel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05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3 5000
- 팩스: (603) 8889 5854
- 웹사이트: www.mohe.gov.my
- 이메일: webmasterkpt@mohe.gov.my
  pro@mohe.gov.my

MINISTRY OF HOME AFFAIRS
- 주소: Block D2, Parcel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46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6 3000
- 팩스: (603) 8889 1613
- 웹사이트: www.moha.gov.my
- 이메일: pro@moha.gov.my

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 주소: Level 3-7 Floor, Block K, Pusat Bandar Damansara 50782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094 7033
- 팩스: (603) 2094 9720
- 웹사이트: www.kpkt.gov.my
- 이메일: pro@kpkt.gov.my
  pentadbiran@kpkt.gov.my

MINISTRY OF HUMAN RESOURCE
- 주소: Level 6-9, Block D3, Parcel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02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6 5000
- 팩스: (603) 8889 2381
- 웹사이트: www.mohr.gov.my
- 이메일: ksm1@mohr.gov.my
  norbaya@mohr.gov.my

MINISTRY OF INFORMATION
- 주소: 4th Floor, Wisma TV Angkasapuri, Bukit Putra 5061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282 4297
- 팩스: (603) 2284 8115/2287 7926
- 웹사이트: www.kempen.gov.my
- 이메일: webmaster@kempen.gov.my

MINISTRY OF INTERNAL SECURITY
- 주소: Block D1 & D2, Parcel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46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6 8000
- 팩스: (603) 8889 1730
- 웹사이트: www.mois.gov.my
- 이메일: pro@mois.gov.my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주소: Level 1-4, Tower Block 4G3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74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7 1200
- 팩스: (603) 8888 9987
- 웹사이트: www.nre.gov.my
- 이메일: webmaster@nre.gov.my

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

- 주소: 6th-13th Floor, Lot 2G4,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54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0 3300
- 팩스: (603) 8880 3482
- 웹사이트: www.kppk.gov.my
- 이메일: info@kppk.gov.my

MINISTRY OF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 주소: Block D9, Parcel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06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6 3500 / 8886 3700
- 팩스: (603) 8886 3801
- 웹사이트: www.ruralink.gov.my
- 이메일: webmaster@ruralink.gov.my saipol@rurallink.gov.my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

- 주소: Level 1-7, Block C5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62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5 8000
- 팩스: (603) 8888 9070
- 웹사이트: www.mosti.gov.my
- 이메일: webmaster@mosti.gov.my

MINISTRY OF TOURISM

- 주소: 6th, 21st, 34th-36th Floor Menara Dato' Onn, Putra World Trade Centre, 45 Jalan Tun Ismail 5048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693 7111
- 팩스: (603) 2693 0881
- 웹사이트: www.motour.gov.my
- 이메일: webmaster@motour.gov.my info@motour.gov.my

MINISTRY OF TRANSPORT

- 주소: Level 5-7, Block D5, Parcel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02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6 6000
- 팩스: (603) 8889 1569 / 8889 2597
- 웹사이트: www.mot.gov.my
- 이메일: saptuyah@mot.gov.my

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
- 주소: Level 1-6 Block E Government Office Complex Bukit Perdana, Jalan Dato' Onn 50515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693 0095
- 팩스: (603) 2693 4982
- 웹사이트: www.kpwkm.gov.my
- 이메일: info@kpwk.gov.my

MINISTRY OF WORKS
- 주소: 4th Floor, Block B, Kompleks Kerja Raya Jalan Sultan Salahuddin 5058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711 1100 / 9309
- 팩스: (603) 2711 2591
- 웹사이트: www.kkr.gov.my
- 이메일: pro@kkr.gov.my

MINISTRY OF YOUTHS AND SPORTS
- 주소: Lot G4,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70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71 3333
- 팩스: (603) 8888 8767
- 웹사이트: www.kbs.gov.my
- 이메일: webmaster@kbs.gov.my

□ 유관기관

BANK NEGARA MALAYSIA
- 주소: Jalan Dato' Onn P.O. Box 10922 50929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698 8044
- 팩스: (603) 2691 2990
- 웹사이트: www.bnm.gov.my
- 이메일: info@bnm.gov.my

BURSA MALAYSIA BERHAD
- 주소: 10th Floor Exchange Square Bukit Kewangan 5020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034 7000
- 팩스: (603) 2732 0069
- 웹사이트: www.klse.com.my
- 이메일: enquiries@bursamalaysia.com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
- 주소: 2nd, 10-18th Floor,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622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4047 6000
- 팩스: (603) 4047 6317
- 웹사이트: www.ssm.com.my
- 이메일: enquiry@ssm.com.my

DEPARTMENT OF ENVIRONMENT
- 주소: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Level 1-4, Podium 2&3, Lot 4G3,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74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71 2000 / 8871 2200
- 팩스: (603) 8889 1973 / 75
- 웹사이트: www.doe.gov.my
- 이메일: webmaster@doe.gov.my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 주소: Level 4, Block D3, Parcel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30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6 5000
- 팩스: (603) 8889 2355
- 웹사이트: www.mohr.gov.my/depart/jpp/
- 이메일: jppm@mohr.gov.my

DEPARTMENT OF LABOUR
- 주소: Level 5, Block D3 Parcel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02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6 5000
- 팩스: (603) 8889 2368
- 웹사이트: www.jtksm.mohr.gov.my
- 이메일: jtksm@mohr.gov.my

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주소: Level 2, 3 and 4, Block D3, Parcel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30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6 5000
- 팩스: (603) 8889 2351
- 웹사이트: http://dosh.mohr.gov.my
- 이메일: jkkp@mohr.gov.my

EMPLOYEES PROVIDENT FUND
- 주소: KWSP Building,,Jalan Raja Laut 5035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8732 6000
- 팩스: (603) 2694 8433
- 웹사이트: www.kwsp.gov.my
- 이메일: enquiry@epf.gov.my

EXPORT-IMPORT BANK OF MALAYSIA (EXIM BANK)
- 주소: Level 8, UBN Tower No 10, Jalan P. Ramlee P.O. Box 13028 50796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034 6666

- 팩스: (603) 2034 6699
- 웹사이트: www.exim.com.my
- 이메일: exim@exim.com.my

IMMIGRATION DEPARTMENT

- 주소: Level 1-7 (Podium), Block 2G4,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50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0 1000
- 팩스: (603) 8880 1200
- 웹사이트: www.imi.gov.my
- 이메일: pro@imi.gov.my

INLAND REVENUE BOARD

- 주소: 15th Floor, Block 9 Government Office Complex Jalan Duta, P.O. Box 11833 50758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6209 1000
- 팩스: (603) 6201 3798
- 웹사이트: www.hasilnet.org.my
- 이메일: Ihdn@hailnet.org.my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 주소: Level 32, Menara Dayabumi Jalan Sultan Hishamuddin 50623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263 2198 / 2199
- 팩스: (603) 2274 1332
- 웹사이트: www.mipc.gov.my
- 이메일: general@myipo.gov.my

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OFSA)

- 주소: Level 17, Main Office Tower Financial Park Complex, Jalan Merdeka 87000 Federal Territory Labuan Malaysia
- 전화: (6087) 591 200 / 591 300
- 팩스: (6087) 413 328 / 453 442 / 441 496
- 웹사이트: www.lofsa.gov.my
- 이메일: communication@lofsa.gov.my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FINANCE BHD (MIDF)

- 주소: 21st Floor, angunan Amanah Capital 82 Jalan Raja Chulan 5020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161 9011/2164 6070
- 팩스: (603) 2161 7580/2163 1549/1451
- 웹사이트: www.midf.com.my
- 이메일: NikRazali@midf.com.my

MALAYSIAN TECHNOLOGY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MTDC)

- 주소: @Malaysian Technology Center Level 3-4, MIDF Building 195A Jalan Tun Razak 5040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161 2000
- 팩스: (603) 2163 7542
- 웹사이트: www.mtdc.com.my
- 이메일: comms@mtdc.com.my

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OGY

- 주소: Level 6, Block A2 Menara PjH,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315 7888 / 7846
- 팩스: (603) 8888 8232
- 웹사이트: www.might.org.my
- 이메일: corpcomm@might.org.my

MALAYSIA TOURISM PROMOTION BOARD

- 주소: 17th Floor, Menara Dato' Onn Putra World Trade Centre 45 Jalan Tun Ismail, 50480 Kuala Lumpur
- 전화: (603) 2615 8188
- 팩스: (603) 2693 5884 / 0207
- 웹사이트: www.tourism.gov.my
- 이메일: enquiries@tourism.gov.my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 주소: MSC Headquarters 2360 Persiaran APEC 63000 Cyberjaya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 전화: (603) 8315 3000
- 팩스: (603) 8318 8519
- 웹사이트: www.mdec.com.my
- 이메일: clic@mdec.com.my

NATIONAL PRODUCTIVITY CORPORATION (NPC)

- 주소: Lorong Produktiviti, Off Jalan Sultan P.O. Box 64, 46200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 전화: (603) 7955 7266
- 팩스: (603) 7954 0795
- 웹사이트: www.npc.org.my
- 이메일: yazid@npc.org.my

PORT KLANG AUTHORITY

- 주소: Mail Bag Service 202, Jalan Pelabuhan, 42005 Port Klang, Selangor, Malaysia
- 전화: (603) 3168 8211
- 팩스: (603) 3167 0211/3168 9117
- 웹사이트: www.pka.gov.my
- 이메일: onestopagency@pka.gov.my

ROYAL CUSTOMS MALAYSIA

- 주소: Block 2GIB, Ministry of Finance Complex,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2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2 2100 / 2300 / 2500
- 팩스: (603) 8889 5901/5899
- 웹사이트: www.customs.gov.my
- 이메일: kastam@customs.gov.my

SECURITIES COMMISSION

- 주소: No. 3, Persiaran Bukit Kiara, Bukit Kiara, 5049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6204 8777
- 팩스: (603) 6201 5078
- 웹사이트: www.sc.com.my
  www.min.com.my
- 이메일: cau@seccom.com.my

SMALL AND MEDIUM INDUSTRIES DEVELOPMENT CORPORATION

- 주소: Level 8, Tower C, Uptown 5 No. 5, Jalan SS21/39, Damansara Uptown 47400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 전화: (603) 7628 7400
- 팩스: (603) 7660 1919
- 웹사이트: www.smidec.gov.my
- 이메일: info@smidec.gov.my

SME BANK

- 주소: Menara SME Bank Jalan Sultan Ismail, P.O.Box 12352 50774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615 2020/ 2828
- 팩스: (603) 2692 8520/ 2698 1748
- 웹사이트: www.smebank.com.my
- 이메일: enq_y@smebank.com.my

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

- 주소: Menara Perkeso, 281 Jalan Ampang 50538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4257 5755 / 4264 5463
- 팩스: (603) 4256 7798
- 웹사이트: www.perkeso.gov.my
- 이메일: perkeso@perkeso.gov.my

TELEKOM MALAYSIA BERHAD

- 주소: Level 51, North Wing, Menara TM Off Jalan Pantai Baru 50672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240 1221
- 팩스: (603) 2283 2415
- 웹사이트: www.tm.com.my
- 이메일: feedback@telekom.com.my

TENAGA NASIONAL BERHAD

- 주소: 129, Jalan Bangsar 5920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2296 5566
- 팩스: (603) 2283 6397
- 웹사이트: www.tnb.com.my
- 이메일: webadmin@tnb.com.my
- 이메일: info@bnm.gov.my

4. 임금체계

【 2007 말레이시아 임금체계 】

(단위: 링깃(RM))

직위	자격요건	기간 (Year)	업무내용	최저임금 (RM)	최고임금 (RM)
은행					
출납계원	고졸	1-3	고객상담, 신규계좌개설, 예금 및 인출 관리, 고객 상세기록 갱신, 거래정보기록, 잔액청산	800(남부) 948(중부)	950(남부) 1200(중부)
영업부 연수생	전문대졸/4년제졸	0-2	경영훈련, 지점 경영방식 일일학습, 경영, 신용 및 대출관련업무 수행.	1200(남부) 1600(중부)	2000(남부) 2500(중부)
신용대출 직원	전문대졸/4년제졸	2-3	신용 및 대출신청 평가 및 절차. 신용불량 조사. 은행상품 및 서비스 홍보.	1600(남부) 2000(중부)	2200(남부) 2500(중부)
회계감사	4년제졸	2-3	내부관리수행	2200(중부)	2500(중부)
부지점장	4년제졸	5-6	일일지점업무 및 전 직원 보조감독	3500(남부) 3500(중부)	5000(남부) 4500(중부)
금융					
신용관리 직원 및 임원급	전문대졸/4년제졸	1-2	미수금처리. 자료입력. 소송관련 보고서 및 대출/신용거래서 작성.	950(중부) 1150(중부)	1600(중부) 2200(중부)
재무 분석가	4년제졸	2-4	재무 분석, 프로젝트 및 통계수치연구 수행	3500(중부)	4500(중부)
회계사	4년제졸/ 전문자격증	2-3	수익, 현금 및 잔고관련 통계자료와 재무보고서 준비관련 일반회계 담당. 기업체 혹은 개인의 금융 거래시 자료 분석, 보고 및 제공. 관련기록 보존 및 필수요건 충족에 대한 조언.	4000 (남부/중부)	4500(중부)
신용관리 부장	전문대졸/4년제졸	4-6	고객의 신용가치결정. 신용 및 미수금정책 작성. 체납계좌 및 체납자 관리. 소수직원 관리.	4000 (남부/중부)	5000 (남부/중부)
사무보조					
자료입력 사무원	고졸	1-2	컴퓨터자료입력	850(남부) 850(중부)	1200 (남부/중부)

직위	자격요건	기간 (Year)	업무내용	최저임금 (RM)	최고임금 (RM)
개인 운전사	고졸	2-3	인사 및 방문객 수송. 기타 잡무수행	900(남부) 1100(중부)	1400 1600
보안담당	고졸/전문대졸	3-4	화재, 도난 및 불법 입국시 재산보호. 건물 및 부지 일일시찰, 명령수행, 기타 행정업무 보조	1000(남부) 1200(중부)	1500(남부) 1800(중부)
임원비서	비서관련자격증 /전문대졸/4년제졸	4-5	최고 경영업무, 이사회 회의기록 작성, 일반 비서업무 수행, 기타직원 감독 및 업무조정	2400(남부) 2800(중부)	3000(남부) 4000(중부)
영업 및 마케팅					
판촉사원 및 판매보조	고졸/자격증	1-2	안내데스크, 점포 내 상품판촉업무	700(남부) 800(중부)	1100(남부) 1500(중부)
시장 조사원	전문대졸/4년제졸	2-4	마케팅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1200(남부) 1600(중부)	1800(남부) 2500(중부)
홍보 매니저	4년제졸	4-6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점포외부 판매담당. 구매권유	3500(중부)	5000(중부)
마케팅 매니저	전문대졸/4년제졸	4-5	마케팅활동조직. 마케팅 관련 행사 및 캠페인 조직. 상품개시 및 마케팅 계획준비 관련업.	3500(남부) 4500(중부)	5000(남부) 6000(중부)
영업부장	4년제졸	4-5	사업전략 계획 및 관리. 판매목표 및 할당량 달성. 시장수요에 따른 서비스 및 상품 컨설팅 개발. 영업팀 업무조정. 예산수행감독.	4000 (남부/중부)	6000 (남부/중부)
광고					
카피 라이터	고졸/관련자격증/ 전문대졸/4년제졸	2-3	상품 및 서비스광고에 따른 자료구성. 광고업계에 대한 잠재시장 영향분석.	2000(중부)	2800(중부)
미디어플래너	전문대졸/4년제졸	2-3	출판 및 전자매체를 통한 광고공간 구입 및 조직. 고객과 매체 소유주 연결	2400(중부)	3000(중부)
인적자원					
인사부 보조	고졸/자격증	2	일반 인사행정업무, 면접, 휴가 및 의료기록 관리	850(남부) 1100(중부)	
인사부 부장	전문대졸/4년제졸	4-5	인사부 정책 및 절차 고안, 계획 및 수행. 채용, 임금 및 직원특별수당 담당. 정부규제시행. 인사부 임원직 감독.	4000 (남부/중부)	5000(남부) 6000(중부)
인사채용 부장	전문대졸/4년제졸	2-3	직원채용. 수행평가, 인사부 보조팀 감독	2500(남부) 3000(중부)	3500(남부) 4000(중부)

직위	자격요건	기간 (Year)	업무내용	최저임금 (RM)	최고임금 (RM)
물류 및 보세창고					
보세창고 보조	중졸/고졸	1–3	기본적인 보세창고업무. 물품수령 · 확인 및 보관. 청구서 및 주문서 작성	800(남부)	1200(남부)
운송 감독관	전문대졸/4년제졸	4–5	공급업체와 관련 물품 수령 · 발송 및 보관 업무 담당. 사무실 운영 및 직원관리. 물품 수량 및 품질 확인.	1800(중부)	230(중부)0
보세창고 관리 매니저	전문대졸/4년제졸	4–5	보세창고 총괄업무	3000(남부) 3500(중부)	5000(남부) 4500(중부)
유통부 부매니저	4년제졸	4–5	물품주문 및 유통 감독. 판매증가를 목표로 철저한 배달감독.	3800(남부) 3500(중부)	5000(남부) 4500(중부)
정보통신					
정보통신 임원	상급전문대졸 /4년제졸	2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기반시설 관리. 정보보안극대화를 위한 IT절차수행.	C2500 N/S2200	2800 2600
프로 그래머	4년제졸	1–2	사내용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개발 담당.	C2500 N/S2200	3000 2600
소프트 웨어기사	4년제졸	2–3	고객용 특정 프로젝트 수행. 내외부 직원과 밀접한 근무. 요구사항 작성, 실행 및 실험. GUI(사용자그래픽인터페이스) 기기사용	3000	3500
네트워크 관리자	4년제졸	2–3	LAN/WAN선 관리 및 운영. 시스템관리, 하드웨어 보조	3500	7500
기술고문	4년제졸	2–3	문제 및 변동사항 해결.	3500	5000
프로젝트 매니저	4년제졸	3–5	지역별 프로젝트 관리업무 계획 및 실행 스케쥴 및 프로젝트 예산안 감독, 프로젝트 결과 수행시 필요한 자료할당보조	5000	8000
외국인 고객상담	4년제졸	2–3	고객의 기술적 문제해결. 고객전화내용기록.	3000	6000
서비스배 달매니저	4년제졸	4–6	서비스 검토. 서비스 품목 관리 및 조정. 고객관리경영. 기초 기반시설 및 기술지식	4500	7500
물품공급 매니저	4년제졸	3–5	주요 공급망 통합을 통해 고객에게 고품질 경영지원 제공. 물류총괄관리.	3500(C/S)	6000(C) 7000(S)
문제해결 전문가	4년제졸	3–5	전체 시스템의 문제해결 및 변동사항 검토, 조정, 통지 및 문서작성 담당.	4500	7500

직위	자격요건	기간 (Year)	업무내용	최저임금 (RM)	최고임금 (RM)
공업 및 기술					
자료수집 및 조사원	전문대졸/4년제졸	1-3	도안, 견적서 및 설계도 준비. 건설업체, 하청업체 및 정부기관과 접촉	1500(중부)	2400(중부)
현장감독	관련자격증 /전문대졸	2-3	건설현장업무감독. 건축설계도 파악 및 프로젝트 조직. 업무관련 규제 및 규칙 시행. 직원관리	2000(중부)	2500(중부)
견적 조사원	4년제졸	1-3	견적서 및 설계도 준비. 사업계획 감사. 건설비용 및 건설계약서 관리.	2500(중부)	3800(중부)
전기 기술자	기술교육전문대졸	3-4	설계, 디자인, 유지보수 및 생산업무	850(중부) 1200(북부)	1500(남부) 1700(중부) 1500(중부)
영업 기술자	기술교육전문대졸/ 4년제졸	3-4	기술판매지원 및 기술적 문제해결, 고객요구사항 및 판매기회 파악	2400	3200(남부/북부) 3600(중부)
제품 기술자	4년제 공대전공	3-4	제품기술개발 및 제품지원활동 수행. 품질, 운영, 마케팅, 실험 등 기타 부서, 외부고객 및 공급업체와 연락	2500	4000
기술관리 매니저	4년제 공대전공	4-5	장비나 기술의 품질 및 성능담당. 해외 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4000	5000
조립기사	전자기계공학 관련전문대졸	2-3	기계조립, 자동화 오류검사 및 시험. 모듈/도구 조립 및 오류검사. 완성된 시스템 설치, 구 시스템 성능개선. 전자기계하드웨어 문서작성. 제품검사.	2000	2500
연구개발 기사	전문대졸/4년제졸 (전자/기계공학)	2-3	신기술 연구개발. Thermal Spray and Precision Cleaning기술개발	3000 (남부/중부)	5000 (북부/중부)

자료: Kelly Services 제공

5. 말레이시아 개황

개 요

○ **공식국명** : Malaysia
- 수도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면적** : 329,758 ㎢(한국의 3.3배/ 한반도의 1.5배)
- 말레이반도(131,598 ㎢) 및 동말레이시아(사라왁/사바州, 198,160 ㎢)의 13개 州로 구성. 적도 북단에 위치하며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남쪽), 태국(북쪽), 필리핀(동쪽)과 인접한 ASEAN의 중심 국가

○ **기후** : 열대성 기후, 연평균 27℃, 연평균 강수량 2,410㎜

○ **인구** : 2,717만('08년 2월 발표자료)
- 말레이계 61.7%, 중국계 23.1%, 인도계 6.9%, 기타 8.3%
- Kuala Lumpur(160만 명/활동인구 약 500만 명), Penang(152만 명), Johor Barhu(135만 명) 등

○ **국가형태** : 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군주국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내각수반 - 압둘라 바다위 수상)

○ **국가원수** : Mizan Zainal Abidin 국왕 (제13대)
- 말레이계 9개 주 술탄이 5년마다 순환하며 국왕 역할 수행
- 비말레이계 4개 주(페낭, 말라카, 사바, 사라왁)에는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존재
- 2006년 12월 13일 취임

○ 언어 : 말레이어(Bahasa Malaysia)가 국어
- 인종 간 언어수단으로 영어를 사용 (문맹률 : 10.7%)

○ 종교 : 이슬람교 (국교)
- 이슬람교 60.4%, 불교 19.2%, 기독교 9.1%, 힌두교 6.3%, 기타 5%

○ 지방제도
- 연방직할지인 쿠알라룸푸르(74년 설정), 라부안(84년 설정), 및 푸트라자야(2001년 설정) 외에 서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11개 주 및 동말레이시아 2개 주 등 13개 주로 구성
- 지방정부가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상당한 실권 행사

○ 국제공항 : KLIA, Kuching, Penang 등
- KLIA Sepang 공항은 KL 남쪽 약 75㎞ 거리에 위치

○ 실질 GDP(2007년 예상치) : RM504.4bil(US$156.6bil)
- '06년 GDP는 1,489억 불로 세계 37위(World bank data)
- 실질 GDP 성장률 : 6.3%
- 1인당 명목소득 : US$6,452
- 산업구조 : 서비스업(53.4%), 제조업(30.2%), 농수산임업(7.6%), 광업(8.6%), 건설업(3.0%) *수입세 등 가감전 수치

○ 실업률 : 3.3%

○ 물가상승률 : 2.0%

○ 교역품
- 수출 : 전기전자제품, 원유, 석유화학, 팜오일, LNG
- 수입 : 전기전자제품, 기계 및 부품, 금속 및 철강제품

약 사

○ 1403	MALACCA 왕국 성립
○ 1511	포르투갈, MALACCA 왕국 점령
○ 1641	화란, MALACCA 왕국 점령
○ 1824	영국, MALACCA 지배권 영유
○ 1874	영국, 보호령 통치 개시
○ 1941	일본의 점령
○ 1946. 4	영국, 군정 실시
○ 1957. 8.31	영국으로부터 독립
○ 1963. 8	11개 州의 MALAYA 연방, 싱가포르 자치령, 영국령 보르네오(사바, 사라왁 2개 주)로 구성되는 말레이시아 형성
○ 1965. 8	SINGAPORE 분리 독립
○ 1981. 7	부총재 마하티르, 4대 총리에 취임
○ 1982. 4	마하티르 총리의 국민전선 집권 지속
○ 1986. 8	조기총선에서 마하티르의 BN이 압승
○ 1989.10	라잘레이 전 상공장관 중심의 마하티르 총리 반대파는 집권당 UMNO를 탈당, 'Semangat 46'을 창당하고 야권연합 추진
○ 1990.12	마하티르 총리가 이끄는 BN이 압승
○ 1993.11	UMNO 전당대회에서 안와르 재무장관이 가파바바 부총리를 누르고 부총재에 당선
○ 1996.10	UMNO 전당대회에서 마하티르 총재 및 안와르 부총재가 경선 없이 추대
○ 1998. 9	안와르 부총리 해임 및 직권남용, 동성애 혐의로 기소
○ 2003.10.31	제5대 압둘라 바다위(Abdullah Badawi) 총리 취임
○ 2004. 3	11대 총선에서 여당인 UMNO가 압도적 승리
○ 2006.12	국가원수 Abidin(13대) 취임 *임기5년
○ 2008. 3	12대 총선에서 여당의 지지도 하락

경제 동향

○ GDP

- '07년은 6.3%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건설업(-0.5%) 및 광업(-0.4%) 분야가 '06년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07년에는 건설업(4.6%) 및 광업(3.2%)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업이 전년대비 9.7% 증가하며 경제활동을 주도함.
- 9차 말레이시아 계획(2006-2010년) 및 '07년 예산안하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본격 착수되어, 이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는 올해도 말련 경제성장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물가

- '06년 상반기의 유류대 및 전기료 인상이 소비자물가지수를 3.6% 끌어올렸으나, '07년에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보조금 정책 등으로 2.0% 상승하는데 그침.
- 전반적인 물가 안정 및 현지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08년에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무역수지

- 말레이시아의 수출입은 '06년에 무역규모 RM 1조(약 2,800억불) 시대를 개막한 이래, '07년에도 전년대비 각각 2.7%, 4.8% 증가한 RM 6,051억, RM 5,046억을 기록. 또한, 무역흑자 규모는 RM 1,005억으로 '97년 11월 이후, '07년 12월까지 122개월 연속 흑자 행진 중
- 작년의 수출 증가는 주로 전기전자 등 제조업부문에서의 선전과 원유, 팜 오일, 고무 등 재화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기존 미국, 유럽 및 일본에 의존하던 수출시장이 아시아, 중국, 남미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줌.

○ 환율

- '05년 7월 고정환율제(1US$=RM3.8)를 관리형 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 현지화(링깃-RM)의 US$에 대한 강세가 꾸준히 진행되어 현재는 변경 전 대비 15.3%의 강세를 기록 중 (1US$=RM3.22/'08.2 기준)
- 세계적인 미국달러화 약세와 함께 수출호조 등 최근 말레이시아경제의 전반적인 강세로 인해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주요기관 전화번호

기 관	전 화
대 사 관	4251-2336
한 인 회	4257-7585
지상사협의회	2142-8616
투자진출협의회	7982-1733
대한항공 KL 지점	2144-0200
말레이시아 항공	7873-3000
MITI (통상산업부)	6201-0033
말련 재무부	2098-2000
MIDA (투자유치기관)	2095-3633
MATRADE (무역진흥기관)	2694-7259
JPJ (교통부)	2094-9044
관세청	6200-2005
이민국	2095-5077/8880-1056
통계청	8885-7000
콜택시 (콜택시 이용시 2링깃 추가 소요)	Comfort Cabs: 2692-2525 Public Cab: 6259-2020 Super Cab: 7875-7333 Sunlight: 9057-1111 Saujana: 2162-8888
택시고발	2095-4444
철도역	2274-7435
관광안내센터	2142-3929
버스터미널	2070-7694
렌터카	2161-1136,2141-7144,2142-5006
고장수리	100
장거리전화신청	101
일반정보 안내	102
전화번호 안내	103
국제전화신청	108
기상안내	1052
경 찰 /앰 뷸 런 스	999(Tourist Police:2149-6590)
화 재 신 고	994

* 8자리 전화번호의 경우,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는 지역번호 03을 붙여야 함

말레이시아 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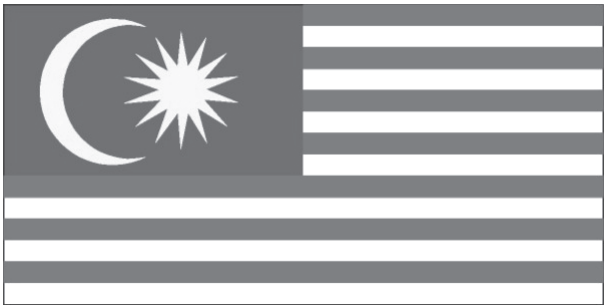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국기는 '말레이시아 연방' 결성(63.9.16) 직후 채택됨.

○ 국기에 있는 14개의 적백횡선은 연방정부와 13개 주가 평등한 구성원임을, 좌측 상단의 감색은 단결을, 초승달은 회교를 각각 상징

○ 14개의 섬광을 발산하는 별은 13개 주와 연방정부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연방을, 별과 초승달의 황색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각각 상징

○ 당초에 14번째 섬광은 싱가폴을 의미하였으나, 싱가폴이 말라야 연방에서 분리된 이후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6. 권장활동 및 제품 목록

6.1 1986년 투자진흥법(Investment Act 1986)하의 개척자격과 투자세 공제 혜택 대상 업체를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목록

1) 농업 생산

- 차 재배
- 과일 재배
- 야채, 괴경류 또는 근류 재배
- 쌀 또는 옥수수 재배
- 허브 또는 향신료 재배
- 방향유 작물 재배
- 종자 및 묘목 생산
- 동물사료용 작물 재배
- 화초재배
- 양봉
- 축산 (닭, 오리, 돼지 사육은 제외)
- 종자용 동물 사육
- 수산물의 부화, 번식 및 양식
- 연안어업
- 약용작물 재배
- 양잠*
- 코코아 재배*
- 코코넛 재배*
- 사고 팜(Sago palm) 재배*
- 닭과 오리 사육*

2) 농산물 가공

-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과일
- 야채, 괴경류 또는 근류
- 방향유
- 축산물
- 수산물
- 농업폐기물 또는 부산물
- 양어 · 양식용 사료
- 의약품, 향수, 화장품 또는 식품산업용 식물 추출물
- 고과당시럽
- 코코아 및 코코아제품
- 식품 첨가물
- 일리프(illipe)제품*
- 코코넛제품 (코프라 또는 미가공 코코넛유 제외)*
- 전분제품*

3) 임업 및 임업제품

- 목재, 대나무 또는 사탕수수 재배
- 사탕수수제품
- 대나무제품

4) 고무제품 제조

- 중장비용 타이어, 농업용 타이어,

산업용 타이어, 상용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항공기용 타이어 또는 솔리드 타이어(solid tire)
- 경화처리 트레드 라이너(Precured tread liners)
- 항공기 타이어 재생
- 라텍스제품:
  - 수술용 장갑
  - 안전/특수기능 장갑
  - 콘돔
  - 도뇨관(catheter)
  - 고무(탄성중합체(elastomeric)) 특수코팅
  - 고무처리직물
  - 카펫 깔개(underlay)
  - 수영모자
  - 풍선 · 기구
  - 손가락보호용 깍지
  - 장난감
  - 라텍스실(thread)
  - 건식고무제품
  - 벨트장치
  - 고무호스, 파이프, 관류(tubings)
  - 고무프로파일(rubber profiles)
  - 공기주입식(inflatable) 고무제품
  - 산업용 및 사무용 기기롤러(equipment roller)
  - 고무인(seal),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패킹packing)과 링(ring)
  - 진동흡수, 제동, 소음 절연제품
  - 고무라이닝(lining)
  - 고무바닥재
  - 고무몰드(mould)
  - 변형된 천연고무
- 재생고무
- 완충고무(rubber support)

5) 팜유제품 및 그 파생품의 제조
- 올레오 화학물질 또는 그 파생물 또는 그 조제품
- 마가린, 바나스파티(vanaspati), 쇼트닝 또는 기타 지방제품
- 지방산 증류 파생물
- 코코아버터 대체품, 대용품 및 대응물, palm mid-fraction 또는 특수 올레인
- 미가공 팜핵유 및 팜핵케이크, 엑스펠러
- 야자를 원료로 한 영양제, 팜유/팜핵유의 구성성분
- 야자를 원료로 한 식품
  - 특제 동물지방 대체품
  - 야자를 원료로 한 마요네즈 및 샐러드드레싱
  - 대용 코코넛 우유/분말
  - 적색팜유 및 적색팜유제품
  - 야자를 원료로 한 식품 재료
  - 변형(에스테르 교환) 팜유 및 팜핵

유제품
- 야자를 원료로 한 마이크로캡슐제품
- 다음을 원료로 한 가공품
- 야자 지방산 증류액/팜핵 지방산 증류액
- 팜핵케이크, 엑스펠러
- 팜유공장 배출수
- 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제품
- 팜유 또는 팜핵유의 정제*

6) 화학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제조
- 유기적 또는 무기적인 원천으로부터 생긴 화학유도체
- 정밀 화학제품(fine chemicals)
- 살충제의 기본적인 제조
- 석유화학제품
- 에폭시 캡슐로 싼(epoxy encapsulation) 몰딩 화합물
- 케이블 복합체(PVC 케이블 복합체는 제외)
- 이산화티타늄 안료
- 바륨황산염 안료
- 이산화철 안료
- 금속 안료
- 화학물질의 재생
- 점착방지액(anti-tack solution)
- 잉크젯프린터 잉크
- 세정용품, 화장품, 욕실용 조제품*
- 왁스용품*
- 특수 페인트 또는 코팅제*

7) 의약품과 그 관련제품 제조
- 의약품
- 임상진단시약
- 젤라틴 또는 젤라틴제품
- 정맥주사, 혈액투석 또는 관주용액
- 백신
- 약제 · 약물

8) 목재 및 목제품 제조
- 목재를 원료로 한 재생 패널보드 또는 제품
- 목재 문(Solid 타입) 또는 기타 특수 기능 문 또는 목재 창(Solid 타입)
- 다면적 조각나무 세공을 한 마루(Multi-ply parquet)
- 목재가구 디자인, 개발 및 생산
- 극저온 용기의 절연재료
- 모든 목재제품(단, 톱으로 자른 원목, 베니어 및 단순 합판은 제외)*

9) 펄프, 종이, 판지 제조
- 펄프
- 신문용지
- 증권용지
- 수지함침지(resin impregnated paper)와 그 제품

-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
- 골심지(corrugated medium paper), 테스트라이너(testliner), 또는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 크라프트지(kraft paper)
- 판지
- 몰딩지(Moulded paper)
- 특수지
- 펄프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종이 및 종이제품*

10)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

- 천연 및 인조섬유
- 천연 및 인조섬유사(yarn)
- 직조직물
- 마무리된 편직물
- 표백, 염색, 나염과 같은 직물의 마무리작업
- 니트웨어
- 스키복 또는 겨울 외투
- 부직포제품(non-woven products)
- 탄성 웨빙(elastic webbings)
- 섬유호스 파이핑 (textile hose piping)

11) 점토와 모래를 원료로 한 제품 및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 고급 알루미나(alumina) 또는 기본적인 내화벽돌
- 가마용 가구
- 실험실용품, 화학용품 또는 산업용품
- 세라믹 또는 유리로 만든 공예품, 장식품 또는 장신구
- 유리제품
- 고장력 유리 절연제품
- 전기, 전자, 산업용 유리 부품
- 기본 원료로 만든 모든 형태의 유리섬유
- 유리섬유직조 완제품
- 광학유리 블랭크 (optical glass blanks)
- 알루미노-실리케이트 (alumino-silicate) 세라믹 섬유
- 전기, 전자, 산업용 세라믹 부품
- 프릿(fritz), 지르코늄 실리케이트 분말(zirconium silicate powder), 광택제 또는 착색제
- 이산화실리콘 충전재
- 암면
-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 가공된 볼 클레이(ball clay)
- 벽돌, 타일, 슬래브(slab), 펠리트(pellets), 보도블록, 건물용 사각형과 같이 압축 또는 몰딩한 유리제품
- 식탁용품
- 코팅 유리
- 통합 시멘트 프로젝트
- 흡수성 미네랄 클레이

- 대리석 및 화강암 제품
- 석고 보드
- 식물섬유, 목섬유, 짚, 대팻밥 또는 목재 폐기물을 시멘트, 석고, 기타 광물성 결합물질과 함께 섞어 만든 패널, 보드, 타일, 블록 또는 그와 유사한 제품
- 결정화유리판
- 가공 카올린(kaolin)*
- 벽면용, 마루바닥용 세라믹 타일*
- 유리질화(vitrified) 점토 파이프*
- 탄화칼슘 분말*
- 코팅 또는 무코팅 활석 또는 황산바륨 분말(평균 입자크기 5마이크론 미만)*
- 고급 규사 또는 그 분말*
- 점토 지붕용 타일*
- 생석회 및 소석회*

12) 제철과 제강

- 강철 블룸(bloom) 또는 슬랩(slab)
- 200mm 이상의 형강 또는 섹션
- 강판(plate), 시트(sheet), 코일(coil), 후프(hoop) 또는 스트립(strip):
  - 열연(hot rolled) 강판, 시트,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 냉연(cold rolled/cold reduced) 강판, 시트,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 이음매 없는 강관
-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 실린더
- 강철 타이어코드와 고압 보강 호스 와이어
- 망간철, 망간규소 또는 규소철
- 전기 아연도금 강판
- 용접 강철파이프 또는 파이프 연결구*
- 모든 등급의 열연, 냉연, 냉간 완성 강철봉 또는 와이어로드(연강제품은 제외), 앵글, 형강 또는 섹션*
- 철 또는 강철 와이어 또는 와이어제품*
- 강철 조립품*

13) 비철금속 및 그 제품 제조

- 주석 이외의 비철금속 드레싱 및/또는 제련
- 비철금속의 1차 주괴(ingot), 빌레트(billet) 및 슬랩(slab)
- EC 구리 로드(rod)를 제외한 비철금속 봉(bar), 로드(rod), 형체(shape) 또는 섹션(section)
- 비철금속 판, 시트,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 비철금속 파이프 또는 튜브
- 구리도금 라미네이트 및 사내 생산된 구리도금 라미네이트를 이용한 제품

- 비철금속 분말, 크림 또는 페이스트(paste)
- 알루미늄 합판
- 비철금속 와이어 또는 와이어제품*
- 비철금속 조립품*

14) 기계류 및 기계 부품 제조

- 다음의 특정 산업용 특수/공정 기계 또는 장비
  - 농기계 또는 장비
  - 채광 또는 광물가공 기계 또는 장비
  - 건설기계 또는 장비
  - 폐수/하수처리장비
  - 공업용 재봉기계
- 발전기 또는 발전장비를 포함한 지원서비스용 기계 또는 장비
-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자재취급 기계 또는 장비
- 손 공구 또는 전동 공구
- 다음과 같은 기계와 공업용 부품
  - 프린팅 롤 또는 엠보싱 롤
  - 실리콘 웨이퍼 또는 세라믹 기판용 다이싱 블레이드와 액세서리
  - 옵셋 인쇄판
  - 산업용 봉인(seal) 또는 봉인소재
- 용접/납땜장비를 포함한 공작기계(금속가공, 목공 등)
- 포장기계
- 다음과 같은 서비스부문 지원 기계 또는 장비
  - 소화기
  - 핸드 라벨러(labeller)
- 중장비 · 기계의 수리(reconditioning)
  - 자동차용 에어컨 콤프레서
- 기계 장비의 정비, 개량 및 수리

15) 수송 장비,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 자전거
- 자전거 부품
  - 구동 세트 (체인 휠과 크랭크)
  - 브레이크 세트
  - 변속 세트
  - 허브
- 특수 차량
- 엔진
- 엔진 부품
  -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로커 커버, 플라이휠 또는 풀리
  - 크랭크축, 연결봉, 캠샤프트, 로커, 로커 샤프트, 엔진밸브, 스프로켓, 피스톤 핀 또는 피스톤 링
  - 흡기 매니폴드 또는 배기장치
  - 오일 팬, 오일 펌프, 오일 펌프 기어 축, 연료 펌프, 용수 펌프, 오일 실
  - 타이밍 벨트, 타이밍 체인, 기화기

(carburettor), 점화코일 또는 배전기
- 연료사출 메커니즘 (사출기, 펌프, 튜브, 밸브, 레귤레이터, 센서, 전자 제어모듈)
- 고압 케이블
- 엔진 브래킷
- 자석발전기(magneto)
- 축전기 방전장치 (capacitor discharge unit)

• 변속기
• 변속기 부품:
- 변속 기어변환 레버와 포크
- 변속제어 링크기구
- 속도계 피니언
- 클러치
- 토크 컨버터
- 구동 축

• 차축(axle), 휠(wheel), 휠 허브(wheel hub) 또는 너클(knuckle)
• 디스크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브레이크 실린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부스터, 안티락 브레이킹 메커니즘(anti-lock braking mechanism),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또는 클러치 오퍼레이팅 실린더
• 조종핸들, 조종간, 조향기어박스, 동력 조향 펌프, 조향장치의 링크기구, 타이 로드, 등속 조인트, 유압/전력 조향용 랙 튜브 및 유압 조향용 피드 파이프
• 스터빌라이저 바, 서스펜션 암 또는 서스펜 션 암 샤프트와 멤버
• 차체 패널, 섀시 프레임, 연료 탱크, 창문 조절기, 잠금 장치와 열쇠, 또는 경첩(hinges)
• 헤드라이트, 방향지시/신호등, 계기판, 게이지, 스위치 또는 경적
• 웨더 스트립, 제어 케이블, 속도계 케이블, 금속 튜브 또는 호스
• 촉매 전환 장치
• 차량용 안전 에어백
• 차량 항법 시스템 (navigation system)
• 자동차 전자 모듈/부품 또는 센서
• 시트조절장치(seat adjuster), 문잠금장치와 시트젖힘기어(seat recliner) 등 시트 장치
• 시스템통합장치
- 프론트 코너 모듈
- 리어 코너 모듈
- 계기판 모듈
- 스트러트, 충격흡수장치와 스프링 어셈블리 모듈
- 범퍼 어셈블리
- 프론트 크로스멤버 모듈
- 기능이 통합된 도어 모듈
- 연료탱크 모듈

- 시트 어셈블리
- 페달 어셈블리
- 도어 트림 어셈블리
- 플로어 콘솔 어셈블리
- 타이어와 바퀴 어셈블리
- 제동장치
- 와이퍼시스템
- 배기시스템
- 오디오시스템
- 난방, 통기, 냉방 시스템(HVAC)
- 에어백시스템
- 전력 및 신호 분배시스템
- 경보시스템
- 좌석벨트시스템
- 실외조명시스템
- 차체원형(Body in white) 어셈블리

• 기어
• 냉각장치, 공기흡인장치 또는 배기장치, 자동차 에어컨의 압축기와 팽창밸브
• 우주항공 산업
  - 항공기의 제작과 조립
  - 항공기 장비, 부품, 액세서리와 그 부품의 제작
  - 우주항공 산업용 지상 지지장치
• 유람선, 수중익선(hydrofoil) 또는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 항공기, 항공기 부품 또는 액세서리의 유지보수, 수리, 항공전자공학적 테스트와 정비
• 열차와 관련 장비의 제작
  - 기관차, 궤도차(rail car)의 제작
  - 객차, 무개화차, 보기차(bogie)
  - 전기다중장치(EMU, Electric multiple unit) 및 발전용 차량
  - 철도신호 및 통신시스템
• 모터 차량
• 전기 또는 전자 시스템 계기화*
• 조선*
• 선박수리*

16) 지원 제품/활동

• 금속 주조(casting)
• 금속 단조(forging)
• 금속표면처리/마무리
• 기계가공(machining)
• 몰드, 공구 또는 다이
• 금속분말부품(금속부품의 소결)
• 열처리
• 몰드 텍스춰링 (Mould texturing)
• 방사(irradiation) 서비스
• 가스 살균 서비스
• 터빈엔진, 부품 또는 하위부품(sub-assembly)의 분해검사, 수리, 재조정(reconditioning), 변경 또는 서비스와 테스트
• 복합신소재
• 몰드 디자인

- 고급 표면 처리 및 정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완성
- 고순도 가스 파이프 시스템 및 관련 부품
- 금속 스탬핑*
- 금속판의 아연도금, 전단 또는 절단 밀링 또는 기타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17) 전기전자제품, 그 컴포넌트 및 부품의 제조

-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기
- 컬러텔레비전 수신기 부품:
  - 브라운관
  - 전자총
  - 컬러화상튜브용 폴리싱 유리판(polished glass panels) 또는 깔대기형 유리(glass funnels)
- 디지털 오디오 · 비디오 리코더/플레이어와 부품
  - 디지털 오디오 · 비디오 리코더/플레이어
  - 디지털테이프장치
  - 디지털디스크장치
  - 광학 pick-up장치
  - 마그네틱 헤드
-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
  - 컴퓨터(자체 제작되지 않은 분리된 주변기기는 제외)
  - 모니터
  - 컴퓨터 프린터(프린터 메커니즘 포함)
  - 프린터 헤드
  - 컴퓨터 스캐너
  - 드라이브 유닛(unit)
  - 헤드 짐발 어셈블리/헤드 캐리지 어셈블리
  - 헤드스택 어셈블리
  - 컴퓨터 마그네틱 헤드
  - 데이터 저장 미디어
  - 음성 코일 모터
  - 액츄에이터(actuator)
  - 광 감지 조이스틱(photodetector joystick)을 포함한 전자오락기기
  - 디스크 회로기판 또는 디스크 블랭크
  - 컴퓨터 드라이브의 재자원화(re-manufacturing)
- 전자부품
  - 수정 진동자
  - 모터
  - 인쇄회로기판 (강성 단면 회로기판(rigid single sided circuit boards)은 제외)
  - Flat cable을 포함하여 전자장치용 케이블 또는 와이어
  - 용접밀폐(Hermetic seals)
  - 자석과 함께 몰딩이 된 전기/전자

부품
- 열 수축 케이블 조인트(joints)와 종단(terminations)
- 서미스터(Thermistors)
- 커넥터(와이어나 케이블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접착 와이어
- 레드 프레임(lead-frame)
- 마그네트(magnet) 또는 페라이트 코어(ferrite core)
- 전계발광 디스플레이(ELD),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또는 액정 크리스털 디스플레이(LCD)
- 멤브레인 스위치 (membrane switch)
- 표면실장부품(SMC)
- 광섬유 또는 광섬유제품
- 레드 프레임 상의 표면실장(SMT) 칩 홀더
- 태양전지(solar cells)
- 마그네트론
- 발광 다이오드(LED) 조립
- 정밀 접착 패드

• 기록된 매체와 기록 안 된 매체:
- 컴팩트 디스크
- 마그네틱 웹(Magnetic webs) 또는 팬케이크(pancakes)

• 전자기계와 장비/장치
- 현금자동지급기(ATM)
- 사무용 장비
- 경보장비/시스템 또는 장치
- 초음파 세척기
- 전자 저울(computing scale)
- 현금등록기
- 탈자기(Demagnetiser)
- 산업용 제어기
- 컴퓨터지원설계(CAD), 컴퓨터원용생산(CAM), 컴퓨터이용공학(CAE) 장비
- 로봇 또는 로봇공학
- 멀티미디어 통합 제어기

• 웨이퍼 제조
- 반도체 웨이퍼 제조
- 재생 실리콘 웨이퍼
- 웨이퍼 및 다이 레벨 제조

• 전기제품
- 무정전 전력공급장치(UPS)
- 이산화망간, 건전지 및 납산(lead acid) 배터리를 제외한 배터리
- 태양열 패널 방전관 (discharge tubes)
- 고밀도 방전 램프(High Intensity Discharge, HID) 및 관련 부품

• 전기통신
-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동전화를 포함한 전기통신장비(유선전화기는 제외)
- 통신장비용 안테나

- 음성/패턴/영상인식 또는 합성장비
- 데이터 단말기 디스플레이
-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 전자항법보조기
- 전자추적보조기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
- 방전관과 그 제품
- 공기 살균장치
- 변압기 또는 코일*
- 자동 대문 개폐장치*
- 소비자 전자제품, 그 부품, 하위부품 조립(sub-assembly) 및 액세서리*
- 산업용 전자제품, 그 부품, 하위부품 조립(sub-assembly) 및 액세서리*
- 가전제품과 그 부품*
- 산업용 전기장비 또는 그 부품*

18) 전문, 의료, 과학 및 계측기기/부품의 제조

- 의료, 수술, 치과 또는 수의과 기기/장비
- 게이지(gauges) 또는 계측기기
- 측량, 수로측량, 항해, 기상, 수문학(hydrological) 또는 지리 물리학 분야 탐사장비
- 테스팅 장비
- 시계 또는 손목시계
- 수술 바늘용 스테인리스 스틸 캐뉼러(cannulae) 또는 튜브

19) 사진, 영화영사, 비디오 및 광학용품 제조

- 카메라
- 렌즈
- 쌍안경, 망원경, 확대경 또는 현미경
- 영사 또는 비디오 장비

20) 플라스틱제품 제조

- 공기주입식(inflatable) 플라스틱제품
- 특수 플라스틱 필름/시트
- 세포형 구속시스템(Cellular Confinement System, CCS)과 배수성 포장시스템(PPS)과 같은 지구환경시스템제품
- 엔지니어링용 플라스틱제품
- 정밀공학 플라스틱제품
- 다중벽 파이프
- 스티로폼 (Expanded polystyrene foam)*

21) 기타

- 악기
- 가구 부품
- 기념품, 수공예품 또는 선물용품
- 전자 장난감
- 스포츠용품 또는 장비
- 안경 또는 안경테
- 섬유산업용 액세서리
- 식탁용 나이프, 포크, 스푼 등

- 자물쇠 세트 또는 락 실린더 (lock cylinder) 메커니즘
- 귀금속으로 만든 보석류
- 의상용 보석
- 상업용품 장식면의 디자인과 인쇄
- 통합전시
- 미생물(microbials)과 천연생균제(probiotics)
- 지폐
- 온도조절 컨테이너와 그 부품
- 생분해 가능한 1회용 포장재 및 가정용품
- 바이오세라믹 처리된 직물제품
- 개인용 방탄복
- 볼펜 팁
- 추락방지장비
- 장난감(전자 장난감은 제외)*
- 모든 종류의 미술과 디자인도구*
- 에나멜 가정용품 (enamelled household ware)*
- 요리기구(cooker) 또는 바베큐 세트*

22) 호텔업과 관광업

- 중저가 호텔 설립(3성급 이하)
- 기존 호텔 증축/현대화
- 관광프로젝트 수립
- 관광프로젝트 확장/현대화
- 휴양캠프의 설립
- 컨벤션센터 건립

23) 영화산업

- 영화 또는 비디오 제작
- 영화 또는 비디오의 편집제작

24) 제조업 관련 서비스

- 연구개발(R&D)
- 설계 및 시제품화
- 기능 및 직업훈련
- 통합 물류 서비스
- 통합 시장지원 서비스
- 통합 중앙 공익설비 시설
- 전체 화학관리 시스템(TCMS)
- 식품용 냉장유통시설 및 서비스
- 환경관리
  - 에너지 절약/효율 서비스
  -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활동(바이오매스, 수력, 태양열 발전)
  - 독성 위험 폐기물의 저장, 처리 및 처분
  - 폐기물 재활용활동
  - 농업 폐기물 또는 농업 부산물
  - 독성 및 비독성 폐기물의 재활용

25) 케나프를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

- 동물사료, 케나프 입자 또는 섬유, 재생 패널, 판 또는 제품 및 성형품

26) 보호장비 및 장치

- 안전 코팅 및 편직(knitted) 장갑
- 개인용 신체방탄복
- 고급 탄도 방탄유리

주:
1st Schedule : 모든 지역의 권장활동 및 권장제품
2nd Scendule : 권장지역인 사바 주, 사라왁 주, 켈란탄 주, 테렝가누 주, 파항 주, 펄리스 주와 조호르 주의 머싱지역(라부안 연방지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권장활동과 제품.
3rd Schedule : 라부안 연방지역의 경우는 호텔업과 관광업에 한해 권장지역을 위한 인센티브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6.2 제조업 관련 서비스를 위한 권장활동 목록

1) 사업운영본부(OHQ)
2) 지역물류센터(RDC)
3) 국제조달센터(IPC)
4) 지역사무소(RO)
5) 대표사무소(RE)
6) 연구개발(R&D)
7) 설계 및 시제품화
8) 기능 및 직업훈련
9) 통합 물류서비스
10) 통합 시장지원서비스
11) 통합 중앙 공익설비시설
12) 전체 화학관리시스템(TCMS)
13) 식품용 냉장유통시설 및 서비스
14) 환경관리

- 에너지 절약/효율 서비스
-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 활동(바이오매스, 수력, 태양열 발전)
- 독성 위험 폐기물의 저장, 처리 및 처분
- 폐기물 재활용활동
  - 농업 폐기물 또는 농업 부산물
  - 독성 및 비독성 폐기물의 재활용

6.3 1986년 투자진흥법하의 개척자격과 투자세 공제 혜택 대상 하이테크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목록

1) 첨단 전자산업

- 다음의 것을 설계, 개발 및 제작:
  - 컴퓨터 또는 그 주변기기
  -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프로그램
- 통신장비의 개발 및 생산
- 집적회로(ICs)의 설계 및 생산
- 브라운관과 첨단 디스플레이의 개발 및 생산
- 프린터용 헤드, 헤드 짐벌(head gimbals) /헤드 캐리지, 해드스택(headstacks), 마그네틱 헤드, 보이스 코일 모터(voice coil motors) 및 액츄에이터(actuators)의 설계, 개발 및 제조

- 첨단 커넥터(connectors)의 설계 및 생산
- 강성 단면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외한 고밀도 연결(HDI) 인쇄회로기판의 개발 및 제조
- 프린터 메커니즘의 설계, 개발 및 제조
- 표면 실장 부품의 개발 및 생산
- 전자파 차례 제품의 설계, 개발 및 제조
- 역회전 세탁기의 설계, 개발 및 제조
-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개발 및 생산

2) 장비/계측기기

- 다음의 것을 설계, 개발 및 제조:
  - 의료장비
  - 의료용 임플랜트 또는 기구
  - 과학 장비
  - 원심분리 장비
- 고압수 절단장비의 개발과 생산
- 공기 흐름 조절장비 및 관련 제품의 설계, 개발 및 제조
- 고전압 버스바(busbars), 자동 변환 스위치 및 건식 변압기 개발 및 생산

3) 생명공학

- 다음의 것을 개발, 시험 및 생산:
  - 의약품
  - 정밀 화학제품(fine chemicals)
  - 식품 또는 식품 재료
  - 사료 또는 사료 보충제
  - 생명공학을 이용한 진단기구
  - 원예제품
- 다음의 것을 개발, 생산:
  - 세포 배양물
  - 바이오폴리머
  - 생명공학적 소재
- 폐기물 처리를 위한 생물공학적 공정의 개발 및 생산

4) 자동화 및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s)

- 다음의 것을 개발, 생산:
  - 컴퓨터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장비
  - 공정계측장비
  - 로봇 장비
  - 컴퓨터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5) 전자광학과 비선형적 광학

- 다음의 것을 개발, 생산:
  - 광학렌즈
  - 레이저 애플리케이션 장비
  - 광섬유 통신장비
- 렌즈장치, 렌즈배럴장치와 뷰파인더 장치를 포함한 카메라의 설계, 개발 및 생산

6) 신소재

- 다음의 것을 응용 또는 생산:
  - 폴리머 또는 바이오폴리머
  - 초전도물질
  - 화인 세라믹 또는 첨단 세라믹
  - 고강도 혼성재
- 나노입자 및 나노입자의 조성물

7) 광전자산업

- 다음의 것을 개발, 생산:
  - 광전자시스템 컴포넌트
  - 광학시스템 컴포넌트
  - 포토커플러(photo-couplers)
  - 반도체 레이저
  - 안료

8) 소프트웨어공학

- 다음의 것을 개발, 생산:
  - 신경망(neural networks)
  - 패턴인식 시스템
  - 영상정보 분석처리 시스템 (machine vision)
  - 퍼지 로직 시스템 (fuzzy logic systems)

9) 대체에너지원

- 다음의 것을 개발, 생산:
  - 연료전지(fuel cells)
  - 폴리머 밧데리
  - 태양열 전지
  - 재생가능 에너지
  - 부유 에너지 전력 시스템 (Floating energy power system)

10) 우주항공

- 다음의 것을 설계, 개발, 제작 또는 조립:
  - 항공기
  - 항공기장비, 컴포넌트, 액세서리 또는 부품의 제작
- 항공기의 변경 및 전환
- 항공기 장비, 컴포넌트, 액세서리 또는 부품의 개수(refurbishment) 또는 재제작

11) 식품 생산 및 가공

- 신기술과 첨단 농경시스템을 이용한 식품 생산
- 신기술과 첨단 농경시스템을 이용한 식품 개발, 시험 및 생산

12) 공학지원 산업/서비스

- 다음의 것을 설계, 개발 및 제조:
  - 절단 및 절곡 다이
  - 반도체 cavity/encapsulation 금형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부품용 서스펜션 방식 공구
  - 레드 프레임용 프로그레시브 방식

공구
- 광섬유 접속용 공구
- 자동차산업을 위한 몰드, 공구 및 다이

• 산업용 정밀 컴포넌트/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첨단 공구와 장비의 설계, 개발 및 제조
• 첨단 제조시스템을 이용한 정밀 공작기계와 다이캐스트 부품의 개발 및 생산
• 원형제작을 포함한 디자인 및 개발

13) 목재 가공
• 공학목재의 개발, 시험과 가공

14) 제철과 철강
• 지름 2.0mm 이하 초정밀 스프링 와이어

6.4 1986년 투자진흥법하의 개척자격과 투자세공제 혜택 대상 산업연계프로그램(ILP) 업체를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록

1) 고무제품제조
• 고무 몰딩제품
• 컨베이어 벨트, 전동용 벨트, V-type 벨트, 또는 고무벨트 장치

2)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3) 점토와 모래를 원료로 한 제품과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
• 전기 · 전자, 또는 산업용 세라믹 컴포넌트 및 부품
• 유리덮개(glass envelopes)
• 유리기구(glass fittings)
• 복합신소재 또는 제품

4)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
• 탄성 웨빙(elastic webbings)

5) 제철 및 제강
• 철강 와이어 및 와이어 제품
• 강철 조립제품

6) 비철금속 및 그 제품 제조
• 구리도금판과 구리도금 합판제품
• 비철금속 와이어 및 와이어 제품
• 비철금속 조립품

7) 지원제품/서비스
• 금속 주조
• 금속 단조
• 도금(plating)
• 기계가공
• 금형, 공구 또는 다이

- 열처리
- 몰드 텍스춰링
- 금속 스탬핑
- 산업용 봉인(seal) 및 봉인 소재
- 분말야금 부품(금속부품의 소결)
- 터빈엔진, 컴포넌트 또는 반조립 부품의 유지, 보수, 수리, 분해수리, 변경 또는 정비와 검사
- 항공기, 항공기의 컴포넌트 또는 액세서리의 유지, 보수, 수리, 분해수리, 변경, 정비 또는 검사
- 선박의 컴포넌트 또는 액세서리의 유지, 보수, 수리, 분해수리, 변경, 정비 또는 검사

8) 수송기관, 컴포넌트 및 액세서리 제조
- 자전거 및 3륜 오토바이의 부품 및 컴포넌트
- 유람선, 수중익선(hydrofoil) 또는 호버크라프트(hovercraft)의 부품 및 컴포넌트
- 자동차의 부품, 컴포넌트 또는 액세서리
- 항공기 장비, 컴포넌트, 액세서리 또는 부품

9) 기계류 및 그 컴포넌트의 제조
- 기계 컴포넌트

10) 전기전자제품, 그 컴포넌트 및 부품의 제조
- 컴퓨터 주변기기
  - 드라이버 장치
  - 키보드
- 경보기기/시스템 또는 장치
- 소비자용 또는 산업용 전자제품의 부품, 반조립(sub-assemblies) 부품 또는 액세서리

6.5 1986년 투자진흥법하의 개척자격과 투자세공제 혜택 대상 소규모 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목록

1) 농업활동
- 농업
- 양봉
- 화초 및 관상용 관엽
- 양잠

2) 농산물 가공
- 커피
- 차
- 과일
- 야채
- 허브 또는 향신료
- 코코아 및 코코아제품
- 코프라(copra)와 미가공 코코넛유를 제외한 코코넛제품

- 전분 및 전분제품
- 곡물(cereal)제품
- 설탕 및 제과류
- 식물추출물
- 수산품
- 축산품
- 양봉제품
- 양어 · 양식용 사료
- 동물사료성분
- 농작물 폐기물과 부산물

3) 임업제품
- 등(藤)제품(등나무대, 껍질과 토막은 제외)
- 죽(竹)제품
- 기타 임업제품

4) 고무제품 제조
- 고무몰딩제품
- 사출성형고무제품
- 일반 고무제품
- 발포고무(foam rubber)제품
- 공기팽창식(inflatable) 고무제품

5) 팜유제품 및 그 파생품 가공
- 마가린, 바나스파티(vanaspati), 쇼트닝 및 기타 지방제품
- 올레오케미컬(oleochemical), 올레오케미컬 유도체 및 조제품
- 바이오매스제품
- 기름야자중과피제품
- 팜유/팜핵유 폐기물 또는 부산물

6) 화학제품과 의약품 제조
- 안료의 조제품, 분산제 및 특수 코팅
- 건조제
- 바이오수지(생물 고분자)
- 허브 약물 및 조제품
- 잉크젯프린터 잉크

7) 목재 및 원목제품 제조
- 장식용 패널 보드(일반 합판은 제외)
- 목재 몰딩
- 건축용 목공품 및 목공업(joinery)
- 목재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예: 활성탄, 숯, 나무섬유(wood wool))
- 가정용 및 사무용 목재용품

8)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
- 종이성형제품

9) 직물 및 직물제품 제조
- 납결염색을 한 천(batik)
- 섬유산업용 액세서리
- 편조원단
- 수직물

10) 점토 및 모래를 원료로 한 제품과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 세라믹 또는 유리로 만든 공예품, 장식품 및 장신구
- 조명기구용 유리장치
- 식물 섬유, 짚, 대팻밥 또는 목재 폐기물을 시멘트, 석고, 기타 광물성 결합물질과 함께 섞어 만든 패널, 보드, 타일 블록 및 그와 유사한 제품
- 연삭, 광택 및 샤프닝(날카롭게 갈기)용 연마제

11) 철강제품 제조

- 와이어와 와이어제품
- 조립제품

12) 비철금속 및 비철금속제품 제조

- 와이어 및 와이어제품
- 분말, 크림 또는 반죽(paste)
- 조립제품

13) 지원 제품/서비스

- 금속 단조(metal forging)
- 기계가공
- 기계 스탬핑
- 표면 처리/마감
- 금형, 공구 및 다이
- 산업용 봉인(seal) 및 봉인 소재
- 절삭공구
- 금속 주조
- 분말야금 부품(금속부품의 소결)
- 몰드 텍스춰링

14) 손 공구 제작

- 손 공구

15) 수송기관, 컴포넌트,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 수송기관, 컴포넌트, 부품 및 액세서리

16) 기계 및 장비의 부품 및 컴포넌트 제조

- 기계 및 장비의 부품 및 컴포넌트

17) 전기 및 전자제품, 컴포넌트 및 부품의 조립과 제조

- 장식용 조명기구
- 안테나
- 축전지
- 디스크 카드 플레이어
- 절전용 조명 및/또는 디스플레이
- 저항기(resistors)
- 전력공급 장치
- 인버터
- 키패드(key pads) 및 키 스위치
- 표면장착기술을 이용한 인쇄회로기판(PCB) 어셈블리
- 전자 밸러스트(electronic ballast)
- 삼상(three phase) 전기 액세서리 또

는 장치
- 통신기기, 컴퓨터/컴퓨터 주변기기 및 산업용 전자기기
- 전기보안장비/장치, 그 컴포넌트 및 부품
- 계측 또는 계량기기
- 보안장비/장치, 그 컴포넌트 및 부품
- 시험장비
- 가정용 전기제품의 부품 및 컴포넌트

18) 주방용품 및 식탁용품 제조
- 주방용품
- 식탁용품

19) 가구, 부품 및 컴포넌트 제조
- 가구, 부품 및 컴포넌트

20) 게임용품 및 액세서리 제조
- 게임용품 및 액세서리

21) 수공예품 및 기념품 제조
- 수공예품
- 기념품, 선물용품 및 장식용품

22) 스포츠용품 및 장비 제조
- 스포츠용품 및 장비

23) 보석 및 관련 제품 제조
- 보석
- 가공된 보석

24)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 장식 패널 및 장식품
- 욕실 및 주방 액세서리
- 플라스틱 코일/매트
- 에폭시 엔캡슐 성형 재료(Epoxy encapsulation moulding compound)
- 지구시스템제품(셀형 구속시스템)

25) 기타
- 왁스제품
- 미생물제제 및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 저자

Girish Ramachandran
Executive Director
RSM Strategic Business Advisors Sdn. Bhd.(www.rsmi.com.my)
Tel : 603-2697-2888 / Fax : 603-2691-7733 /
Email : girish.ramachandran@rsmsba.com
작성내용 : 금융시스템, 회계, M&A, 회사정리, 파산

Lee Voon Siong
Executive Director
RSM Tax Consultants Sdn Bhd
Tel: 03 2697 2888 / Email: wongyc@rsmi.com.my
작성내용 : 조세제도, 관세

Kamraj Nayagam
Patrner
Skrine
Tel : 603-2081-3999
Fax : 603 2094 3211
Email : kn@skrine.com
Website : www.skrine.com
작성내용 : 사업분쟁 및 해결

Wahab Salleh
Executive Director
Utmost Strategic Training Services Sdn Bhd
Tel : 6016-616-5136
Email : utmoststrategic@yahoo.com
작성내용 : 노무관리

Dr. Yong Chin Aun
Consultant
AIMS ASIAN Sdn Bhd
Tel : 6013-398-1044
Email : aims.malaysia@gmail.com
작성내용 : 마케팅관리

◇ 기타 자료제공 :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번역/편집/감수 : 김현호, Quah Hooi Pin, 김경연, 오주현, 남주현, 허길호, MIDA

With Compliments

To our valued Clients and Associates

RSM Robert Teo, Kuan & Co.
RSM Strategic Business Advisors Sdn. Bhd.
RSM Profit Improvement Sdn. Bhd.
RSM Corporate Consulting Sdn. Bhd.
RSM NWT Advisory Services Sdn. Bhd.

RSM International is a worldwide network of independent accounting and consulting firms. RSM International and its member firms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RSM International does not itself provide accounting or consultancy services. All such services are provided by affiliate members practicing on their own account.

RSM is represented by affiliate independent members in 64 countries and brings together the talents of almost 25,000 individuals in over 660 offices worldwide. The network's total fee income of US$3.06 billion places it amongst the top 7 international accounting organizations worldwide. Affiliate members are driven by a common vision of providing high quality professional services, both in their domestic markets and in serving the international professional needs of their client base. RSM International is a member of the Forum of Firms. The objective of the Forum of Firms is to promote consistent and high quality standards of financial and auditing practices worldwide.

In Malaysia, RSM International's member firm is represented by **RSM Robert Teo, Kuan & Co.**, founded in 1978 and now one of the leading and fastest-growing providers of audit, assurance, accounting and tax services.

Any partner/director in the office of RSM Robert Teo, Kuan & Co. would be glad to meet those visiting Malaysia and to provide help and advice where required.

Penthouse, Wisma RKT
Block A, 2 Jalan Raja Abdullah
Off Jalan Sultan Ismail
50300 Kuala Lumpur
MALAYSIA

Telephone: 603 2697 2888
Facsimile : 603 2691 7733
Email : audit@rsmi.com.my
rktax@rsmi.com.my
askus@rsmsba.com
Website : www.rsmi.com.my

International Contact Partner
Dato' Robert Teo

Audit & Accounting
Tan Yen Fen

Strategic Consulting & Advisory
Girish Ramachandran

Tax
Lee Voon Siong

Corporate Services
Eng Bee Hong

Restructuring & Insolvency
Arul Gunendran

Business Development
Julius Lau

RSM International
The Worldwide Audit, Tax & Consulting Network

RSM Robert Teo, Kuan & Co. (AF: 0768)
Chartered Accountants

SKRINE

AREAS OF PRACTICE

Banking & Finance: Acquisition Finance, Asset Finance and Leasing, Corporate Recovery and Insolvency, Islamic Finance, Online Banking & Transactions, Project Finance, Property Finance, Retail Banking, Restructuring and Work-Outs

Capital Markets: Debt & Equity, Initial Public Offerings, Asset-Backed Securitisation and Structured Finance

Construction & Engineering: Arbitration, Conciliation Drafting, Negotiating and Administering Construction Contracts, Litigation, Mediation and Adjudication

Corporate & Commercial: Commercial, Corporate, E-Commerce, Energy and Utilities, Immigration, Insurance, Investment, Joint Ventures, Mergers & Acquisition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Oil & Gas, Privatisation, Secretarial Services, Venture Capital

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Judicial Review, Civil Claims, Advisory

Environmental: Directors' personal liability, Determinations System Department and Environment, Compliance and Advisory with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laws

Intellectual Property: Assignment, Licensing & Technology Transfers, Biotechnology, Communications & Multimedia, Compliance & Registr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 Trade Secrets/Know How, Copyright, Domain Names, E-Commerce/ M-Commerce, Entertainment, Sports & Media, Food & Tobacco Regulations, Franchising, Industrial Designs,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et & Cyberlaws,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Litigation & Enforcement, Manufacturing, Supply & Distribution, Merchandising, Online Banking & Transactions, Outsourcing Projects, Patents & Utility Innovations, Pharmaceuticals, Drugs & Cosmetics, Product Liability, Trade Marks & Service Marks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on, Antitrust and Anti Dumping, GATTS/WTO/TRIPS

IT & E-Commerce: Communications & Multimedia, Domain Names, E-Commerce/ M-Commerce,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et & Cyberlaws,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Online Banking & Transactions, Outsourcing Projects

Litigation & ADR: Arbitration, Aviation, Banking, Bankruptcy, Corporate Insolvency & Restructuring, Conciliation, Construction & Engineering, Contract, Corporation & Partnership, Customs & Excise, Defamation, Employment & Industrial Relations, Family, Hire Purchase & Equipment Leasing,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 IT & E-Commerce, Land Acquisition, Mediation, Medical Negligence, Public Law, Real Property, Securities, Shipping & Maritime, Tortious Actions, Trusts, Estates & Charities

Real Estate: Investment, Leases and Tenancies, Mining Leases, Property Development Property Transactions

Tax: Customs and Excise, Stamp Duty Advice, Tax Advice

Trusts, Estates & Charities: Charities, Commercial Trusts, Probate and Administration, Trust, Wills

Contact Details:
Unit No 50-8-1, 8th Floor, Wisma UOA Damansara, 50, Jalan Dungun, Damansara Heights, 50490 Kuala Lumpur

Contact Partner: Mr Kamraj Nayagam
Tel: 603 20813999 ext: 743
Fax: 603 20943211
Email: kn@skrine.com

LEX MUNDI
THE WORLD'S LEADING ASSOCIATION OF INDEPENDENT LAW FIRMS

PACIFIC RIM
ADVISORY COUNCIL

We Serve For Your Excellence

Utmost Strategic Training Services Sdn Bhd (USTS) recognised the industries' needs for a total advisory i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USTS has designed a unique annual retainer package with emphasis to provide quality Human Resource and Labour Law advisory services to ensure smooth management, to solve problematic Human Resource and labour issues, to promote and develop skills and performance.

USTS was founded by Dr. Wahab Salleh, a former senior Officer of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who has held the positions of Senior Director of Labour. Dr Wahab Salleh has a vast experience of more than 30 years service in the Labour service under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Malaysia. And currently is the Human Resource Advisor to Samsung Group Malaysia.

USTS has a team of qualified and specialised key personnel who have held senior positions in the Departments of the Labour, Industrial Relations, Trade Union Affai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ocial Security Organisation, former President and Chairman of the Industrial Court of Malaysia.

USTS offer the most unique consultancy and training services to its client by providing more practical knowledge especially in handling sensitive and delicate labour issues correctly and positively.

USTS Sdn Bhd can be contacted at:-

Suite 36-4, 14/8A,
Sentul Raya, Off Jalan Sentul,
51000 Kuala Lumpur, Malaysia.

P. O. Box 89, Cawangan Serahan
43309, Seri Kembangan,
Selangor Darul Ehsan

Contact Person:-
Faliq Wahab : - 016 241 3401
Lily Ho Abdullah : - 019 214 8328

E-Mail:- utmoststrategic@yahoo.com

말레이시아 투자실무가이드

발행인 | 홍기화
편집인 | 민경선
발행처 | KOTRA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화: 02) 3460-7114
www.kotra.or.kr
인쇄처 | 화신문화(주)
발행일 | 2008년 6월
가 격 | 30,000원